

연구보고 17-R09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I

책임연구원 김기현

공동연구원 이윤주 유설희

RESEARCH REPORT 2017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

- ▶ 책임연구원 : 김기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이윤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유설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전문연구원)
- ▶ 연구보조원 : 배진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위촉연구원)

국 문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청년 실업문제만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삶과 일 전반에 걸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청년정책 방향과 과제를 마련하는데 있다.

청년실태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목적으로 2016년에 15세에서 39세 청년 2,700명을 대상으로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올해 조사결과는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제402004호)로 지정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① 인구와 가족, ② 교육과 훈련, ③ 경제와 고용, ④ 주거, ⑤ 건강, ⑥ 문화와 가치관, ⑦ 관계와 참여 등 7가지 영역의 핵심지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부가조사 형태로 청년 니트(NEET)와 사회적응에 관한 조사도 동시에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는 청년연구센터 홈페이지(<http://www.nypi.re.kr/youth/>)를 통해 지표 영역별로 공개하는 한편, 월간 뉴스레터인 '청년 Focus'를 발간해 온라인을 통해 제시했다.

청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청년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청년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더불어 청년 니트(NEET)와 1인가구 거주 청년, 청년 은둔형 외톨이에 관한 정책들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진단하였으며 집단초점면접(FGI)과 심층면접을 통해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였다. 청년정책 과제는 중장기 과제와 단기 과제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법률이나 정책추진체계, 전달체계와 같은 청년정책 추진기반에 관해서도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청년, 청년 실업, 청년 핵심지표,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청년 연령 규정, 청년정책 기본 방향, 청년정책 과제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은 취업난과 함께 주거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득 감소와 함께 부채에 부담이 커지고 있고, 청년들의 사회 참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삶의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 추진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동시에 그 동안의 정책들은 청년의 삶 전반을 다루기보다는 청년 고용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였음.
- 이 연구는 2016년에 수행한 1차 연구의 후속 연구로 청년 핵심지표에 따라 기존의 통계 및 행정자료들과 이번에 실시한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 동시에 청년정책 전반에 대해서 법률, 정책추진체계, 정책 사업을 나누어 살펴본 후 구체적으로 청년 정책 전반과 청년 니트(NEET), 1인 가구와 사회적응과 관련된 정책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청년 생활 실태 파악을 위한 핵심지표 수정 및 자료수집

- 이 연구에서는 1차 년도에 개발한 청년 핵심지표를 수정·검토하고, 새롭게 청년 핵심지표를 확정하고 이에 따라서 기존 실태조사 및 행정자료를 2차 분석하는 한편, 기존 자료에서 파악되지 않는 지표에 대해서는 2017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음.

- 청년 핵심지표는 ① 인구와 가족, ② 교육과 훈련, ③ 경제와 고용, ④ 주거, ⑤ 건강, ⑥ 문화와 가치관, ⑦ 관계와 참여 등 7가지 영역으로 구분됨.

2) 청년들의 일과 삶의 실태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사회적인 환경 변화가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요구되는 정책적 노력을 제안하고자 하였음.
- 2017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를 통해 청년 실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조사는 개별방문면접을 통해 청년 조사대상 연령은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로 하였으며, 총 2,7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음. 2017년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는 행정집계구가 아닌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표본틀로 하여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통계청의 승인절차를 거쳐 국가승인통계의 자격으로 조사가 이루어짐.

3) 청년정책 현황과 문제점 분석

- 본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에 대한 분석과 전문가들의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그동안 추진되었던 청년정책에 대한 현황 및 평가를 검토하였음.
-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법률, 정책추진체계, 정책 사업을 살펴보고 어떠한 특징과 문제점이 있는지를 진단하였음.
- 청년 니트(NEET), 청년 1인가구, 사회적응과 관련한 정책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음.

4) 청년정책 전반 및 청년 니트(NEET), 1인가구 및 사회적응 관련 정책방안과 과제 도출

- 청년 법안을 비롯하여 청년정책추진체계, 청년정책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함.
- 청년 니트(NEET)와 1인 가구, 사회적응과 관련하여 정책 추진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음.
- 청년 니트 및 1인 가구, 사회적응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방향과 대응과제를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해 제시하였음.

4. 주요결과

1) 핵심지표별로 본 우리나라 청년들의 생활 실태

○ 인구와 가족

- 청년들이 생각하는 청년 연령규정은 평균 19세에서 31세로 나타남. 상한연령은 2016년 29세보다 다소 증가하였는데 남녀간, 연령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가정으로부터 독립해야한다는 의견은 2016년 52.4%에서 2017년 58.9%로 증가하였고, 독립해야한다고 응답자에 한 해 독립시기를 물어본 결과, 이상적인 독립시기는 평균 25.4세인 것으로 나타남.

○ 교육과 훈련

- 대학 졸업 유예를 살펴본 결과, 대학의 졸업유예제를 통해 유예한 경험이 있는 청년들은 14.5%였으며 졸업 필요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졸업을 미룬 청년들은 6.1%로 나타남. 전체적으로 대학 졸업 유예비율은 20.6%로 나타남.
- 평생학습 중 대학원 진학을 포함하여 25세~34세 청년들의 형식교육 참여율은 2016년 현재 8.4%로 2007년의 15.3%에 비해 크게 낮아짐. 35세 이상은 형식교육 참여율이 2% 내외로 매우 낮으며 낮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와 고용

- 청년들의 한 달 생활비는 75만 원 수준이며 여자보다는 남자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한 달 생활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유럽연합에서 청년들과 관련하여 핵심지표로 조사 중인 물질적 박탈률(severe material deprivation rate)을 살펴본 결과, 15세~29세 청년들 중 15.1%가 심한 물질적 박탈감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유럽연합의 경우 2013년도 결과이기는 하지만 청년들의 물질적 박탈률이 11.7%로 나타남(European Union, 2016: 123).

○ 주거

- 미혼으로 혼자 거주하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1인 가구는 2016년 14.9%에서 2017년 25.3%로 1년 사이에 크게 증가하였음.
- 미혼 1인 가구의 주거 형태는 원룸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아파트, 다세대 혹은 빌라

순이었음. 원룸 혹은 다가구 형태는 2016년 대비 2017년 다소 증가했고 아파트는 감소함.

- 공동주거 경험은 2015년 9.5%에서 2017년 7.1%로 감소함.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별로는 20대의 경험비율이 높게 나타남.

○ 건강

- 스트레스 비율은 2007년 20대의 경우 28.0%에서 36.9%까지 증가하였으며 30대도 같은 기간 28.0%에서 38.7%로 늘어남.
- 청년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체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보통이라는 응답은 54.4%로 2016년도(61.1%)보다 낮아진 대신 비만하거나 말랐다는 응답은 증가함.

○ 문화와 가치관

- 청년들의 가치관을 물어본 결과, 일과 현실, 결과와 개인을 여가나 이상, 과정이나 집단보다 더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묻는 질문에는 2013년에서 2016년까지는 화목한 가정으로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나, 2017년 조사에서는 화목한 가정보다는 재산과 경제력으로 답한 응답자가 더 많았음.

○ 관계와 참여

- 친한 친구가 있다는 응답 결과는 2016년 91.3%에서 2017년 96.1%로 상승하였고 친한 친구 수는 같은 기간 3.2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남.
- 정치효능감과 관련하여 정치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다는 질문에 긍정적인 응답(그렇다+매우 그렇다)이 높게 나왔으나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남.

4) 청년정책 법률 및 추진체계, 정책사업 진단

- 청년 관련 법률은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이 유일하며 20대 국회에서 청년기본법안은 총 7개가 발의 되었으나 아직까지 국회 상임위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언제 법률이 제정될지는 미지수임. 청년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 아직까지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정부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고용분야에 국한하여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청년고용정책이 추진 중임.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조직과 정책추진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 이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을 정책대상으로 삼아 지원하고 있는 정책 사업을 중심으로 청년정책의 현황과 특징,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5) 청년 니트(NEET)와 사회적응실태 및 문제점

○ 청년 니트(NEET)의 실태와 문제점

- 한국은 일도, 교육도, 훈련도 받지 않는 15-29세 청년 니트 비율이 2016년 18.9%로 OECD 평균(13.9%)과 비교해 5%p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청년 니트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청년 1인가구의 실태와 문제점

- 청년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1인 가구의 증가는 ‘혼밥’, ‘혼술’과 같은 혼자 지내는 생활 패턴을 가져와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쟁점을 등장시킴. 1인 가구 중에서도 월세나 사글세 등을 내는데 부담을 앓고 살아가는 청년 빈곤층이 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한 상황임.

○ 은둔형 외톨이의 실태와 문제점

-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은 내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크며, 타인을 비판하기 보다는 자기비판과 자책을 많이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 뚜렷하게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 적응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함.

5. 정책제언

- 이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실태에 대한 분석과 청년 정책에 대한 분석, 실태조사와 더불어 집단초점면접 및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청년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목표와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음.
- 전반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4가지 정책 목표와 함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청년정책

기반 구축 방안을 제시함. 4가지 정책 목표는 ① ‘양질의 일자리에서 제대로 일하기’와 ② ‘역량을 키우고 지속적으로 배우기’, ③ ‘마음껏 자기 목소리 내기’, ④ ‘누구나 차별 없이 성장하기’ 등임. 청년 정책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법률은 기존의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청년기본법’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함. ‘청년기본법’을 독자적으로 제정할 경우에는 ‘청소년기본법’과의 연령중복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과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전담행정조직의 신설이나 통합이 필요함.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조직은 국무총리 산하 행정위원회를 두는 안과 독일처럼 대상중심부처를 통합해 부처 기능 조정을 통해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행정부처를 두는 안을 제시함.

- 청년 니트(NEET)를 위한 정책목표로서 ‘충실하게 니트시기를 보내기’와 ‘니트 기간 줄이기’를 제시함. 이를 위해서 단기과제로는 ‘니트지원 프로그램 추진’과 ‘한국형 청년보장제 실시’를, 장기과제로는 ‘니트 찾아가기 서비스 추진’과 ‘교육 및 훈련 연계체계 구축’을 제시함.
-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정책목표로서 ‘청년중심 ‘공간’ 공유하기’와 ‘청년 ‘생활’ 나누기’를 제시함. 이를 위한 단기과제로는 ‘청년활동 공간지원서비스’ 확대와 ‘청년 생활 나눔 프로젝트 추진’ 확대를 장기과제로는 ‘청년 공유 주거 복합단지’ 추진과 ‘전국 청년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성을 제시함.
- 청년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정책 목표로는 ‘은둔형 외톨이에게 다가가기’와 ‘은둔형 외톨이 세상 밖으로 이끌어내기’를 제시함. 이를 위한 단기과제로서 ‘은둔형 외톨이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및 협업연계 강화’와 ‘은둔형 외톨이 자기강화 지원’을, 장기과제로는 ‘민관협동을 통한 은둔형 외톨이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과 ‘은둔형 외톨이 자립지원 강화’를 제시함.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추진체계	5
3. 연구내용	7
4. 연구방법	10
II. 연구 배경	15
1. 정책 대상인 청년 개념	17
2. 청년 정책 관련 동향	20
3. 청년 일과 삶에 대한 실태조사 현황	33
III. 한국 청년의 일과 삶 실태	37
1. 2017년 청년 생활실태에 대한 핵심지표	39
2. 2017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개요 및 결과	47
3. 핵심지표별 한국 청년의 일과 삶 실태	55
IV. 청년정책 법률 및 추진체계, 정책사업 진단	137
1. 청년정책 법률 현황과 문제점	139
2. 청년 정책추진체계 진단	153
3. 청년정책 사업 추진동향	163
V. 청년 니트(NEET)와 사회적응실태 및 문제점	179
1. 청년 니트(NEET)의 실태와 문제점	181
2. 청년 1인가구 실태와 문제점	193
3. 청년 사회적응 실태와 문제점	218

VI. 정책제언	241
1. 청년 정책과제 도출 절차	243
2. 청년 정책의 과제	258
참고문헌	275
부 록	285

표 목차

〈표 Ⅰ-1〉	2017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지표체계	7
〈표 Ⅰ-2〉	월간 뉴스레터 ‘청년 Focus’ 2017년 구성 내용	8
〈표 Ⅲ-1〉	2015 ~ 2017 청년 사회·경제실태 지표체계 분류 비교	40
〈표 Ⅲ-2〉	2017 청년 사회·경제실태 인구와 가족 관련 핵심지표체계	41
〈표 Ⅲ-3〉	2017 청년 사회·경제실태 교육과 훈련 관련 핵심지표체계	42
〈표 Ⅲ-4〉	2017 청년 사회·경제실태 경제와 고용 관련 지표체계	43
〈표 Ⅲ-5〉	2017 청년 사회·경제실태 주거 관련 지표체계	44
〈표 Ⅲ-6〉	2017 청년 사회·경제실태 건강 관련 지표체계	45
〈표 Ⅲ-7〉	2017 청년 사회·경제실태 문화와 가치관 관련 지표체계	46
〈표 Ⅲ-8〉	2017 청년 사회·경제실태 관계와 참여 관련 지표체계	46
〈표 Ⅲ-9〉	조사 영역 및 주요 조사 항목	51
〈표 Ⅲ-10〉	조사대상 인구통계학적 특성	54
〈표 Ⅲ-11〉	청년층 인구수	55
〈표 Ⅲ-12〉	전체인구 대비 청년층 구성비	56
〈표 Ⅲ-13〉	체류 외국인 수	57
〈표 Ⅲ-14〉	등록 외국인 수	57
〈표 Ⅲ-15〉	단기체류 외국인 수	57
〈표 Ⅲ-16〉	결혼이민자 외국인 수	58
〈표 Ⅲ-17〉	청년인구 전망	58
〈표 Ⅲ-18〉	청년 연령규정	59
〈표 Ⅲ-19〉	적정 독립 시기	59
〈표 Ⅲ-20〉	적정 결혼 시기	60
〈표 Ⅲ-21〉	적정 출산 시기	61
〈표 Ⅲ-22〉	해외이주 의사	61
〈표 Ⅲ-23〉	해외이주 고려 이유	62

〈표 III-24〉	혼인건수	63
〈표 III-25〉	혼인율	64
〈표 III-26〉	성별 초혼 연령	65
〈표 III-27〉	출생아 수	66
〈표 III-28〉	출산연령(모의 연령)	67
〈표 III-29〉	결혼준비 경험	67
〈표 III-30〉	결혼 망설임 여부	68
〈표 III-31〉	맞벌이 여부	68
〈표 III-32〉	자녀 존재 여부	69
〈표 III-33〉	자녀를 가질 계획	69
〈표 III-34〉	대학등록금	70
〈표 III-35〉	대학등록금대출자비용	70
〈표 III-36〉	재학생 1인당 장학금	71
〈표 III-37〉	학제별 대학졸업 소요기간	71
〈표 III-38〉	대출자휴학현황	72
〈표 III-39〉	대학생 학업중단을	73
〈표 III-40〉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74
〈표 III-41〉	대학 진학 의사	74
〈표 III-42〉	진학률	75
〈표 III-43〉	연령별 평생학습 형식교육 참여율 변화 추이	76
〈표 III-44〉	연령별 평생학습 비형식교육 참여율 변화 추이	77
〈표 III-45〉	연령별 평생학습 직업 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 변화 추이	78
〈표 III-46〉	연령별 직업교육 훈련 참여율 변화 추이	78
〈표 III-47〉	현재 취업 준비 여부	79
〈표 III-48〉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	79

〈표 III-49〉	경제활동 참여율	80
〈표 III-50〉	고용률	81
〈표 III-51〉	실업률	82
〈표 III-52〉	전산업 기준 신설법인수 및 비율	83
〈표 III-53〉	청년 기업 고용주(대표)의 기업생멸통계 변화 추이	84
〈표 III-54〉	청년(15-29세) 니트 비율(OECD 기준)	85
〈표 III-55〉	연령별 비정규직 비율	85
〈표 III-56〉	대졸 신입사원 경쟁률	86
〈표 III-57〉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87
〈표 III-58〉	중소기업 취업 의향	87
〈표 III-59〉	창업 경험	88
〈표 III-60〉	창업 의사	88
〈표 III-61〉	월임금총액	89
〈표 III-62〉	청년 소비	90
〈표 III-63〉	장년 대비 청년 상대임금	91
〈표 III-64〉	청년층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	92
〈표 III-65〉	청년 가구주의 부채	93
〈표 III-66〉	적정 최저 임금	94
〈표 III-67〉	한 달 생활비와 생활비 지원받는 비율	95
〈표 III-68〉	채무 여부	95
〈표 III-69〉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96
〈표 III-70〉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96
〈표 III-71〉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96

〈표 III-72〉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97
〈표 III-73〉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97
〈표 III-74〉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97
〈표 III-75〉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97
〈표 III-76〉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98
〈표 III-77〉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	98
〈표 III-78〉	청년층(가구주)의 연령별 주택 점유형태	99
〈표 III-79〉	청년층(가구주)의 실주거비	100
〈표 III-80〉	청년층(일반가구 가구주)의 가구 비율	101
〈표 III-81〉	청년층(일반가구 가구주)의 1인 가구 비율	101
〈표 III-82〉	부모 동거 여부	102
〈표 III-83〉	미혼 혼자 거주 여부	102
〈표 III-84〉	현재 주거 형태	103
〈표 III-85〉	청년층(일반가구 가구주)의 주택 외 거주규모 및 비율	103
〈표 III-86〉	가처분소득 대비 가구부채비율	104
〈표 III-87〉	가숙사 수용률	105
〈표 III-88〉	주거 마련 시기 의견	105
〈표 III-89〉	공동주거_공동주거 경험	106
〈표 III-90〉	공동주거_공동주거 의향	106
〈표 III-91〉	평소 주거 생각_1) 내 명의의 집은 꼭 있어야 한다	107
〈표 III-92〉	평소 주거 생각_2)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107
〈표 III-93〉	평소 주거 생각_3)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07
〈표 III-94〉	정기적인 운동 실천율_걷기실천율	108

〈표 III-95〉 정기적인 운동 실천율_격렬한 신체활동실천율	109
〈표 III-96〉 비만율	109
〈표 III-97〉 스트레스	110
〈표 III-98〉 우울증	111
〈표 III-99〉 자살률	111
〈표 III-100〉 흡연율	112
〈표 III-101〉 음주율	112
〈표 III-102〉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	113
〈표 III-103〉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을 느낀다	114
〈표 III-104〉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114
〈표 III-105〉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114
〈표 III-106〉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115
〈표 III-107〉 나의 일상엔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115
〈표 III-108〉 청년병원이용	116
〈표 III-109〉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	116
〈표 III-110〉 성형수술 경험	117
〈표 III-111〉 성형수술 목적	117
〈표 III-112〉 문화 및 여가생활 시간	118
〈표 III-113〉 문화 및 여가생활 비용	119
〈표 III-114〉 문화 및 여가생활 만족도	119
〈표 III-115〉 독서율	120
〈표 III-116〉 주관적 행복감	120
〈표 III-117〉 삶의 만족도	121
〈표 III-118〉 주관적 계층의식(사회통합실태조사)	121
〈표 III-119〉 선호하는 가치(일 중시 vs 여가 중시)	122

〈표 III-120〉 선호하는 가치(현실 중시 vs 이상 중시)	122
〈표 III-121〉 선호하는 가치(결과 중시 vs 과정 중시)	122
〈표 III-122〉 선호하는 가치(개인 중시 vs 집단 중시)	123
〈표 III-123〉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123
〈표 III-124〉 긴급 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율	124
〈표 III-125〉 부모와의 만남 정도(가구주)	125
〈표 III-126〉 부모부양에 대한 견해	126
〈표 III-127〉 가족관계 만족도	127
〈표 III-128〉 친한 친구	127
〈표 III-129〉 세대 갈등	128
〈표 III-130〉 자원봉사참여(참여여부, 참여횟수, 참여기간)	129
〈표 III-131〉 기부활동(기부여부, 현금기부여부, 물품기부여부)	130
〈표 III-132〉 단체참여	131
〈표 III-133〉 투표율	132
〈표 III-134〉 정부 및 공공기관 신뢰도	133
〈표 III-135〉 반대 의견 제시 방법 참여	134
〈표 III-136〉 정치적 효능감_1)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35
〈표 III-137〉 정치적 효능감_2)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135
〈표 III-138〉 정치적 효능감_3)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35
〈표 IV-1〉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발의) 내용	140
〈표 IV-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 관련 법률안	141
〈표 IV-3〉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입법 발의 현황	142

〈표 IV-4〉	20대 국회 청년 관련 기본법안 입법 발의 현황	145
〈표 IV-5〉	청년 관련 기타법안 입법 발의 현황(2017년 10월 기준)	148
〈표 IV-6〉	지방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 내용 (특별자치시·도 기준)	149
〈표 IV-7〉	지방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 내용 (도 기준)	151
〈표 IV-8〉	지방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 내용 (광역시 기준)	152
〈표 IV-9〉	박근혜 정부(2013-2017.4)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시행 사업	157
〈표 IV-10〉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청년정책 사례	159
〈표 IV-11〉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추진체계	162
〈표 IV-12〉	2017년 주요 청년 일자리 정책	165
〈표 IV-13〉	청년 일자리 정책 (직접일자리 정책)	166
〈표 IV-14〉	청년주거정책	167
〈표 IV-15〉	청년활동지원수당 현황	168
〈표 IV-16〉	중앙 부처 청년 고용관련 부서 현황	169
〈표 IV-17〉	교육부 청년정책 관련 부서 현황	170
〈표 IV-18〉	여성가족부 청년 관련 부서 현황	171
〈표 IV-19〉	문화체육관광부 청년 관련 부서 현황	171
〈표 IV-20〉	지역자치단체(특별자치광역시 중심) 청년정책	172
〈표 IV-21〉	지방자치단체(도 중심) 청년정책	174
〈표 IV-22〉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수행 관련 업무 유형별 분류	175
〈표 IV-23〉	대졸 신입사원 1년 내 퇴사율	177
〈표 V-1〉	OECD 주요 국가의 청년 니트(NEET) 현황 비교(15-29세 기준)	183
〈표 V-2〉	OECD 기준 주요국 2016년 청년(15-29세) 학생, 취업자, 니트 비중 비교	184
〈표 V-3〉	OECD 기준 주요국 2016년 청년(18-24세) 성별, 경제활동상태별 비교	184

〈표 V-4〉	2016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청년 니트(NEET) 특성	185
〈표 V-5〉	2016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제활동상태별 청년 니트(NEET) 특성	186
〈표 V-6〉	청년 니트(NEET) 집단초점면접 대상자	187
〈표 V-7〉	가구, 가족특성별 청년층 빈곤율	194
〈표 V-8〉	청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변화 추이	195
〈표 V-9〉	1인 가구 개념	197
〈표 V-10〉	1인 가구 세대별 주거 특성	199
〈표 V-11〉	서울지역 청년 1인 가구 집단초점면접 대상자	201
〈표 V-12〉	서울 이외지역 청년 1인 가구 집단초점면접 대상자	202
〈표 V-13〉	FGI 1인 가구 청년 지역 구분	203
〈표 V-14〉	평소 외출 정도	223
〈표 V-15〉	‘은둔형 외톨이’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면접 대상자 정보	228
〈표 VI-1〉	대상별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안)	257
〈표 VI-2〉	청년기본법안 대상 연령 규정(안)	263
〈표 VI-3〉	청년 정부조직(안)	264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도별 연구추진계획	6
【그림 Ⅰ-2】	청년 핵심지표를 공개하고 있는 청년연구센터 홈페이지	8
【그림 Ⅱ-1】	전 세계 청소년 혹은 청년(youth) 하한 및 상한 연령 분포	23
【그림 Ⅱ-2】	청년들이 응답한 평균 청년 연령(단위: 세)	24
【그림 Ⅱ-3】	전 세계 청소년 혹은 청년(youth) 담당 중앙행정조직 분포	27
【그림 Ⅳ-1】	김대중 정부(1998-2002)의 실업대책 기본 틀	154
【그림 Ⅳ-2】	노무현 정부(2003-2007) 청년정책 추진체계: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156
【그림 Ⅳ-3】	이명박 정부(2008-2012) 청년정책 추진체계: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156
【그림 Ⅳ-4】	문재인 정부(2017.5-) 청년 정책 추진체계: 일자리 위원회	160
【그림 V-1】	청년 빈곤율 변화추이	196
【그림 V-2】	연령대 별 1인 가구 수	198
【그림 V-3】	청년 주거빈곤율	206
【그림 V-4】	집단초점인터뷰 대상자 거주 지역	207
【그림 V-5】	청년 1인 가구 건강 현황	208
【그림 V-6】	주거 공간에 따른 이동 경로	209
【그림 V-7】	주거 공간에 따른 이동 경로	211
【그림 V-8】	청년의 실업이 정신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213
【그림 V-9】	청년대상 소셜다이닝 프로그램 사례	215
【그림 V-10】	청년 공간 사례	216
【그림 V-11】	청년 대상 상담 플랫폼 사례	216
【그림 V-12】	제주 청년 활동 프로그램 사례	217
【그림 V-13】	외출을 하지 않게 된 계기(단위: %)	225

【그림 V-14】	외출을 하지 않는 상태의 지속 기간 정도(단위: %)	226
【그림 VI-1】	청년 정책과제 도출 절차	243
【그림 VI-2】	청년들이 전망한 2025년 출산율(2017년)	245
【그림 VI-3】	청년들이 생각하는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정책(2017년)	...246
【그림 VI-4】	청년들이 생각하는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육아 정책(2017년)	...246
【그림 VI-5】	청년들이 전망한 2025년 입시경쟁(2017년)	247
【그림 VI-6】	청년들이 전망한 2025년 취업경쟁(2017년)	248
【그림 VI-7】	청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노동수요측면 고용대책(2017년)	...249
【그림 VI-8】	청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노동공급측면 고용대책(2017년)	...249
【그림 VI-9】	청년정책 추진목표(안)	251
【그림 VI-10】	고용과 학습에 관한 정책목표에 따른 정책과제(안)	258
【그림 VI-11】	참여와 복지에 관한 정책목표에 따른 정책과제(안)	260
【그림 VI-14】	청년 은둔형 외톨이에 관한 정책목표에 따른 정책과제(안)	272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추진체계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제 | 장
서 | 론¹⁾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년 문제가 우리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한 이후 역대 정부들에서는 다양한 종합대책들을 발표해왔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정부 이후 가장 많은 6개의 청년고용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1년에 한 번 이상 청년대책이 나왔지만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이 좋아지지 않거나 더 악화되었고, 핵심적인 쟁점인 청년 고용문제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취업난이다. 지난 10년간 청년들의 고용률은 큰 변화 없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2016년 최고 수치를 보여준 이후 2017년도 들어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통계청, 각 년도). 2017년 8월 기준 15세에서 29세 청년 실업률은 9.4%로, 전년도 실업률(9.3%)보다 개선되지 않았다. 그나마 취업자 수 자체는 증가해 왔는데 전년 대비 취업자 수에서 8월에는 7만4천명이 감소하는 등 2017년 들어 4차례나 감소하여 전년 대비 취업자 수도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일도 하지 않고, 학교도 다니지 않고, 훈련도 받지 않는 젊은이를 지칭하는 니트(NEET)도 지난 3년 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OECD 기준으로 청년(15-29세) 니트는 2014년 17.8%에서 2016년 18.9%가 증가하였는데, OECD 평균(13.9%)보다 5.0%p나 높은 수치이다.

취업난과 더불어 청년들의 경제 여건도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29세 이하 청년 가구주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4년 323만 원에서 2015년 304만 원으로 낮아졌고, 2016년에는 317만 원으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2014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통계청, 각 년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소득이 같다고 하더라도 전년보다 경제여건이 나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 소득이

1) 이 장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줄었으므로 청년들의 경제 여건이 매우 안 좋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체 가구주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같은 기간(2014년 430만 원 → 2015년 437만 원 → 2016년 439만 원)동안 감소하지 않고 증가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소득 감소와 더불어 청년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은 부채 증가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2017). 은행 대출자 중 20대의 평균 부채 금액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2016년 3/4분기 30대 이상 연령층에서 감소하였지만 유독 20대만은 8.8% 증가해 우려를 낳고 있다(하나금융그룹, 2016).

주거부담은 취업난과 더불어 청년들이 겪는 주된 어려움 중에 하나이다(이태진, 김태완, 정의철, 최은영, 임덕영, 외, 2016).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을 보면, 장년 가구는 빈곤가구 중 58.3%가 RIR 20.0% 이상이지만 청년 가구주의 그것은 73.3%로 빈곤한 청년 가구의 주거비가 부담 상태가 훨씬 크게 나타난다. 이는 청년들의 주거 빈곤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청년들이 정치, 경제, 사회 영역 전반에 걸쳐서 참여가 줄어들고 있는 점도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이다. 역대 국회의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0대와 30대 국회의원은 1963년 제5대 국회에서 전체 국회의원 중 24.5%(43명)를 차지해 제헌의회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준 뒤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6년 제20대 국회에서는 불과 1.0%(3명)로 줄어들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7).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2012년 기준으로 전 세계 88개 국가에서 20-30세 국회의원은 평균 13.6%를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3.0%(제19대 국회, 9명)에 불과해 젊은 국회의원이 매우 적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 종사자의 연령도 극적으로 바뀌어 왔는데 1980년 10대와 20대 기업 종사자 비중은 60.6%였으나 2010년 22.3%로 줄어들었다(방하남, 어수봉, 유규창, 이상민, 하갑래, 2012). 2015년 현재 기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1980년 28.8세에서 2015년 41.1세로 크게 증가하였다(고용노동부, 2017). 저출산이 빠르게 진행 중이지만 10대와는 달리 20대 인구 감소는 아직까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기업이 훨씬 더 빨리 늙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삶과 일 전반에 대한 명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청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가 청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실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청년정책을 과학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뒤따라야 한다.

이 연구는 2016년에 수행한 1차 연구의 후속 연구이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청년의 삶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 청년핵심지표를 마련하였으며, 기존 통계자료로 수집할 수 없는 청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 이어서 청년정책 전반에 걸쳐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청년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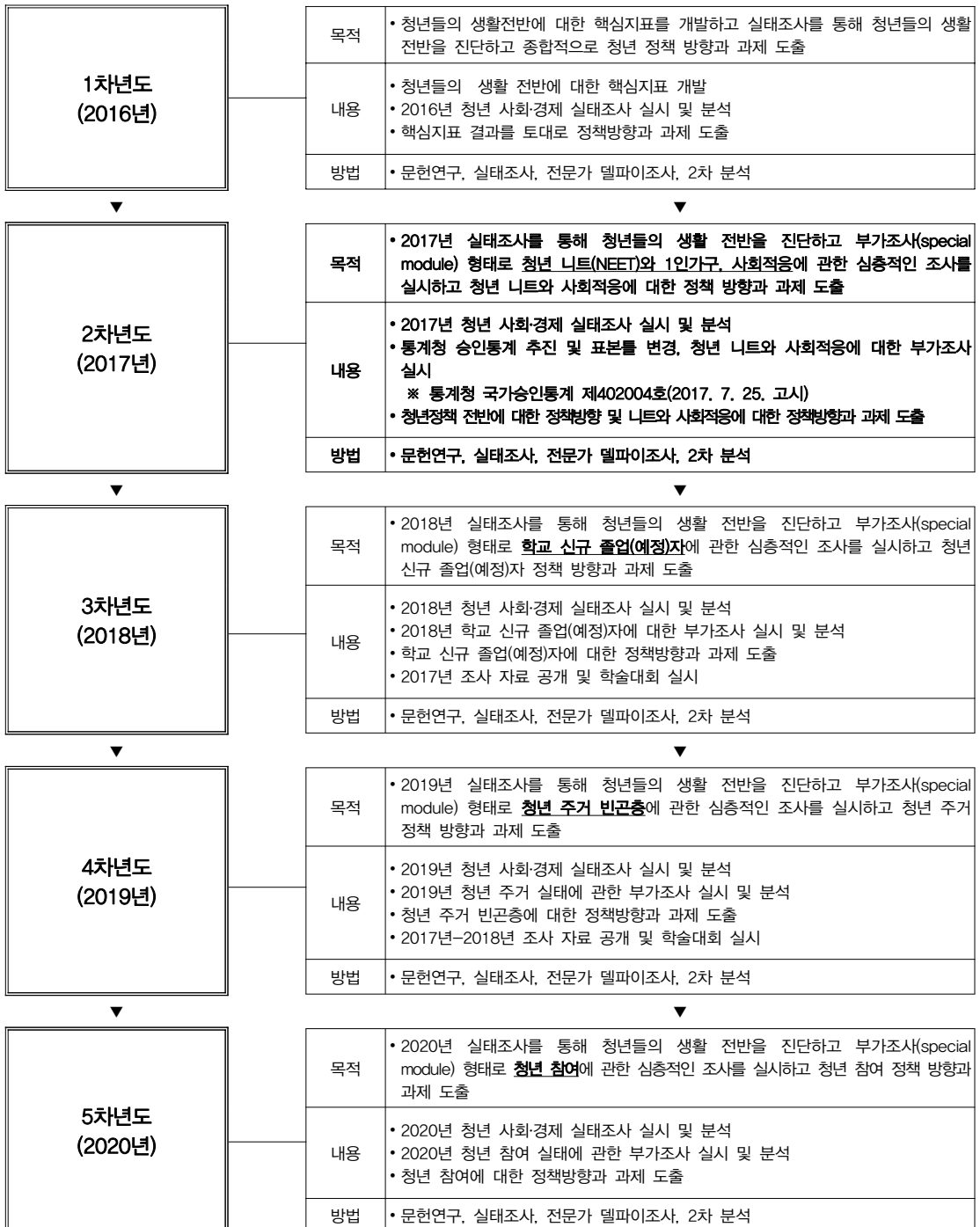
2차 년도 연구에서는 우선 1차 년도에 개발한 청년 핵심지표를 토대로 청년들의 종합적인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2017년부터 실시되는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는 통계청으로부터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4020004호)로 인구·주택 총조사의 조사구를 활용해 실시되었다. 이 조사는 인구 및 가족, 취업과 경제생활, 교육과 학습, 훈련을 비롯하여 주거 및 참여, 문화생활과 가치관 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을 담고 있다. 한편, 2017년도에 실시된 실태조사에서는 청년 니트(NEET), 1인 가구와 사회적응에 관한 설문을 개발해 부가조사(special module)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청년정책 전반에 대해서 법률, 정책추진체계, 정책 사업을 나누어 살펴본 후 구체적으로 청년 니트(NEET), 1인 가구와 사회적응과 관련된 정책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추진체계

이 연구는 2016년도에 개발한 청년 핵심지표(안)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올해부터는 ① 청년 니트(NEET)와 사회적응, ② 학교 신규 졸업(예정)자, ③ 청년 주거빈곤층, ④ 청년 참여 등 정책대상별로 부가조사(special module)를 실시하는 한편, 포괄적인 정책 과제 제시와 더불어 세부적인 정책대상별 정책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2017년도에는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가 2016년과는 달리 행정집계구가 아닌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구를 표본틀로 이용해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통계청의 승인절차를 거쳐 국가승인통계로 이루어졌다. 통계청 승인이 완료되어 조사 특성상 5년이라는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매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기간 조정 작업도 추진하였다. 현재 발의된 청년기본법안에서 청년실태조사 실시는 법 조항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의미가 있어 이 조사는 청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출처: 김기현, 하형석, 신인철(2016),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p.8. <표 1-1>을 수정·보완함

【그림 1-1】 연도별 연구추진계획

이와 관련 가장 최근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의원 대표발의 법안(의안번호 4070)에서도 제11조에 국민총리는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과 관련된 기초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2018년부터는 통계청 승인통계가 완료된 2017년 조사 원자료를 공개해 이를 분석하는 학술대회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는 조사 자료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다양한 분석을 통해 정책에 대한 반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연구내용

1) 청년 일과 삶 실태 분석을 위한 핵심지표 수정 및 자료수집

이 연구에서는 1차년도 연구에서 개발한 청년 핵심지표를 검토하고 수정하고자 한다. 핵심지표는 본원에서 실시하는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되는 지표와 기존에 통계청 승인통계 조사 자료나 행정통계에서 취합하여 수집되는 지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I-1 2017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지표체계

구 분	분 류
인구와 가족	청년층 인구수(1-1-1), 혼인율(1-2-2), 초혼 연령(1-2-3) 등
교육과 훈련	대학등록금(2-1-1), 대학생 학업중단율(2-1-6), 스펙쌓기(2-1-8), 대학시절 아르바이트 경험 및 이유(2-1-9), 진학률(2-2-3) 등
경제와 고용	경제활동 참여율(3-1-1), 직무 불일치(3-1-14), 청년층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3-2-4), 최저임금(3-2-6) 등
주거	청년 가구 비율(4-1-3), 현재 주거 형태(4-1-8), 주거 마련 시기 의견(4-2-4) 등
건강	일상생활 스트레스(5-1-10), 청년 병원 이용(5-2-1), 성형수술 여부(5-2-3) 등
문화와 가치관	문화 및 여가생활 시간(6-1-1), 여가활동 대상(6-1-6), 주관적 계층의식(6-2-3),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6-2-6) 등
관계와 참여	사회적 관계망(7-1-1), 세대갈등(7-1-6), 의견 표명 행동(7-2-6), 정치 성향(7-2-8) 등

* 출처: 김기현 외(2016).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p.27. <표 III-3>에서 지표번호를 추가하여 재구성.

【그림 1-2】 청년 핵심지표를 공개하고 있는 청년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www.nypi.re.kr/youth/>)

2016년도에 개발한 청년 핵심지표는 ① 인구와 가족, ② 교육과 훈련, ③ 경제와 고용, ④ 주거, ⑤ 건강, ⑥ 문화와 가치관, ⑦ 관계와 참여 등 7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세부적인 지표 항목에 대해서는 <부록 1> 참조). 핵심지표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작업은 전문가 의견조사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유럽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통계의 지표체계를 참고해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조사 문항에 포함시켰다(European Union, 2016).

표 I-2 월간 뉴스레터 ‘청년 Focus’ 2017년 구성 내용

구 분	청년 핵심지표	청년 칼럼	연구보고서 소개
7호('17. 01)	청년층 대선 투표율	공석기(서울대아시아연구소)	청년 참여 관련 보고서
8호('17. 02)	독립·결혼·출산 적정연령	장혜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결혼, 출산 관련 보고서
9호('17. 03)	대학 졸업유예 추이	박윤수(한국개발연구원)	졸업 유예 관련 보고서
10호('17. 04)	2025년 취업경쟁 전망	배병관(기획재정부)	청년취업지원 관련 보고서
11호('17. 05)	청년 주거 마련 시기	김영환(과학기술정책연구원)	청년 주거 관련 보고서
12호('17. 06)	성형수술 여부 및 목적	권근용(보건복지부)	건강, 체육 관련 보고서
13호('17. 07)	삶의 성공 기준	김영생(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가치관 관련 보고서
14호('17. 08)	청년층 가족관계 만족도	장재열(청춘상담소)	가족관계 관련 보고서
15호('17. 09)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정의	김기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 관련 보고서
16호('17. 10)	청년층의 평생학습 참여 추세	장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교육, 학업 관련 보고서
17호('17. 11)	청년층이 생각하는 고용위기 해법	김유빈(한국노동연구원)	청년 일자리 관련 보고서
18호('17. 12)	청년층의 가구부채 비율	조현준(민달팽이유니온)	청년 주거 관련 보고서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연구센터 홈페이지(<http://www.nypi.re.kr/youth/>). 3가지 이외에 고정 내용으로 월별고향 동향과 청년소개가 뉴스레터에 포함되어 있음.

이 연구에서는 핵심지표 결과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서 본원 홈페이지에 청년연구센터 홈페이지(<http://www.nypi.re.kr/youth/>)를 만들고 이번 연구에서 개발한 청년핵심지표 결과를 지표 영역별로 공개하고 있다. 동시에 월간 뉴스레터인 '청년 Focus'를 2016년 7월부터 매월 주제별로 청년핵심지표 인포그래픽, 월별 청년고용동향, 청년 칼럼, 청년 연구보고서 소개, 청년 정책 소개 등을 내용으로 구성하고 발간해 배포하고 있다.

2) 청년 일과 삶 실태 조사 및 분석

이 연구에서는 인구와 가족, 교육과 훈련, 경제와 고용, 주거, 건강, 문화와 가치관, 관계와 참여 등의 7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는 핵심지표 중에서 통계자료 및 행정문서 자료 등을 활용하고, 2차 분석을 통해 청년을 둘러싼 사회·경제 환경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변화가 청년층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요구되는 정책적인 노력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2017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를 함께 진행하여 현재 청년들의 일과 삶에 대한 실태를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 방법은 개별방문면접조사로 이루어졌으며, 표본설계는 가구 표집으로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조사구를 표본틀로 활용하였다. 다단계계층표집법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최소 100개 이상의 조사구에서 최소 1,000개부터 최대 1,500개 가구에서 추출된 청년 2,7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 연령은 포괄적으로 만15세부터 만39세까지이며 법적 근거(청년기본법안)가 마련되기 전까지 포괄적인 연령 정의를 적용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성인기 이행시점은 개인마다 편차가 존재하여 법률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최저연령은 15세이므로 15세부터 조사 대상 연령으로 정하였고, 취업 및 결혼이나 출산 등과 관련된 상한연령을 39세로 규정하여 이행시점과 더불어 이행기의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3) 청년정책 현황과 문제점 분석

이 연구에서는 청년정책에 대한 현황 파악과 문제점 분석을 위해서 문헌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추진하였다. 주요 정책 현황 분석은 청년정책 전반에 대해서 법률, 정책추진체계, 정책 사업을 나누어 살펴본 후 구체적으로 청년 니트(NEET)와 1인 가구, 사회적응과 관련된 정책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청년 정책이 고용 측면에 집중되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청년의 삶의 질적인 측면까지 영역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중심으로 청년 1인 가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나홀로족’과 ‘은둔형 외톨이’ 등을 토대로 청년 사회적응 측면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하고자 한다.

4) 청년정책 전반 및 청년 니트(NEET), 1인 가구, 사회적응 관련 정책 방안과 과제 도출

이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 제안했던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과제를 재정리해 제시하였다. 청년 법안을 비롯하여 청년정책추진체계, 청년정책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선정하였다.

이어서 청년 니트(NEET)와 1인 가구, 사회적응과 관련하여 정책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향후 청년 니트 및 1인 가구, 사회적응 정책 추진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향과 과제를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4.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이 연구에서는 청년의 일과 삶에 대한 실태에 관한 연구와 청년 정책에 관한 자료에 대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청년 실태에 관한 연구는 고용문제를 비롯하여 경제여건, 주거를 비롯해 참여나 문화생활 등 삶 전반에 걸쳐 청년들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다. 청년 정책에 관한 문헌 분석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백서나 관련보고서, 정책사업을 소개하는 문서 등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2) 양적 연구

이 연구에서는 2016년도에 이어서 2017년도에 15세에서 39세 이하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2017년도에는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 지정 절차를

실시하여 국가승인통계로 이루어졌다. 통계 승인 사항으로 이 조사의 명칭은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이다. 조사 명칭과 관련하여 아동이나 청소년처럼 청년종합실태조사 등으로 변경을 고려했으나 2013년부터 실시된 동일 조사와의 연속성을 고려해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통계작성 목적은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인 환경변화와 청년들의 삶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청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으며 법적 근거는 청년기본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마련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개인이며, 조사지역 및 대상지역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조사구 또는 신축아파트 리스트에서 추출된 270개 표본 조사구 내 청년층이 있는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기간은 매년 7월부터 9월까지이며 조사주기는 1년이고 조사방법은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함으로써 조사 대상자를 직접 대면하여 면접하는 개별방문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를 원칙으로 하였지만 부득이한 경우 유치 조사를 병행 실시하도록 했다.

조사표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청년용(19-39세) 설문지는 인구와 가족 영역 15개 항목, 교육과 훈련 영역 9개 항목, 경제와 고용 영역 26개 항목, 주거 영역 7개 항목, 건강 영역 8개 항목, 가치관 영역 3개 항목, 관계와 참여 영역 4개 항목과 부가조사로 사회적응 영역 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중고등학생용(15-18세) 설문지는 인구와 가족 영역 6개 항목, 교육과 훈련 영역 5개 항목, 경제와 고용 영역 10개 항목, 주거 영역 6개 항목, 건강 영역 8개 항목, 가치관 영역 3개 항목, 관계와 참여 영역 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표본설계는 가구표본(household sample)으로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개인이 목표 모집단이며 조사 모집단은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개인이다. 2,700명을 목표표본 크기로 정하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 각 동부의 표본조사구에서는 11가구, 읍면부의 표본조사구에서는 14가구를 표본가구로 추출하였다. 다단계층화로 1차 층화는 18개 광역 시도, 2차 층화는 서울 및 광역시와 도 지역을 동 지역과 읍면 지역으로 나누고 동 지역은 아파트인지, 일반조사구인지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표본추출은 조사구 추출에서 시작해 조사구 내 가구 수에 비례해 가구를 확률비례계통추출법으로 추출하고 추출된 가구에서 청년 연령에 해당하는 개인 전원을 조사하였다.

3) 2차 자료 분석

2차 분석 대상 자료들은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등을 비롯하여 사회조사 등이다. 이는 청년 핵심지표에 대한 자료 수집과 더불어서 청년 니트와 1인 가구 중 청년층 비율을 도출하는데 활용하였다.

청년 니트와 관련해서 이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청년 니트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청년 니트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추정해 보고 청년 니트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또한, 청년 1인 가구 분포 지역을 선정하여 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상권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연결망분석(SNA)'을 통해 소비 특성 및 패턴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빈번하게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1인가구 중심의 소비문화 패턴과의 비교를 통해 청년 1인가구의 유형화를 통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4) 초점집단면접조사(FGI) 및 심층면접

청년 니트(NEET)와 청년 1인 가구 거주자에 대해서는 초점집단면접조사(FGI)를 실시하였다. 청년 니트를 대상으로 하는 FGI는 2017년 8월 23일 대전과 8월 24일 광주, 그리고 9월 7일 서울 등에서 이루어졌으며 총 10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OECD에서 구분하고 있는 청년 니트 유형을 고려해 모집하였다. 청년 니트 유형은 ①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 집단, ② 어린아이나 가족을 돌보거나 가사활동을 하는 돌봄, 가사 집단, ③ 학업이나 취업에 실패해 의욕이 저하된 자포자기 집단, ④ 음악이나 예술 등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자발적으로 니트를 선택한 집단 등이다. 질문 내용은 청년 니트 실태와 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청년 니트 지원방안에 관한 의견 등이었다.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FGI는 2017년 7월 28일과 7월 31일, 8월 10일, 8월 18일 서울과 8월 23일 대구, 8월 24일 광주, 8월 29일 제주 등 4개 지역에서 총 2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청년 1인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군집분포를 통해 대상 지역을 구체화했으며, 청년단체 및 청년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통해 면접 대상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질문 내용은 1인 가구 생활 실태를 식생활, 주거, 심리적 측면 및 추후 주거 계획

등이었다. 청년 1인 가구 거주자의 경우 면접대상자가 많은 이유는 이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연결망 분석을 시도하기 위해서였다. 연결망 분석을 통해 청년 1인 가구 거주자의 사회적 자본의 형태와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였다.

청년 은둔형 외톨이는 직접적인 면접조사가 어렵다는 감안하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조사를 시행하였다. 심층면접조사는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었다. 면접 대상자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연구해 본 경험이 있는 학계 연구자나 은둔형 외톨이를 대상으로 한 상담기관, 은둔형 외톨이 지원 및 사업수행기관의 현장전문가,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6개 기관에서 총 9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5)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전문가 자문회의는 청년 핵심지표 체계와 2017년도 실태조사 조사항목에 대한 검토를 위주로 이루어졌다. 2016년도 설문지에 대한 검토와 추가 문항 제안은 관련분야 교수와 연구원, 공무원을 9명을 대상으로 서면 제출 형태로 3월 24일까지 진행되었다. 청년 핵심지표 체계와 수정된 설문지 설문문항에 대한 자문회의는 6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5월 18일과 5월 19일 이틀에 걸쳐 서울에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에 관한 최종적인 자문회의는 11월 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정책연구협의회(차관급 이상 참석)는 2017년 4월 20일 박용호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여 청년정책 현안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2017년 9월 27일 이용섭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하여 청년 일자리 관련 정책 아이디어에 관한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어서 12월에 구성될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청년 분과에 연구진이 분과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12월 22일 청년분과 1차 회의에 참석하여 연 초에 발표할 예정인 청년고용대책 1호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12월 28일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수석실에서 개최한 청년고용간담회에 참석하여 청년고용정책에 관한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정책연구실무협의회는 2017년 2월 8일 여성가족부와 후기청소년 정책에 관한 주제로, 2월 9일과 4월 28일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와 청년정책 추진에 관한 주제로, 2월 21일 국무조정실과 근로권익 보호 관련 주제로, 9월 25일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과 청년정책 과제 추진에 관한 주제로 이루어졌다.

제 Ⅱ 장

연구 배경

1. 정책 대상인 청년 개념
2. 청년 정책 관련 동향
3. 청년 생활 실태조사 현황

제 II 장 연구 배경²⁾

1. 정책 대상인 청년 개념³⁾

청년정책은 청년에 대한 정책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청년은 누구인가에 관한 정의가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대상 중심 정책 중에서 여성이나 장애인과는 달리 청년은 특정 상태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상을 정의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청년은 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과 더불어 특정 연령 세대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나라마다, 시대에 따라,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고 있다.

청년은 성인이나 어른의 출발시기를 지칭하기도 하고 아동이나 청소년 시기를 거쳐 성인기로 넘어가는 전환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성인의 출발기인지, 성인으로의 전환기인지에 따라 청년을 특정 연령으로 정의할 때 차이가 있다. 청년을 성인의 출발기로 본다면 사회통념에 따르거나 법률상 성인이 되는 기준이 청년을 정의하는 출발점이 된다. 반면 청년을 전환기 혹은 이행기로 본다면 성인 이전 시기를 포함하게 된다.

두 가지 해석 중 무엇이 더 적절할까? 청년을 독립적인 특정 연령으로 정의할 경우, 성인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이 손쉽다. 특히 민법상 성년 기준이 있으므로 이 기준을 토대로 청년을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른다면, 현재 민법상 성년은 19세이므로 이를 청년 연령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청년의 사전적인 정의는 성인 여부와는 좀 다르다. 국립국어원에서 사전적으로 성인(成人)이나 어른은 “자라서 어른이 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靑年)은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로 정의하고 있고, 청년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인 청춘(靑春)은 “새싹이 파랗게 돌아나는 봄철이라는 뜻으로, 십 대 후반에서

2) 이 장의 1, 2절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절은 유설희 전문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3) 이 부분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이십 대에 걸치는 인생의 젊은 나이 또는 그런 시절을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국립국어원, 2017). 사전적인 정의로 보면 성인의 출발기라기보다는 성인으로의 전환기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온전히 성장한 사람이 아니라 성인으로 거의 성장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존스와 월라스(Jones & Wallace, 1992)는 청소년기나 성인기 등은 생애과정에서 겪는 어떤 사건이나 사회관계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생물학적 연령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성인이 되는 것이 스스로 일을 하고 자기 집을 마련하며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라면 이러한 변화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생물학적 연령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15세에 집을 나와 직장에 다니는 젊은이가 있는 것에 비해 29세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대학원을 다니다가 직장을 찾는 젊은이도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성인이 되는 사건이나 사회관계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크게 달라졌다. 크리스홀름과 허렐만(Chisholm and Hurrelmann, 1995)은 19세기와 20세기 청소년에서 성인으로의 이행시기를 분석하여 제시한 바 있다. 분석 결과, 100년 사이에 교육을 받는 시기와 또래 문화를 형성하는 시기, 결혼이나 부모가 되는 시기가 젊어졌지만, 교육을 마치는 시기와 직업생활을 시작하는 시기는 늦어졌다.

정책대상으로 청년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청년 취업난이 본격화된 1997년 이후이다. 청년이 성인기 이행과정이라 볼 수 있는 진학(취업)-학업(근로)-취업-혼인-분가를 거치는 단계를 거친다고 할 때(성재민, 2017), 청년 개념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영역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경제적 영역에서 청년은 경제활동의 중추인 경제활동인구에 속한다. 또한 사회적 의미에서 결혼과 출산을 통해 재생산을 위한 시작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도 20대와 30대의 목소리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사회의 청년은 침체된 경기상황 속에서 약자로 볼 수 있지만 이 세대의 사회적인 무게감과 중요성은 단순히 사회적 약자이자 배려의 대상으로서만 바라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각 영역에 따른 청년의 의미와 더불어 현재 우리사회의 청년세대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변화해 가고 있다. 한때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추세력으로 청년을 보다가 최근에는 경기침체로 인해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보기 시작하였다(서인석, 2015). 이와 관련된 이슈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약칭 청년고용법, 법률 제14501호, 2016.12.27. 일부개정)」의 지원 대상 연령을 특정 연령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헌법소원 과정에서 나타난 바 있다(김영미,

2017: 2).

청년을 이행기이자 생물학적인 연령이 아닌 사회적 연령(social age)으로 본다면 굳이 특정 연령시기를 청년으로 지칭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는 취업, 결혼 등 성인으로서의 이행 시점이나 어려움에 처한 시점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볼 때 정책대상의 정의는 사회통념이나 학문적으로 면밀하게 연령 정의를 검토하는 것과는 달리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법적 정의에 따라 정책적 지원 대상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1차년도 연구(김기현, 하형석 외, 2016)에서는 청년 대상 연령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먼저 정책대상 당사자인 15세에서 39세 청년들에게 직접 청년 연령을 어떻게 보는지 질문하였다. 두 번째로 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해 청년 연령을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질문하였다. 세 번째로 현행 법률이나 입법 발의된 법률안에서 어떻게 청년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해외 사례로 200여개에 이르는 전 세계 국가 및 사회에서 청년 연령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주요국가인 독일, 일본, 핀란드 등에서 청년 연령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청년 정책대상 연령을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제시하였다.

우선 정책대상 당사자인 15세에서 39세 젊은이들은 이 연구에서 2016년도에 수행한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20대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도 비슷하게 정의하였는데, 다만 상한연령을 30대 초반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현재 제안되고 있는 청년법안에서 청년 연령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청년의 하한연령은 19세로 「민법」(법률 제13125호)상 성년 기준을 따르고 있다. 상한연령은 30대를 포괄하되 전반기로 정의하는 경우와 후반기까지 포괄하는 경우로 나뉜다.

현행 법률을 살펴보면, 아동과 청소년, 청년 연령이 중복되어 있다. 즉, 15세에서 18세 연령의 젊은이는 법률상 아동이자 청소년이며, 청년이기도 한 상황이다. 현재 입법 발의된 청년 법안들은 하한연령을 19세로 정하고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817호) 상에 청년은 15세로 한시법이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연령을 정의하고 있지만 만약 19세로 청년 연령이 정의된다면 정책 수혜 대상 중에서 15세에서 18세가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동시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법률 제13864호)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는 중소기업 고용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도 15세에서 18세는 제외되거나 연령 규정에 예외를 두는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청소년 혹은 청년을 지칭하는 젊은이인 유스(youth)에 대한 정의는 대체로 10대 후반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독일, 핀란드,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생애주기적인 접근에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 청년을 구분하지 않고 0세부터 20대 후반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통칭하여 규정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1차 년도 연구에서는 청년의 연령 규정을 사회통념(10대 청소년, 20대 청년)에 기초하되, 법률적으로 중복문제가 발생하는 청소년과 청년을 분리하지 않고 기존의 「청소년기본법」(법률 제14066호)을 청소년·청년기본법으로 개정해 10대와 20대를 포괄하는 법률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청년지원사업 연령 규정과 관련하여 최병근(2017.2.7.: 2)은 현행 청년활동지원수당 현황을 정리해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지원대상 연령이 만19-29세(중위소득 60% 이하, 미취업)이며, 성남시 청년배당은 만19-24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2017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청년구직지원금은 만18-34세(중위소득 80% 이하, 미취업)이며 인천시에 2017년 4월 시행예정인 청년사회진출지원사업은 만18-34세(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이며 민간재원인 청년희망재단에서는 청년면접비용지원 대상으로 만18-34세(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자)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법률에서 청년 연령 규정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년 지원 사업의 대상 연령이 지역별로 편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2차 년도 연구에서는 청년 연령 규정에 대해서 입법 발의된 법안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책 사업별로 청년의 연령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포괄적으로 어떻게 정책대상 연령을 규정해야할 지에 대한 논의를 한 걸음 더 진척시켜 보고자 한다.

2. 청년 정책 관련 동향⁴⁾

1) 청년 정책 관련 법률

현재 법률 명칭에 청년이 포함된 경우는 청년고용법이 유일하며, 청년 연령 정의를 법률 내용에 담고 있는 경우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법률 제14595호, 2017.3.14. 일부개정)」이 있다. 청년의 경우, 청소년(「청소년기본법」), 여성(「양성평등기본법」)과는 달리 기본적인

4) 이 부분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사항을 담고 있는 기본법이 없다는 특징이 있으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법률인 청년고용법은 기한을 정해 적용되는 한시법이라는 점에서 다른 대상중심 정책들과 차이가 있다.

청년고용법은 노무현정부 시기에 제정된 「청년실업해소특별법(법률 제7185호, 2004. 3. 5. 제정)」을 이명박정부 들어서 개정된 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004년 제정 당시 청년고용법의 유효기간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청년 고용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자 한시적으로 집중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정상화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정책 목표인 청년 고용 여건 개선은 법률이 제정된 지 10년 이상이 경과했지만 나아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청년고용법은 수차례에 걸쳐 유효기간을 연장해오고 있다.

2016년 청년과 관련하여 입법 발의된 법안은 청년기본법안 4건과 청년고용법 개정안 21건, 기타 법안 9건 등으로 총 34건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이중 유일하게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발의)이었다. 이 법률은 청년고용법의 유효기간을 2016년에서 2018년으로 2년 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청년 관련 법률은 한시법의 기한만 연장하는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어 청년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청년 관련 법률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청년고용법은 고용문제에 국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시행령에 정책대상인 청년에 관한 연령 정의를 담고 있으며, 청년고용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대표적인 청년고용정책 중 하나인 청년고용의 무제도의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청년고용법에서 연령 정의는 제2조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청년이란 보편적인 정의라기보다는 고용이라는 제한적인 정책 수행에 한정(취업을 원하는 사람)하여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이 정의를 보편적인 정의라고 한다면 취업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청년이 아닌 사람이 된다. 여기에서 왜 취업을 원해야만 청년으로 정의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어 청년기본법 제정이나 청년고용법 개정 시에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본격적으로 청년을 정의하고 있는 청년고용법 시행령에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7). 이 법률에서는 청년 연령을 15세에서 29세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용노동통계를 작성하거나 통계청에서 공식통계를 제시할 때 사용한 청년 연령 규정과 동일하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청년을 지칭하는 유스(youth) 통계를 낼 때, 주로 15세에서 24세까지로 유스(youth)를 규정하는 것보다 5세 정도를 높여 정의해 왔다. 이는 한국의 고학력화가 매우 높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취업을 하기 때문에 20대 후반을 포함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책 사업에 따라서 청년 연령을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어 2013년 10월에 청년고용의무제 적용에 한 해서 청년연령을 34세까지 확대하였다.

청년고용정책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노무현정부 시기에 처음으로 구성된 청년고용정책 총괄조정기구인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이명박정부 들어서 변경한 것이다. 노무현정부 당시 제정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서는 대통령소속 하에 청년실업대책 특별위원회를 두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정책 사업 간에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전담행정조직을 두도록 했다. 반면, 현행 청년고용법은 대통령직속이 아닌 고용노동부 산하에 총괄조정기구를 두도록 해 지위가 격하되었으며, 별도의 전담행정조직을 두는 규정도 사라졌다. 즉, 청년고용법 개정 과정은 청년정책 전반을 다루는 총괄조정기구로 확대되지도 않았으며 위상도 낮아져, 청년문제의 심각한 현실을 법률이 제대로 담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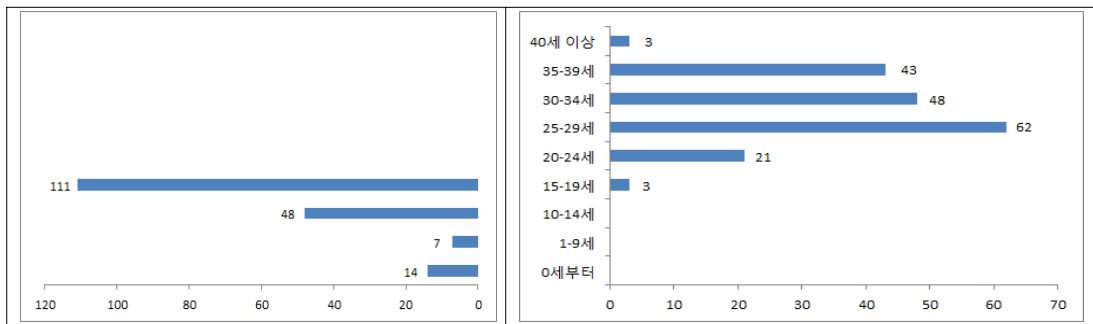
현재 국회에 발의 중인 청년고용법 개정안은 주로 청년고용의무제와 관련하여 적용범위를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적용대상 할당비율을 당초 3%에서 5%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여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청년수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주된 개정 사항으로 제시되고 있다.

19대 국회에 이어서 20대 국회 들어서 청년고용문제만이 아니라 청년 전반의 삶을 다루는 청년기본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현재 청년기본법안은 자유한국당 1호 법안인 신보라 의원 대표 발의 청년기본법안(의안번호 24)부터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대표 발의 청년발전지원기본법안(의안번호 2007738)까지 6개가 발의 중이다.

법안 명칭에서 ‘발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법안은 2개인데 이는 19대 국회에서 청년기본법안을 만들 때 여성발전기본법을 참고한 것이다. 그러나 여성발전기본법은 2014년 전부개정을 통해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으로 변경된 바 있다. 즉,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으로 “발전”이라는 표현은 정책대상 정책에서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정책의 가치 지향을 근대적 의미인 발전보다는 정책대상의 권리와 참여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청년에 관한 법률도 발전을 빼고 청년정책기본법이나 청년기본법 등으로 가져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6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년 연령 규정을 살펴보면, 하한 연령은 강창의 의원 대표발의 법안에서만 18세로 규정하였고 다른 법안들은 모두 19세로 정의하고 있다. 19세 규정은 「민법(법률 제14278호, 2017.06.03., 일부개정)」 상의 성년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법」에서는 19세가 아니어도 혼인을 한 경우에 성년으로 보고 있어 완전히 민법상 성년 규정과 청년 법안의 연령 규정이 일치하지 않는다. 강창의 의원 대표발의 법안에서 18세로 제시한 이유는 뚜렷하지 않지만 선거권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논의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면 19세 규정과 불일치가 발생하므로 선제적으로 청년 연령을 18세로 정한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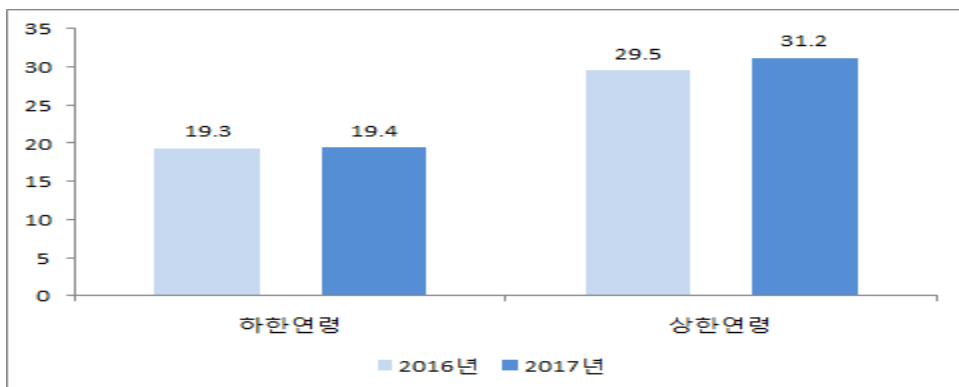
* 출처: 김기현, 하형석, 신인철(2016).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p.167, p.168. <표 IV-9>와 <표 IV-10>을 그림으로 재구성

【그림 II-1】 전 세계 청소년 혹은 청년(youth) 하한 및 상한 연령 분포(단위: 국가 수)

18세든, 19세든 현재 청년기본법안의 하한연령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한 가지는 청년 고용정책대상이 15세로, 이는 경제활동참여가 가능한 연령이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청년 연령의 출발점인데 하한연령에 따라 15세에서 18세까지 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 다른 한 가지는 법률 상 중복문제로 현행 「청소년기본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개정)」의 청소년 연령 규정(9세-24세)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 다만,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15세에서 39세 청년들이 생각하는 청년 하한 연령은 대체로 19세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 상한 연령은 3개의 법안(더불어민주당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김해영의원 대표발의,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이 34세로, 다른 3개의 법안(자유한국당 신보라의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당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강창일의원 대표발의)은 39세로 되어 있다. 김기현, 하형석 등(2016)은 청년 2,7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년들(15-39세) 스스로에게 청년 연령을 물어본 결과, 평균적으로 상한 연령은 29세로 나타났다. 2017년도 동일 조사 결과, 31세로 다소 증가했으나 30대 중반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통념 역시 20대를 청년으로 보고 있어 법에서 30대 후반까지를 청년으로 정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사회경제적인 상태에 있어서도 취업을 시작하는 시점은 20대 후반이며, 결혼이 늦어지고 있지만 여성의 초혼 연령도 29세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20대 후반까지를 청년 연령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청년 연령을 29세까지, 최대 34세까지로 정의해야 하고 정책사업에 따라 지원 대상을 넓히는 것이 필요할 때 청년고용법의 청년고용의무제처럼 단서조항을 달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그림 II-2】 청년들이 응답한 평균 청년 연령(단위: 세)

청년정책 추진체계와 관련된 6가지 법안들은 총괄조정기구와 전담행정조직에 관한 규정을 제안하고 있다. 총괄조정기구는 4개 법안(신보라, 이원욱, 박홍근, 김해영)이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로, 2개 법안(박주민, 강창일)이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로 제안하고 있다. 노무현정부 시기에 대통령 소속의 특별위원회로 청년고용문제를 다루다가 이명박정부 시기에는 대통령 소속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격하된 바 있는데, 현재 청년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최소한 해당 부처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보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형태로 청년정책 총괄조정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전담행정조직은 국무총리(국무조정실)에 두도록 하는 방안이 3건(박홍근, 이원욱, 김해

영)이며 기획재정부에 두도록 하는 방안이 2건(신보라, 박주민)이고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두 곳에 두도록 하는 방안이 1건(강창일)이었다. 전담행정조직 문제는 정부조직법 개정과도 맞물려 있어 쉽지 않은 과제로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2) 청년정책 추진체계

청년정책 추진체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 내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추진기구가 등장한 것은 노무현정부 시기이다(이윤주, 김기현, 하형석, 2017). 김대중정부는 청년 실업문제를 포괄하여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기구인 실업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노무현정부는 청년고용법 제정과 더불어서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2009)에 따르면, 노무현정부의 일자리 정책 예산 중 취약계층지원이나 사회적 일자리보다 청년실업대책 예산 비중이 가장 컸을 정도로 이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년 문제를 단지 고용 정책 영역에서만 다루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존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청년고용법 개정을 통해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로 개편하였는데, 당초 대통령소속 기구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기구로 격하했다는 점에서 추진력이 약화된 측면이 있으며 실제로 청년실업대책 예산 역시 초반에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다만, 2011년 이후 청년 일자리예산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기존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가 그대로 존속되었으나 실제로 청년고용 정책 추진기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청년고용대책을 수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감사원, 2016: 18). 동시에 기획재정부 소관 대통령령으로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523호)」을 제정하고 자문기구인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결과적으로 박근혜정부 시기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함께 청년정책을 추진해 온 셈인데, 이러한 컨트롤타워의 분리가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왔다기보다는 정책 추진에 있어서 혼선이 발생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청년위원회 설치를 통해 청년문제를 단순히 고용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소득이나 부채와 같은 경제 여건, 주거 여건, 학자금에 비롯한 생활 부담, 청년 문화나 참여와 같은 삶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청년정책 추진체계는 아직 형성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에 박근혜정부에서 자문기구였으나 대통령 소속으로 존재했던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는 관련 법령의 폐지로 사라졌다. 박근혜정부에서 청년고용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사실상 수행하고(감사원, 2016) 6차례에 걸쳐 청년 고용대책을 발표해 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도 이전 정부처럼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지 의문이다.

기존의 청년고용법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이곳에서 청년고용문제를 다루는 것에 있어 다른 청년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나 책임이 없다. 또한 새롭게 구성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는 분과위원회로 청년분과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청년정책에 대한 역할문제에 있어 청년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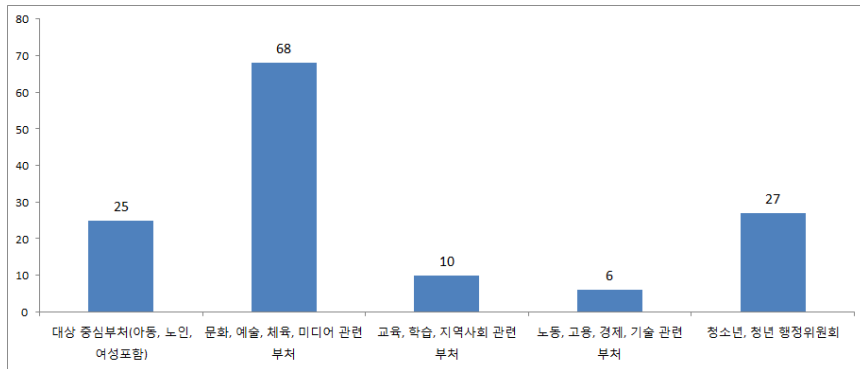
문재인정부의 청년정책 추진체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기본법안이 통과되고 정부가 청년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할 때 윤곽이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자리문제처럼 신속하게 청년문제가 다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청년정책 추진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될지는 미지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상정된 청년기본법안을 통해 향후 청년정책 추진체계의 윤곽을 살펴볼 수 있다.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이유는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에 발의되어 대선공약 내용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발의된 법안에서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이 가장 많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다른 4개 법안과의 내용이 몇 가지를 제외하고 대동소이하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먼저, 이 법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청년정책 전담행정조직은 기획재정부이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청년정책에 관한 평가와 다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에 관한 추진계획을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청년정책을 담당할 청년정책책임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청년정책의 전담행정조직으로 두는 안은 이미 19대 국회부터 제안되었으며, 지금은 사라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를 주관하던 부처도 기획재정부였다. 기획재정부가 청년업무를 맡는다면 정부 재정을 관장하는 부처라는 점에서 예산 확보를 통해 청년정책 추진에 힘이 실릴 수 있고 각 부처나 지자체의 정책 사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이점을 살릴 수 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법률 제14804호, 2017. 4.18. 타법개정)」에서 기획재정부의 사무를 보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

자 및 국가채무”(국가법령정보센터, 2017)로 되어 있어 청년정책과 같이 대상중심 정책 사무를 담당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즉, 기획재정부가 청년정책을 담당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가 미약함을 알 수 있다.



* 출처: 김기현, 하형석 외(2016).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p.164, p.166. [그림 IV-7]과 <표 IV-8>을 토대로 그림으로 작성함.

【그림 II-3】 전 세계 청소년 혹은 청년(youth) 담당 중앙행정조직 분포(단위: 국가 수)

다음으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행정위원회보다는 행정부처가 다수이나 기능 중심 부처 중 기획재정부와 유사한 형태로 분류해 볼 수 있는 국가는 오스트리아, 르완다, 세네갈, 스리랑카, 탄자니아, 짐바브웨 등 6곳 정도이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와 유사한 행정부처에서 청소년 및 청년 업무를 보는 곳은 세네갈, 스리랑카, 탄자니아 등으로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곳이 청소년이나 청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례는 오스트리아와 짐바브웨, 르완다(ICT분야에 국한된 별도부처) 등 3곳뿐이다.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청년 정책 사무를 담당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볼 때 사례가 없지는 않으나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 총괄조정기구를 보면, 이 법안에서는 대통령 소속으로 청년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하고 있다. 청년위원회는 ①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②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 ③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 ④ 청년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⑤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청년의 참여확대,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조정, ⑦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에서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이 되며 전체 위원 수는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에서 청년위원회 밑에는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은 기획재정부에 두도록 하고 있다. 청년 총괄조정기구는 부처 사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주된 역할로 보는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에 두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지만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것은 정책 추진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총괄조정기구만이라도 해외 선진국처럼 청년만이 아니라 아동이나 청소년처럼 생애 전반기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김기현, 하형석 외, 2016). 청년정책 추진체계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논의는 제3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청년 대책 및 정책사업

청년정책의 세부정책 사업들은 노무현정부로부터 박근혜정부까지 고용대책에 국한되어 이루어져왔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초기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청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가 없으며, 오히려 지자체에서 2015년 서울특별시를 출발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등에서 지자체 청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발표한 청년 고용 대책은 총 6회에 이를 정도로 매년 한 차례 이상 대책이 마련되었다.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2016년 4월)」(정부부처합동, 2016)은 박근혜정부에서 가장 마지막에 발표한 청년 대책이지만 여성취업 문제를 강조하고 있고 청년 고용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기보다는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자산형성 정책사업을 부각시킨 측면이 있다. 박근혜정부의 청년 고용 대책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2015년 7월)」이다(정부부처합동, 2015).

이 대책에서는 청년 취업 현실을 고용절벽이라는 심각한 상황으로 진단하고 세 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정부부처합동, 2015: 5). 첫 번째는 가시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것이고, 두 번째는 대학 체질 개선을 통해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며, 마지막은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하거나 중복해서 이루어지는 일자리사업을 통폐합하고 효율적으로 재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확대는 먼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민간부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며 일자리 친화적인 경제구조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교육, 보건, 보육, 공공기관, 공무원 등 분야별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를 관통하는 방안은 시간선택제와 보조, 대책인력 확대와 임금피크제 등이다. 이는 재정적인 부담은 최소화한 채 고용을 확대하는 것으로, 고용의 질보다는 고용의 양을 늘리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민간부문 일자리

지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계하거나 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그리고 기존의 중소기업 인턴제와 직업훈련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을 제시되어 있다. 이명박정부부터 박근혜정부까지 청년 고용대책의 핵심적인 사업이었던 중소기업 인턴제는 실제 정책대상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다주지 못하고 중소기업에게만 이익이 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2017년 이후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내일채움공제사업으로 재편된 바 있다. 직업훈련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감사원(2016)은 청년 고용 정책 사업들이 사중손실로 인해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간접지원 방식의 청년고용대책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년 일자리 확대와 관련 중요하게 제시된 것은 고용 유연화, 성과연봉 도입, 임금피크제 등 노동시장 개혁과 규제개혁을 통한 서비스 산업 활성화 등인데 이러한 변화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이 대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을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 중심으로 체질을 바꿔겠다는 것이다. 주요 정책 사업들로는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전공별 인력수급을 시장수요에 맞게 개편하거나 대학구조조정을 통해 학과개편 및 정원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학을 학문 중심이 아닌 취업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으로 큰 논란을 야기했을 뿐 청년 고용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일자리사업을 효율화하겠다는 것은 당시 서울특별시와 성남시에서 청년활동수당이나 청년배당과 같은 직접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제기된 것으로, 실제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 간에 청년활동수당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로 제시된 정책 사업들은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으로,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찾기 패키지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대학에 청년고용센터를 두는 전달체계 정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은 수립한지 2년이 경과하였지만 2017년 4월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사업 평가나 진단 자체가 어렵게 되었다.

문재인정부의 청년고용정책은 현재 수립 중으로 세부적인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사업들을 진단하거나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청년고용포럼과 한국노동연구원의 청년이 미래다 포럼,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워크숍에서 발표된 청년고용대책 방안을 통해서 향후 문재인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의 방향을 읽어볼 수 있다(청년고용포럼, 2017). 고용노동부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청년고용정책의 추진방향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청년고용포럼, 2017: 44). 먼저, 일자리 정부를 표명한 문재인정부의

정책 방향과 마찬가지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중앙정부에 다루지 않았던 직접지원 방식의 청년 맞춤형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 조기진입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양질의 청년일자리 확대는 중소기업 추가 고용장려금(2+1) 제도 신설,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해외취업 활성화 등을 담고 있다. 해외취업은 이명박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며 중소기업 추가 고용장려금(2+1) 제도는 기존의 청년인턴제를 다르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 역시 기존 정부의 정책사업을 계승한 측면이 있다. 반면 청년고용의무제는 대선 공약을 통해 제시된 것으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현재 적용대상은 공공기관 및 공기업인데 이를 300인 이상 종사하는 민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할당률도 3%에서 5%로 늘리자는 것이 첫 번째 일자리 공약이다. 이 공약 내용은 이미 20대 국회 들어서 많은 관련 법안들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다(김기현, 하형석 외, 2016: 149-151). 더불어민주당의 박남춘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34)을 시작으로 국민의 당 박주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19)과 김삼화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25)이 국회에 올라와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용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529)과 정의당 이정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203)에도 제출되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2016)는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추계 결과, 1년에 추가로 투입이 예상되는 재정 규모는 3,444억 원이며 기업 규모별로 보면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상시 1,000명 이상인 기업에 가장 많은 2,629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고용의무제가 민간까지 확대되는 것은 정부의 재정투입을 최소화하면서 법적 규제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반면, 민간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할 채용 문제를 정부가 개입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정책인가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2013년 이 제도에 대한 위헌심판 소송(헌법재판소 2013헌마553)이 제기된 바 있으며 2014년 8월 위헌의견이 5명으로 다수였으나 위헌결정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난 바 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35세 이상의 연령집단에 대한 평등권 문제를 주로 다룬 것이어서 민간기업 적용에 따른 자율성 침해 문제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이 제도는 벨기에에서 1999년 추진한 로제타플랜(Rosetta plan)을 참고한 것으로, 해당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김기현, 김형주, 박성재, 민주홍, 김종성, 2015: 97-100). 로제타라는 이름은 당시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차지한 영화의 제목이자 등장인물의 이름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는 벨기에 청년들의 삶을 잘 보여주었던 영화였다. 본래 이 정책은 첫 일자리 동의프로그램(FJA: First job agreement)이며, 로제타플랜이라는 별칭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1999년 당시 벨기에는 청년 실업률이 20%가 넘었고 저학력 청년층의 실업률은 30%가 넘었던 고실업 국가였다. 벨기에의 로제타플랜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청년고용의무제 간의 차이는 적용대상에 민간기업을 포괄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이 첫 일자리에 취업하는 25세 이하로 적용범위가 좁다는 점, 의무고용 미달 시에 청년 1인당을 기준으로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 그리고 사회보장부담금에 대한 감면혜택이 최장 16분기(4년)까지 주어졌다는 점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은 벨기에에서 추진했던 로제타플랜과 유사한 내용을 법안에서 제안하고 있다. 즉, 이 법안에서는 민간 대기업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한 민간 기업들은 고용지원금을 지원 받게 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부과 받게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로제타플랜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분분하다. 제도 도입 초기에 실업률을 낮추고 미숙련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이후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데 기여하지 못해 사중손실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으며 장기실업자가 정책대상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고 기업들이 사회보장부담금을 지원받는 시점까지만 채용하는 문제점들이 등장하였다.

청년고용의무제를 민간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청년 고용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한시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는 정책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김기현, 하형석 외, 2016: 150). 실제로 이 제도의 적용 법률이 특별법으로 기간을 정해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시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률 개정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민간 대기업까지 적용하는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회 법안 통과가 길어질 경우 시급성에 걸 맞는 정책 추진이 가능할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명박정부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청년해외 취업 지원은 청년 정책 추진 여부에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선진국에서는 국가 간의 비형식, 무형식 학습 활동과 교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발도상국의 인력파견 이외에 국가가 해외취업에 나서는 경우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 또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은 취업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청년 유출 문제(Exodus)가 심각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학습을 통한 인재양성 목적이 아닌 취업 목적인 경우 두뇌유출로도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청년 정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

다음으로 문재인정부의 고용정책 중 노동시장 조기진입 촉진 전략은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한국형 청년보장제 도입, 청년 맞춤형 직무역량 강화, 청년정책 체감도 향상을 위한 통합 홍보 등이 제시되어 있다.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은 이전 정부에서 시도하지 않은 가장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으나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추진현황을 살펴보면(김기현, 한지형, 2017: 86), 서울특별시가 청년수당을 2016년 8월부터 만 19~29세 저소득계층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을 6개월간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으며,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다가 이를 취하해 2017년 6월부터 본격 시행 중에 있다. 2017년 현재 서울시와 유사한 형태의 취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인천, 대구, 대전, 경기도 등 4곳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한 법률 개정 역시 상당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앞서 제시된 이용득의원 대표발의안에서는 취업 경험이 없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30%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조정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22)에서는 지원 대상을 청년 미취업자 전체가 아니라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으로 좁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수당과 관련해서 미취업청년만이 아니라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실업부조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한다(이병희, 2016; 김기현, 한지형, 2017)는 의견을 반영하여 2020년 이후 실업부조제도를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청년구직촉진수당은 2019년부터 실질적으로 도입되고 2018년까지는 현행 취업성공패키지의 3단계로 진입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만 수당을 지급하기로 해 정책 도입을 유예한 상태이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가 직업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간접지원 방식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수당 지급방식이 적절한 결정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한편, 취업성공패키지는 개인이 직업훈련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2단계 직업훈련을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이다. 청년 직업훈련사업은 2017년 전체 청년일자리사업(25,934억 원) 중 거의 절반(12,246억 원)을 차지할 정도로 예산비중이 크다. 그러나 통계청 청년층 부가조사에 의하면, 청년들의 직업훈련 참여율은 2004년 5월 19.5%에서 2016년 5월 16.2%로 오히려 낮아졌다. 이는 한국처럼 청년들의 대학진학 비율이 매우 높고 청년 취업준비자 중 고시생이나 공시생이 높은 한국적 특수 상황에서 대졸 미만자들이 다수인 유럽연합처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는 전략이 잘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OECD에서는 청년정책 핵심 대상을 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OECD의 3대 핵심정책대상(신규 졸업자, 청년 니트(NEET), 미스매치 상태의 대졸자)

중 우리나라는 고졸과 대졸을 앞둔 신규 졸업자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정책추진체계(교육은 교육부, 훈련은 고용노동부)에서 학습(learning)이라는 맥락에서 동일한 영역인 교육(education)과 훈련(training)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전략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대학 청년고용 통합지원 서비스, 그리고 청년 직업진로지원 강화, 그리고 청년정책허브구축 추진 등이 제시되어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일정 기간(2년) 근무할 경우, 본인 부담 이외에 정부와 기업에서 공동으로 통장에 정립해 2년 만근 시에 1,000만원 이상의 만기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향후 확대 실시될 것으로 보이나 기업 내에서 지원을 받는 청년 직원과 이미 취업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직원 간의 갈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아동발달계좌(CDA, 디딤씨앗통장)나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의 일하는 통장 등 기업이 아닌 개인 신청으로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청년기를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계좌제의 도입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청년정책허브 구축 역시 새로운 시도이긴 하나 청년고용정책 일환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 청년정책허브는 고용문제를 넘어서 청년들의 다양한 삶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방안은 고용노동부 산하에 고용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부설기관으로 청년정책개발원을 두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청년정책 총괄기구나 전담행정조직, 전달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연구개발 분야도 고용문제 중심으로 간다면 향후 청년정책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도 고용문제에 갇힐 수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3. 청년 일과 삶에 대한 실태조사 현황⁵⁾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한 조사는 주로 고용문제에 중점을 두어 통계청 등에서 기존에 실시한 조사 결과들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들을 둘러싼 다양한 실태를 이해하기에는 다소 제한적인 편이다.

먼저, 통계청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청년층 부가조사

5) 이 절은 유선희 전문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를 시행하고 있다. 청년층 부가조사는 15세에서 29세를 대상으로 매년 5월에 교육과 취업에 관한 조사결과를 공표한다. 청년층의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최종학력에 관한 사항과 공식교육 외에 직업훈련이나 체험, 시험 준비 여부 등에 관한 질문들이 있으며, 청년층의 취업과 관련해서는 취업과 관련하여 직업, 산업, 취업 시기, 종사상 지위, 기업규모, 이직 시기와 이직 사유, 비경제활동 상태, 창업 등에 대한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통계청 조사 중에 연령집단의 범위를 청년층으로 좁혀 재분석할 수 있는 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와 출생통계, 혼인·이혼통계, 장래인구추계와 더불어 사회조사, 기업생멸통계 등이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와 장래인구추계는 청년인구 규모 추정과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고, 출생통계와 혼인·이혼통계를 통해 청년들의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현황을 볼 수 있다. 사회조사는 국민들의 사회 인식과 태도를 전반적으로 질문하고 있어 청년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한 청년들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기업생멸통계에서는 기업 대표자의 연령을 통해 청년기업의 규모와 변화 추세를 파악해볼 수 있다.

이외에도 청년들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들에 대해 정부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사들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등이 있다. 이러한 조사들은 조사 대상을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청년 연령집단을 분석함으로써 사업체나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의 노동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주거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2006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주거실태조사는 총 20,000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7월에서 9월까지 두 달간 조사가 진행된다. 이 조사는 2년 주기로 조사를 달리해 홀수 해에는 특수도사로 노인 등 대상별 수요를 파악하는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연령집단별로 나누어 분석해보면, 청년층의 주거 형태와 주거비, 주거문제에 대한 의견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반복해서 매년 실시하는 횡단조사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와 고졸자취업진로조사(High School Graduates Employment Survey: HSGES) 등이 있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는 대학을 졸업한 학생 1만 8천 여명을 대상으로 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볼 목적으로 실시 중이다. 고졸자취업진로조사(HSGES)는 고졸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시장 이행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2011년부터 격년 주기로 조사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반복횡단조사들은 청년들의 특정 영역에 관해 대표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없어 제한적이다. 청년에 초점을 맞춘 조사들은 반복횡단조사보다는

패널조사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Youth Panel: YP)은 15세에서 29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에 이르는 과정을 패널조사로 2001년부터 실시 중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는 2004년부터 중 3과 고 3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므로 조사 대상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패널조사는 청년들의 동태적인 변화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표본탈락으로 인해 가중치를 적용하더라도 조사 자료의 연도별 대표성을 갖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반복횡단조사가 요구된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반복횡단 조사로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에서 2013년과 2015년에 실시된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가 있다(배상률, 황여정, 김소라, 2013; 김기현, 2015). 이 조사는 교육, 일과 노동과 같이 영역별로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아동종합실태조사나 청소년종합실태조사와 같은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 조사는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1,00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9월에서 10월 중에 조사가 이루어졌다. 한편, 조사 예산의 한계 등으로 인해 이 조사의 표본 설계는 승인통계 요건을 갖추기 위해 인구센서스의 조사구를 활용하지 못하고 집계구를 표집틀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에서는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과제로서 해당 조사를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여, 2016년부터는 조사 주체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 변경되었다(김기현, 하형석 외, 2016). 2016년에는 청년들의 생활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① 인구와 가족, ② 교육, ③ 경제, ④ 주거, ⑤ 건강, ⑥ 문화와 가치관, ⑦ 관계와 참여 등 7개 영역의 핵심지표를 개발하였고,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6월에서 8월 동안 만15세에서 만39세까지의 청년 2,534명을 대상으로 한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2017년에는 2016년 개발된 핵심지표를 일부 수정 및 보완(① 인구와 가족, ② 교육과 훈련, ③ 경제와 고용, ④ 주거, ⑤ 건강, ⑥ 문화와 가치관, ⑦ 관계와 참여)하였으며, 부가조사 항목으로 니트 및 청년들의 사회적응(나홀로족, 은둔형 외톨이)과 관련된 내용도 함께 조사되었다. 또한, 2017년부터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는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제402004호)로 지정되어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를 활용한 표본 설계가 이루어졌다. 2016년도와 마찬가지로 조사원이 직접 가구에 방문하는 방식을 통해 2017년 8월에서 9월동안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전국의 만15-39세의 청년 2,714명이 조사되었다.

제 III 장

한국 청년의 일과 삶 실태

1. 2017년 청년의 일과 삶에 대한
핵심지표
2. 2017년 청년 사회 · 경제실태조사
개요 및 결과
3. 2017년 핵심지표별 한국 청년의 일과
삶 실태

제 III 장⁶⁾

한국 청년의 일과 삶 실태

1. 2017년 청년 생활실태에 대한 핵심지표⁷⁾

2016년도 1차년도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 핵심지표를 개발하고, 통계청 승인통계들과 이 연구에서 실시한 2016년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표 결과를 제시하였다.

2017년도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 연구에서 제시한 핵심지표를 검토하고 수정·보완한 후 지표영역별로 연구결과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1차년도 연구에서 핵심지표체계 구축을 위해 검토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특임장관실(2012)의 『2030청년백서』의 분류체계를 비롯해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분류체계(배상률, 황여정 외, 2013, 김기현, 2015)였다. 국외 선행연구들은 미국, 프랑스와 유럽연합의 청년지표의 분류체계였다(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11, Comité interministériel à la jeunesse, 2015, European union, 2016).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분류체계와 청년핵심지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분류보다는 지표 수준에서 유럽연합의 청년지표(European union, 2016)를 검토해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기존 지표를 수정하거나 지표를 추가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우선 청년 사회·경제 실태 지표체계는 기존의 분류 틀을 유지하되 교육영역을 훈련과 평생학습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최근 유럽연합이나 OECD를 중심으로 형식교육만이 아니라 비형식, 무형식 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교육과 훈련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한 화두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해 수정하였다. 2017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의 지표체계의 대분류는 ① 인구와 가족, ② 교육과 훈련, ③ 경제와 고용, ④ 주거, ⑤ 건강, ⑥ 문화와 가치관,

6) 이 장의 1, 3절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절은 유설희 전문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7) 이 부분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관계와 참여 등 7가지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표영역별 세부사항은 <표 III-1>과 같다.

표 III-1 2015 ~ 2017 청년 사회·경제실태 지표체계 분류 비교

2017		2016		2015년	
대분류	소분류	대분류	소분류	대분류	소분류
인구와 가족	인구	인구와 가족	인구	결혼과 가정	결혼
	가족		가족		가정
교육과 훈련	교육	교육	교육생활	교육	교육
	훈련·평생학습		교육여건		진로
경제와 고용	직업	경제	직업	일과 노동	고용
	소득 및 소비		소득 및 소비		취업
주거	주거현황	주거	주거현황	주거	주거현황
	주거여건		주거여건		주거여건
건강	신체 및 정신건강	건강	신체 및 정신건강	-	
	의료		의료		
문화와 가치관	문화 및 여가	문화와 가치관	문화 및 여가	여가와 소비	여가
	가치관		가치관		소비
관계와 참여	관계	관계와 참여	관계	사회적 인식	사회적 인식
	참여		참여	미디어와 소통	가치관
					미디어 사용
					소통

이어서 핵심지표들의 수정 및 보완 결과는 각 영역별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인구와 가족을 살펴보면, 핵심지표로 추가한 항목은 청년층 다문화 인구(지표 1-1-3) 및 인구 전망(지표 1-1-4)이다. 두 지표를 추가한 이유는 인구변동과 관련하여 유입과 유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구변동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청년층 다문화 인구는 통계청의 체류외국인통계 중에서 체류(등록) 외국인 청년 수와 국내 유학중인 외국인 청년 수 등 두 가지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인구 전망은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며 2017년을 기준으로 5년 주기로 2040년까지 청년인구 추계 결과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핵심지표에서 제외한 항목은 인구에서 청년 연령규정과 연애 망설임 여부, 맞벌이 여부, 자녀 여부 등이었다. 청년 연령규정은 성별, 연령집단별, 지역별 응답 결과가 차이가 없어 추가

조사 시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매년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연애 망설임 여부는 결혼 망설임 여부 및 이유가 유사하므로 중복 차원에서 제외하였다. 맞벌이와 자녀 여부는 통계청의 기존 조사들에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사 항목에는 포함하되 핵심지표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III-2 2017 청년 사회·경제실태 인구와 가족 관련 핵심지표체계

대분류	소분류	핵심지표 (*는 2017년 신규)	출처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항번호는 만19-39용 기준)
1. 인구와 가족	1-1. 인구	1-1-1. 청년층 인구수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1-1-2. 전체 인구 대비 청년층 인구 구성비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1-1-3. 청년층 다문화 인구*	체류외국인통계 (통계청)
		1-1-4. 청년층 인구 전망*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1-1-5. 청년 연령규정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문1)
		1-1-6. 적정 독립 시기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문2)
		1-1-7. 적정 결혼 시기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문3)
		1-1-8. 적정 출산 시기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문4)
		1-1-9. 해외이주 의사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문12)
		1-1-10. 해외이주 고려 이유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문12-1)
	1-2. 가족	1-2-1. 혼인건수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1-2-2. 혼인율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1-2-3. 초혼연령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1-2-4. 출생아 수 및 출산율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1-2-5. 출산연령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1-2-6. 결혼준비 경험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문7)
		1-2-7. 결혼 망설임 여부 및 이유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문7-1, 문7-2)
		1-2-8. 맞벌이 여부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문8)
		1-2-9. 자녀 유무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문9)
		1-2-10. 자녀를 가질 계획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문10)

두 번째 대분류인 교육과 훈련은 기존 핵심지표들을 중분류 교육으로 묶고 평생학습과 훈련을 중분류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중분류 교육에서 추가된 부분은 우리 사회의 교육 관행부분으로 2016년도 실태조사에서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단순 누락되어 새로 포함시켰다. 이번 핵심지표에서 제외된 항목들은 스펙 쌓기와 대학원 진학 의사 등 두 가지였다. 스펙 쌓기는 단순히 대학 학점 등을 물어본 것으로 세부적으로 조사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제외하였다. 대학원 진학 의사는 표본수가 많지 않아 응답비율이

낮아 설문문항에서 제외하였다.

훈련 및 평생학습은 새롭게 추가된 중분류로 평생학습 참여율은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 직업관련 비형식교육 등 세 가지 영역별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 경우 청년 연령대를 세부적으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25-34세의 결과만 제시하였다.

표 III-3 2017 청년 사회·경제실태 교육과 훈련 관련 핵심지표체계

대분류	소분류	핵심지표 (*는 2017년 신규)	출처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항번호는 만19-39용 기준)
2. 교육과 훈련	2-1. 교육	2-1-1. 대학등록금	대학알리미
		2-1-2. 대학등록금 대출자 비율	대학알리미
		2-1-3. 장학금 규모	대학알리미
		2-1-4. 학제별 대학졸업 소요기간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 부가조사(통계청)
		2-1-5. 대출자 휴학 현황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 부가조사(통계청)
		2-1-6. 대학생 학업중단율	교육통계연보(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1-7.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문15, 문16)
		2-1-8. 추후 대학 진학 의사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문18)
		2-1-9. 진학률	교육통계연보(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2. 훈련·평생 학습	2-2-1. 평생학습 형식교육 참여율*	평생학습실태조사(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2-2. 평생학습 비형식교육 참여율*	평생학습실태조사(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2-3. 평생학습 직업 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	평생학습실태조사(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2-4. 직업훈련 참여율*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 부가조사(통계청)
		2-2-5. 취업 준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문19)
		2-2-6. 고시생 및 공시생 현황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문20)

훈련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청년층 부가조사에서 직장체험에 참여하는 비율과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는 비율 등 두 가지 결과를 제시하였다. 청년층 부가조사에서 직장체험 참여율은 2006년부터, 직업교육(훈련) 참여율은 2004년부터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이 시기를 기준으로 최근까지 공개된 자료를 제시하였다. 취업준비와 고시생 및 공시생 현황은 대분류 3 경제와 고용 영역에서 이 영역으로 변경하여 제시하였다.

표 III-4 2017 청년 사회·경제실태 경제와 고용 관련 지표체계

대분류	소분류	핵심지표 (*는 2017년 신규)	출처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항번호는 만19-39용 기준)
3. 경제와 고용	3-1. 직업	3-1-1. 경제활동 참여율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3-1-2. 고용률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3-1-3. 실업률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3-1-4. 신설법인 비율	신설법인동향(통계청)
		3-1-5. 청년 고용주(대표) 비율*	기업생멸통계(통계청)
		3-1-6. 니트(NEET) 비율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문34, 문35, 문36, 문37, 문38)
		3-1-7. 비정규직 비율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3-1-8. 신규 채용률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 (한국경영자총연합회)
		3-1-9. 청년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문22)
		3-1-10. 청년 중소기업 취업 의향 및 비취업 이유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문30, 문30-1)
		3-1-11. 청년 창업 의향 여부 및 경험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문31)
		3-1-12. 청년 직장에서 본인 조건에 맞는 대우 여부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문41)
		3-1-13. 청년 이직 의향 여부 및 이유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문42, 문42-1)
	3-2. 소득 및 소비	3-2-1. 청년 소득	고용노동통계(고용노동부)
		3-2-2. 청년 소비	가계동향조사(통계청)
		3-2-3. 장년 대비 청년 상대임금	고용노동통계(고용노동부)
		3-2-4. 청년층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	고용노동통계(고용노동부)
		3-2-5. 청년 부채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
		3-2-6. 최저임금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문23)
		3-2-7. 생활비 및 가족 지원 비율*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문27, 문27-1)
		3-2-8. 채무 여부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문28)
		3-2-9. 물질적 박탈감 경험여부*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문29(1)~9)) (원출처: EU Youth report 2015)

다음으로 경제와 고용 영역은 직업과 소득 및 소비로 나누어지며 추가된 핵심지표는 청년 고용주(대표) 비율과 월평균 생활비 및 가족 지원 비율과 물질적 박탈감 경험여부 등이다. 청년 고용주(대표) 비율은 통계청의 기업생멸통계에서 39세까지 기업의 고용주 혹은 대표 비율을 활용하고자 한다. 생활비 및 가족지원 비율은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신설된 문항으로, 청년들의 월평균 생활비와 생활비 마련에 있어서 가족으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을 의미한다.

물질적 박탈(material deprivation) 문항은 유럽연합에서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9개 문항 중 4가지 이상이 해당될 경우 물질적으로 박탈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European union, 2016: 213). 세부 문항의 내용은 ①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②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③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④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⑤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⑥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⑦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⑧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⑨ 전화기나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다 등이다.

올해 핵심지표에서 제외된 항목은 직무불일치와 소비생활과 관련된 문항들이었다. 직무불일치는 여러 조사에서 측정하고 있는 지표로 중복 문제 때문에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의 조사항목에서 제외되었다. 소비 관련 문항들도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대신 활용도가 높지 않은 소비패턴 관련 문항들을 제외하였다. 이밖에 직업 중분류에 포함되어 있던 고시생 및 공시생 현황과 직업훈련 지표들은 대분류 2 교육과 훈련으로 이동하였다.

다음으로 대분류 4는 청년 주거에 관한 핵심지표들로 2016년도와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표 III-5 2017 청년 사회·경제실태 주거 관련 지표체계

대분류	소분류	핵심지표 (*는 2017년 신규)	출처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항번호는 만19-39용 기준)
4. 주거	4-1. 주거 현황	4-1-1. 청년층 주거형태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4-1-2. 청년층 실주거비	가계동향조사(통계청)
		4-1-3. 청년 가구 비율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4-1-4. 청년 1인 가구 비율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4-1-5. 부모 동거 여부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문47)
		4-1-6. 미혼 혼자 거주 여부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문48)
		4-1-7. 현재 주거 형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문48-1)
	4-2. 주거 여건	4-2-1. 청년층 주거 빈곤 규모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4-2-2. 가처분소득 대비 가구부채비율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
		4-2-3. 기숙사 수용률	대학알리미
		4-2-4. 주거 마련 시기 의견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문43)
		4-2-5. 공동주거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문45, 문46)
		4-2-6. 평소 주거 생각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문44(1)~(3))

이어서 대분류 5는 청년 건강 관련 핵심지표들로 유럽연합에서 회원국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는 주관적인 정신적 건강 수준 지표(mental well-being index)를 추가하였다(European union, 2016: 213). 이 지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998년에 개발한 것으로 정신 건강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 가지 문항들은 지난 2주간을 기준으로 ①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을 느낀다, ②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③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④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⑤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등이다. 지수 구성은 5개 문항을 합산해 응답분포에서 25% 미만일 경우 정신적 건강수준이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III-6 2017 청년 사회·경제실태 건강 관련 지표체계

대분류	소분류	핵심지표 (*는 2017년 신규)	출처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항번호는 만19-39용 기준)
5. 건강	5-1. 신체 및 정신 건강	5-1-1. 정기적인 운동습관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문51, 문51-1)
		5-1-2. 비만을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
		5-1-3. 스트레스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
		5-1-4. 우울증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
		5-1-5. 자살률	사망원인통계(통계청)
		5-1-6. 흡연을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
		5-1-7. 음주를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
		5-1-8. 주관적 체형 인식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문49)
		5-1-9. 주관적인 정신적 건강 수준*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문50(1)~(5)) (원출처: EU Youth report 2015)
	5-2. 의료	5-2-1. 청년 병원 이용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
		5-2-2.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	한국의료패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민건강보험공단)
		5-2-3. 성형수술 여부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문53)
		5-2-4. 성형수술 목적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문53-1)

대분류 6은 문화와 가치관에 관한 핵심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분류는 문화 및 여가와 가치관으로 나누어져 있다. 문화 및 여가와 관련하여 제외된 항목들은 문화예술 관심정도, 여가활동을 같이 하는 대상, 자주 접하는 뉴스매체 등이었다. 이 항목들은 통계청 승인통계 추진 과정에서 다른 조사와 중복되는 것으로 지적받아 제외되었다. 가치관 영역도 마찬가지로 성공 여건과 미래 성공가능성 등의 항목이 제외되었다.

표 III-7 2017 청년 사회·경제실태 문화와 가치관 관련 지표체계

대분류	소분류	핵심지표 (*는 2017년 신규)	출처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항번호는 만19-39용 기준)
6. 문화와 가치관	6-1. 문화 및 여가	6-1-1. 문화 및 여가생활 시간	국민여가활동조사(문화체육관광부)
		6-1-2. 문화 및 여가생활 비용	국민여가활동조사(문화체육관광부)
		6-1-3. 문화 및 여가생활 만족도	국민여가활동조사(문화체육관광부)
		6-1-4. 독서율	국민독서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6-2. 가치관	6-2-1. 주관적 행복감	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
		6-2-2. 삶의 만족도	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
		6-2-3. 주관적 계층의식	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
		6-2-4. 가치 항목별 선호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문54(1)~(4))
		6-2-5.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문55)

마지막으로 대분류 7은 관계와 참여에 관한 핵심지표들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 추가한 항목은 정치적 효능감이다. 삭제한 항목들은 다른 조사에서도 파악할 수 있는 한국사회의 공정성 수준과 정치 성향이었다.

표 III-8 2017 청년 사회·경제실태 관계와 참여 관련 지표체계

대분류	소분류	핵심지표 (*는 2017년 신규)	출처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항번호는 만19-39용 기준)
7. 관계와 참여	7-1. 관계	7-1-1. 사회적 관계망	사회조사(통계청)
		7-1-2. 부모와의 교류(가구주)	사회조사(통계청)
		7-1-3.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사회조사(통계청)
		7-1-4. 가족관계 만족도	사회조사(통계청)
		7-1-5. 친한 친구 수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문57)
		7-1-6. 세대갈등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문58(1)~(7))
	7-2. 참여	7-2-1. 자원봉사 참여	사회조사(통계청)
		7-2-2. 기부활동	사회조사(통계청)
		7-2-3. 단체참여	사회조사(통계청)
		7-2-4. 투표율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2-5. 정부 및 공공기관 신뢰도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 사회이리서치센터)
		7-2-6. 의견 표명 행동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문59(1)~(5))
		7-2-7. 정치적 효능감*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문60(1)~(3))

2. 2017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개요 및 결과⁸⁾

1) 조사 목적

최근 청년들을 둘러싼 사회·경제·정치·문화적 환경들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청년들의 삶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를 명확히 파악하고 청년들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실정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은 편이다. 또한, 몇 년간 청년 고용 및 실업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안되고 있으나, 청년 고용지표 결과는 실질적으로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청년들의 사회·경제 실태에 대해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진단 및 분석을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즉, 점차 심화되고 있는 청년들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 세대가 가진 특성을 이해함과 동시에 그들이 생애 과정에서 겪게 되는 사건과 여러 가지 현상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는 청년들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이해하기 위해 청년들의 취업과 경제생활을 비롯하여 삶에 대한 만족감이나 행복, 교육, 가치관, 신체 및 정신건강, 결혼, 양육, 출산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청년 세대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조사 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15-39세의 일반 국민 중 2,700명을 대상으로 하여 포괄적인 청년 정의에 해당하는 연령대를 포함하였다. 이는 2013년과 2015년에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진행된 선행 조사(배상률, 황여정 외, 2013; 김기현, 2015)와의 연속성을 고려한 것이다. 2013년과 2015년에 수행된 선행 조사에서는 만19세에서 만39세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나 2016년 조사(김기현, 하형석 외, 2016)부터는 해당 연령대를 포함하되, 국내외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취업 가능 최저 연령인 만15세부터 조사대상에 적용시킴으로써 조사대상의 폭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였다. 또한, 취업 및 결혼이나 출산 등과 관련된 상한 연령을 만39세로 규정하여 폭넓게 성인기 이행시점 및 이행기의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8) 이 부분은 유설희 전문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3) 조사 절차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예비조사는 2017년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조사도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조사문항의 전반적인 난이도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조사표에 대한 반응과 조사 소요 시간 등을 파악함으로써 실사과정 중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예비조사는 조사기관에서 만 15-18세인 중·고등학생 7명과 만 19-39세에 해당하는 성인 22명 등 총 29명⁹⁾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응답자 특성별 문항에 대한 이해도와 조사시간, 추가지침 필요성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본 조사에 반영하였다.

한편,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서 통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수행하였다. 승인을 받기 위해 ① 통계작성 승인신청서, ② 통계작성 기획서, ③ 조사지침서, ④ 조사표 2종(만15-18세용, 만19-39세용), ⑤ 통계결과 표 서식, ⑥ 통계 관련 용어 및 해설자료, ⑦ 표본설계서 및 표본설계요약서 등 총 7가지의 자료를 작성하여 2017년 6월 23일 통계청에 신규통계작성 승인을 신청하였다. 이후, 조사지침서의 용어와 조사표 편집 오류 수정, 통계결과표 추가 및 삭제 등에 대해 1차 보완 요청(2017. 6. 26.)이 있었고, 조사와의 조사항목 유사·중복률 검토 결과에 따른 조사표 수정 및 이에 따른 통계결과표 수정에 대해 추가 보완 요청(2017. 6. 29.)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보완 자료를 제출하였다. 또한, 표본설계서의 모집단 분석 내용과, 층화 방법, 표본 규모 산출 및 표본 배분, 표본 추출에 대한 근거 등에 대한 통계청의 검토의견(2017. 7. 1.)을 반영하여 표본설계서를 수정하였으며, 통계청 통계조정소위원회의 통계명칭 변환 가능 여부 및 향후 예산 확보 가능성, 조사결과 분석 시 연령 단위 등에 대한 질의(2017. 7. 17.)에 답변서를 7월 18일에 제출하는 등 약 5주 간 총 4차례의 보완 요구에 따른 수정·보완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2017년 7월 25일에 국가승인통계로서 승인이 완료되었다.

이에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는 2017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어 국가통계로서 청년들의 전반적인 삶과 관련된 지표 결과를 공식적으로 생산 및 공표하게 되었다(통계청 국가승인통계 제402004호(2017. 7. 25. 고시)).

9) 본 연구의 조사표는 만15-18세용, 만19-39세용으로 나누어져 있다. 예비조사는 만15-18세용의 경우, 중·고등학생인 남자 7명, 만19-39세용은 성인 남자 8명과 성인 여자 14명(20대 10명, 30대 12명/경제활동인구 13명, 비경제활동인구 9명/ 기혼자 11명, 미혼자 11명)으로 구성되어 진행하였다.

4) 조사 방법

본 조사는 전문 조사원이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대상자와 대면하여 면접하는 개별방문면접조사로 수행되었다. 조사대상의 연령대를 고려하여 가구방문 시 조사대상이 부재중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불가피한 경우 유치조사를 병행하였다.

본 조사는 조사원이 가구에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조사원이 조사목적 및 조사표, 조사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조사기관에서는 전국적으로 조사원을 선발한 후, 2017년 8월 8일~9일 동안 서울 및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사원 교육은 조사개요 및 조사구에 대한 설명, 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등 현장 면접조사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들로 구성되었으며, 교육과정 전반에 대해서는 연구진이 현장에 방문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5) 조사 기간

조사 기간은 2017년 8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약 5주간 실시되었다.

6) 조사 범위

현재 청년들의 일과 삶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구와 가족, 교육·훈련, 경제, 주거, 건강, 문화와 가치관, 관계와 참여 등의 7개 영역에 대한 문항과 2017년도 부가조사 항목으로 개발된 청년 니트(NEET)와 청년들의 사회적응과 관련된 문항을 포함하여 총 8개 영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표는 연령에 따라 응답 영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만15-18세 학생용과 만19-39세 성인용으로 구분하였다. 만19-39세용 조사표에는 해당 연령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자가 모두 응답 가능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만15-18세용에는 해당 연령에 포함되는 중·고등학생들이 응답할 수 없거나 응답하기 어려운 항목들을 제외하였다. 예비 조사 시, 만15-18세 응답자는 해당 조사에 대한 난이도를 성인에 비해 비교적 높게 인지하고 있었으며¹⁰⁾, 조사 항목 중에는 만15-18세의 조사대상자들이 응답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고려하여 고등학생 이하 학생들을 위해 별도의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10) 예비조사에서 해당 조사의 난이도를 평가한 결과(5점 만점, 점수가 높을수록 난이도 높음), 만15-18세 응답자는 3.1점, 만19-39세 응답자는 2.0점이라고 응답하였다.

7) 조사 내용

2017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의 조사 항목은 2013년과 2015년에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된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의 문항을 기초로 구성하였다(배상률, 황여정 외, 2013; 김기현, 2015). 2017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전문가 및 연구진의 조사표 검토를 통해 핵심지표에 따른 중점문항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 2016년 문항 대비 설문문항을 축소하였다. 또한, 설문문항의 내용을 명확한 문구로 수정 및 보완하는 작업을 통해 응답자의 문항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응답자의 피로도를 줄이고자 하였다. 한편, 유럽연합 내 청년과 국내 청년의 사회·경제 실태에 대한 국제비교를 실시하고, 청년 니트(NEET) 및 사회부적응 청년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신규문항을 일부 추가하거나 연구진이 개발하였다. 2017년도 조사표에 따른 주요 조사항목은 다음 <표 III-9>와 같다.

2017년에 새롭게 구성된 문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인구와 가족 영역에서는 2016년 조사에서 결혼을 망설임 경험에 대한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결혼 망설임에 대한 이유가 '결혼비용(혼수, 주거비 등)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결혼 망설임 여부를 묻는 문항과 그에 대한 이유를 묻는 문항을 나누었으며, 결혼 망설임에 대한 이유를 보기(예: 결혼비용 때문에, 출산 혹은 양육에 대한 고민 때문에 등)에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경제와 고용 영역에서는 1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본인이 소요하는 생활비 정도와 생활비 중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을 묻는 문항(만15~18세의 조사표의 경우, 1개월 기준 본인이 소요하는 용돈으로 대체)을 추가하여 만15~39세 청년의 경제적인 자립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유럽연합의 청년과 우리나라 청년의 삶을 비교해보기 위해 EU YOUTH REPORT 2015(European Union, 2016)에서 물질적 박탈감(material deprivation)을 측정한 9문항을 추가하였다. 유럽연합의 통계에서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나 물질 등과 관련된 9가지 항목(예: 주거관련 비용 지불 가능 여부, 냉/난방 유지 여부, 규칙적인 식사 여부, TV 및 냉장고, 자동차, 통신수단 소유 여부 등)에 대해 적어도 3가지 항목에서 결핍을 경험한다면 물질적 박탈감을 경험한다고 할 수 있으며, 4가지 항목에서 결핍을 경험할 경우에는 심한 물질적 박탈률(severe material deprivation rate)이라고 보았다(Eurostat, 2016.7.13.).

표 III-9 조사 영역 및 주요 조사 항목

조사 영역	주요 조사 항목(*는 2017년 신규문항)
1. 인구와 가족	아동/청소년/청년의 연령 범위 원가정 독립/결혼/자녀를 가지는 것에 대한 생각 결혼을 망설임 이유*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및 육아 대책 2025년 출산율에 대한 생각 등
2. 교육과 훈련	2025년 입시 경쟁에 대한 생각 우리 사회의 교육 관행에 대한 의견 졸업요건 이수 후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요건 미이수 경험 대학 미진학 사유 및 향후 대학 진학 의향 향후 직업 훈련 계획 여부 등
3. 경제와 고용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2019년 적정 최저임금 2025년 청년 취업 경쟁에 대한 생각 미취업 청년 대상 급여(수당, 배당) 지급에 대한 생각 본인 생활비(용돈) 정도 및 부모님 또는 친지로부터 지원 비율*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 지난주에 주로 한 일 및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상태 기간* 노동공급/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분야 등
4. 주거	본인 명의의 집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 집에 대한 생각 공동주거 경험 여부 및 의향 부모님과 동거 여부 및 향후 부모 동거 계획 현재 주거 형태 등
5. 건강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 주관적인 정신적 건강수준* 규칙적인 운동 여부 및 빈도 성형수술 경험 및 목적 등
6. 문화와 가치관	가치항목별 선호도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및 요건을 갖춘 정도 등
7. 관계와 참여	어려운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친구 존재 여부 및 친구 수 기성세대 및 노인에 대한 생각 정치적 효능감* 등
8. 사회적응	평소 외출 정도* 외출을 하지 않는 상태의 지속 기간 정도 및 계기* 혼자 밥을 먹은 경험(점심 기준) 및 술을 마신 경험(저녁 기준) 여부* 등

* 주: 2017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조사항목의 상세한 내용은 부록의 <표 1> 또는 '2017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의 <표 1-2> 참조

다음으로 2017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의 부가조사의 일환으로 EU에서 구분하고 있는 니트(NEET) 유형(전통적인 실업형, 불가피형, 포기형, 기회추구형, 자발적 선택형)에 따라 우리나라 청년의 니트 유형을 구분하고,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2문항을 추가하였다. 정규교육기관(학교)을 다니지 않거나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 지난 한 주 동안 주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묻는 문항은 연구진이 개발하였고,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19차년도 청년층 부가조사의 문항을 참고하여 학업 및 취업, 직업훈련도 하지 않은 상태의 지속 기간을 묻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건강 영역에서는 주관적인 정신 건강수준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이는 유럽연합의 청년과 우리나라 청년의 정신적인 행복감을 비교하기 위해 EU YOUTH REPORT 2015(European Union, 2016)에서 WHO(1998)의 5가지 행복감 지표(WHO (Five) Well-Being Index)를 활용하여 EU 청년들의 정신적 건강(mental well-being)을 측정한 5개 문항이다. 해당 문항에는 지난 2주간 본인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밝고 즐거웠는지, 편안함을 느끼며 활동적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일상에 대한 흥미로움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계와 참여 영역에서는 청년이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을 바탕으로 하여 정치적 행위자로서 개인이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의 청소년 역량 측정 조사 문항 중 정치적 효능감과 관련된 3개 문항(예: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을 연구진이 재구성하여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응 영역에서는 부가조사의 일환으로 니트(NEET)와 더불어 ‘은둔형 외톨이’와 ‘나홀로족’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관련 문항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만15-39세 청년 중에 은둔형 외톨이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현황을 알아보고, 일본 청년의 은둔형 외톨이 실태와 비교해보기 위해, 일본의 내각부 청소년지원담당(内閣府 青少年支援担当)에서 2010년 2월에 실시한 청년의 의식에 관한 조사(若者の意識に関する調査)의 문항 중, 은둔형 외톨이 상태와 관련된 평소 외출 정도, 외출을 잘 하지 않는 상태의 지속기간, 외출을 잘하지 않는 상태가 된 계기를 묻는 문항을 재구성하여 추가하였다. 또한,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가정을 꾸리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혼자 식사하거나 술을 마시는 등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나홀로족의 현황을 알아보고자 일주일 간 혼자서 식사(점심 기준)를 하거나 술을 마시는 정도(저녁 기준)를 묻는 문항을 연구진이 개발하여 추가로 구성하였다.

8) 표본설계¹¹⁾

2017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의 모집단은 청년이며 여기에서 청년은 청년기본법 등 법적 연령 정의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포괄적인 정의로 국내에 거주하는 만15세에서 만39세의 일반국민으로 정의하였다. 본 조사의 목표 표본크기는 만 15~39세의 청년층을 2,700명을 전국에서 표집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표집틀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사용을 검토하였으나 본 조사를 위한 표본 설계 시점에서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목록을 표본 추출에 활용할 수가 없었다. 이에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기반하여 새롭게 설정된 일반조사구(Enumeration district) 중 일반조사구와 아파트 조사구(섬, 기술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 조사구 제외)를 표본 추출틀로 활용하였다. 또한, 201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이후 모집단 변화를 반영하고자 2010년에서 2017년 2월 말까지의 신축 아파트 조사구를 보완하여 표본추출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설계에서 모집단은 3단계 층화를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7개 특별/광역시와 9개 도지역 및 세종시로 1차 층화한 후, 9개 도지역 및 세종시는 동부와 읍·면부로 세부 층화를 하였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전체 인구 규모와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여 서울은 4개 권역(북서구, 북동부, 남서부, 남동부)으로, 경기도는 3개 권역(북부, 중부, 남부)으로 세부 층화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동지역은 아파트 조사구와 일반조사구로 나누어 최종적으로 55개 지역으로 층화하였다.

또한, 표본설계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6개 권역¹²⁾ 단위로 청년층의 사회·경제실태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정도(precision)를 갖는 통계를 생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권역에 대해서 일정 크기 이상의 표본이 배분되어야 하므로, 통계작성 단위인 6개 권역별 표본 조사구의 배분은 층별 조사대상자 수에 비례배분법, 제곱비례배분법, 우선할당비례배분법 등을 비교하여 결정하였다. 표본설계에 사용된 최종 배분법은 각 통계작성 단위별 가구 수에 대한 제곱근비례배분법을 최종방안으로 하였는데, 이러한 배분법을 적용하면 권역별 추정결과의 통계적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다.

표본 설계에서는 각 표본 조사구에서 약 10명의 청년층 대상자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이에 따라 표본설계에 의해서 추출되는 1차 추출단위인 표본 조사구 수는 270개이다.

11) 표본설계의 상세한 내용은 '2017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기초분석보고서'의 1장. 조사 개요 중 8. 표본설계 및 가중치 내용 참조

12) 서울, 경기·인천, 대전·세종·충북·충남, 강원, 광주·전남·전북, 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표본추출은 층화2단계추출법을 적용하여, 1차 추출단위는 조사구(또는 신축 아파트 단지)이고, 2차 추출단위는 가구 및 만15-39세 청년이다. 단, 해당 연령대의 경우 낮은 재택률로 인해 조사대상 면접이 어렵고, 특히 읍·면지역의 해당 연령대 가구원 수가 가구원 당 0.70명으로 동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구별 허용 인원내 일부 부족 또는 초과 부분을 허용하여 진행하였다.

9) 조사 결과

2017년에 진행된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는 표본 수를 2,700명으로 목표로 하였다.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714명이 조사되었으며,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III-10>과 같다. 성별로 나누어보면, 남자는 1,412명(52.0%), 여자는 1,302명(48.0%)이었다. 연령별로는 만15-18세가 422명(15.5%), 만19-29세는 1,150명(42.4%), 만30-39세는 1,142명(42.1%)이었다.

표 III-10 조사대상 인구통계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전체		2,714	100.0
성별	남자	1,412	52.0
	여자	1,302	48.0
연령	만15~18세	422	15.5
	만19~29세	1,150	42.4
	만30~39세	1,142	42.1
지역	서울	510	18.8
	인천/경기	648	23.9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15.1
	광주/전라/제주	363	13.4
	부산/울산/경남	421	15.5
	대구/경북	362	13.3
학력	중·고등학생	393	14.5
	대학생/대학원생	550	20.3
	고졸이하	549	20.2
	대졸이상	1,222	45.0
주거형태	동거	1,426	52.5
	비동거/독립	1,288	47.5

3. 핵심지표별 한국 청년의 일과 삶 실태¹³⁾

1) 인구와 가족

1-1-1. 청년층 인구수

청년고용법에 따른 청년층(15-29세) 인구수는 2015년부터 1,000만 명 밑으로 낮아져 988만 명 수준이며 30대를 포함한 청년층 인구는 2017년 현재 1,744만 명 수준으로 저출산 경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20대 청년층은 2013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서 2017년 690만 명까지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III-11 청년층 인구수

(단위: 만명)

연도	청년층(15-29세)			청년층(20-29세)			청년층(15-39세)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2000	1,205	621	584	821	422	399	2,057	1,057	1,000
2001	1,176	607	569	815	420	395	2,032	1,045	987
2002	1,145	591	554	804	415	390	2,004	1,031	973
2003	1,118	578	540	794	409	384	1,978	1,019	959
2004	1,093	566	527	777	401	376	1,952	1,006	946
2005	1,072	556	517	759	391	367	1,926	993	933
2006	1,064	553	511	748	387	361	1,912	988	925
2007	1,061	552	508	737	382	356	1,901	983	918
2008	1,059	553	506	727	377	350	1,892	980	912
2009	1,056	552	504	715	371	344	1,877	973	904
2010	1,047	549	498	700	365	335	1,860	965	895
2011	1,038	546	492	692	362	329	1,847	960	887
2012	1,024	540	484	682	359	323	1,825	950	875
2013	1,012	535	478	677	358	320	1,803	939	863
2014	1,004	531	473	677	359	318	1,782	929	852
2015	998	528	470	680	362	319	1,763	921	842
2016	997	527	469	684	364	319	1,763	925	838
2017	988	523	465	690	368	323	1,744	916	829

* 출처: 통계청(각 년도), 장래인구추계.

* 주: 기존데이터에 2017 추가

13) 이 부분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1-1-2. 전체인구대비 청년층 인구 구성비

전체 인구 대비 청년층 인구는 청년고용법상 청년층(15-29세)로 볼 경우 2017년 19.2%를 보여주고 있으며 30대를 포괄할 경우 33.9%로 나타나고 있다. 두 경우 모두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20대 청년은 2014년부터 13.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20대 청년 인구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이자 산아제한이 풀려 일시적으로 출산이 증가했던 시기에 태어난 세대로 20대 인구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표 III-12 전체인구 대비 청년층 구성비

(단위: %)

연도	청년층(15-29세)			청년층(20-29세)			청년층(15-39세)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2000	25.6	26.2	25.0	17.5	17.8	17.1	43.8	44.6	42.9
2001	24.8	25.5	24.2	17.2	17.6	16.8	42.9	44.6	42.9
2002	24.0	24.7	23.4	16.9	17.3	16.5	42.1	43.0	41.1
2003	23.4	24.0	22.7	16.6	17.0	16.2	41.3	42.3	40.3
2004	22.7	23.4	22.1	16.2	16.6	15.8	40.6	41.7	39.6
2005	22.3	23.0	21.6	15.8	16.2	15.3	40.0	41.0	39.0
2006	22.0	22.8	21.2	15.5	15.9	15.0	39.5	40.6	38.4
2007	21.8	22.6	21.0	15.2	15.6	14.7	39.1	40.3	37.9
2008	21.6	22.5	20.8	14.8	15.3	14.4	38.7	39.9	37.4
2009	21.5	22.4	20.5	14.5	15.0	14.0	38.2	39.4	36.9
2010	21.2	22.2	20.2	14.2	14.7	13.6	37.6	39.0	36.3
2011	20.9	21.9	19.8	13.9	14.5	13.3	37.1	38.5	35.7
2012	20.5	21.6	19.4	13.6	14.3	12.9	36.5	37.9	35.1
2013	20.2	21.3	19.0	13.5	14.2	12.7	35.9	37.4	34.4
2014	19.9	21.0	18.8	13.4	14.2	12.6	35.3	36.9	33.8
2015	19.7	20.9	18.6	13.4	14.3	12.6	34.8	36.4	33.3
2016	19.5	20.5	18.4	13.3	14.2	12.5	34.4	36.0	32.8
2017	19.2	20.3	18.1	13.4	14.3	12.6	33.9	35.5	32.3

* 출처: 통계청(각 연도), 장래인구추계.

* 주: 기존데이터에 2017 추가

1-1-3. 청년층 다문화 인구수

체류 외국인 중 청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등기 외국인이나 단기체류, 결혼이민자 등 모든 경우에 동일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고용법에 따른 청년층(15-29세)은 2012년 약 47만 명에서 2016년 약 60만 명으로 늘었고 다른 경우도 비슷한 폭으로 늘어났다.

표 III-13 체류 외국인 수

(단위: 천명)

연도	청년층(15-29세)			청년층(20-29세)			청년층(15-39세)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2012	470	259	211	439	244	196	813	473	340
2013	499	276	223	467	261	205	877	513	363
2014	549	306	244	512	288	224	985	576	409
2015	566	312	253	526	294	232	1028	598	430
2016	599	326	273	552	304	248	1105	634	471

* 출처: 통계청(각 년도), 체류외국인통계.

표 III-14 등록 외국인 수

(단위: 천명)

연도	청년층(15-29세)			청년층(20-29세)			청년층(15-39세)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2012	336	189	147	320	182	138	574	343	231
2013	352	202	151	335	194	141	615	374	241
2014	365	212	153	346	204	142	655	404	251
2015	370	214	155	348	205	143	674	415	260
2016	377	217	160	351	206	145	589	421	268

* 출처: 통계청(각 년도), 체류외국인통계.

표 III-15 단기체류 외국인 수

(단위: 천명)

연도	청년층(15-29세)			청년층(20-29세)			청년층(15-39세)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2012	103	56	48	91	49	42	178	98	80
2013	105	56	49	92	49	43	184	100	84
2014	136	71	65	119	63	57	238	126	112
2015	141	73	69	125	64	60	247	130	117
2016	164	81	83	144	72	73	292	151	141

* 출처: 통계청(각 년도), 체류외국인통계.

표 III-16 결혼이민자 외국인 수

(단위: 명)

연도	합계	거주(F-1) 및 국민배우자 (F-2-1)	영주(F-5) 및 국민배우자 (F-5-2)	결혼이민(F-6) 및 국민배우자 (F-6-1)	자녀양육 (F-6-2)	혼인단절 (F-6-3)
2012*	148,498	42,978	18,576	82,605	682	3,657
2013	150,865	53,089	120,644	229,345	1,081	3,588
2014	150,994	44,642	135,888	236,781	1,438	3,201
2015	151,608	44,572	148,687	236,129	1,805	3,036

* 출처: 통계청(각 연도), 체류외국인통계

* 주: 2012년은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계치가 제시되지 않음. 국민배우자 수만 집계

1-1-4. 청년층 인구 전망

통계청의 장래추계인구 전망 결과를 보면, 청년고용법에 따른 청년은 2017년 980만 명에서 2040년 669만 명으로 30만 명 가까이 줄어든 전망이다. 30대를 포괄할 경우도 같은 기간 1,722만 명에서 1,146만 명까지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다소 인구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준 20대도 같은 기간 비슷한 폭으로 감소해 이 기간 동안 저출산 파고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표 III-17 청년인구 전망

(단위: 천명)

연도	청년층(15-29세)			청년층(20-29세)			청년층(15-39세)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2017	9,800	5,185	4,614	6,871	3,659	3,212	17,224	9,017	8,207
2020	9,256	4,889	4,367	6,802	3,619	3,182	16,291	8,558	7,733
2025	7,987	4,170	3,817	5,764	3,029	2,735	14,783	7,786	6,997
2030	7,022	3,638	3,384	4,786	2,488	2,297	13,803	7,250	6,553
2035	6,755	3,487	3,268	4,561	2,364	2,197	12,492	6,506	5,986
2040	6,697	3,454	3,244	4,531	2,346	2,185	11,465	5,936	5,529

* 출처: 통계청(각 연도), 장래인구추계

1-1-5. 청년 연령규정

청년들이 생각하는 청년 연령규정은 평균적으로 19세에서 29세 혹은 31세로 나타나고 있다. 상한연령은 2016년보다 2017년 다소 증가하였는데 남녀간, 연령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연령에 대한 질문에서 상한연령이 높아진 것은 점차 성인기 이행이 늦어지고 있는 현상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18 청년 연령규정

(단위: 세)

연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6	하한(평균)	19.3	19.4	19.3	19.4	19.4	19.3
	상한(평균)	29.5	29.7	29.3	29.5	29.2	29.8
2017	하한(평균)	19.4	19.4	19.4	19.4	19.5	19.3
	상한(평균)	31.2	31.3	31.1	30.5	31.0	31.7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17년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1-1-6. 적정 독립 시기

가정으로부터 독립해야한다는 의견은 2016년 52.4%에서 2017년 58.9%로 증가했다. 독립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 해 독립시기를 물어본 결과도 26.2세에서 25.4세로 낮아졌다.

표 III-19 적정 독립 시기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6	%	52.4	54.6	50.0	54.3	52.2	52.0
	평균(세)	26.2	26.2	26.3	24.6	26.2	26.9
2017	%	58.9	61.5	56.0	56.6	56.1	62.4
	평균(세)	25.4	25.7	25.0	23.2	25.5	25.8

* 주: 가정으로부터 분가 독립에 '독립해야 함'이라고 응답한 비율.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17년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1-1-7. 적정 결혼 시기

적정 결혼 연령은 2015년부터 조사가 이루어져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2015년 31.0세에서 2017년 30.2세로 다소 감소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생각하는 적정 결혼 연령이 30세 이상으로 높고 여성이 생각하는 적정 결혼 연령은 29세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적정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주관적인 응답이지만 객관적인 초혼연령과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2017년 현재 남성의 초혼연령은 32.8세, 여성의 초혼 연령은 30.1세이다. 추세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주관적인 결혼 시기는 낮아지고 있는데 반해서 객관적인 초혼 연령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III-20 적정 결혼 시기

(단위: 세)

연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5	31.0	31.6	30.3	-	30.6	32.9
2016	30.1	30.5	29.7	29.4	30.1	30.4
2017	30.2	30.5	29.8	29.0	30.2	30.5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2015년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 19세부터 조사가 이루어짐), 2017년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1-1-8. 적정 출산 시기

청년들에게 출산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54.1%가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결과를 살펴보면, 출산 의향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산 시기 역시 마찬가지로인데 31세를 적정 출산 시기로 제시하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출산 의향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10대, 30대의 의견이 달랐다. 20대의 출산의향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30대가 되었을 때 출산의향이 가장 높았다. 20대의 출산의향이 낮은 이유를 해석하기 어렵지만 자립을 시작하는 시기로 스스로의 문제에 집중하는 정도가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III-21 적정 출산 시기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6	%	54.0	55.1	52.9	54.1	51.4	56.6
	평균(세)	31.2	31.7	30.6	30.9	31.3	31.3
2017	%	54.1	59.4	48.2	52.3	51.9	56.8
	평균(세)	31.3	31.7	30.8	30.8	31.4	31.4

* 주: 자녀를 가질 필요성에 '자녀를 가져야 함' 이라고 응답한 비율,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17년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1-1-9. 해외이주 의사

해외이주 의사를 청년들에게 물어본 결과, 2016년 22.2%에서 2017년 36.0%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청년들의 삶의 여건이 좋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보이며 성별로 특히 여자의 해외이주 의사가 크게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 2016년에 20대에 가장 크고 30대에 큰 폭으로 낮아졌으나 2017년도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해외이주 의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국제교류나 유학을 지원하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해외취업을 정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결과는 젊은 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인재유출 문제를 고민해야 할지 모른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표 III-22 해외이주 의사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6	있 다	22.2	22.2	22.3	22.1	26.5	18.1
	없 다	77.7	77.7	77.7	77.9	73.4	81.9
	모름/무응답	0.0	0.1	-	-	0.1	-
2017	있 다	36.0	32.9	39.3	25.8	36.8	38.2
	없 다	64.0	67.1	60.7	74.2	63.2	61.8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17년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1-1-10. 해외이주 고려 이유

해외이주 사유 중 2017년 증가한 것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로 2016년 27.8%에서 2017년 34.3%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유학과 같이 “자기 계발을 위해서”나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 보고 싶어서” 등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였다. 이는 한국에서는 행복한 삶을 살기 어렵다고 보는 청년들이 증가하는 것이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이다.

표 III-23 해외이주 고려 이유

(단위: %)

연도	행복한 삶을 위해서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 보고 싶어서	자기 계발을 위해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어서	빈부 격차가 커서	취업이 어려워서	집값이 너무 비싸서	안보가 불안해서	기타	모름/무응답
2016	27.8	18.5	12.8	12.6	8.4	7.8	6.8	2.5	1.7	1.2	0.0
2017	34.3	18.7	11.2	13.4	7.9	3.7	5.5	2.1	2.0	1.0	0.0

* 주: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17년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1-2-1. 혼인건수

청년들의 혼인건수는 청년고용법에 따른 연령정의로 보면, 2000년 18만 건에서 2016년 7만 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30대를 포괄할 경우 30만 건에서 22만 건으로 이 역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하락폭은 적었다. 20대만을 살펴보면, 18만 건에서 6만 건으로 줄어들어 10대의 혼인건수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20대의 혼인건수 감소가 전체 혼인건수 감소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초혼연령이 상승하여 20대가 아니라 30세 들어서 결혼하는 추세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표 III-24 혼인건수

(단위: 천건)

연도	청년층(15-29세)		청년층(20-29세)		청년층(15-39세)	
	남	여	남	여	남	여
2000	189	258	187	250	304	313
2001	170	238	168	231	287	297
2002	154	221	152	216	273	283
2003	141	211	140	206	265	277
2004	130	204	129	199	263	277
2005	124	201	123	195	264	280
2006	131	215	129	207	282	300
2007	131	218	130	212	293	311
2008	119	200	119	193	276	295
2009	108	180	107	175	259	276
2010	107	184	106	178	272	291
2011	104	177	103	172	276	294
2012	94	165	93	160	273	290
2013	89	157	88	152	270	286
2014	80	141	79	138	252	267
2015	78	138	77	135	248	264
2016	70	126	69	123	228	244

* 출처: 통계청(각 년도), 인구동향조사.

1-2-2. 혼인율

1천 명 당 혼인한 건수는 조혼인률로 살펴보면, 청년고용법에 따른 청년들 중 조혼인율은 남자가 2000년 28건에서 2016년 13.9건으로, 여자가 같은 기간 41.4건에서 27.5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앞선 혼인건수와 유사하게 30대까지 청년층을 포괄할 경우에 조혼인률은 남녀별로 2000년 26.8건(남), 29.9건(여)에서 2016년 25.1건(남), 29.6건(여)으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반면, 20대는 같은 기간 41.5건(남), 59.9건(여)에서 20.7건(남), 40.2건(여)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표 III-25 혼인율

(단위: 해당연령 천명당 건)

연도	청년층(15-29세)		청년층(20-29세)		청년층(15-39세)	
	남	여	남	여	남	여
2000	28.0	41.4	41.5	59.9	26.8	29.9
2001	26.0	38.8	38.5	56.2	25.7	28.6
2002	24.3	36.8	36.0	53.5	24.9	27.7
2003	23.1	36.1	34.2	52.5	24.6	27.6
2004	21.8	35.8	32.3	52.0	24.7	28.1
2005	20.9	35.7	31.0	51.6	24.9	28.7
2006	21.8	38.3	32.4	55.0	26.7	31.0
2007	21.7	38.9	32.3	56.4	28.0	32.3
2008	19.6	35.7	29.2	51.6	26.6	30.8
2009	18.0	32.7	26.8	47.4	25.4	29.3
2010	18.6	34.7	27.8	50.3	27.2	31.7
2011	18.9	34.9	28.1	50.8	28.1	32.7
2012	18.0	33.9	26.8	49.4	28.1	33.0
2013	17.6	33.4	26.2	48.8	28.2	33.2
2014	16.2	30.7	24.0	44.8	26.7	31.4
2015	15.6	30.2	23.2	44.2	26.9	31.6
2016	13.9	27.5	20.7	40.2	25.1	29.6

* 출처: 통계청(각 년도), 인구동향조사.

1-2-3. 초혼연령

초혼연령은 청년고용법에 따른 청년 연령으로 볼 때 2000년 남성이 29.3세에서 2004년 30.1세로 30세를 넘었으며 여성은 2015년 30.0세로 30세를 넘어섰다. 전년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전년보다 초혼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남녀 간의 차이는 2세에서 3세 내외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민법에서 혼인여부는 연령(19세) 이외에 성인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청년 연령 규정을 정할 때 초혼연령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 0.2%p 내외로 매년 초혼연령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0년 이후 남성의 경우 35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초혼 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출산 시기 지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혼연령의 증가는 인구 경향에서 저출산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I-26 성별 초혼 연령

(단위: 세, %)

연도	평균 초혼 연령(남성)	전년대비 증감(남성)	평균 초혼 연령(여성)	전년대비 증감(여성)
2000	29.3	0.21	26.5	0.20
2001	29.6	0.26	26.8	0.29
2002	29.8	0.23	27.0	0.24
2003	30.1	0.37	27.3	0.26
2004	30.5	0.39	27.5	0.25
2005	30.9	0.34	27.7	0.20
2006	31.0	0.08	27.8	0.08
2007	31.1	0.15	28.1	0.29
2008	31.4	0.27	28.3	0.24
2009	31.6	0.23	28.7	0.38
2010	31.8	0.22	28.9	0.21
2011	31.9	0.06	29.1	0.23
2012	32.1	0.23	29.4	0.27
2013	32.2	0.08	29.6	0.18
2014	32.4	0.21	29.8	0.22
2015	32.6	0.15	30.0	0.15
2016	32.8	0.22	30.1	0.15

* 출처: 통계청(각 년도), 인구동향조사.

1-2-4. 출생아 수 및 출산율

청년층 출생아 수는 청년고용법의 연령 규정에 따라 15세에서 29세로 보면, 2000년 40만 명에서 2016년 10만 명으로 1/4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혼연령이 30대를 넘어섰으므로 30대를 포괄해 살펴보면, 출생아 수는 2000년 62만 명에서 2016년 39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다. 이는 저출산 추세를 반영한 결과이며 저출산 대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출산 여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표 Ⅲ-27 출생아 수

(단위: 천명)

연도	청년층(15-29세)	청년층(20-29세)	청년층(15-39세)
2000	407	403	627
2001	338	334	547
2002	283	278	486
2003	270	266	464
2004	242	239	466
2005	211	208	429
2006	207	204	442
2007	222	219	486
2008	200	197	458
2009	184	181	436
2010	175	172	460
2011	165	162	460
2012	155	152	473
2013	128	125	425
2014	120	117	423
2015	117	115	426
2016	106	104	393

* 출처: 통계청(각 년도), 인구동향조사.

1-2-5. 출산연령

이어서 출산연령을 살펴보면, 2000년 29.0세에서 2004년 30.0세로 30세를 넘어섰으며 2016년 출산연령은 32.4세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28 출산연령(모의 연령)

(단위: 세)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출산 연령	29.0	29.3	29.5	29.7	30.0	30.2	30.4	30.6	30.8	31.0	31.3	31.4	31.6	31.8	32.0	32.2	32.4

* 출처: 통계청(각 년도), 인구동향조사.

1-2-6. 결혼준비 경험

19세 이상 청년들에게 결혼을 준비해 본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초혼연령이 증가하고 있으나 결혼 준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 42.0%에서 2017년 44.3%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 30대의 결혼준비 경험이 더 높았다.

표 III-29 결혼준비 경험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9-29세	30-39세
2016	42.0	36.4	47.9	9.2	74.8
2017	44.3	38.2	51.0	16.3	73.2

* 주: 결혼준비 경험에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17년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1-2-7. 결혼 망설임 여부 및 이유

결혼을 준비해 본 응답자에게 결혼을 비용문제로 망설임 적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2016년도에는 41.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31.2%만이 응답해 비용 문제로 인해 결혼을 망설이는 경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결혼을 망설임 경우가 2016년도에는 남자가 높았으나 2017년도에는 여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0대 보다 비용 때문에 결혼을 망설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30 결혼 망설임 여부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9-29세	30-39세
2016	41.4	46.3	37.5	49.7	40.5
2017	31.2	29.3	32.8	37.6	29.8

* 주: 1) 결혼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임 경험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2) 결혼을 준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 응답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17년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1-2-8. 맞벌이 여부

맞벌이 여부를 물어본 결과, 2016년 47.7%에서 2017년 49.9%로 맞벌이 비율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 맞벌이 여부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9-29세	30-39세
2016	예 (맞벌이)	47.7	49.3	46.5	49.5	47.5
	아니오 (외벌이)	52.3	50.7	53.5	50.5	52.5
2017	예 (맞벌이)	49.9	48.4	51.0	41.0	51.8
	아니오 (외벌이)	49.5	50.3	49.0	57.7	47.8
	모름/ 무응답	0.6	1.3	0.0	1.3	0.4

* 주: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만 응답.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17년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1-2-9. 자녀 유무

자녀 유무를 살펴보면, 2016년 청년 중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가 31.7%였으나 2017년 35.6%로 증가하였다. 평균 자녀 수는 1.6명과 1.7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표 III-32 자녀 존재 여부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9-29세	30-39세
2016	%	31.7	25.2	38.8	4.8	58.7
	평균(명)	1.6	1.5	1.7	1.2	1.6
2017	%	35.6	27.9	44.2	11.1	60.9
	평균(명)	1.7	1.7	1.7	1.7	1.7

* 주: 자녀를 가질 필요성에 '자녀를 가져야 함'이라고 응답한 비율.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17년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1-2-10. 자녀를 가질 계획

결혼한 청년들에게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 59.5%에서 2017년 55.8%로 감소하였다. 이는 청년들의 저출산 경향과 관련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표로 저출산이 더 심화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표 III-33 자녀를 가질 계획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6	59.5	66.2	52.2	77.7	75.5	43.5
2017	55.8	63.6	47.2	76.7	71.4	39.8

* 주: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2) 교육과 훈련

(1) 교육

2-1-1. 대학등록금

대학알리미에서 공시하고 있는 결과로 대학등록금 추세를 살펴보면, 전문대는 570만 원대를, 4년제 대학은 550만 원대를 2014년 이후 2016년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표 III-34 대학등록금

(단위: 천원)

연도	전문대 전체	대 학		
		전체	국공립	사립
2014	5,721	5,554	2,641	6,955
2015	5,726	5,553	2,666	6,971
2016	5,730	5,551	2,651	6,984

* 출처: 대학알리미(각 년도), 홈페이지(<http://www.academyinfo.go.kr>)

* 주: 1) 국공립: 국립, 공립, 특별법국립, 국립대법인을 포함

2) 사립: 사립 및 기타를 포함함

2-1-2. 대학등록금 대출자 비율

대학등록금 대출자 비율은 대학등록금 상승폭이 법률 개정을 통한 정부의 개입으로 안정화된 이후 감소하였듯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대학유형별로 보면, 전문대의 대출자 비율이 4년제 대학보다 높고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을 비교해 보면, 사립대학의 대출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35 대학등록금대출자비율

(단위: %)

연도	전문대 전체	대 학		
		전체	국공립	사립
2014	17.42	11.88	5.68	14.41
2015	15.45	10.80	4.87	13.21
2016	12.63	9.21	4.13	11.27

* 출처: 대학알리미(각 년도), 홈페이지(<http://www.academyinfo.go.kr>)

* 주: 1) 국공립: 국립, 공립, 특별법국립, 국립대법인을 포함

2) 사립: 사립 및 기타를 포함함

2-1-3. 장학금 규모

반값 등록금 정책은 등록금 자체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이루어져 재학생 1인당 장학금 금액은 2014년에서 2016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III-36 재학생 1인당 장학금

(단위: 천원)

연도	전문대 전체	대 학		
		전체	국공립	사립
2014	2,136	2,307	1,675	2,559
2015	2,421	2,657	1,985	2,917
2016	2,563	2,854	2,078	3,155

* 출처: 대학알리미(각 년도), 홈페이지(<http://www.academyinfo.go.kr>)

* 주: 1) 국공립: 국립, 공립, 특별법국립, 국립대법인을 포함

2) 사립: 사립 및 기타를 포함함

2-1-4. 학제별 대학졸업 소요기간

학제별로 대학 졸업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대졸자는 2007년 46개월에서 2016년 51개월로 5개월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제별로 보면, 4년제 대학교는 같은 기간 61개월 수준을 유지하였고 전문대학은 34개월에서 35개월로 약간 증가하였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군 입대 등으로 인해 대학졸업 소요기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37 학제별 대학졸업 소요기간

(단위: 개월)

연도	대졸자			4년제			3년제 이하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07	46	60	37	61	76	51	34	46	26
2008	48	62	38	62	76	52	34	47	26
2009	48	62	38	63	77	52	34	46	26
2010	48	62	39	63	78	53	33	45	26
2011	49	63	40	63	77	53	34	46	27
2012	49	63	40	63	77	54	34	47	27
2013	49	62	40	63	76	53	34	46	27
2014	49	63	41	62	76	52	34	46	27
2015	50	62	41	60	74	52	34	45	27
2016	51	63	42	61	75	53	35	47	28

* 자료: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2-1-5. 대졸자 휴학 현황

대졸자 중 휴학 경험 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 40.3%에서 2016년 44.6%로 증가해 다시 상승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2007년과 비교해보면, 8%p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졸업 유예 현상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휴학 사유를 보면 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가 26.9%로 2007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평균 휴학 기간은 2007년 30개월에서 2016년 27개월로 다소 감소하였다.

표 III-38 대졸자휴학현황

(단위: %, 개월)

연도	휴학경험자 비율	병역의무 이행	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	여학연수 및 인턴 등 현장 경험	학비 (생활비) 마련	기타	평균 휴학기간 (개월)
2007	36.3	74.5	14.6	10.0	12.9	11.2	30
2008	38.2	71.0	16.8	11.3	12.8	9.5	29
2009	39.4	70.4	17.2	13.1	12.7	8.2	29
2010	39.7	67.8	19.3	14.8	12.8	9.0	29
2011	42.9	68.1	17.9	15.4	12.4	10.7	29
2012	42.7	68.6	22.1	15.5	11.1	10.4	29
2013	42.9	68.8	23.2	12.6	12.5	8.7	28
2014	42.7	69.4	22.4	14.2	14.2	8.0	28
2015	40.3	72.3	20.2	14.2	13.1	5.0	28
2016	44.6	68.6	26.9	15.1	11.4	5.4	27

* 출처: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2-1-6. 대학생 학업중단율

재적 학생 수 중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의 비율로 학업중단율을 살펴보면, 2010년 6.8%에서 2015년 7.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은 4%에서 4.1%로 늘었고 전문대학 역시 같은 기간 7.4%에서 7.5%로 증가하였다. 고등교육기관의 재적학생수는 다양한 유형의 대학을 포함하고 있는데 저출산 경향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4년제 대학교의 재적 학생수는 2014년까지 증가하였고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대학은 2012년까지 증가하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III-39 대학생 학업중단율

(단위: 명, %)

연도	고등교육기관			일반대학			전문대학		
	학업 중단자수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율	학업 중단자수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율	학업 중단자수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율
2010	225,263	3,327,525	6.8	81,641	2,028,841	4.0	56,658	767,087	7.4
2011	220,588	3,405,773	6.5	81,614	2,065,451	4.0	55,163	776,738	7.1
2012	229,425	3,399,258	6.7	84,114	2,103,958	4.0	58,923	769,888	7.7
2013	226,756	3,379,912	6.6	84,335	2,120,296	4.0	57,651	757,721	7.6
2014	222,263	3,337,875	6.6	82,875	2,130,046	3.9	55,239	740,801	7.5
2015	239,045	3,274,593	7.3	86,498	2,113,293	4.1	54,093	720,466	7.5

* 자료: 교육부(각 년도), 「교육기본통계」.

* 주: 1) 학업중단율=학업중단자수/재적학생수×100, 2) 연도구분은 학년도임

3) 고등교육기관에는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형태의 평생 교육시설, 사이버대학,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기능대학, 전공대학이 포함됨

2-1-7.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제도적으로 졸업을 유예하거나 개인적으로 졸업 필요요건을 채우지 못해 유예하는 경우를 조사하고 있다. 2016년 졸업 유예 경험은 5.3%였는데 2017년 14.5%로 크게 증가하였다. 졸업 필요요건 미이수 경험도 1년 사이에 크게 증가하였는데, 2016년 2.2%에서 2017년 6.1%로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졸업 유예 비율은 7.5%에서 20.6%로 두 배이상 증가해 졸업 유예 현상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30대에 비해서 대학 졸업을 유예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40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9-29세	30-39세
2016	졸업유예 경험	5.3	5.8	4.7	5.5	5.2
	졸업 필요요건 미이수 경험	2.2	2.7	1.7	1.6	3.0
2017	졸업유예 경험	14.5	16.6	12.3	14.9	14.5
	졸업 필요요건 미이수 경험	6.1	6.7	5.4	6.8	5.4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17년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주: 대학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2-1-8. 추후 대학 진학 의사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대학에 진학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대학 진학 의사는 2013년 14.2%에서 2017년 38.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선 취업 후 진학이나 일-학습병행제도 등과 같은 정책 추진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연령별로는 10대가 20대나 30대보다 대학 진학 의사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41 대학 진학 의사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3	14.2	15.6	12.9	-	28.7	6.4
2015	13.1	15.5	10.9	-	19.8	9.6
2016	36.6	38.8	34.6	90.4	22.0	4.5
2017	38.4	37.6	39.2	85.5	16.3	6.3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2013년과 2015년 조사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 19세부터 조사가 이루어짐). 2017년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주: 향후 대학 진학 의향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대학 진학 경험이 없는 경우만 응답.

2-1-9. 진학률

대학진학률은 2011년 합격자 기준에서 실제 등록자 기준으로 변경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6년 70%대가 무너졌으며 성별로 볼 때 남자의 대학진학률이 여성보다 낮아져 2010년 성별 역전 현상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학률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진학률은 2000년 이후 거의 100%에 수렴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표 III-42 진학률

(단위: %)

연도	초등학교 → 중학교			중학교 → 고등학교			고등학교 → 대학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1980	95.8	97.4	94.1	84.5	87.5	80.8	27.2	30.3	22.9
1990	99.8	99.8	99.8	95.7	96.3	95.0	33.2	33.9	32.4
2000	100	100	100	99.6	99.5	99.6	68.0	70.4	65.4
2005	100	100	100	99.7	99.7	99.8	82.1	83.3	80.8
2010	100	100	100	99.7	99.7	99.7	79.0	77.6	80.5
2011	100	100	100	99.7	99.7	99.7	72.5	70.2	75.0
2012	100	100	100	99.7	99.7	99.7	71.3	68.6	74.3
2013	100	100	100	99.7	99.7	99.7	70.7	67.4	74.5
2014	100	100	100	99.7	99.7	99.7	70.9	67.6	74.6
2015	100	100	100	99.7	99.7	99.8	70.8	67.3	74.6
2016	100	100	100	99.7	99.7	99.8	69.8	66.3	73.5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6),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주: 1) 진학률 = (진학자 수/졸업자 수)×100, 당해년도 졸업자의 진학률임

2) 중학교과정은 중학교 및 중학교과정의 기타학교가 포함되며, 고등학교과정은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의 기타학교가 포함됨.

3) 진학자 수 기준 변경: 2010년까지 대학합격자 기준이었으나, 2011년부터 대학등록자 기준으로 변경.

(2) 훈련·평생학습

2-2-1. 평생학습 형식교육 참여율

청년들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대학에서 대학원까지 정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교육기관에 참여하는 형식교육과 다양한 학습기관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형식 교육, 교육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무형식교육 등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서 청년은 대학교 졸업 이후로 초점을 맞추어 25세 이상 34세 이하로 통계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평생학습의 형식교육 참여율은 2007년 15.3%에서 2016년 8.4%로 크게 낮아졌다. 35세 이상은 형식교육 참여율이 2% 내외로 매우 낮으며 낮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43 연령별 평생학습 형식교육 참여율 변화 추이

(단위: %)

연도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2007	15.3	1.9	2.5	0.7
2008	9.7	2.8	1.5	0.2
2009	10.7	2.8	0.8	1.1
2010	9.0	2.2	1.1	2.0
2011	13.2	1.6	0.8	0.7
2012	9.4	2.0	1.7	0.4
2013	9.0	3.3	1.5	0.7
2014	7.6	1.9	1.8	0.6
2015	9.1	2.6	1.3	0.5
2016	8.4	1.9	1.0	0.6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6), 『2016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세종시: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표A1-1] 학습영역별 평생학습 참여율 추이, p. 48.

* 원자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각 년도),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kedi.re.kr/>)에서 자료 추출

* 주: 형식교육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의 학교교육으로 졸업장이나 학위 취득이 가능한 정규 교육과정을 말하며,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인정)과정, 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원격대학, 대학원(석사, 박사)을 포함함(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6: 13).

2-2-2. 평생학습 비형식교육 참여율

연령별 평생학습 비형식교육 참여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형식교육의 참여율과는 달리 25-34세 청년들의 참여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 청년들의 비형식교육 참여율은 26.7%에 불과했지만 2016년 41.7%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는 청년층만 해당되는 경향이 아니라 35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표 III-44 연령별 평생학습 비형식교육 참여율 변화 추이

(단위: %)

연도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2007	26.7	28.4	25.4	23.5
2008	26.4	26.0	20.5	20.6
2009	26.1	27.9	23.3	22.1
2010	32.0	31.8	24.3	20.5
2011	35.7	34.7	26.1	20.6
2012	32.0	34.8	33.6	31.2
2013	30.8	29.9	25.3	25.1
2014	39.4	38.2	32.3	28.9
2015	44.2	41.3	36.7	31.8
2016	41.7	38.0	31.2	26.4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6), 『2016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세종시: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표A1-1] 학습영역별 평생학습 참여율 추이, p. 48.

* 원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 년도),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kedi.re.kr/>)에서 자료 추출

* 주: 비형식교육은 정규교육 이외의 구조화된 학습활동으로, 공식적인 학위나 졸업장 취득을 우선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을 통해 이뤄지는 교육을 말함(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6: 13).

2-2-3. 평생학습 직업 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

연령별 비형식 교육 중 직업 관련 참여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25-34세 이하 청년들의 참여율이 2007년 10.7%에서 2016년 25.5%로 크게 증가해 취업의 어려움 속에서 직업 관련 비형식교육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5세 이상의 경우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연령에서 직업 관련 비형식교육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5 연령별 평생학습 직업 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 변화 추이

(단위: %)

연도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2007	10.7	9.8	7.6	7.5
2008	14.8	12.4	9.4	8.1
2009	17.7	15.3	11.6	10.4
2010	19.7	18.0	11.5	6.9
2011	23.6	16.5	12.1	10.4
2012	20.0	17.7	13.8	7.5
2013	21.2	18.3	13.2	11.2
2014	31.1	27.6	23.2	16.6
2015	34.1	29.8	25.7	18.0
2016	25.5	18.6	15.5	10.4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5), 2015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세종시: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표H1-1] 연도별 학습영역별 참여율 추이, p. 150.

* 원자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각 년도),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kedi.re.kr/>)에서 자료 추출.

2-2-4. 직업훈련 참여율

직업훈련 참여율을 보면 2014년부터 16% 대를 보여주었으며 2017년에 18.4%까지 1년 사이 2.2%p나 상승하였다. 성별로 볼 때 남자보다는 여자의 직업교육 훈련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46 연령별 직업교육 훈련 참여율 변화 추이

(단위: %)

연도	청년층 인구 전체	청년층 남자	청년층 여자
2007	15.4	12.9	17.8
2008	15.2	12.3	18.0
2009	15.8	13.3	18.2
2010	15.8	13.1	18.4
2011	15.3	12.7	17.8
2012	15.1	12.1	18.1
2013	14.7	12.5	16.8
2014	16.1	13.7	18.5
2015	16.4	13.8	19.1
2016	16.2	13.8	18.6
2017	18.4	16.0	20.8

* 출처: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 부가조사.

* 주: 청년층 인구는 15-29세임.

2-2-5. 취업 준비

19세부터 취업 준비 여부를 질문하고 있는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2016년 19.3%에서 2017년 20.7%로 약간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취업을 준비하는 비율이 높았고 20대와 30대 중 취업준비자 비율은 20대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I-47 현재 취업 준비 여부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9-29세	30-39세
2016	19.3	27.1	14.8	24.8	11.1
2017	20.7	30.6	15.2	24.7	14.4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17년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주: 지난주에 일을 하지 않았음에 응답한 응답자들 중 지난 4주 간 직장을 구해보았다고 응답한 비율과 현재 취업 준비 여부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그리고 지난 주 주된 활동에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에 응답한 비율을 합산한 결과임, 중/고등학생이 아닌 경우만 응답.

2-2-6. 고시생 및 공시생 현황

고시생과 공시생 비율을 살펴보면, 2016년 15.2%에서 2017년 17.8%로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공무원과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정부정책과 관련이 있어 보이며 여자보다는 남자가, 연령별로 20대와 30대가 19%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48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6	15.2	15.4	14.9	5.4	16.0	17.6
2017	17.8	18.2	17.4	6.4	19.4	19.5

* 주: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에 '있다' 라고 응답한 비율.

3) 경제와 고용

(1) 직업

3-1-1. 경제활동 참여율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살펴보면, 청년고용법 상 15-29세는 2007년 46.0%에서 2016년 46.9%로 소폭 증가하였다. 2016년 성별로는 남자의 경제활동 참여율(45.7%)보다 여자의 경제활동 참여율(48.1%)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0대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가장 낮았고 20대는 60% 중반대를, 30대부터는 70%대 중반이상으로 높은 경제활동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49 경제활동 참여율

(단위: %)

연도	전체					남자					여자				
	계	15-19	20-29	30-39	15-29	계	15-19	20-29	30-39	15-29	계	15-19	20-29	30-39	15-29
2007	61.8	7.3	64.6	75.3	46.0	74.0	6.5	66.5	93.6	45.7	50.2	8.1	62.9	56.3	46.3
2008	61.5	6.5	63.6	75.2	44.8	73.5	5.6	64.6	93.6	43.9	50.0	7.5	62.7	56.1	45.6
2009	60.8	6.2	63.1	74.0	44.0	73.1	4.9	64.6	92.8	43.3	49.2	7.5	61.8	54.2	44.7
2010	61.0	6.9	63.2	74.6	43.8	73.0	5.5	64.0	93.1	42.6	49.4	8.5	62.4	55.3	45.0
2011	61.1	7.6	63.2	74.7	43.8	73.1	6.3	64.0	93.0	42.6	49.7	9.0	62.5	55.5	44.9
2012	61.3	7.7	62.8	75.0	43.7	73.3	6.3	62.6	93.3	42.3	49.9	9.1	62.9	56.0	45.0
2013	61.5	7.7	61.6	75.4	43.2	73.2	6.6	61.2	93.2	42.0	50.2	8.7	62.0	57.0	44.4
2014	62.4	8.4	63.1	76.3	44.8	74.0	7.6	62.4	93.7	43.5	51.3	9.4	63.8	58.4	46.0
2015	62.6	8.8	63.7	76.6	45.7	73.8	7.7	63.0	93.8	44.5	51.8	9.9	64.4	58.8	46.9
2016	62.8	8.9	64.7	77.1	46.9	73.9	8.1	63.7	93.2	45.7	52.1	9.6	65.6	60.1	48.1

* 출처: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주: 경제활동참여율=(경제활동인구/15세이상인구)×100

3-1-2. 고용률

15세-29세 청년 고용률은 2007년 42.6%에서 2016년 42.3%로 40% 초반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소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2016년 성별로는 경제활동 참여율과 마찬가지로 여성(43.8%)이 남성(40.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활동 참여율이나 고용률은 연도별 추세에서 약간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이 같은 수치는 국제적으로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며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고용률 70% 목표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표 III-50 고용률

(단위: %)

연도	전체					남자					여자				
	계	15-19	20-29	30-39	15-29	계	15-19	20-29	30-39	15-29	계	15-19	20-29	30-39	15-29
2007	59.8	6.6	60.0	72.9	42.6	71.3	5.9	60.5	90.3	41.5	48.9	7.4	59.6	54.8	43.7
2008	59.5	5.9	59.1	72.9	41.6	70.9	4.9	59.2	90.3	40.1	48.7	6.9	59.1	54.7	43.0
2009	58.6	5.4	58.2	71.3	40.5	70.1	4.2	58.4	89.1	39.0	47.7	6.7	58.0	52.7	41.8
2010	58.7	6.1	58.2	72.0	40.3	70.1	4.7	58.2	89.5	38.7	47.8	7.7	58.3	53.7	42.0
2011	59.1	6.8	58.5	72.2	40.5	70.5	5.5	58.3	89.8	38.8	48.1	8.1	58.7	53.7	42.1
2012	59.4	7.0	58.1	72.7	40.4	70.8	5.7	57.3	90.3	38.7	48.4	8.3	58.8	54.5	42.0
2013	59.5	6.9	56.8	73.2	39.7	70.8	5.9	55.7	90.2	38.1	48.8	7.9	57.8	55.5	41.3
2014	60.2	7.7	57.4	73.9	40.7	71.4	6.8	55.8	90.9	38.9	49.5	8.6	59.0	56.3	42.5
2015	60.3	7.9	57.9	74.2	41.5	71.1	6.9	56.3	90.9	39.8	49.9	8.8	59.5	56.9	43.2
2016	60.4	8.0	58.3	74.6	42.3	71.1	7.2	56.8	90.2	40.7	50.2	8.7	59.9	58.3	43.8

* 출처: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주: 고용률=(취업자/15세이상 인구)×100

3-1-3. 실업률

청년고용법 상 실업률은 경제활동 참여율이나 고용률과는 달리 개선되지 않고 악화되고 있다. 2007년 청년 실업률은 7.2%였으나 2016년 9.8%로 1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졌다. 성별로는 여자(8.8%)보다는 남자(10.9%)의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6년 전체 실업률(3.7%)과 비교해 볼 때 청년 실업률은 두 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제적으로 볼 때 큰 편차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표 III-51 실업률

(단위: %)

연도	전체					남자					여자				
	계	15-19	20-29	30-39	15-29	계	15-19	20-29	30-39	15-29	계	15-19	20-29	30-39	15-29
2007	3.2	9.3	7.1	3.2	7.2	3.7	9.5	9.1	3.5	9.1	2.6	9.2	5.2	2.6	5.4
2008	3.2	10.2	7.0	3.1	7.2	3.6	12.2	8.4	3.5	8.6	2.6	8.6	5.7	2.4	5.8
2009	3.6	12.2	7.9	3.6	8.1	4.1	15.1	9.6	4.0	9.8	3.0	10.3	6.2	2.9	6.4
2010	3.7	11.9	7.8	3.5	8.0	4.0	15.1	9.1	3.9	9.3	3.3	9.6	6.6	3.0	6.7
2011	3.4	10.8	7.4	3.4	7.6	3.6	12.2	8.8	3.4	9.0	3.1	9.7	6.1	3.3	6.4
2012	3.2	8.8	7.5	3.0	7.5	3.4	9.5	8.5	3.2	8.6	3.0	8.3	6.5	2.7	6.6
2013	3.1	10.3	7.9	3.0	8.0	3.3	11.3	9.0	3.2	9.1	2.9	9.5	6.8	2.5	7.0
2014	3.5	9.2	9.0	3.1	9.0	3.6	10.2	10.5	2.9	10.5	3.5	8.4	7.6	3.5	7.7
2015	3.6	10.6	9.1	3.1	9.2	3.7	10.4	10.6	3.1	10.6	3.6	10.7	7.6	3.1	7.8
2016	3.7	10.0	9.8	3.2	9.8	3.8	11.0	10.9	3.3	10.9	3.6	9.2	8.8	3.0	8.8

* 출처: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주: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3-1-4. 신설법인 비율

신설법인 중에서 대표자의 연령을 통해서 청년들이 얼마나 창업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010년 신설법인 중에서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경우는 30.7%였으나 2016년에는 28.0%로 젊은 기업의 비중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신설법인 수를 살펴보면, 2010년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경우가 18,518개소였고 2016년 26,945개소로 크게 증가하였다. 다만, 전체 신설법인도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젊은 기업의 비중 자체는 감소하는 양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연령을 30세 미만과 30대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30대 미만의 비중은 2010년 5.2%에서 2016년 6.3%로 증가하였다. 반면, 30대 비중은 같은 기간 25.5%에서 21.7%로 줄어들어 전체 청년 신설법인 비중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표 III-52 전산업 기준 신설법인수 및 비율

(단위: 개소, %)

연도		전체		
		계	30세 미만	30-39세
2010	개소	60,312	3,117	15,401
	%	100	5.2	25.5
2011	개소	65,110	2,823	15,842
	%	100	4.3	24.3
2012	개소	74,162	3,510	17,538
	%	100	4.7	23.6
2013	개소	75,574	3,644	17,667
	%	100	4.8	23.4
2014	개소	84,697	3,885	18,921
	%	100	4.6	22.3
2015	개소	93,768	4,986	20,418
	%	100	5.3	21.8
2016	개소	96,155	6,062	20,883
	%	100	6.3	21.7

* 출처: 중소기업청(각 년도), 「신설법인동향」.

* 주: 2015년 이전의 기타 부문은 분류되어 있지 않아 제외

3-1-5. 청년 고용주(대표) 비율

통계청의 기업생멸통계를 통해서 청년 고용주(대표)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설법인 중에서 29세 이하 청년 고용주(대표) 비율은 활동 기업이나 신생기업 모두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30대 청년 고용주(대표)의 감소폭은 더 크게 나타나 젊은 기업가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III-53 청년 기업 고용주(대표)의 기업생멸통계 변화 추이

(단위: 개, %)

연도		활동기업			신생기업			소멸기업		
		전체	29세 이하	30-39세	전체	29세 이하	30-39세	전체	29세 이하	30-39세
2007	개	4726	152	887	847	64	219	616	36	147
	%	100.0	3.2	22.0	100.0	7.6	33.5	100.0	5.9	29.8
2008	개	4908	145	835	796	58	198	637	36	143
	%	100.0	3.0	20.0	100.0	7.4	32.3	100.0	5.7	28.2
2009	개	5031	149	831	759	59	197	662	36	143
	%	100.0	3.0	19.5	100.0	7.9	33.9	100.0	5.6	27.2
2010	개	5146	139	787	773	55	194	650	34	135
	%	100.0	2.7	18.0	100.0	7.2	32.3	100.0	5.4	26.3
2011	개	5304	135	784	809	55	199	683	34	140
	%	100.0	2.5	17.3	100.0	6.8	31.5	100.0	5.0	25.6
2012	개	5379	125	759	770	49	189	741	33	141
	%	100.0	2.3	16.5	100.0	6.5	31.1	100.0	4.5	19.0
2013	개	5377	117	724	748	45	181	664	27	125
	%	100.0	2.1	13.5	100.0	6.0	24.2	100.0	4.2	18.9
2014	개	5558	119	729	842	50	194	—	—	—
	%	100.0	2.1	13.1	100.0	6.0	23.1	—	—	—

* 출처: 통계청(각 연도), 「기업생명행정통계」.

* 주: 대표자 연령은 만 나이 기준이며, 미상인 경우는 제외한 결과임.

3-1-6. 청년 니트(NEET) 비율

청년 니트(NEET)는 일도, 교육도, 훈련도 받지 않는 젊은이를 지칭하며 OECD에서는 형식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및 훈련까지 니트에서 제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통학 중인 경우도 니트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OECD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2014년부터 공식적인 통계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경제활동인구조 원자료를 통해 니트 비율을 살펴보면, 2016년 18.9%로 3년째 증가하고 있으며 같은 기준의 OECD 평균이 13.9%로 평균과의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4 청년(15-29세) 니트 비율(OECD 기준)

(단위: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19.8	19.1	18.5	18.5	19.0	19.2	18.8	18.5	18.1	17.8	18.6	18.9

* 자료: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출처: 김기현(2017), 2014년부터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추정한 결과임. 니트는 재학생이나 취업자가 아닌 경우임.

3-1-7. 청년 비정규직 비율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취업자의 경우 3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청년 비정규직은 15-19세의 경우 75.5%에 매우 높고 20대는 전체 평균 수준이며 30대는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15-29세 청년 비정규직 비율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소폭 증가했으나 2016년 34.9%로 약간 낮아졌다.

표 III-55 연령별 비정규직 비율

(단위: %)

연도	전체	15-19세	20-29세	30-39세	15-29세	15-39세
2003	32.6	62.3	29.6	26.3	31.7	28.9
2004	37.0	61.8	33.3	32.1	35.0	33.5
2005	36.6	71.0	32.8	30.4	35.1	32.6
2006	35.5	71.3	30.9	29.8	33.0	31.2
2007	35.9	70.7	31.2	29.8	33.4	31.5
2008	33.8	65.1	31.0	26.7	32.9	29.5
2009	34.9	74.9	31.7	25.2	34.0	29.1
2010	33.3	69.8	31.3	23.3	33.6	27.8
2011	34.2	69.4	31.6	24.3	34.0	28.5
2012	33.3	75.9	30.5	23.1	33.8	27.6
2013	32.6	74.8	31.2	22.2	34.0	27.2
2014	32.4	69.5	32.0	21.8	34.6	27.4
2015	32.5	74.3	32.1	21.2	35.0	27.2
2016	32.8	75.5	32.0	21.1	34.9	27.2

* 출처: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매년 8월 기준.

* 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는 노사정위원회가 합의(2002년 7월)한 결과에 따름.

3-1-8. 신규 채용률

신규 채용률을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인 통계 결과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대졸 신입직원 경쟁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졸 신입사업 경쟁률은 2008년 이후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08년 26.3대 1에서 2016년 35.7대 1로 경쟁률이 강화되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같은 기간 24.4대 1에서 31.3대 1로 증가하였고 비제조업은 이보다 격차가 커 27.8대 1에서 43.5대 1로 크게 증가하였다. 규모별로는 대기업 경쟁률이 매우 높은데다 경쟁률도 30.3대 1에서 38.5대 1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III-56 대졸 신입사원 경쟁률

(단위: 명)

연도	산업		규모		전체
	제조업	비제조업	대기업	중소기업	
2008	24.4:1	27.8:1	30.3:1	8.4:1	26.3:1
2013	25.6:1	34.5:1	31.3:1	6.0:1	28.6:1
2015	29.4:1	37.0:1	35.7:1	6.6:1	32.3:1
2016	31.3:1	43.5:1	38.5:1	5.8:1	35.7:1

*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각 년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

3-1-9.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안정적인 회사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가 2016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2013년과 비교해 안정적인 회사나 급여가 높은 회사는 낮아진 반면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의 응답비중은 높아졌다.

표 III-57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단위: %)

연도	안정적인 회사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	급여가 높은 회사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	분위기 좋은 회사	유명한 회사	퇴근이 빠른 회사	기타
2013	36.6	15.2	20.0	12.4	9.6	1.6	4.3	0.3
2015	37.5	15.2	25.9	8.4	8.2	1.7	2.7	0.4
2016	31.0	25.6	18.3	10.5	8.8	2.9	2.7	0.1
2017	31.4	22.3	19.5	8.8	9.0	1.6	6.9	0.4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2013년과 2015년 조사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 19세부터 조사가 이루어짐). 2017년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3-1-10.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의향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의향은 2013년 62.8%에서 2017년 59.4%로 낮아졌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중소기업 취업 의향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대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다.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중소기업 취업 의향은 2-3%대로 낮는데 이는 여러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방식이며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는 선택지 없이 중소기업 자체의 취업 의향을 묻는 것이어서 질문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 III-58 중소기업 취업 의향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3	62.8	62.6	63.0	-	63.4	62.2
2015	50.1	53.4	46.6	-	54.3	46.1
2016	68.9	68.7	69.1	63.4	73.4	66.2
2017	59.4	57.7	61.3	57.5	63.9	55.5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2013년과 2015년 조사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 19세부터 조사가 이루어짐). 2017년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주: 중소기업 취업 의향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3-1-11. 청년 창업 의향 여부 및 경험

청년들의 창업 경험은 2015년부터 질문에 포함되어 있는데 질문 문항이 내용이 바뀌어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2017년도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창업을 생각해 보았고 실제로 창업을 했다는 응답은 12.7%로 나타나고 있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30대가 응답비중이 높았다.

창업의사는 2017년도의 경우 창업을 고려해 보았으나 실제로 창업을 해본 적이 없는 경우로 35.8%가 창업을 고려했으나 창업을 해본 적은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59 창업 경험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5	7.4	11.3	3.1	-	3.1	11.5
2016	20.1	21.1	18.6	4.5	8.0	32.3
2017	12.7	15.8	9.2	8.0	6.4	19.1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2015년 조사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영역사업으로 수행, 19세부터 조사가 이루어짐). 2017년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주: 2013년-2016년 조사에서는 현재 창업 중이거나 창업 경험 여부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2017년 조사에서는 '창업을 생각해보았고 실제로 창업을 했다' 라고 응답한 비율.

표 III-60 창업 의사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3	25.2	28.5	21.8	-	17.0	32.9
2015	12.5	13.9	11.2	-	11.4	13.7
2016	29.4	34.2	24.2	18.4	27.8	34.6
2017	35.8	36.2	35.3	36.0	37.6	34.0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2013년과 2015년 조사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영역사업으로 수행, 19세부터 조사가 이루어짐). 2017년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주: 2013년-2016년 조사에서는 창업 고려 여부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2017년 조사에서는 '창업을 생각해보았으나 실제로 창업을 해본적은 없다' 라고 응답한 비율.

(2) 소득 및 소비

3-2-1. 청년 소득

청년 소득은 가구주 기준이며 29세 이하 월 임금 총액은 2015년 전년 대비 처음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2016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Ⅲ-61 월임금총액

(단위: 천원)

연도	전체	29세 이하	30-39세
2007	2,178	1,551	2,380
2008	2,279	1,612	2,489
2009	2,277	1,611	2,466
2010	2,326	1,636	2,540
2011	2,428	1,727	2,619
2012	2,527	1,779	2,720
2013	2,617	1,815	2,780
2014	2,700	1,901	2,961
2015	2,740	1,869	2,963
2016	2,833	1,942	3,094

* 출처: 고용노동부(각 년도), 「고용노동통계」.

* 주: 월임금총액=정액급여+초과급여+전년도연간특별급여/12개월

3-2-2. 청년 소비

청년들의 가계 지출은 29세 이하 가구의 경우 2013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30대 가구는 2015년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다. 30대의 가계 지출은 결혼이나 출산 등의 영향으로 전체 연령의 가계 지출보다도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62 청년 소비

(단위: 천원)

연도	전체 평균			29세 이하 가구			30-39세 가구		
	가계 지출	소비 지출	비소비 지출	가계 지출	소비 지출	비소비 지출	가계 지출	소비 지출	비소비 지출
2007	2,584	2,016	568	2,008	1,647	361	2,649	2,086	563
2008	2,718	2,114	604	2,064	1,695	369	2,807	2,189	618
2009	2,776	2,149	626	2,107	1,717	390	2,875	2,232	644
2010	2,961	2,287	674	2,279	1,891	389	3,077	2,391	686
2011	3,115	2,393	722	2,510	2,053	457	3,207	2,501	705
2012	3,217	2,457	759	2,632	2,134	498	3,215	2,488	727
2013	3,262	2,481	781	2,700	2,188	512	3,341	2,564	777
2014	3,356	2,551	804	2,541	2,093	448	3,459	2,667	792
2015	3,373	2,563	810	2,336	1,917	419	3,451	2,667	784

* 출처: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 주: 1) 가계지출 = 소비지출 + 비소비지출

2) 소비지출: 식료품비주류음료, 주류·담배, 의료·신발, 주거수도·광열, 가정용품 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상품·서비스 지출 포함

3) 비소비지출: 경상조세, 비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가구간이전지출, 비영리단체로 이점 포함

3-2-3. 장년 대비 청년 상대임금

장년 대비 청년의 상대임금은 40대와 50대를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40대 대비 29세 이하 청년들의 상대임금은 100% 대비 2007년 59.9%에서 2016년 57.9%로 비슷한 수준이나 2014년과 비교할 때 2.1%p 낮아졌다. 30대는 90%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50대와 비교해 볼 때 전체적으로 94.7% 수준이며 29세 이하는 64.9%이고 30대는 50대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63 장년 대비 청년 상대임금

(단위: %)

연도	40-49세			50-59세		
	전체	29세 이하	30-39세	전체	29세 이하	30-39세
2007	84.1	59.9	91.9	88.9	63.3	97.2
2008	84.6	59.9	92.4	90.7	64.1	99.0
2009	84.4	59.7	91.4	92.2	65.2	99.8
2010	85.1	59.8	92.9	93.4	65.7	102.0
2011	85.0	60.4	91.6	94.0	66.9	101.4
2012	85.3	60.1	91.9	93.9	66.1	101.1
2013	85.7	59.4	91.1	91.4	63.4	97.1
2014	85.2	60.0	93.4	95.5	67.2	104.7
2015	83.9	57.3	90.8	94.2	64.3	101.9
2016	84.4	57.9	92.2	94.7	64.9	103.4

* 출처: 고용노동부(각 년도), 「고용노동통계」.

* 주: 1) 상대임금 = (해당 연령층의 월임금총액 / 기준 연령층의 월임금총액) × 100

2) 월임금총액 = 정액급여 + 초과급여 + 전년도연간특별급여 / 12개월

3-2-4. 청년층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

청년층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은 특수형태를 제외할 경우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상대임금은 전체적으로 47.0% 수준까지 올라갔으나 44.0% 수준으로 낮아졌다. 특수형태를 포함할 경우 상대임금은 다소 올라가는데 2014년도 이후 조금씩 올라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별로 29세 이하가 30대 보다 상대임금 수준이 낮았고 30대를 포함하더라도 정규직에 비해 청년 비정규직은 60%가 되지 않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4 청년층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

(단위: %)

연도	비정규직 특수형태 제외			비정규직 특수형태 포함		
	전체	29세 이하	30-39세	전체	29세 이하	30-39세
2007	48.5	58.5	52.1	55.4	61.5	61.8
2008	47.5	55.2	53.0	53.7	58.0	60.7
2009	47.3	54.2	52.1	52.7	56.2	56.8
2010	46.5	52.7	52.1	51.8	55.4	57.9
2011	46.5	54.0	52.8	52.3	55.5	57.0
2012	46.2	51.1	53.9	51.6	53.2	57.1
2013	47.0	50.7	57.3	55.4	53.1	64.1
2014	42.3	45.4	50.6	48.6	47.7	57.0
2015	43.0	47.0	53.2	49.2	49.3	58.3
2016	44.0	48.6	54.4	50.1	50.5	58.7

* 출처: 고용노동부(각 년도), 「고용노동통계」,

* 주: 1) 상대임금=(비정규직 월임금총액/정규직 월임금총액)×100

2) 월임금총액=정액급여+초과급여+전년도연간특별급여/12개월

3-2-5. 청년 부채

청년 가구주의 부채는 29세 이하의 경우 부채 규모가 2010년 936만 원이던 것이 2016년 1,593만원으로 늘었다. 3대의 부채 규모도 같은 기간 3,981만 원에서 5,877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보유가구의 중앙값으로 보면 같은 기간 29세 이하는 840만 원에서 2,006만 원으로 늘었고 30대는 2,900만원에서 5,150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물상상승을 고려하더라도 청년들의 부채 규모가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0대의 부채규모가 20대보다 두 배 이상 큰 것은 30대에 결혼이나 출산이 주로 이루어지고 주거를 마련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가계 지출이 크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표 III-65 청년 가구주의 부채

(단위: 만원)

연도		전체 부채		
		전체	29세 이하	30-39세
2010	전가구 평균	4,618	936	3,981
	보유가구 중앙값	3,000	840	2,900
2011	전가구 평균	5,205	1,268	4,609
	보유가구 중앙값	3,080	1,000	3,000
2012	전가구 평균	5,450	1,283	4,405
	보유가구 중앙값	3,240	1,000	3,200
2013	전가구 평균	5,858	1,401	4,890
	보유가구 중앙값	3,646	852	3,530
2014	전가구 평균	6,051	1,481	5,257
	보유가구 중앙값	4,007	1,078	4,024
2015	전가구 평균	6,256	1,491	5,463
	보유가구 중앙값	4,500	1,550	4,800
2016	전가구 평균	6,655	1,593	5,877
	보유가구 중앙값	5,000	2,006	5,150

* 출처: 통계청(각 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

* 주: 2016년 결과는 잠정치임

3-2-6. 최저 임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저 임금은 2017년 6,470원이었고 2018년 최저 임금은 7,530원이었다. 2016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다음 해의 적정 최저 임금 수준을 물어보았으나 2017년에는 2018년 최저 임금 고시가 조사 시점 이전에 이루어져 2019년의 적정 최저 임금을 물어보았다. 2016년 조사에서 2017년 적정 최저 임금 결과는 7,858원인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저 임금은 6,470원으로 1,115원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2017년 조사에서 2019년 적정 최저임금은 8,783원으로 나타났는데 2018년까지만 최저 임금이 결정되어 향후 최저 임금이 어떻게 결정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2018년 인상률은 16.4%이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1년까지 10,000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어서 실현가능성이 있지만 청년들이 응답한 최저 임금보다는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I-66 적정 최저 임금

(단위: 원/시간당)

연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6 (2017년)	7,585	7,668	7,495	7,505	7,550	7,645
2017 (2019년)	8,783	8,830	8,732	8,692	8,805	8,789

* 주: 2016년 자료는 2017년, 2017년 자료는 2019년 적정 최저 임금에 대한 응답 결과임.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17년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3-2-7. 생활비 및 가족지원 비율

청년들의 한 달 생활비는 75만 원 수준이며 여자보다는 남자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한 달 생활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으로부터 지원받는 생활비의 비율은 26.3%였으며 15-18세는 93.3%가 지원을 받고 있었고 20대는 28.9%, 30대는 3.4%가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7 한 달 생활비와 생활비 지원받는 비율

(단위: 원,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7	한 달 생활비 평균(원)	750,669	778,258	720,173	243,904	713,227	941,393
	한 달 생활비 지원 비율(%)	26.3	26.7	25.8	93.3	28.9	3.4

* 주: 중·고등학생은 한 달에 지출하는 용돈으로 응답

3-2-8. 채무 여부

청년들 중에서 2017년 현재 채무가 있는 경우는 27.1%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5년이나 2016년보다 높은 수치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채무가 있는 경우가 많았고 연령별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채무가 있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표 III-68 채무 여부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5	21.8	19.8	24.0	—	7.4	35.5
2016	20.2	21.1	19.1	0.0	9.6	30.9
2017	27.1	27.8	26.3	6.8	17.7	36.9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2015년 조사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 19세부터 조사가 이루어짐). 2017년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주: 값이야 할 채무 여부에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학자금 대출 포함).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3-2-9.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

다음의 <표 III-69>에서 <표 III-77>까지는 물질적 박탈감 경험과 관련한 결과이다. 이 질문은 유럽연합에서 실시하는 조사에 포함된 것으로 향후 국가간의 비교 목적으로도 사용하고자 한다. 질문은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가 27%로 나타났다.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는 0.8%였다.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는 7.9%로 나타났다.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못한 경우는 2.2%였으며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한 경우는 13.9%였다. TV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는 2.7%였고,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0.7%였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24.6%였고 타인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0.3%나타났다.

표 III-69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7	예	2.7	1.9	3.6	0.4	2.9	3.1
	아니오	86.8	87.8	85.7	68.5	84.4	94.8
	잘 모름	10.5	10.3	10.7	31.1	12.6	2.1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표 III-70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7	예	0.8	0.6	1.1	0.0	1.2	0.8
	아니오	90.2	90.5	90.0	72.8	88.2	97.6
	잘 모름	8.9	8.9	9.0	27.2	10.7	1.7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표 III-71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7	예	7.9	6.8	9.1	5.7	9.2	7.3
	아니오	92.1	93.2	90.9	94.3	90.8	92.7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표 III-72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단위: 명,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7	예	2.2	1.7	2.7	1.5	3.9
	아니오	97.8	98.3	97.3	98.5	96.1
						0.8
						99.2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표 III-73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단위: 명,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7	예	13.9	11.9	16.2	11.5	17.2
	아니오	86.1	88.1	83.8	88.5	82.8
						11.4
						88.6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표 III-74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단위: 명,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7	예	2.7	2.7	2.7	1.7	4.3
	아니오	97.3	97.3	97.3	98.3	95.7
						1.3
						98.7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표 III-75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단위: 명,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7	예	0.7	0.8	0.6	0.7	1.0
	아니오	99.3	99.2	99.4	99.3	99.0
						0.3
						99.7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물질적 박탈감과 관련하여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통신수단자 소유여부였고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자동차 소유여부였다. 심한 물질적 박탈률(severe material deprivation rate)은 9가지 중에서 4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15세에서 39세 청년들 중 12.3%가 심한 물질적 박탈감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의 경우 2013년도 결과이기는

하지만 15세에서 29세 청년들의 심한 물질적 박탈률이 11.7%로 나타났다(European Union, 2016: 123). 한국 역시 연령을 동일하게 해서 측정해본 결과 15.1%로 나타나 물질적인 결핍 수준이 유럽연합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III-76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단위: 명,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7	예	24.6	23.3	26.0	24.1	36.1	13.2
	아니오	75.4	76.7	74.0	75.9	63.9	86.8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표 III-77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단위: 명,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7	예	0.3	0.4	0.2	1.1	0.2	0.1
	아니오	99.7	99.6	99.8	98.9	99.8	99.9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4) 주거

(1) 주거현황

4-1-1. 청년층 주거형태

청년들의 주거 형태는 청년고용법 상 15세 24세 기준으로 보증금이 있는 월세가 53.9%로 가장 많고 전세가 19.1%, 자가가 10.1%, 관사 및 사택 등 무상이 6.4% 사글세가 3.5%, 보증금이 없는 월세가 2.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대와 무관하게 자거나 전세는 감소하는데 비해서 월세는 크게 증가해 청년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78 청년층(가구주)의 연령별 주택 점유형태

(단위: %)

구분	연령	연도	자가	전세 (월세없음)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 (문사, 사택 등)
전국	전체	2000년	54.2	28.2	10.7	2.0	2.2	2.8
		2005년	55.6	22.4	15.1	2.1	1.8	3.1
		2010년	54.2	21.7	18.2	2.0	1.3	2.7
		2015년	56.8	15.5	20.3	2.6	0.8	4.0
	15-24세	2000년	7.5	36.1	30.4	9.4	13.2	3.5
		2005년	6.5	23.8	46.6	8.9	10.3	3.8
		2010년	5.6	16.2	59.0	8.2	8.1	2.8
		2015년	5.1	11.2	62.7	9.4	6.6	5.0
	15-29세	2000년	14.3	48.0	22.5	4.8	6.2	4.1
		2005년	12.7	33.3	38.3	5.6	5.4	4.6
		2010년	11.6	27.6	48.0	5.0	3.9	3.9
		2015년	10.1	19.1	53.9	7.0	3.5	6.4
	15-39세	2000년	32.0	43.7	15.0	2.5	3.1	3.6
		2005년	31.9	34.5	24.1	2.9	2.5	4.1
		2010년	29.5	32.3	30.0	2.6	1.8	3.8
		2015년	30.7	24.8	33.5	3.7	1.4	5.8
동부	전체	2000년	49.1	32.6	12.1	1.9	2.2	2.1
		2005년	51.6	25.4	16.8	2.1	1.7	2.4
		2010년	50.3	24.3	20.1	2.0	1.3	2.1
		2015년	53.2	17.5	22.4	2.6	0.7	3.5
	15-24세	2000년	6.9	38.2	32.1	8.1	12.0	2.7
		2005년	6.3	25.0	49.2	7.8	8.6	3.0
		2010년	5.4	16.7	61.8	7.8	6.3	2.1
		2015년	5.0	11.8	65.6	9.3	4.5	3.9
	15-29세	2000년	13.3	50.3	23.3	4.3	5.8	2.9
		2005년	12.2	34.7	39.8	5.1	4.7	3.6
		2010년	11.1	28.3	49.9	4.8	3.2	2.7
		2015년	9.7	19.8	56.1	7.0	2.5	4.9
	15-39세	2000년	30.5	46.2	15.4	2.3	2.9	2.6
		2005년	31.0	36.0	24.8	2.7	2.2	3.2
		2010년	28.5	33.4	31.0	2.6	1.6	2.9
		2015년	38.3	28.4	25.7	2.4	0.5	4.7

* 출처: 통계청(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 주: 2000년의 경우 일반가구수에서 미상인 가구는 제외함.

4-1-2. 청년층 실주거비

39세 이하 가구 청년들의 실주거비는 전국적으로 2007년 57,373원에서 2017년 107,674원으로 크게 증가해 왔다. 도시지역으로 국한해 보면, 비용이 더 증가해 2007년 58,288원에서 2016년 112,696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전체와 비교해 볼 때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월세가 높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표 III-79 청년층(가구주)의 실주거비

(단위: 원)

연도	전체		39세 이하 가구	
	전국	도시	전국	도시
2007	41,552	42,632	57,373	58,288
2008	40,909	41,652	54,329	54,858
2009	41,946	43,131	53,072	54,807
2010	45,839	47,610	56,046	57,906
2011	49,475	51,852	67,105	70,405
2012	55,207	57,250	71,996	77,576
2013	59,087	60,805	69,317	72,817
2014	61,423	63,048	81,152	87,132
2015	74,227	76,264	102,720	109,586
2016	78,906	81,451	107,674	112,696

* 출처: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 주: 실제주거비: 2인 이상 월세가구의 월세액만을 포함하며, 월세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음

4-1-3. 청년 가구 비율

청년층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가구주 중에서 청년 연령대의 가구주의 비율을 의미한다. 청년층 가구 비율은 지난 1980년 청년고용법 상 청년 연령일 때 15.6%였으나 2016년 7.1%로 크게 감소하였다. 15세에서 24세로 청년 연령을 정의해 살펴보면, 같은 기간 5.0%에서 2016년 28%로 낮아졌다. 30대를 포괄하여 청년 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1980년 43.9%에서 2016년 23.7%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III-80 청년층(일반가구 가구주)의 가구 비율

(단위: %)

연도	15-24세	15-29세	15-39세
1980	5.0	15.6	43.9
1990	3.9	14.2	44.7
1995	3.7	12.0	42.3
2000	3.0	10.0	36.5
2005	3.1	8.7	31.3
2010	2.6	7.9	27.3
2015	2.8	7.1	24.2
2016	2.8	7.1	23.7

* 출처: 통계청(각 년도), 「인구주택총조사」

* 주: 연령별 가구비율=연령별 가구수/전체 일반가구수*100

4-1-4. 청년 1인 가구 비율

청년 1인 가구 비율은 단독가구로 가구원이 1인인 경우를 의미한다. 청년 1인 가구는 2000년 청년고용법 상 청년 연령으로 39.1%였으나 2015년 69.9%로 크게 증가하였다. 15-24세의 경우도 같은 기간 56.2%에서 80.9%로 증가하였고 30대를 포괄하여 살펴보면, 같은 기간 18.7%에서 41.0%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에서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여 절반을 넘어서는 상황까지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II-81 청년층(일반가구 가구주)의 1인 가구 비율

(단위: %)

연도	전체	15-24세	15-29세	15-39세
2000	15.5	56.2	39.1	18.7
2005	20.0	63.9	52.1	27.2
2010	23.9	70.9	59.2	33.8
2015	27.2	80.9	69.9	41.0

* 출처: 통계청(각 년도), 「인구주택총조사」 .

* 주: 연령별 가구비율=연령별 1인 가구수/연령별 일반가구수*100

4-1-5.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비율은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전체 부모 동거 비율은 2016년 60.2%에서 2017년 51.0%로 낮아졌다. 부모 동거 비율이 9%p 이상 바뀐 이유는 설명하기 어려우며, 조사 설계상에 차이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표 III-82 부모 동거 여부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6	60.2	63.4	56.7	99.5	84.1	23.9
2017	51.0	54.5	47.2	98.7	69.0	18.6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17년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4-1-6. 미혼 혼자 거주 여부

미혼으로 혼자 거주하는지 여부는 1년 사이에 크게 증가하였는데 2016년 14.9%에서 2017년 25.3%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역시 부모 동거 여부와 마찬가지로 수치상에 큰 변화가 있는데 이 역시 조사 설계상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별이나 연령별 결과는 비중의 크기가 다를 뿐 남자가 여자보다, 20대가 30대 보다 높은 특성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표 III-83 미혼 혼자 거주 여부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6	14.9	21.5	8.9	—	42.4	9.3
2017	25.3	34.0	17.2	—	52.1	15.0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17년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주: 부모님과 비동거/독립인 경우에만 응답(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4-1-7. 현재 주거 형태

미혼 1인 가구의 주거 형태는 원룸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아파트, 다세대 혹은 빌라 순이었다. 원룸 혹은 다가구 형태는 2016년 대비 2017년 다소 증가했고 아파트는 감소하였다. 다세대/빌라는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오피스텔은 다소 증가하였고 통계청 집계구에서 조사구로 변경하여 기숙사에 거주하는 청년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2.8%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고시원의 경우 가구조사에서 배제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장치가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

표 III-84 현재 주거 형태

(단위: %)

연도	원룸 (다가구)	아파트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하숙	기숙사	고시원	단독주택	기타
2016	35.2	33.6	23.7	4.7	0.6	-	-	-	2.2
2017	37.1	27.7	22.2	6.5	0.2	2.8	-	-	3.5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17년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주: 미혼 1인 가구인 경우에만 응답.

(2) 주거여건

4-2-1. 청년층 주거 빈곤 규모

청년층의 주거 빈곤 규모는 주거형태를 통해 주택 이외에 거주하는 경우로 살펴볼 수 있다. 그 결과, 주택 외 거주 비율은 2000년 0.58%에서 2015년 3.7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5 청년층(일반가구 가구주)의 주택 외 거주규모 및 비율

(단위: 가구, %)

연도		전체	15-24세	15-29세	15-39세
2000	규모	84,353	7,045	17,938	37,285
	비율	0.6	1.64	1.3	0.7
2005	규모	216,857	29,298	75,610	139,060
	비율	1.4	6.0	5.5	2.8
2010	규모	353,942	44,287	116,216	217,883
	비율	2.0	9.8	8.5	4.6
2015	규모	713,986	41,605	130,843	300,822
	비율	3.7	7.9	9.7	6.5

* 출처: 통계청(각 년도), 「인구주택총조사」.

* 주: 1) 연령별 가구비율=연령별 가구수/연령별 일반가구수*100

2) 주택 외 거주: 오피스텔, 숙박시설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 시설, 판잣집/비닐하우스 및 기타

4-2-2. 가처분소득 대비 가구부채비율

가처분소득 대비 가구부채(금융과 임대보증금) 비율을 통해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파악해 볼 수 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구부채비율은 30세 미만의 경우 2010년 41.2%에서 2016년 79.1%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30대의 경우도 같은 기간 117.7%에서 136.4%로 크게 증가하였다. 30대의 부채 규모가 더 큰 것은 결혼이나 출산을 비롯해 주거 마련에 따른 임대보증금 증가가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표 III-86 가처분소득 대비 가구부채비율

(단위: 만원, %)

연도		전체			30세 미만			30-39세		
		가처분 소득	부채	비율	가처분 소득	부채	비율	가처분 소득	부채	비율
2010	전체가구평균	3,047	4,618	151.6	2,272	936	41.2	3,383	3,981	117.7
	보유가구 중위	2,395	3,000	125.3	1,928	840	43.6	2,852	2,900	101.7
2011	전체가구 평균	3,283	5,205	158.5	2,546	1,268	49.8	3,532	4,609	130.5
	보유가구 중위	2,552	3,080	120.7	2,127	1,000	47.0	3,002	3,000	99.9
2012	전체가구 평균	3,476	5,450	156.8	2,495	1,283	51.4	3,779	4,405	116.6
	보유가구 중위	2,776	3,240	116.7	2,265	1,000	44.2	3,256	3,200	98.3
2013	전체가구 평균	3,651	5,858	160.4	2,600	1,401	53.9	3,935	4,890	124.3
	보유가구 중위	2,946	3,646	123.8	2,255	852	37.8	3,392	3,530	104.1
2014	전체가구 평균	3,819	6,051	158.4	2,963	1,481	50.0	4,085	5,257	128.7
	보유가구 중위	3,138	4,007	127.7	2,442	1,078	44.1	3,597	4,024	111.9
2015	전체가구 평균	3,927	6,256	159.3	2,934	1,491	50.8	4,167	5,463	131.1
	보유가구 중위	3,231	4,500	139.3	2,616	1,550	59.3	3,722	4,800	129.0
2016	전체가구 평균	4,022	6,655	165.5	2,835	1,593	56.2	4,283	5,877	137.2
	보유가구 중위	3,316	5,000	150.8	2,535	2,006	79.1	3,777	5,150	136.4

* 출처: 통계청(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

* 주: 1) 가처분소득 = 경상소득 - 비소비지출(세금, 4대보험, 이자비용 포함)

2) 총부채 = 금융부채 + 임대보증금(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3) 비율 = 총부채 / 가처분소득 * 100

4-2-3. 기숙사 수용률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를 통해 대학생들의 기숙사 수용률을 살펴보면, 18.4% 수준으로 매우 낮으며 국공립과 사립대 간의 편차는 전국적으로 크지 않으나 가장 수요가 많은 서울시의 경우 국공립 수용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87 기숙사 수용률

(단위: %)

연도		평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2014	전체	16.6	8.9	13.5	16.5	12.1	19.4	23.1	30.8	14.9	31.7	24.6	22.5	21.3	29.4	25.2	20.9	16.1	31.2
	국공립	15.1	3.6	17.6	22.0	12.7	24.5	31.2	102.9	14.4	30.3	21.8	31.4	18.5	27.6	26.7	20.3	15.9	0.0
	사립	17.4	12.8	11.4	9.7	11.7	16.8	17.4	13.9	14.9	32.7	26.4	21.2	23.1	31.7	25.0	21.5	18.4	31.2
2015	전체	18.4	11.0	14.1	15.9	11.8	20.4	23.8	31.9	14.9	32.0	27.8	25.1	22.2	32.3	26.6	22.6	15.5	31.6
	국공립	17.0	5.3	17.4	20.8	11.9	20.3	19.7	89.4	13.8	29.9	27.8	31.0	19.9	28.8	26.7	24.3	15.8	0.0
	사립	18.4	13.9	12.3	9.9	11.7	17.1	16.8	15.1	14.9	33.6	27.8	24.2	23.9	36.4	26.6	21.2	12.4	31.6
2016	전체	19.5	11.8	17.1	18.2	12.1	21.1	24.4	31.9	15.9	31.3	29.3	27.6	23.3	33.7	27.7	23.4	15.2	32.4
	국공립	17.6	5.7	20.0	21.2	11.7	21.0	19.9	82.2	13.8	30.7	29.5	33.2	21.0	30.7	34.2	25.3	15.9	0.0
	사립	19.4	14.7	15.5	10.4	12.5	17.9	17.5	15.5	15.9	31.7	27.2	26.7	24.9	37.2	26.8	21.8	9.7	32.4

* 출처: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각 연도)

* 주: 1) 국공립: 국립, 공립, 특별법국립, 국립대법인을 포함

2) 사립: 사립 및 기타를 포함함

4-2-4. 주거 마련 시기 의견

청년들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을 언제쯤 장만할 수 있을 것인지를 물어본 결과, 향후 10-20년 이내가 가장 높았으나 비중은 감소하였다. 반면 이미 소유하거나 향후 5-7년 이내에 마련할 수 있다는 응답은 다소 증가하였다.

표 III-88 주거 마련 시기 의견

(단위: %)

연도	이미 소유하고 있다	향후 1년 이내	향후 1-3년 이내	향후 3-5년 이내	향후 5-7년 이내	향후 7-10년 이내	향후 10-20년 이내	향후 20년 이후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
2013	14.9	1.4	3.1	6.8	9.0	19.7	30.2	10.7	4.2
2015	11.9	0.4	1.7	3.8	11.6	21.0	31.9	11.1	6.6
2016	13.6	0.4	0.9	5.4	8.2	12.5	34.8	17.8	6.3
2017	17.2	0.7	3.8	5.6	9.4	14.5	27.3	14.9	6.6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2013년과 2015년 조사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 19세부터 조사가 이루어짐). 2017년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4-2-5. 공동주거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는 공동주거(share house) 경험 여부를 2015년부터 묻고 있다. 10대의 경우 2016년부터 질문에 포함하였으며 결과를 살펴보면, 공동주거 경험은 2015년 9.5%에서 2017년 7.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별로는 20대의 경험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공동주거 의향도 2015년에 비해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공동주거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공동주거 경험비율이 낮아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표 III-89 공동주거_공동주거 경험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5	9.5	10.9	7.9	—	10.9	8.2
2016	9.1	9.4	8.7	7.3	11.2	7.6
2017	7.1	8.2	6.0	2.4	8.4	7.3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2015년 조사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 19세부터 조사가 이루어짐), 2017년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주: 공동주거 경험에 '예' 라고 응답한 비율.

표 III-90 공동주거_공동주거 의향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5	17.9	18.4	17.3	—	24.2	11.9
2016	7.6	8.0	7.2	14.7	9.6	3.4
2017	8.0	8.5	7.4	17.9	9.1	3.9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각 년도(2015년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 19세부터 조사가 이루어짐), 2017년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주: 향후 공동주거 의향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4-2-6. 평소 주거 생각

평소 주거 생각과 관련하여 내 명의의 집이 꼭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2017년도에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의 집값 수준은 적정하다는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계속 증가해 2013년 당시 14.8%에서 2017년 29.1%로 늘어났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매우 그렇다”가 2013년 3.6%에서 2017년 7.8%로 증가였다. 15세에서 39세 청년들의 평소 주거에 대한 생각은 집값이 너무 비싸고 집을 장만하는 것이 매우 힘든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91 평소 주거 생각_1) 내 명의의 집은 꼭 있어야 한다

(단위: %)

연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3	1.1	11.9	26.3	47.8	12.9
2015	1.1	13.7	24.4	48.5	12.3
2016	1.0	12.1	25.2	48.5	13.3
2017	2.3	14.8	19.0	47.7	16.2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2013년과 2015년 조사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 19세부터 조사가 이루어짐), 2017년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표 III-92 평소 주거 생각_2)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단위: %)

연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3	14.8	45.5	28.6	9.2	1.9
2015	23.0	38.3	25.6	11.6	1.5
2016	27.4	42.0	21.6	8.0	1.0
2017	29.1	40.3	22.0	8.0	0.7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2013년과 2015년 조사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 19세부터 조사가 이루어짐), 2017년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표 III-93 평소 주거 생각_3)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위: %)

연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3	5.5	29.1	36.7	25.1	3.6
2015	2.8	20.4	42.0	28.3	6.5
2016	6.5	20.5	41.6	26.7	4.7
2017	7.0	25.6	34.5	25.1	7.8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2013년과 2015년 조사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 19세부터 조사가 이루어짐), 2017년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5) 건강

(1) 신체 및 정신건강

5-1-1. 정기적인 운동습관

청년들의 건강 상태와 관련하여 정기적인 운동 실천율을 살펴보았다. 걷기 실천율은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루 1회 10분 총 30분 실천한 경우이며 2007년 20대의 경우 50.9%에서 2015년 50.8%로 큰 변화가 없었고 30대는 같은 기간 39.6%에서 39.0%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걷기 실천이 줄어드는 양상도 보여주고 있다.

표 III-94 정기적인 운동 실천율_걷기실천율

(단위: %)

연도	전체	19-29세	30-39세
2007	45.8	50.9	39.6
2008	46.9	55.1	41.6
2009	46.0	53.0	52.2
2010	40.9	50.9	38.3
2011	37.6	49.8	34.9
2012	38.7	50.6	39.0
2013	37.4	49.0	35.7
2014	41.3	51.9	37.1
2015	40.6	50.8	39.0

* 출처: 보건복지부(각 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걷기실천율.

* 주: 걷기실천율 -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비율. 만19세이상.

이번에는 같은 조건으로 1일 총 20분, 주3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실천한 비율을 살펴보자. 20대의 경우 2007년 15.7%에서 2013년 23.3%로 증가하였고 30대 역시 같은 기간 12.2%에서 18.5%로 증가하였다.

표 III-95 정기적인 운동 실천율_격렬한 신체활동실천율

(단위: %)

연도	전체	19-29세	30-39세
2007	13.8	15.7	12.2
2008	17.0	18.2	17.7
2009	17.7	20.8	16.5
2010	15.9	18.6	13.9
2011	13.9	14.5	14.2
2012	13.5	17.1	14.1
2013	17.1	23.3	18.5

* 출처: 보건복지부(각 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격렬한 신체활동실천율.

* 주: 격렬한 신체활동실천율 - 최근 1주일 동안 평소보다 몸이 매우 힘들거나 숨이 많이 가쁜 격렬한 신체활동을 1회 10분 이상, 1일 총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실천한 분율, 만19세 이상.

5-1-2. 비만율

청년 비만율은 20대의 경우 2007년 22.0%에서 2015년 23.5%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30대는 같은 기간 27.8%에서 32.9%로 크게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도 비만 문제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96 비만율

(단위: %)

연도	전체	19-29세	30-39세
2007	32.1	22.0	27.8
2008	31.0	23.0	28.0
2009	31.9	22.1	29.5
2010	31.4	20.5	31.0
2011	31.9	21.7	31.5
2012	32.8	22.4	32.5
2013	32.5	22.4	33.2
2014	31.5	23.9	31.8
2015	34.1	23.5	32.9

* 출처: 보건복지부(각 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비만유병률.

* 주: 비만율 - 체질량지수 25kg/m² 이상인 분율, 만19세이상.

5-1-3. 스트레스

청년들 중에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혹은 많이 느끼는 경우는 청년층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스트레스 비율은 2007년 20대의 경우 28.0%에서 36.9%까지 증가하였으며 30대도 같은 기간 28.0%에서 38.7%로 늘어났다.

표 III-97 스트레스

(단위: %)

연도	전체	19-29세	30-39세
2007	27.1	28.0	28.0
2008	28.9	32.6	33.6
2009	31.0	34.6	36.4
2010	28.2	32.1	32.9
2011	27.9	34.9	33.1
2012	27.0	34.0	30.1
2013	23.8	26.5	27.7
2014	25.5	28.9	34.0
2015	29.6	36.9	38.7

* 출처: 보건복지부(각 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스트레스 인지율.

* 주: 스트레스 -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분율. 만19세 이상.

5-1-4. 우울증

1년에 2주 이상 우울증을 겪은 비율은 청년층의 경우 20대와 30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대 우울증 비율은 2007년 9.7%에서 2015년 14.9%로 늘어났고 30대 역시 같은 기간 9.3%에서 10.3%로 증가하였다. 이 결과로 볼 때, 청년 건강 문제에 있어서 스트레스에 이어 우울증도 높아지고 있어 육체건강보다는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III-98 우울증

(단위: %)

연도	전체	15-29세	30-39세
2007	12.7	9.7	9.3
2008	14.5	12.4	10.8
2009	15.0	13.3	11.9
2010	12.8	11.8	9.1
2011	13.4	13.6	11.6
2012	12.9	9.3	10.8
2013	10.7	10.4	7.6
2015	13.3	14.9	10.3

* 출처: 보건복지부(각 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우울증상 경험률.

* 주: 우울증 -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분율. 만19세 이상.

5-1-5. 자살률

청년들의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단 건수로 2011년 이후 10대, 20대, 30대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10대는 2009년 10.7건에서 2016년 7.9건으로 감소하였고 20대 후반기는 같은 기간 29.3건에서 19.8건으로, 30대 후반 역시 31.5건에서 24.1건으로 줄어들었다.

표 III-99 자살률

(단위: 인구 10만 명당)

연도	전체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2009	31.0	10.7	20.3	29.3	31.2	31.5
2010	31.2	8.3	18.3	29.3	29.7	29.4
2011	31.7	8.9	17.7	30.1	30.4	30.6
2012	28.1	8.2	14.9	23.9	28.3	26.5
2013	28.5	7.9	14.5	21.7	27.8	28.9
2014	27.3	7.2	13.6	22.4	26.9	29.0
2015	26.5	6.5	13.2	19.9	24.7	25.5
2016	25.6	7.9	13.3	19.8	25.2	24.1

* 출처: 통계청(각 년도), 사망원인통계.

5-1-6. 흡연율

흡연율은 평생 담배를 5갑 이상 피웠으며 현재도 피고 있는 경우로 20대의 경우 2007년 27.8%에서 2015년 23.7%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30대 역시 2007년 32.0건에서 2015년 27.7건으로 낮아졌다.

표 III-100 흡연율

(단위: %)

연도	전체	19-29세	30-39세
2007	25.0	27.8	32.0
2008	27.3	33.9	32.4
2009	26.6	32.4	32.8
2010	26.9	27.8	35.0
2011	26.3	28.3	36.6
2012	25.0	28.0	32.5
2013	23.2	24.1	30.7
2014	23.3	22.5	30.0
2015	21.6	23.7	27.7

* 출처: 보건복지부(각 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현재흡연율.

* 주: 흡연율 -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분율. 만19세이상.

5-1-7. 음주율

청년들의 음주율을 보면, 20대는 2007년 68.9%에서 2015년 67.4%로 약간 감소하였다. 반면, 30대는 같은 기간 62.1%에서 65.5%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표 III-101 음주율

(단위: %)

연도	전체	19-29세	30-39세
2007	56.7	68.9	62.1
2008	58.7	69.9	65.5
2009	58.3	69.6	64.5
2010	59.3	67.3	67.5
2011	59.2	73.0	67.5
2012	56.6	66.6	63.9
2013	58.3	72.4	67.4
2014	58.1	69.1	66.4
2015	58.7	67.4	65.5

* 출처: 보건복지부(각 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월간음주율.

* 주: 음주율 - 최근 1년 동안 한달에 1회 이상 음주한 분율. 만19세이상.

5-1-8. 주관적 체형

15세에서 39세 청년들의 주관적 체형에 관한 질문은 2016년과 비교해 보통이라는 응답이 61.1%에서 54.4%로 감소한데 비해 비만이거나 말랐다는 응답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표 III-102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

(단위: %)

연도	매우 비만이다	약간 비만이다	보통이다	약간 마른편이다	매우 마른편이다
2016	2.5	20.4	61.1	14.6	1.4
2017	3.9	20.8	54.4	18.1	2.8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17년은 기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5-1-9. 주관적인 정신적 건강 수준

2017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서는 유럽연합이 사용하는 주관적인 웰빙 지수를 설문내용에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과 같은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임을 느낀다”는 질문에 “그렇다(대부분+항상)”는 응답은 37.8%로 나타났고 남자가 여자보다 연령이 어릴수록 긍정적인 응답비중이 높았다. 두 번째로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40.8%로 나타났으며 성별이나 연령별 결과는 앞선 질문과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세 번째로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은 36.9%였고 성별, 연령별 응답경향은 동일하였다. 이어서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는 응답은 24.6%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질문에 긍정적인 응답은 22.2%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다른 응답에 비해 이 경우 긍정적인 답변 비중이 낮았다. 주관적인 웰빙지수는 5가지 응답 결과를 합산해 4개 분위로 나눌 때 25%이하인 경우 주관적인 웰빙지수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별한다. 이 응답결과는 향후 국가간 비교분석이나 주관적인 웰빙에 대한 원인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III-103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임을 느낀다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20-29세	30-39세
2017	전혀 그렇지 않다	1.2	0.9	1.6	0.2	1.5	1.2
	때때로 그렇다	16.4	16.4	16.5	9.0	15.8	19.2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13.2	13.9	12.4	11.2	13.7	13.2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31.3	30.7	32.0	28.3	29.7	33.9
	대부분 그렇다	34.4	34.0	34.9	43.9	36.0	30.0
	항상 그렇다	3.4	4.1	2.7	7.4	3.3	2.5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표 III-104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20-29세	30-39세
2017	전혀 그렇지 않다	2.2	1.5	2.9	1.0	2.5	2.3
	때때로 그렇다	15.0	15.2	14.8	9.7	14.7	16.9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15.2	16.0	14.3	13.6	14.5	16.4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26.8	25.7	28.1	25.2	26.2	28.0
	대부분 그렇다	36.5	36.6	36.3	44.0	37.1	33.5
	항상 그렇다	4.3	5.0	3.6	6.5	5.0	2.9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표 III-105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20-29세	30-39세
2017	전혀 그렇지 않다	2.3	2.2	2.5	0.7	2.3	2.9
	때때로 그렇다	15.8	15.0	16.6	7.2	14.6	19.5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15.5	15.0	16.1	14.7	16.3	15.0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29.5	30.1	28.7	27.3	28.7	30.9
	대부분 그렇다	31.5	31.8	31.1	39.4	32.3	28.3
	항상 그렇다	5.4	5.8	4.9	10.8	5.7	3.4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표 III-106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20-29세	30-39세
2017	전혀 그렇지 않다	9.8	8.6	11.2	5.9	10.2	10.6
	때때로 그렇다	21.9	22.3	21.5	18.8	20.7	24.2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17.5	18.2	16.7	16.3	17.1	18.1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26.2	26.7	25.6	30.8	25.2	25.8
	대부분 그렇다	21.9	21.7	22.1	23.8	23.4	19.8
	항상 그렇다	2.7	2.5	2.9	4.4	3.4	1.4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표 III-107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20-29세	30-39세
2017	전혀 그렇지 않다	6.1	6.1	6.1	3.0	6.7	6.3
	때때로 그렇다	26.3	25.7	26.8	17.4	24.7	30.5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17.4	16.9	18.1	18.3	16.8	17.8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28.1	29.0	27.0	28.8	29.2	26.7
	대부분 그렇다	19.7	19.5	20.0	27.8	19.6	17.4
	항상 그렇다	2.5	2.9	2.0	4.7	3.0	1.2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의료

5-2-1. 청년 병원 이용

청년들의 병원 이용은 입원을 제외하고 병원이나 의원, 보건소나 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비율이며 2007년과 비교해 2015년 20대의 경우 18.6%에서 25.7%로 증가하였다. 30대의 경우도 같은 기간 23.0%에서 26.3%로 증가하였다.

표 III-108 청년병원이용

(단위: %)

연도	전체	19-29세	30-39세
2007	27.8	18.6	23.0
2008	30.0	21.4	20.2
2009	28.7	22.5	20.7
2010	31.4	23.2	24.9
2011	31.0	25.4	22.8
2012	30.7	25.7	24.4
2013	31.6	22.6	25.3
2014	31.6	25.9	24.2
2015	30.9	25.7	26.3

* 출처: 보건복지부(각 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2주간 외래이용률.

* 주: 청년병원이용 - 최근 2주 동안 입원을 하지 않고, 병의원(치과 포함)이나 보건소,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분을, 만19세 이상.

5-2-2.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

청년들의 민간 의료 보험 가입률은 10대나 20대, 30대 모두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10대는 2008년 69.3%에서 2014년 81.8%로 가입률이 증가하였고 20대는 같은 기간 63.2%에서 73.6%로, 30대도 같은 기간 77.8%에서 83.1%로 증가하였다.

표 III-109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

(단위: %)

연도	전체	10-19세	20-29세	30-39세
2008	67.0	69.3	63.2	77.8
2009	67.8	70.4	63.4	77.6
2010	70.7	74.0	68.8	79.4
2011	72.7	77.5	70.5	82.3
2012	73.3	78.9	71.8	81.5
2013	74.2	80.3	71.9	82.1
2014	75.3	81.8	73.6	83.1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각 년도), 한국의료패널.

* 주: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 - 개인단위 민간의료보험 가입률, 종신/연금보험 포함.

5-2-3. 성형수술 여부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에서 성형수술 여부를 물어본 결과 2016년 12.7%, 2017년 11.8%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연령별로 20대의 성형수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110 성형수술 경험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6	12.7	2.7	23.5	5.6	16.9	10.9
2017	11.8	2.2	22.3	3.7	13.6	12.4

* 주: 성형수술 경험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17년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5-2-4. 성형수술 목적

성형수술 목적으로 의료와 미용으로 구분해 본 결과 미용 목적이 거의 9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10대의 미용 목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16년도에 비해 2017년도 미용목적 비율은 90.0%에서 88.7%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1 성형수술 목적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6	의료	10.0	26.1	8.0	5.8	10.0	10.7
	미용	90.0	73.9	92.0	94.2	90.0	89.3
2017	의료	11.3	37.9	8.3	5.5	13.6	9.3
	미용	88.7	62.1	91.7	94.5	86.4	90.7

* 주: 성형수술을 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 의료는 화상치료나 안검하수 등의 의료 목적으로 시술을 한 경우이며, 미용은 쌍꺼풀, 보톡스, 지방제거술 등을 미용의 목적으로 시술한 경우를 말함.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17년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6) 문화와 가치관

(1) 문화 및 여가

6-1-1. 문화 및 여가생활 시간

청년들의 문화 및 여가 생활시간은 평일의 경우 2006년 10대는 감소하였고 20대와 30대는 등락을 거듭해오다 2014년 대비 2016년에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휴일은 보다 명확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15세에서 18세는 2006년 7시 30분에서 2016년 5시간 6분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와 30대는 변동폭이 큰 편으로 2014년 대비 2016년에 뚜렷한 감소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112 문화 및 여가생활 시간

(단위: 시간)

연도	전체 (평일)	연령			전체 (휴일)	연령		
		15-18세	19-29세	30-39세		15-18세	19-29세	30-39세
2006	3시간06분	3시간33분	2시간50분	2시간38분	5시간27분	7시간30분	5시간19분	4시간47분
2008	2시간58분	3시간19분	2시간34분	2시간17분	6시간40분	7시간35분	7시간46분	6시간02분
2010	4시간00분	3시간06분	3시간42분	3시간12분	7시간00분	6시간18분	7시간24분	6시간42분
2012	3시간18분	2시간36분	3시간06분	2시간28분	5시간06분	4시간48분	5시간36분	4시간48분
2014	3시간34분	3시간07분	3시간19분	3시간08분	5시간46분	5시간37분	6시간04분	5시간31분
2016	3시간06분	2시간42분	2시간54분	2시간48분	5시간00분	5시간06분	5시간18분	4시간48분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각 년도), 국민여가활동조사, 하루 평균 여가시간.

* 주: 2014년도 조사부터는 15-19세임.

6-1-2. 문화 및 여가생활 비용

청년들의 문화 및 여가생활 비용은 10대와 20대, 30대 모두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는 2006년 8만 원에서 2014년 6만 원대로, 20대는 16만 원에서 14만 원대로, 30대는 16만 원에서 15만 원대로 낮아졌다.

표 III-113 문화 및 여가생활 비용

(단위:천원)

연도	전체	10대	20대	30대
2006	142	89	166	168
2008	139	31	175	160
2010	168	62	205	196
2012	125	60	156	150
2014	130	61	147	156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각 년도), 국민여가활동조사, 월 평균 여가비용.

* 주: 2014년도 조사부터는 15-19세임.

6-1-3. 문화 및 여가생활 만족도

청년들의 문화 및 여가 생활 만족도는 2014년과 2016년에 7점 만점에 4점대 중반으로 문화 및 여가생활 만족도에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4.7점으로 가장 높고 10대가 4.4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III-114 문화 및 여가생활 만족도

(단위:점)

연도	전체	10대	20대	30대
2014	4.5	4.4	4.7	4.6
2016	4.6	4.4	4.7	4.5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각 년도), 국민여가활동조사, 여가생활 만족도.

* 주: 1) 2014년도 조사부터는 10대는 15-19세임.

2) 7점척도로 자신의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도록 함.

6-1-4. 독서율

청년들의 독서율은 20대는 증가하고 30대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20대 독서율은 2011년 89.5%였으나 2015년 91.1%로 약간 상승했고 30대 독서율은 같은 기간 85.3%에서 80.5%로 낮아졌다.

표 III-115 독서율

(단위:%)

연도	전체	19-29세	30대
2011	73.7	89.5	85.3
2013	72.2	89.0	83.4
2015	67.4	91.1	80.5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각 년도), 국민독서실태조사, 연간 독서율.

* 주: 1) 종이책+전자책 독서율임.

2) 2013년도는 18-29세임

(2) 가치관

6-2-1. 주관적 행복감

청년들의 주관적인 행복감을 살펴보면, 2013년 대비 2015년까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9세 이하는 2013년 6.5점에서 2015년 6.4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30대는 조사 기간 동안 줄곧 6.4점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116 주관적 행복감

(단위:점)

연도	전체	19-29세	30대
2013	6.3	6.5	6.4
2014	6.2	6.3	6.4
2015	6.2	6.4	6.4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각 년도), 사회통합실태조사, 어제의 주관적 정서 경험-행복감.

* 주: 점수범위: 1점(전혀 행복하지 않았다)-10점(매우 행복했다).

6-2-2.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역시 2013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세 이하는 2013년 5.7점에서 2015년 5.8점으로 0.1점 정도로 미미하게 증가했고, 30대는 같은 기간 5.8점을 지속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표 III-117 삶의 만족도

(단위: 점)

연도	전체	19-29세	30대
2013	5.7	5.7	5.8
2014	5.7	5.9	5.8
2015	5.8	5.8	5.8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각 년도), 사회통합실태조사, 삶에 대한 만족도.

* 주: 점수범위: 1점(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0점(매우 만족한다).

6-2-3. 주관적 계층의식

청년들의 주관적 계층의식 역시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29세 이하는 2013년 4.7점에서 2015년 4.8점으로 0.1점 가량 증가하는데 그쳤고 30대의 경우도 같은 기간 4.8점에서 5.1점으로 0.3점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 결과는 증가폭은 크지 않지만 자신들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약간씩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II-118 주관적 계층의식(사회통합실태조사)

(단위: 점)

연도	전체	19-29세	30대
2013	4.7	4.7	4.8
2014	4.8	4.8	5.0
2015	5.0	4.8	5.1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각 년도), 사회통합실태조사,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 주: 점수범위: 1점(매우 낮다)-10점(매우 높다).

6-2-4. 가치 항목별 선호도

청년들의 가치 항목별 선호도는 7점 척도로 1점에서 3점까지는 왼쪽 가치를, 5점에서 7점까지는 오른쪽 가치를 더 선호하는 방식으로 질문이 이루어져 있다. 먼저 일과 여가 중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를 살펴보면, 2016년도에 이어서 2017년도에도 일보다는 여가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현실과 이상 중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를 살펴보면, 이상보다는 현실을 더 중시하며 이러한 경향은 2017년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결과와 과정 중에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 살펴보면, 2016년도와 2017년도 공통적으로 과정 중시보다는 결과 중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개인과 집단 중에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개인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청년들은 여가보다는 일, 이상보다는 현실, 과정보다는 결과, 집단보다는 개인을 더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19 선호하는 가치(일 중시 vs 여가 중시)

(단위: %)

연도	일 ①	②	③	④	⑤	⑥	여가 ⑦
2016	3.1	13.0	18.4	24.8	22.3	16.2	2.1
2017	3.4	13.4	15.2	24.6	19.5	19.5	4.5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17년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표 III-120 선호하는 가치(현실 중시 vs 이상 중시)

(단위: %)

연도	현실 ①	②	③	④	⑤	⑥	이상 ⑦
2016	12.4	28.8	26.8	18.0	9.6	4.0	0.4
2017	11.6	30.8	23.9	18.6	7.8	5.9	1.4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17년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표 III-121 선호하는 가치(결과 중시 vs 과정 중시)

(단위: %)

연도	결과 ①	②	③	④	⑤	⑥	과정 ⑦
2016	9.7	21.1	22.8	25.3	14.5	5.4	1.2
2017	8.7	22.9	20.1	24.7	12.0	9.0	2.6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17년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표 III-122 선호하는 가치(개인 중시 vs 집단 중시)

(단위: %)

연도	개인 ①	②	③	④	⑤	⑥	집단 ⑦
2016	6.3	13.0	22.1	37.4	14.6	5.6	1.0
2017	4.0	14.0	20.3	36.5	13.3	9.5	2.4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17년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6-2-5.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2013년부터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으로 무엇을 중시하는지 살펴보면, 15세에서 39세 청년들은 화목한 가정을 1순위로 꼽았으나 2017년에는 재산이나 경제력을 1순위(27.8%)로 응답하였다. 반면, 자아성취는 2013년 15.0%에서 2017년 10.1%로 낮아졌고 직업이나 직장이라는 응답도 7.1%에서 4.5%로 낮아졌다.

표 III-123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단위: %)

연도	화목한 가정	재산· 경제력	자아 성취	직업· 직장	건강	친구· 대인 관계	감사· 긍정적 태도	꿈· 목표 의식	연인(이 성관계 등)	종교 생활	기타
2013	27.9	23.2	15.0	7.1	6.9	4.6	8.9	3.3	2.4	0.7	—
2015	27.6	23.3	17.5	7.3	6.2	3.1	8	4.4	1.5	1.0	0.1
2016	27.1	24.3	12.3	11.4	8.0	5.0	4.9	4.9	1.4	0.6	—
2017	26.4	27.8	10.1	4.5	14.2	4.3	6.4	4.7	0.7	0.7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2013년 2015년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 19세부터 조사가 이루어짐). 2017년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7) 관계와 참여

(1) 관계

7-1-1. 사회적 관계망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망은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긴급 상황 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로 측정하여 살펴보았다. 10대나 20대, 30대와 상관없이 청년들은 2011년보다 2015년에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나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에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소폭 증가하였다.

표 III-124 긴급 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율

(단위: %)

연 령	항목	2011	2015
전체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75.9	76.8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48.6	50.1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81.0	82.4
13~18세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	—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58.6	63.8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84.6	89.0
19~29세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82.3	82.6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59.2	61.5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88.4	88.8
30~39세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77.7	78.5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57.6	59.1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86.7	86.5

* 출처: 통계청(각 년도), 『사회조사』.

* 주: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7-1-2. 부모와의 교류(가구주)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청년들에게 부모와의 교류를 물어본 결과, 13세에서 29세의 경우 거의 매일 만나는 경우는 감소하고 거의 만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은 2008년 1.1%에서 2014년 3.1%로 증가하였다. 30대는 거의 매일 만난다는 응답이 같은 기간 5.1%에서 6.1%로 증가했으나 거의 만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도 같은 기간 1.6%에서 2.2%로 증가하였다.

두 경우 모두 한 달에 한 두 번 만난다는 응답비율이 40% 이상으로 높았고 같은 기간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반면, 1년에 몇 번 만난다는 응답비율은 두 경우 모두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125 부모와의 만남 정도(가구주)

(단위: %)

연령	항목	2008	2010	2012	2014
전체	거의 매일	4.7	5.2	5.3	5.1
	일주일에 한두번	14.6	16.9	17.8	16.7
	한달에 한두번	38.3	39.2	40.6	41.8
	1년에 몇 번	40.5	36.5	33.9	34.2
	거의 만나지 않음	1.8	2.2	2.4	2.2
13-29세	거의 매일	4.3	4.8	4.1	3.6
	일주일에 한두번	16.7	19.0	23.9	17.6
	한달에 한두번	47.8	46.9	43.7	48.8
	1년에 몇 번	30.1	26.9	25.0	26.8
	거의 만나지 않음	1.1	2.4	3.3	3.1
30-39세	거의 매일	5.1	6.2	6.4	6.1
	일주일에 한두번	17.8	20.2	20.6	19.9
	한달에 한두번	40.7	41.7	43.9	44.2
	1년에 몇 번	34.9	29.6	27.2	27.7
	거의 만나지 않음	1.6	2.2	1.8	2.2

* 출처: 통계청(각 년도), 『사회조사』,

* 주: 2008년과 2010년은 15-29세임.

7-1-3.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통계청 사회조사에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를 물어본 결과, 청년층은 가족과 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10대와 20대, 30대 모두 가장 높았다. 정부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2002년부터 모든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개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도 모든 경우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반면,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모든 경우 크게 감소하였으며 정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은 5%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126 부모부양에 대한 견해

(단위: %)

연도	전체				13-19세				20-29세				30-39세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002	9.6	70.7	18.2	1.3	11.2	67.5	19.3	1.8	9.0	66.5	23	1.3	7.9	68.3	22.5	1.1
2006	7.8	63.4	26.4	2.3	8.4	58	31.3	2.2	6.7	61.4	29.9	1.9	6.0	60.9	31.3	1.8
2008	11.9	40.7	43.6	3.8	12.1	41.7	42.9	3.3	10.8	39.1	47.1	3.0	9.8	37.4	49.1	3.7
2010	12.7	36.0	47.4	3.9	11.8	42.0	43.2	2.9	10.8	37.3	49.5	2.4	11.2	32.4	52.8	3.7
2012	13.9	33.2	48.7	4.2	10.9	37.2	48.5	3.3	11.2	34.0	51.2	3.6	11.1	30.3	54.8	3.7
2014	16.6	31.7	47.3	4.4	13.7	38.9	43.7	3.6	13.8	33.6	49.6	3.1	14.2	28.7	52.7	4.2
2016	18.6	30.8	45.5	5.1	15.8	36.7	43.8	3.8	14.4	31.6	49.9	4.4	15.7	29.8	50.5	4.1

* 출처: 통계청(각 연도), 『사회조사』.

* 주: 1) 기타 항목 제외를 제외한 비율임

2) 2010, 2008, 2006은 15-19세, 2002년, 2008년과 2010년은 15-29세임.

* 항목: ①스스로 해결, ②가족, ③가족과 정부/사회, ④정부/사회

7-1-4. 가족관계 만족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가족관계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10대, 20대, 30대 모두 만족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10대는 2006년 54.6%에서 2016년 72.8%로 만족도가 상승하였고 20대도 같은 기간 53.5%에서 65.2%로, 30대 역시 56.3%에서 62.8%로 증가하였다.

표 III-127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

연도	전체	13-19세	20-29세	30-39세
2006	50.3	54.6	53.5	56.3
2008	56.1	62.2	65.4	62.0
2010	54.8	62.7	64.8	59.7
2012	56.1	68.0	65.0	62.3
2014	55.2	70.8	63.6	61.5
2016	56.5	72.8	65.2	62.8

* 출처: 통계청(각 년도), 『사회조사』.

* 주: 1) '매우만족', '약간만족'에 응답한 비율임.
2) 2006, 2008, 2010의 경우 15-19세임

7-1-5. 친한 친구 수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2016년부터 친한 친구가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친한 친구가 있다는 응답 결과는 2016년 91.3%에서 2017년 96.1%로 상승했고 친한 친구 수는 같은 기간 3.2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났다. 성별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친한 친구 비율이 높았으나 친한 친구 수는 여가보다는 남자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친한 친구 비율이 높았고 친한 친구 수는 10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8 친한 친구

(단위: %, 명)

연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6	%	91.3	90.6	92.1	94.6	93.4	88.1
	평균	3.2	3.5	2.9	3.7	3.2	2.9
2017	%	96.1	95.3	97.0	95.1	97.3	95.2
	평균	5.0	5.2	4.7	6.4	5.1	4.3

* 주: 친한 친구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17년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7-1-6. 세대 갈등

세대 갈등은 청년들에게 기성세대와 노인세대를 구분해 질문하였다. 기성세대와의 세대 갈등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세대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50% 이상 그렇다고 답변했고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는 응답은 22.5%에 그쳤다.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낮은 동의 결과(19.5%)를 보여주었다.

노인세대에 대해서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는 질문에 대해 44.7%가 동의하였다.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는 질문에 대해 37.3%가 동의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34.4%가 동의해 이 역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질문에 대해서 32.8%가 동의해 유사한 응답 경향을 보여주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청년들의 경우 기성세대보다는 노인세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큰 것으로 보이며 연도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9 세대 갈등

(단위: %)

연도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			노인에 대한 생각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2016	전혀 그렇지 않다	0.6	2.4	1.8	2.2	1.1	1.3	4.0
	그렇지 않다	9.7	26.5	29.8	18.5	20.0	21.5	23.3
	보통이다	31.9	42.7	39.0	41.0	38.5	42.5	43.5
	그렇다	50.3	25.6	26.1	33.4	36.7	31.1	24.6
	매우 그렇다	7.5	2.8	3.3	5.0	3.7	3.6	4.5
2017	전혀 그렇지 않다	1.1	3.8	3.1	2.7	1.4	2.4	2.8
	그렇지 않다	12.1	32.3	32.2	15.7	19.9	19.0	17.3
	보통이다	29.1	41.5	43.3	36.9	41.3	44.2	47.1
	그렇다	49.9	20.8	18.7	40.3	33.7	30.8	27.2
	매우 그렇다	7.7	1.7	2.8	4.4	3.6	3.6	5.6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17년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참여

7-2-1. 자원봉사 참여

청년들의 자원봉사 참여는 2006년 10대의 경우 52.4%에서 2015년 76.6%로 증가하였다. 20대의 경우도 소폭이긴 하지만 같은 기간 10.3%에서 11.6%로 증가하였다. 반면 30대는 같은 기간 11.6%에서 10.6%로 소폭 감소하였다. 반면, 자원봉사 활동 시간은 2013년 대비 2015년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표 III-130 자원봉사참여(참여여부, 참여횟수, 참여기간)

(단위: %, 횟수, 시간)

연도		전체	13-19세	20-29세	30-39세
2006	여부	14.6	52.4	10.3	11.6
	횟수	—	—	—	—
	시간	—	—	—	—
2008	여부	14.3	59.5	8.3	10.2
	횟수	—	—	—	—
	시간	—	—	—	—
2009	여부	19.3	79.8	13.9	13.6
	횟수	—	—	—	—
	시간	—	—	—	—
2011	여부	19.8	77.7	13.2	11.2
	횟수	—	—	—	—
	시간	—	—	—	—
2013	여부	19.9	80.1	13.7	11.2
	횟수	7.6	5.4	7.4	7.6
	시간	25.1	16.4	28.7	27.3
2015	여부	18.2	76.6	11.6	10.6
	횟수	7.8	5.4	8.3	6.9
	시간	24.4	16.0	30.6	20.8

* 출처: 통계청(각 연도), 『사회조사』

* 주: 1) 자원봉사참여 여부: 연간 평균 참여여부

2) 자원봉사참여 횟수: 연간 평균 참여횟수

3) 자원봉사참여 시간: 연간 평균 참여시간

4) 2003년, 2006년, 2009년의 경우 15세-19세임

청년들의 기부활동을 살펴보면, 자원봉사활동과 마찬가지로 2006년 대비 2015년 참여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의 경우 2006년 15.3%에서 2015년 31.0%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20대는 19.2%에서 20.8%로 증가했고, 30대는 36.3%에서 32.2%로 소폭 감소하였다. 반면, 현금 기부는 10대, 20대, 30대 모두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었고 물품 기부 역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표 III-131 기부활동(기부여부, 현금기부여부, 물품기부여부)

(단위: %)

연도		전체	13-19세	20-29세	30-39세
2006	기부	31.6	15.3	19.2	36.3
	현금	-	-	-	-
	물품	-	-	-	-
2009	기부	32.3	19.4	23.2	38.4
	현금	-	-	-	-
	물품	-	-	-	-
2011	기부	36.4	41.1	25.5	40.2
	현금	34.8	39.6	23.7	38.3
	물품	8.5	4.0	5.2	10.2
2013	기부	34.6	30.1	24.8	38.0
	현금	32.5	28.2	23.1	35.6
	물품	5.9	4.7	3.3	6.7
2015	기부	29.9	31.0	20.8	32.2
	현금	27.4	28.4	18.8	28.7
	물품	6.2	5.7	3.9	7.6

* 출처: 통계청(각 연도), 『사회조사』,

* 주) 2003년, 2006년, 2009년의 경우 15세-19세임

7-2-3. 단체참여

청년들의 단체활동은 10대의 경우 2003년 23.7%에서 2015년 31.9%로 증가하였고 20대 역시 같은 기간 41.4%에서 44.9%로 상승하였다. 30대 역시 47.1%에서 48.1%로 소폭이기는 하지만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단체활동 참여율은 연령별로 볼 때 10대보다는 20대, 20대 보다는 30대의 참여율이 높은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132 단체참여

(단위: %)

연도	전체	13-19세	20-29세	30-39세
2003	44.8	23.7	41.4	47.1
2006	38.8	19.3	32.7	39.4
2009	39.8	22	35.6	40.3
2011	46.6	32.4	44.1	46.2
2013	50.1	35.1	48	49.2
2015	48.9	31.9	44.9	48.1

* 출처: 통계청(각 년도), 『사회조사』.

* 주: 2003년, 2006년, 2009년의 경우 15세-19세임

7-2-4. 투표율

청년들의 투표율은 지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 모두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대선 투표율을 보면, 20대 전반의 경우 2002년 57.9%에 불과했으나 2017년 77.1%로 크게 증가하였다. 20대 후반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55.2%에서 74.9%로 투표율이 증가하였다. 30대도 대선 투표율이 증가하였는데 다만 증가폭이 20대보다 작았다.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유사한 투표율 증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 20대 전반의 투표율은 39.9%였으나 2016년에는 55.3%로 증가하였다. 20대 후반도 같은 기간 34.2%에서 49.8%로 증가해 젊은층의 투표율 상승경향을 보여주었다. 한편, 지방 선거 역시 동일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증가폭이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133 투표율

(단위: %)

선거	년도	전체	19세	20대 전반	20대 후반	30대 전반	30대 후반
대통령선거	2002	70.8	—	57.9	55.2	64.3	70.8
	2007	63.0	54.2	51.1	42.9	51.3	58.5
	2012	75.8	74.0	71.1	65.7	67.7	72.3
	2017	77.2	77.7	77.1	74.9	74.3	74.1
국회의원 선거	2000	57.2	—	39.9	34.2	45.1	56.5
	2004	60.6	—	46.0	43.3	53.2	59.8
	2008	46.1	33.2	32.9	24.2	31.0	39.4
	2012	54.2	47.2	45.4	37.9	41.8	49.1
	2016	58.0	53.6	55.3	49.8	48.9	52.0
지방선거	1998	52.7	—	37.8	30.5	40.3	51.8
	2002	48.9	—	36.3	27.0	34.5	44.8
	2006	51.6	37.9	38.3	29.6	37.0	45.6
	2010	54.5	47.4	45.8	37.1	41.9	50.0
	2014	56.8	52.2	51.4	45.1	45.1	49.9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각 년도)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 주: 1) 투표율=(투표자수 ÷ 선거인수) × 100.

2) 각 선거의 전체 투표율은 실제 투표율이고, 성 및 연령별 투표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후 실시하는 투표율 표본조사의 결과임

7-2-5. 정부 및 공공기관 신뢰도

정부와 공공기관 신뢰도는 한국종합사회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중앙정부의 신뢰도보다는 지방정부의 신뢰도가 높았고 국회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부 및 공공기관의 신뢰도가 점점 낮아지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134 정부 및 공공기관 신뢰도

(단위: %)

연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전체	13-19	20-29	30-39	전체	13-19	20-29	30-39	전체	13-19	20-29	30-39
2003	1.47	1.5	1.44	1.42	1.51	1.53	1.47	1.44	1.23	1.19	1.18	1.19
2004	1.45	1.47	1.40	1.41	1.54	1.51	1.48	1.46	1.19	1.16	1.14	1.15
2005	1.51	1.58	1.54	1.51	1.61	1.60	1.57	1.56	1.22	1.20	1.17	1.17
2006	1.57	1.73	1.62	1.58	1.62	1.64	1.58	1.56	1.27	1.29	1.24	1.23
2007	1.58	1.70	1.67	1.60	1.63	1.69	1.67	1.60	1.28	1.31	1.29	1.24
2008	1.56	1.52	1.52	1.48	1.61	1.57	1.57	1.53	1.3	1.29	1.26	1.24
2009	1.59	1.61	1.57	1.54	1.63	1.76	1.66	1.58	1.25	1.25	1.24	1.21
2010	1.65	1.64	1.60	1.55	1.69	1.77	1.67	1.62	1.33	1.31	1.29	1.26
2011	1.62	1.65	1.62	1.57	1.62	1.67	1.63	1.56	1.34	1.32	1.33	1.29
2012	1.63	1.60	1.61	1.55	1.69	1.60	1.6	1.53	1.32	1.33	1.32	1.27
2013	1.65	1.60	1.60	1.61	1.67	1.69	1.66	1.63	1.33	1.34	1.30	1.31

*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각 년도), 『한국종합사회조사』.

* 주: 기관에 대한 신뢰는 매우 신뢰(3), 다소 신뢰(2), 거의 신뢰하지 않음(1)에 대한 평균값임

7-2-6. 의견 표명 행동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행동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반대 의견 표시 방법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SNS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는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31.6%였고 40.4%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변해 참여 반대의사가 더 높게 나타났다.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뱃지 등을 착용하기”는 참여 의사가 30.0%,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41.0%로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서명에 참여하기”는 참여 의사가 38.5%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33.1%)보다 높았다. 이외에 다른 참여 방식의 경우에도 참여 의사보다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더 높았다. 한편, 참여 방법 중에서는 서명에 참여하기에 대한 참여 의사가 가장 높았으며 항의 전화하기가 가장 낮았다.

표 III-135 반대 의견 제시 방법 참여

(단위: %)

연도		SNS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뱃지/팔찌/리본 등을 착용/부착	서명에 참여하기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항의전화하기
2016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14.3	16.5	14.9	24.4	—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24.4	25.2	19.9	33.5	—
	보통이다	27.8	25.3	31.0	29.5	—
	아마도 참여함	30.5	28.4	28.2	11.2	—
	확실히 참여함	3.0	4.6	6.0	1.5	—
2017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12.9	13.0	10.4	17.0	22.2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27.5	28.0	22.7	34.1	34.5
	보통이다	28.0	29.0	28.4	29.4	25.7
	아마도 참여함	28.1	25.9	32.9	17.5	14.8
	확실히 참여함	3.5	4.1	5.6	2.1	2.8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항의전화하기'는 2017년에 새로 추가된 항목임.

7-2-7. 정치적 효능감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서 정치적 효능감 대해 조사하였다.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에 긍정적인 응답(그렇다+매우그렇다)이 38.4%로 부정적인 응답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에 45.2%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13.9%가 부정적인 응답을 나타냈다. 또한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질문에 33.0%의 응답자들이 그렇다라고 응답을 하였다.

표 III-136 정치적 효능감_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20대	30대
2017	전혀 그렇지 않다	2.6	2.9	2.2	2.6	1.6
	그렇지 않다	16.9	16.0	17.9	16.4	13.8
	보통이다	42.0	39.4	44.9	42.5	41.6
	그렇다	33.8	35.5	32.0	34.2	36.9
	매우 그렇다	4.6	6.2	2.9	4.2	6.1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표 III-137 정치적 효능감_2)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20대	30대
2017	전혀 그렇지 않다	1.7	1.8	1.5	1.9	1.6
	그렇지 않다	12.2	11.9	12.6	11.8	11.0
	보통이다	40.9	39.1	42.9	38.9	41.0
	그렇다	40.0	41.3	38.6	42.7	40.1
	매우 그렇다	5.2	5.9	4.4	4.7	6.4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표 III-138 정치적 효능감_3)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20대	30대
2017	전혀 그렇지 않다	3.8	4.4	3.2	3.7	3.8
	그렇지 않다	19.8	20.3	19.3	20.1	19.1
	보통이다	43.4	41.9	45.1	42.0	44.3
	그렇다	29.7	29.7	29.6	30.5	29.9
	매우 그렇다	3.3	3.6	2.9	3.6	2.9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제 IV 장

청년정책 법률 및 추진체계, 정책사업 진단

1. 청년 정책 법률 현황과 문제점
2. 청년 정책추진체계 진단
3. 청년정책 사업 추진동향

제 IV 장

청년정책 법률 및 추진체계, 정책사업 진단¹⁴⁾

1. 청년정책 법률 현황과 문제점

1) 청년정책 법률 현황

2017년 10월 기준으로 청년정책 법률에 대한 개정 및 입법 발의 현황을 살펴보면, 청년고용법 개정 법률안과 청년기본법안이 상당 수 발의 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통해 청년의 일자리 뿐 아니라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청년고용법 개정 법률안의 경우, 2016년 12월 환경노동위원장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 이후에도 2017년에 총 8개의 법안이 추가로 발의되었다. 또한 청년기본법안의 경우, 현재까지 법안 통과가 이루어진 것은 없으나 19대(3개)와 20대(7개) 국회에 걸쳐서 총 10개 법안이 상정되었다. 그 중에서 19대 국회의 법안 3개는 임기 만료되었고, 20대 국회에서는 최근 강창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년발전지원 기본 법안을 포함하여 총 7개의 법안이 현재 각 해당 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 밖의 청년 대상 기타 법안들 또한 창업지원, 병역, 국민연금, 첫 일자리 지원, 청년특별위원회 구성, 청년세, 청년기본소득을 비롯하여 최근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의 후계 농업인에 대한 직불금 지급 법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9321)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청년 대상 정책 법안이 심의 중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청년정책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어 중앙정부보다 활발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2017년 10월 기준, 전체 17개 시(특별(지치)시 및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강원, 경북,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14개의 시·도에서 청년기본조례가 시행중이다.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도 동시에 마련되어 청년정책 추진에 노력하고 있다.

14) 이 장은 이윤주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또한 시·군·구 단위로도 청년기본조례 및 청년일자리창출관련 조례가 92개로서 상당 수 존재한다. 특히, 광주광역시의 경우 네 개의 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에서 청년기본조례와 일자리창출 관련 조례가 통과되어 시행중이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 발의 현황 및 내용

청년고용법의 주요 내용은 청년고용할당제의 적용범위를 민간 기업까지 확대하고 고용할당률을 높이는 부분(3% → 5%)과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청년고용의무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부분, 각종 청년수당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청년 연령 규정 변경, 정책 시행 적용 시점을 연장하거나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본회의를 거쳐 원안이 가결되어 2016년 12월에 공포된 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장이 발의한 것으로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4213, 공포번호 14501)이다. 그 결과,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청년고용할당제는 2018년까지 연장되었다. 이 법안에서 청년의 범위는 2004년 개정 당시와 동일하게 유지되어 취업을 원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청년 고용 측면에 있어서 정책 적용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과 동시에 청년 전체를 포괄하는 보편성을 지니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한편, 이를 보완책 중 하나로서 19대와 20대 국회를 걸쳐 보편적으로 청년의 기본 생활 안정 보장을 위해 발의된 청년기본법안의 경우 현재 심의 절차가 중단된 가운데 시한 연장만 이루어진 상태로 남아있다.

표 IV-1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발의) 내용

법안명	주요내용	비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조항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2016년 12월 환경노동위원장 제안 (의안번호 4213) 제346회 국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아래 7건의 법률안 심사를 거쳐 개정안 내용 일부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한 다음 위원회 안으로 제안

*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에서 2017. 9. 2 인출.

청년고용법 개정에는 다음 <표 IV-2>에서 보여주듯이 그동안 발의된 7개의 법안 내용이 반영되었다.

표 IV-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 관련 법률안 (2016년 이전)

법안명	주요 내용	정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0인)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인면서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	더불어 민주당 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1인)	종사자가 300명 이상인 민간기업도 청년의무고용제 대상에 포함하고, 청년고용할당률을 3%에서 5%로 늘림.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매년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부담금을 부과·징수함.	더불어 민주당 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의의원 등 14인)	종사자가 300명 이상인 민간기업도 청년의무고용제 대상에 포함하고, 청년고용할당률을 3%에서 5%로 늘림. 청년 미취업자 부담금 제도를 2020년까지 연장.	국민의당 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의원 등 10인)	청년수당, 청년배당과 관련하여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활동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 청년 미취업자에게 월 최저임금액의 30% 이상의 범위 내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더불어 민주당 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2인)	종사자가 300명 이상인 민간기업도 청년의무고용제 대상에 포함하고, 청년고용할당률을 3%에서 5%로 늘림. 청년 미취업자 부담금 제도를 2020년까지 연장.	국민의당 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37인)	청년 미취업자에게 월 최저임금액의 30%이상 범위에서 취업활동지원금을 지급.	더불어 민주당 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1인)	종사자가 300명 이상인 민간기업도 청년의무고용제 대상에 포함하고, 청년고용할당률을 3%에서 5%로 늘림. 청년 미취업자 부담금 제도를 2020년까지 연장.	정의당 법안

*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에서 2017. 9. 2 인출.

2017년 10월 기준, 2016년 12월에 환경노동위원장이 발의한 청년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2004213, 공포번호 14501)은 적용 기간 연장 이후에도 꾸준히 청년고용법의 입법 발의는 지속되고 있다. 입법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청년의무고용제 대상 포함 여부 및 청년고용할당율 정원인 3%인 현행법 상 청년고용 비율을 5%로 증가 여부 등과 같이 청년 고용할당율을 높이고자 하는 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 해당 법안을 이행한 기업 및 단체에게는 인센티브를 또는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는 패널티를 부과함으로써 이행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또한 구체적인 안으로서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서 제시하였듯이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할당정원을 강제하는 것은 기업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고 적용받는 청년의 범위와 이행여부에 따라 받게 되는 패널티 및 인센티브 등의 문제 등이 남아있어 법안 통과까지는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표 IV-3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입법 발의 현황(2017년 1월 ~ 2017년 10월)**

법안명	제안일자	주요내용	비고
청년고용기회공정화를 위한 노조 채용비리 근절촉구 결의안 (신보라의원 등 33인)	2017.3.2.	청년고용기회 공정화를 위한 노조 채용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	자유한국당 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용수 의원등 12인)	2017.4.6.	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납입하여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비용 총당	자유한국당 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 의원등 11인)	2017.5.11.	청년고용특별위원회 위원 비율을 20%이상 청년에게 할애하여 관련 대책 수립시행에 있어 청년층의 의견반영 증대	더불어민주당 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34인)	2017.6.29.	농어촌 생산, 복지, 서비스 분야의 청년 취업을 촉진 및 기회확대	더불어민주당 법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2017.7.27.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때 기간의 정함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법률 명시	국민의당 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7.8.17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장은 매년 정원의 5%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확대	더불어민주당 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1인)	2017.8.29.	취업지원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화	더불어민주당 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2017.8.30.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의무를 5%로 조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미취업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법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주의원 등 10인)	2017.9.7.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규모에 비례하여 최대 5%씩으로 확대	국민의당 법안

* 출처: 국회의원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에서 2017. 10. 5 인출.

(2) 청년기본법(안) 입법 발의 현황과 내용

청년기본법(안)의 경우, 19대와 20대 국회를 거치면서 총 7개가 발의된 상황이다(2017년 10월 기준). 청년기본법의 경우 청년고용법에 비해서 정책대상의 범위가 넓고, 법의 내용, 청년 참여 방식에 있어서 고용 뿐 아니라 청년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서 각 소관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보면 청년의 연령범위, 청년정책의 부처 간 상충,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역할 분담 등에 있어 사회적인 합의가 요구되는 부분들이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서의 청년 관련 법률 발의(안)에서도 주로 19세-34세를 청년으로 지칭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입법례 및 정책을 살펴보면, 청년에 대한 연령 범위가 상이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국회입법조사처, 201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경우 청년의 연령 범위를 15-34세 이하를 한정하고 있으며, 청년고용법은 15-29세 이하로 설정되어 있어 유사한 형태의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제시하고 있는 청년의 범위가 각기 다르게 설정되어있다. 한편, 청년기본법의 경우 청년의 범위에 있어서 세 개의 법안(박홍근, 김해영,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에서는 청년을 19-34세로 제시하였다. 또한 19-39세로 청년을 정의한 법안(신보라, 이원욱, 강창일의원 대표발의)도 공존하고 있어 청년기본법안 내에서도 청년의 연령 범주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한편, 청년 기본법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보다 지역자치단체가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유연하게 청년의 범위를 적용하고 있다. 지역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를 보면, 다섯 개의 연령 범위로 청년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5-29세(서울, 세종, 경기, 충북, 울산), 18-34세(충남, 부산), 18-39세(전북, 전남), 19-34세(세종, 경남, 대전), 19-39세(광주, 대구)로 청년을 정의하였다. 하한연령에 있어서는 다소 지역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19세-34세를 청년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년기본법안과 청년기본조례를 살펴보면 지역에 따라 연령범위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정책 대상으로서 청년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통해 발생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청년 정책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령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생물학적 차원에서 고정 연령을 규정하기 보다는 사회적 위치와 역할, 그리고 사회적 관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유동성있게 주체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Neugartan과 Datan(1996)의 연구에서도 제시했듯이 각 사회마다 나이를 통해 개인의 행동과

모습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해당하는 조직이나 제도 내에서 구성원에게 요구하고 바라는 위치와 그에 해당하는 역할이 나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를 확대하면 정책적으로 청년에게 지원하는 법안이나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 청년 연령을 규정하게 되면 그에 따라 사회적으로 구성원에게 요구하는 지위와 역할, 그리고 구성원이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회적으로 약속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논리는 역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즉, 사회에서 청년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하게 되면 그것을 반영하여 청년을 지원하는 법·제도와 함께 정책에서 또한 사회적 통념에 따라 청년에 대한 범위 규정이 변화를 겪게 된다. 현재 우리사회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및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과거에 비해 청년이 독립된 경제활동 시작을 위한 진입 연령이 연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가들은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청년계층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인식 등도 고려하여 청년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의 연령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보다도 현 사회에서 청년의 존재에 대한 인식 정도와 청년의 자립 상황 및 시기 등을 충분히 숙고하여 사회구성원 간의 충분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① 19대 국회(2012.5.30.~ 2016.5.29.) 청년기본법(안) 청년관련 법안 발의 결과

19대 국회에서 박기춘 의원을 시작으로 발의된 청년기본법(안)은 청년의 연령 규정을 1940세로 광범위하게 정의하면서 정책대상으로서 청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박기춘 의원은 여성가족부에서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것으로 제시함에 따라 청년을 청소년기에서 연속되는 개념으로써 생애주기적 접근에 기반을 두고 제안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어 김상민 의원 또한 19-39세로 청년기본법(안)에서 청년을 정의하면서 기획재정부 소관으로서 대통령소속 청년발전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김광진 의원의 경우, 국무조정실에서 청년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대통령소속 청년발전위원회를 기반으로 삼는 것을 제시하였으며 청년의 연령에 있어서는 1934세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현재는 세 개의 법안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가 된 상황이다.

② 20대 국회(2016.5.30.~ 2020.5.29.) 청년관련 법안 발의 현황

20대 국회에서는 신보라 의원의 청년기본법(안) 을 시작으로 박홍근 의원, 이원욱 의원, 김해영 의원, 박주민 의원, 강창일 의원이 청년관련 기본법(안)을 발의한 상태로 신보라 의원의 청년청 신설을 의미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까지 포함하면, 2017년 현재 청년 기본법에 관련한 법안은 20대 국회에 걸쳐 총 8개 정도가 발의된 상태이다. 강창일 의원의 경우 18세로 하한

연령을 규정한 것 이외에 각 법안들에서 청년의 하한연령은 19세로 제시하고 있다. 각 법안들의 상한연령은 34세나 39세로 30세를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의 발의(안)을 살펴보면, 청년기본계획은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청년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은 대상 중심 기본법률에서 정책의 방향을 다루는 내용으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주무 부처에 대해서 각 법안들이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신보라 의원과 박주민 의원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담당하고, 강창일 의원 안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청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행정부처가 아닌 국무총리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주체로 제시한 경우는 3개 법안(박홍근, 이원욱, 김해영 의원안)이었다.

표 IV-4 20대 국회 청년 관련 기본법안 입법 발의 현황 (2017년 10월 기준)

	기구명	청년정의	소속 및 구성	기능	기본계획수립 주체	정당
청년발전지원기본법안 (강창일 의원 등 12인, 2017.6.30.)	청년발전지원 위원회	18-39세	대통령	기본계획 심의 조정 청년발전 지원기금 설치	기획재정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공동	더불어 민주당
청년기본법안 (박주민의원 등 26인, 2017.4.13.)	청년위원회	19-34세	대통령	기본계획 심의조정	기획재정부장관	더불어 민주당
청년발전기본법안 (김해영의원 등 12인,2016.12.2.)	청년정책 조정회의	19-34세	국무총리	기본계획 심의조정	국무총리	더불어 민주당
정부조직법일부개정안 (신보라 의원 등14인, 2016.11.14.)	청년청		기획재정부 장관	청년문제 전담		자유 한국당
청년기본법안 (이원욱의원 등 12인,2016.8.24.)	청년정책 위원회	19-39세	국무총리	기본계획 심의조정	국무총리	더불어 민주당
청년정책기본법안 (박홍근의원 등 15인,2016.8.17.)	청년발전 위원회	19-34세	국무총리	기본계획 심의조정	국무총리	더불어 민주당
청년기본법안 (신보라의의원 등 122인,2016.5.30)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19-39세	국무총리	기본계획 심의조정	기획재정부장관	자유 한국당

*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에서 2017. 10. 7 인출.

* 자료: 김기현, 하형석 외 (2016).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p.147 재구성

조정기구 측면에 있어서는 대부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제안하고 있으며 박주민의원의 경우만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을 위원장으로 두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청년 정책에 대한 기본 내용에 있어서는 청년의 참여와 권리, 청년 일자리, 청년 주거, 청년의 교육 및 학습, 청년의 문화생활 등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가장 먼저 입법 발의 되었던 신보라 의원의 청년기본법안의 경우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때 상정되어 제안 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에 회부된 상황이다. 신보라 의원의 청년기본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가 소관위원회로써 검토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있어 취업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의 지원과 청년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한편, 청년을 19-39세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 청년의 연령 범위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타법률, 현행 통계 등과 연령 상 상충될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총괄부처로 기획재정부가 적정한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다. 청년 정책은 고용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전반에 걸쳐 있는데 고용이라는 경제 정책에 너무 초점을 맞추어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비경제분야의 청년 문제에 대한 총괄과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청년권익증진 마련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으로 규정되는 사항이 많아 기본법에 따라서 정책을 수립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끝으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기존의 중앙부처 간 역할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박홍근, 이원욱 의원의 청년기본법안의 경우 여성가족위원회가 소관위원회로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청년의 범위 선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였다. 박홍근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청년 연령을 19-34세로 선정하여 전체인구의 21.5%(2015년 기준)를 차지하고 이원욱 의원이 제시한 법안에서는 청년을 19-39세로 범위 선정을 하였기 때문에 전체 인구의 29.1%(2015년 기준)가 정책 적용대상이 된다. 취업이 늦어짐에 따라 청년의 연령 범주가 확대 되는 것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면서도 청년의 범위 내에서 격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어 단일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시하였다.

더불어 다른 부처들과 정책 사업의 상충에 있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대체적으로 정책 대상자의 경우 타 법령과 비교해볼 때, 연령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본법에서 연령의 범주의 확장은 기존 법령과의 대상 연령에 있어 중복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부처 간 정책 시행에 있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20대 국회 때 입법 발의된 청년기본법안이 통과되고 공포·시행되기 위해서는 청년의 정의 및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심층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발의된 청년기본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살펴보았을 때 청년 연령범위 규정 및 다른 법령들과 상충문제 해결, 추진체계, 담당 부처 및 기구 등 여러 가지 논의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부분이 해결됨에 따라 청년기본법이 조속히 마련됨으로서 청년 일자리 및 고용에 한정된 영역으로서 청년 문제 해법을 위한 정책 마련이 아니라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3) 기타 청년 관련 법안

이외에 청년 관련 제정 혹은 개정 법안들은 청년 창업 활성화에 관한 부분과 청년 수당 혹은 기본소득 지급, 청년 정책 재원 마련, 청년정책 추진 정부조직 신설과 개편과 관련된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한 법안들은 창업 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청년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의무구매제도 신설, 청년창업교육센터를 비롯한 창업교육 활성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청년정책 재원 및 직접 지원 사업을 제안한 법안들은 청년세 신설이나 기금 예산 활용, 조세 감면과 같은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청년수당이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방안과 군인 전역 시에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추진체계와 관련해서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기획재정부 산하에 청년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입법 발의되고 있는 것은 청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년 동안 입법 발의 상황에서 청년기본법안이 통과된다면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수의 부처에서 시행하는 청년 정책들이 방향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만이 통과 되었고 이 또한 기존에 시행 중인 청년고용할당제의 적용시점을 단순히 연장한 것이어서 청년 대상의 생활 안정을 위한 청년 문제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법령이 필요한 시점이다.

표 IV-5 청년 관련 기타법안 입법 발의 현황(2017년 10월 기준)

법안명	주요내용	비고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조경태의원 등 15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지원에 있어 청년창업자 및 기업 우대 청년창업기업을 대상 신용보증제도를 수립·운영	새누리당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6인)	의무복무기간동안 ‘전역퇴직금’지급	국민의당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들의 보험료 지원	더불어 민주당 법안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경수의원 등 16인)	청년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의무구매제도 증의 판로지원 방안 마련 청년창업교육센터 설치·운영, 창업교육 촉진	더불어 민주당 법안
청년 첫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박홍근의원 등 15인)	청년 첫일자리 지원대상자 구직지원수당, 취업장려수당, 근속장려 수당지원 청년 첫 일자리 지원을 위해 조세 감면 지원	더불어 민주당 법안
청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원욱의원 등 12인)	저출산 및 국가 경제동력 붕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청년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특별위원회를 구성, 18명의 위원으로 구 성하며 2017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함	더불어 민주당 법안
청년세법안 (정세균의원 등 108인)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의 사회경제적 상태 개선을 위한 필요 재원을 청년세로 확보 청년세액 기준에 따라 내국법인 및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에 대해 청년세를 부과	국회의장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3인)	청년청 신설	새누리당 법안
청년기본소득법안 (김부겸의원 등 21인)	19세-29세 사이의 청년들 중, 비정규직 취업자와 실업자를 대상 으로 월 일정액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더불어 민주당 법안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김종회 의원 등 25인)	15-39세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청년농업인 직불제를 도입하여 농촌의 후계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함	국민의당 법안

*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에서, 2017. 10. 7 인출.

(4) 지역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정책 시행에 있어 청년의 참여를 통한 민관협력체계를 이끌어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청년기본조례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지역사회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해당 지역사회 내에서 청년 자치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면서 청년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표 IV-6 지방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 내용 (특별시·자치시·도 기준, 2017.10월 기준)

항목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제정일	2015.1.2	2016.12.20	2016.12.30
조례목적	청년사회참여보장 및 자립	청년사회참여보장 및 자립	청년사회참여보장 및 자립
청년범위	만15세~29세 (공기업 취업시 34세까지 연장)	만15세~29세 (공기업 취업시 34세까지 연장)	만19~34세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민
기본계획 포함사항	정치·경제·사회·문화참여확대 고용, 주거 및 소득 등 생활안정	정치·경제·사회·문화참여확대	정치·경제·사회·문화참여확대 청년네트워크 교류확대
참여확대 목적과 내용	민주시민으로서 학습과 경험지원, 시의정책결정과정에 청년참여 서울특별시 청년허브설치를 통해 청년정책계획 및 수립 시행	각 분야 청년참여 확대 및 청년 의사 반영 노력.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센터 설치 통해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 조성	민주시민으로서 학습과 경험지원, 도 위원회와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역사 반영 및 참여 보장. 청년센터 설치 통한 활동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분석결과	서울특별시의 경우, 타 사도에 비해 청년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차지하고 있는 특징과 함께 선제적으로 청년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는 한편, 청년 참여를 주축으로 삼아 청년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청년 정책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반면에, 세종특별자치시는 타 사도에 비해 청년인구가 비교적 낮은 특성을 지니며, 기존 농촌 거주 청년 및 대학이나 근무지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정책성이 존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음.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청년정책 및 활동 지원이 청년 기본조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네트워크를 주축으로 하여 청년 일자리 뿐 아니라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음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 <http://www.law.go.kr>에서 2017. 10. 10 인출.

서울특별시의 경우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앞서 청년기본조례를 시행하여 청년 주도의 사회참여 보장에 기반한 청년 정책 수립을 함으로써 청년허브와 같은 청년 공간마련을 통해 서울시 청년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정책사업을 시행하였다. 한편, 이 과정에서 다수의 청년이 참여하지 못하고 소수 한정된 청년만의 참여로 치우쳐 정책 대상 측면에서 대표성을 얻기 어렵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조진우, 이윤주, 2017). 하지만

다른 시·도의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 벤치마킹 사례로 많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청년기본조례를 통한 청년정책 시행은 의미 있는 진전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청년센터를 설치하고 청년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신생도시에서의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최근 섬으로 이주하는 청년의 양적 증가와 청년 고용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도 청년들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청년 주도의 정책 참여가 활성화 되고 있는 중이다. 더불어 제주시와 도차원에서 청년센터와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청년 정책에 많은 청년과 함께 참여하고 다양한 청년 중심 단체들과 협력을 통해 제주도의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타 시·도 청년들과의 교류 협력 네트워크를 중점 사업으로 시행함으로써 서울청년네트워크와의 교류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가 지니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도 차원에서도 강원과 경북을 제외하고 여섯 개 도에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다. 다음 [표 IV-7]은 도 기준으로 청년기본조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기본조례에서 나타나는 청년의 범위도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범주가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세종시와 동일하게 15-29세로 청년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반면, 충청북도의 경우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가장 넓은 범주로서 15-39세를 청년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충북이 청년 정책사업으로서 출산장려정책 개발 및 평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통해 유추해볼 때 청년 인구가 많지 않은 불리한 조건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애주기에 따라 청소년과 청년의 범위를 하나로 포괄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충청남도과 경상남도의 경우는 19-34세로 규정하였으며 전북과 전남의 경우 18-39세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는 청년기본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령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내 청년 고용 및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데 적용하고 있다.

다만 도 차원의 청년기본조례에서 정책대상으로서 청년 범위를 규정한 내용 중 특이점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충남·전북의 경우 도 거주생활자에 한정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 내 청년 유출이 심한 것을 고려해서 제시한 방안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청년의 특성상 대학 생활이나 취업준비를 위해 일시적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할 경우, 주소지를 이동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을 고려하면 해당 지역에서 청년 정책을 시행할 때 거주하고 있지만 주소지 이전 문제로 인해 정책 수혜를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V-7

지방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 내용 (도 기준, 2017.10월 기준)

항목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조례제정일	2015.8.13	2016.5.24	2017.2.28	2017.4.14	2017.6.20	2016.6.9
조례목적	청년사회참여보장 및 자립	청년참여보장 및 자립	청년참여보장 및 자립	청년참여보장 및 자립,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사회참여보장 및 자립, 청년권익보호	청년참여보장 및 자립, 청년권익보호
청년범위	만15세~29세 (공기업 취업시 34세까지 연장)	15~39세	18~34세 도 거주생활 또는 희망하는 자	18~39세 도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자	18~39세 개별사업성격 관계법령 규정으로 탄력적용	19~34세. 단,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관계법령 규정적용
기본계획 포함사항	정치·경제·사회·문화참여확대, 도의 주요정책과 연계	정치·경제·사회·문화참여확대, 도의 주요정책과 연계	청년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청년정책사업 추진 수행	정치·경제·사회·문화참여확대, 청년강권 보장, 청년살대조사	정치·경제·사회·문화참여확대, 민관협력체계구성 운영	다양한 분야 참여 확대, 민관협력체계 구성·운영
참여방안 및 내용	민주시민으로서 학습과 경험지원, 도의정책결정과정에 청년참여	도에서의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참여	-	도 청년정책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정책포럼단 구성	청년의목소리 통해 청년정책제안 의견수렴, 청년 200명 도지사위촉	청년참여확대 위한 활동지원 및 민관협력 (청년센터)
기타사항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 설치 운영	청년희망센터 구성·운영, 청년광장을 통한 의견수렴	청년정책사업을 도지사가 기본 계획에 따라 시행	청년센터설치·운영, 청년창업기반 조성, 타시·도에 비교했을 때 청년단체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규모 큼	청년센터설치·운영, 청년발전위원회, 청소년목소리위원회 대상 회의 참석 시 실비 지급	청년센터설치·운영
분석결과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의 경우 지역사회 청년유출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조례나 시행하고 있는 청년정책의 내용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타 사도로 유출되지 않기 위한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 <http://www.law.go.kr>에서 2017. 10. 10 인출

광역시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 청년기본조례를 시행하면서 청년의 시정참여를 통한 청년정책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다섯 개의 광역시에서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지자체 청년정책 마련에 있어 청년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광역시 가운데 가장 먼저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곳으로 청년의 시정참여 방안을 위해 다른 시·도에 비해 시에서의 청년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청년참여율이 매우 높다. 또한 시위원회에 청년위원 수를 늘리려는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어 청년참여 확대 측면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구광역시 청년정책위원회 회의 때 참석 위원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다. 대구청년네트워크와 청년센터를 통해 청년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위원회 내 청년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기존 위원회의 기성세대 위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아 주도적인 청년 참여가 어렵다는 한계가 나타나기도 한다.

대전과 부산, 울산광역시는 광주와 대구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늦게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청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세 지역 모두 청년의 연령에 있어 청년고용법의 규정적용에 따라 범위를 한정하고 있고 다른 시도와 유사한 형태의 청년 정책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부산광역시의 경우 청년참여 활동 가운데 문화적인 차원을 강조하고 청년 공간 설치 운영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청년 중심의 문화예술 활동 및 공간 활용에 대해 다른 시·도에 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표 IV-8 지방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 내용 (광역시 기준, 2017.10월 기준)

항목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조례제정일	2015.12.28	2015.12.30	2016.12.27	2017.5.31	2017.4.27
조례목적	청년사회참여보장 및 자립 청년정책개발	청년사회참여보장 및 자립 권익증진	청년사회참여보장 및 자립 권익증진	청년사회참여보장 및 자립 권익증진	청년사회참여보장 및 자립 권익증진
청년범위	만19~39세	만19세~39세	만 19~34세 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관계법령 규정적용	만18~34세 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관계법령 규정적용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동일
기본계획 포함사항	청년의 시장참여 확대	정치·경제·사회·문화참여 확대	사회참여, 건강권 보장 및 권리보호	정치·경제·사회·문화 참여확대 청년역량 개발 등 지역인재 양성	청년정책 기본방향 설정 청년의 정책참여
참여확대 목적과 내용	시의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사반영과 참여 시 위원회 청년위원 수 증가노력	회의 참석위원대상 예산 범위 내 수당지급가능, 조사연구업무 수행한 위원 실비 보상가능	사회참여확대 민주시민성장 위한 지원 시 위원회 및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참여 및 의사반영보장	청년 사회참여확대 및 청년문화 확산을 위해 청년 공간 설치 운영 및 지원	경제·정치·사회·문화 등 전분야 청년 참여 확대와 학습지원 청년의사 반영 및 참여보장
분석결과	광주·대구·대전 광역시의 경우, 시장에서 청년정책을 전담으로 하는 청년 정책과를 만들어 타 광역시에 비해 적극적으로 청년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시행을 위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음. 또한 광역시 모두 청년이 중심이 되어 정책을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다만 타 광역시도 간 청년 네트워크 구성 및 연계 활동과 관련해서는 조례에 공통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에 비해 구체적인 청년 사업 프로그램으로서의 활동이 소극적인 것을 알 수 있음.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 <http://www.law.go.kr> 에서 2017. 10. 10 인출.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를 살펴본 경우, 청년 활동단체, 위원회 등의 참여 측면에 있어서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약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소수로 선출된 청년 뿐 아니라 다수의 지역사회 청년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청년기본조례 제·개정 및 조례에 기반 한 정책 시행에 있어서 청년층의 참여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조례 제·개정에 있어서도 청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해당 지역사회 단체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단체장으로 교체되더라도 청년 정책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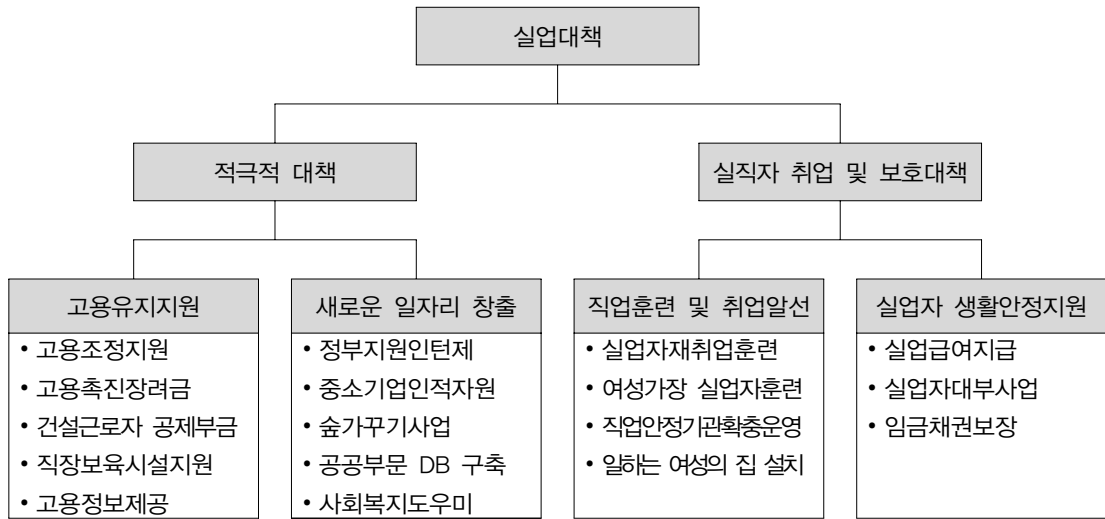
2. 청년 정책추진체계 진단¹⁵⁾

우리나라에서 청년이 사회문제의 주체로 등장하게 된 것은 IMF 외환위기 이후인 김대중 정부(1998~2002년) 때부터로 볼 수 있다. 그 이후 노무현 정부(2003~2007년) 때는 청년을 정책대상으로 삼아 보다 본격적으로 청년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2008~2012년), 박근혜 정부(2013~2017.4)를 거쳐 다양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이 시도되었다. 하지만 청년문제는 점차 심각해졌고, 이러한 현상을 인식한 현 문재인 정부(2017.5~)에서는 최우선 정책으로서 청년문제 대안마련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들을 시행하고 있다.

1) 김대중 정부(1998-2002)의 청년정책 추진체계

김대중 정부(1998-2002)의 청년 대상 정책의 특징 중 하나는 적극적 고용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실업대책추진위원회’를 설치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1997년 발생한 IMF 외환위기로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였고,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수출, 소비, 투자가 전반적으로 부진하게 되었으며, 기업의 구조조정, 중소기업 부도 확대 등으로 실업자가 급증하는 긴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국회예산정책처, 2010).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시대적 특성에 따른 구조적 실업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15) 이 절의 초고 중 일부는 이윤주, 김기현 외(2017)의 “청년정책 추진체계 발전방안연구”에서 제시된 바 있음.



*출처: 노동부(2001), 실업대책백서 1998~2000., 이윤주, 김기현 외(2017), 청년정책추진체계 발전방안연구, p.21 재인용.

【그림 IV-1】 김대중 정부(1998-2002)의 실업대책 기본 틀

1998년 4월에 ‘실업대책추진위원회’를 거쳐 같은 해 12월에 설치된 ‘실업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였다.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노동부 장관,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대통령 비서실 사회복지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그 외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량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있어 개인차원의 구제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보면서 다각적인 시각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다.

이와 같은 취지로서 설치된 위원회의 주요 업무로는 중·단기 실업대책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실업대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실업대책의 추진상황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실업대책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으로 구성되었다(이윤주, 김기현 외, 2017: 22). 하지만 청년정책으로서 실업대책 위원회는 실효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실업대책위원회는 IMF 외환위기의 여파로 양산된 대규모 실업자에 대처하기 위한 취지가 주요한 목적 이어서 첫 직장,에 진입하기 위한 청년층 보다는 이미 진입해서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던 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 당시 청년세대에 대한 구직과 실업이라는 논의는 상대적으로 깊이 있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한편, 실업대책위원회는 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경제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위원회 형태의

추진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실업과 고용이라는 경제적 측면에 대해 집중해서 상황적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실업대책위원회의 경우는 법제적인 근거 기반도 마련되지 못하였고, 당시 실업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계획 추진 단계 마련에 그친 것이 한계로 작용하여 정책적인 효과성 측면에 있어서는 미약한 측면이 있었다.

2) 노무현 정부(2003-2007)의 청년정책 추진체계

노무현 정부(2003-2007)는 청년실업의 지속으로 실업율은 하락하였으나 기존의 기업과 공공 기관의 신규채용이 낮아지고 경력채용이 늘어나면서 이 시기부터 청년실업과 더불어 임시직·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로 인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노무현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2004년 3월 「청년실업해소특별법(법률 제7185호)」을 제정하였고, 제15조에 따라 2004년 11월 30일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신설되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1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여성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 중소기업청장, 국무조정실장, 그 외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30명 이내로 이루어졌다. 이전 김대중 정부 시기의 ‘실업대책위원회’와 비교하였을 때 청년이라는 세대 층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단순히 실업이라는 경제영역만의 접근이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부 장관 등을 위원으로 삼아 보다 융합적인 정책지원을 위한 노력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해볼 수 있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지 못해 업무 진행에 있어 한계를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청년 실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기업이나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취업 지원 대안 마련이 부족한 면도 나타났다.

하지만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는 기존 위원회와 비교하였을 때 대통령소속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정책보다 강력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위원회의 주요 업무로는 청년실업 종합대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청년실업 종합대책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였다.

대통령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2인) 국무총리 및 대통령이 위촉하는 1인	위원(30인 이내)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과학기술부·고용노동부·여성부장관·기획예산처장, 중소기업청장, 국무조정실장, 그 외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출처: 노동부(2001). 실업대책백서 1998~2000., 이윤주, 김기현 외(2017). 청년정책추진체계 발전방안연구, p.24 재인용.

【그림 IV-2】 노무현 정부(2003-2007) 청년정책 추진체계: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3) 이명박 정부(2008-2012)의 청년정책 추진체계

이명박 정부 때 시행한 청년 관련 법률에 관한 변화는 노무현 정부(2003-2007)에서 제정되었던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2009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법률 제9797호)」의 개정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010년 4월 9일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소속으로서 노무현 정부 때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위원들 또한 각 부처의 장관에서 차관급으로 격하됨으로써 이전 정부에 비해 위원회의 권한이나 역할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이명박 정부 특성 중 행정부 규모를 줄이고자 한 정책방안의 일부로서 시행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내용적 접근으로서는 노무현 정부에서는 실업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 대안을 마련하였다면, 이 시기부터는 청년 고용으로 관점이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위원회의 주요 업무로는 청년고용촉진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산·학·관 협력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채용실적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였다.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위원장(1인) 고용노동부 장관	위원(30인 이내) 재정경제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차관, 중소기업청장,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부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그 외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출처: 노동부(2001). 실업대책백서 1998~2000., 이윤주, 김기현 외(2017). 청년정책추진체계 발전방안연구, p.25 재인용.

【그림 IV-3】 이명박 정부(2008-2012) 청년정책 추진체계: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4) 박근혜 정부(2013-2017.4)의 청년정책 추진체계

박근혜 정부(2013-2017.4)는 이명박 정부(2008-2012)에서 제정되었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일부 개정하고, 2013년 5월 대통령령으로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523호)」을 제정하였다. 개정된 법에 따라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설치되었다(공윤주, 김기현 외, 2017: 26).

박근혜 정부 때는 청년 고용을 포함한 복지 영역에서 청년 세대의 문제가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필요로 인해 19대 20대 국회에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과 청년기본법안들이 끊임없이 입법 발의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청년기본조례안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와 동일하게 구성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서 운영되었다. 이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를 설치하여 청년층과 소통하고 청년관련 정책 사업의 기획 및 조정·평가를 시행하는 기구를 신설하였다.

표 IV-9 박근혜 정부(2013-2017.4)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시행 사업(2015년 기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시행 사업 (2015년 12월 기준)	
사업명	내용
청년버스	청년 대상 취업,진로,창업, 해외진출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
청춘순례	대학 중심으로 시행하는 진로 캠프로서 멘토와 함께 진로설계를 하고 청년들과 소통 및 네트워킹 진행
오감만족체험단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에서 주최/주관을 하였으며 첨단 산업등에 대해서 체험 해볼 수 있는 기회 마련
병영멘토링	군부대를 방문하여 시행하는 진로 상담 및 멘토링
일자리모니터링	청년들이 직접 기업이나 고용센터등을 방문하여 모니터링 시행
스펙초월	대학을 중심으로 하여 기업들이 찾아가서 채용 전형에 대한 사례발표나 취업 설명 및 컨설팅 지원
2030 정책참여단	청년 대상의 정책을 취재 및 발굴 제안
청년창업	청년 창업에 대한 정보와 멘토링 지원
K-MOVE	해외취업정보 제공 및 지원
문화예술프로젝트	청년 대상 문화예술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강연 프로그램 지원

*출처: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2016). 내부자료

하지만 실제적인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협의체로서 두 기구가 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주로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서 청년고용정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행해왔다. 또한 청년문제를 다각화하고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는 위원회의 역할 및 목적을 명시한 법령 등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만 설치규정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청년 정책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작용하였다. 청년과의 소통채널로서 다양한 정책사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운영한 측면에서 청년들과 정책간의 거리감을 줄이는 등 청년 친화적인 사업을 시행한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으나 정책적인 실효성은 크게 나타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김사원(2016)의 보고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기 청년 고용정책의 컨트롤타워는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 회의로 여러 가지 경제 현안 중에서 일부로 다루어졌으며,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관계부처합동 명의로 하여 청년고용대책으로 주로 발표된 것을 알 수 있다.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관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가 전담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정책 기능인 경제정책에 대한 기획업무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을 볼 때 청년정책 전반을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청년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정책은 주로 실업과 고용부문에 한정되어왔다. 물론 청년 세대에 있어서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는 대부분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있어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정책추진체계로 보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법령 근거도 부족할 뿐 아니라 위원장에 대한 권한 등 실질적으로 청년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 및 시행능력에 있어서 권한이 부족했기 때문에 청년 대상의 소통 채널과 정부의 자문기구로서 역할이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청년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정책 사업 프로그램 또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들과 연계성이 부족하여 홍보나 효과도 초기에 위원회 설치 당시 기대치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5) 문재인 정부(2017-)의 청년정책 추진체계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수립하기 위해 5대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였다. 더불어 487개의 실천과제로 세분화함에 따라서 국가 정책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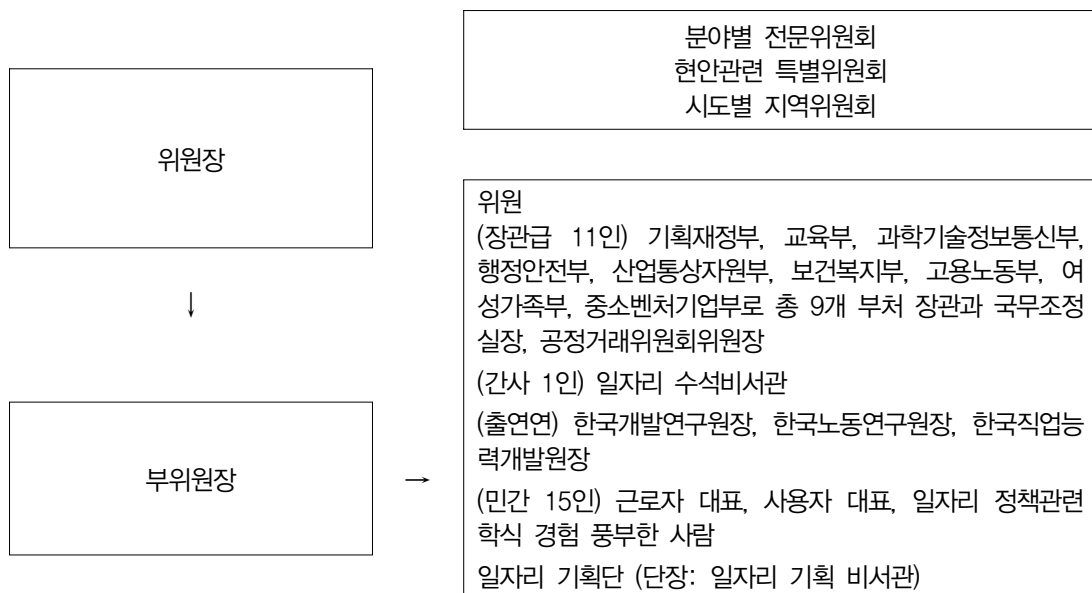
표 IV-10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청년정책 사례

국정목표	국정과제	주요내용	상세내용
더불어 잘사는 경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일자리위원회 설치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범 정부 적 국가일자리 정책 집중 관리 일자리상황판 설치운영, 고용영향평가 확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공부문 일자리 총원 로드맵을 마련, '22년 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 리 창출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18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 비율 상 향, 민간부문 청년 신규채용 권고
		추가고용장려금 신설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정규직 채용 시 1명분 임금 지원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취성패 3단계와 연계한 구직촉진수당(30만 원, 3개월) 신설·지급('17년~'18년)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민의 기본생활 위한 맞춤형 사회보장	생애맞춤형 소득지원	'17년부터 미취업 청년에 대해 청년구직촉진 수당(30만원, 3개월) 지급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22년까지 20만호(전체의 30%) 임대주택 신 혼부부 공급
		주거비용 지원 강화	'18년에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및 구입자 금 대출 상품 출시 및 저소득 신혼부부 대상 주거비 경감 지원 실시
		청년 임대주택 약 30만실 공급	임대료가 저렴한 세어형 임대주택(5만실) 및 역세권 등 주변 청년주택(20만실) 공급, 기숙 사 확대(5만명) 등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고졸 취업자 지원확대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채용 단계적 확대 및 공공기관·민간기업의 고졸채용 유도('17년~)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	대입에서 출신 고교 블라인드 면접 도입, 공 공기관·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및 민간기업 확산 유도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청년 일자리 기본권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18년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 책 마련·시행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지역역량 강화	지역중심의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 지역전문가 등 추진주체 역량 강화 지원, 주 민·청년 등 지역주체 주도로 사회적 경제조직 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사전기획 컨설팅 등 지원

* 출처: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 p.45, 인용.

위의 <표 IV-10> 에서 볼 수 있듯이 청년과 관련 된 사항들 중에 대표적인 영역으로서 일자리 고용정책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강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을 꼽을 수 있다. 또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와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앞세워 세부 전략으로서 청년세대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을 제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립하여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일자리 고용정책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청년층의 실업문제가 심각한 만큼 정책지원 측면에 있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고용의무제’, ‘추가고용장려금 신설’,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출처: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s://jobs.go.kr/>, 2017. 10.5 인출.

【그림 IV-4】 문재인 정부(2017.5-) 청년 정책 추진체계: 일자리 위원회

한편, 문재인 정부(2017.5-)는 초기부터 청년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공약을 발표하고 대통령 제1호 업무지시로서 2017년 5월에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연이어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의결하였다. 일자리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한 1인으로 구성되고,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로 총 9개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11명이 구성되었다. 또한 일자리 수석비서관이 간사 역할을 하며 민간 대표 15명을 위원으로 선발하였다. 일자리위원회는 12월 22일 청년분과를 별도로 설치해 청년 고용문제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2017년 10월 18일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대통령 임기 중에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연도별로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최우선 국정과제로서 '일자리 경제'를 제시한 만큼 5대 분야로는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각 분야별로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번 발표안은 과거 정부에 비해서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고 각 부처 장관을 중심으로 위원을 선정함으로써 실효성 높은 정책들이 지원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해볼 수 있다. 또한 임기 초기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정책적인 안정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한편, 정책의 대부분이 일자리 영역에 머물러 있어 현 시기 청년들에게 시급하게 요구되는 삶의 질적인 측면을 향상시켜줄 복지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점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분야 뿐 아니라 복지 영역으로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동시에 마련 해준다면 정책 간 상승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추진체계 진단

중앙정부와 비교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의 삶에 있어 고용 뿐 아니라 주거, 문화, 참여 등 보다 일반적인 청년의 삶에 밀접하게 청년 정책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 10월 기준, 서울을 비롯하여 17개 시·도 중에서 14개 시도에 청년 정책 담당 조직이 설치되었다(<표IV-11참조>). 청년기본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10개 광역지자체에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특성에 따른 청년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자체에서는 각 실·국·본부·과·관·단·팀 단위로서 구분하여 청년을 중점으로 하는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표 IV-11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추진체계

	실국본부	과관단	팀
서울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청년활동지원·청년공간지원팀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청년일자리팀
부산	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창출과	청년취업지원팀
대구	시민행복교육국	청년정책과	청년정책·청년소통·청년사업팀
광주	자치행정국	청년정책과 ¹⁶⁾	청년정책 청년지원담당
대전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경기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청년지원팀
		사회적일자리과	사회적일자리팀 지역사회서비스팀
강원	경제진흥국	일자리과	청년일자리팀
충북	행정국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청년일자리·청년복지팀
충남	경제통상실	일자리노동 정책과	
	미래성장본부	미래정책과	
전북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 정책관	청년정책팀
전남	일자리정책실	일자리정책 지원관	청년일자리팀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
경북	일자리민생본부	청년정책관	청년취업정책·청년취업협력·청년창업지원
경남	경제통상국	고용정책단	청년일자리담당
제주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청년정책팀
	경제통상·일자리국	경제일자리정책과	일자리지원팀

* 출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조직도, 2017. 10.15. 인출

16) 광주광역시 청년인재육성과에서 2017년에 청년정책과로 명칭 변경

서울시의 경우 청년정책과 일자리정책 담당관을 분리하여 정책 시행에 있어서도 고용과 복지 측면을 구분하였다. 청년 복지 담당을 위해 청년정책 일반과 활동지원, 공간지원팀으로 나누어 해당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서 경기도와 충청남도, 전라남도, 제주도의 경우 청년 복지와 일자리 분야를 구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한편, 고용측면에 초점을 맞춰 청년정책을 지원하는 시·도의 사례도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부산광역시와 일자리경제본부 내 일자리창출과에서 청년취업지원을 담당하는 팀이 존재한다. 또한 강원도와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경우도 경제진흥국, 경제산업국, 일자리민생본부, 경제통상국에서 청년 일자리 담당을 주 목적으로 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청년 복지 측면에 집중해서 지역사회 청년정책을 시행하는 지자체도 존재한다.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의 경우는 시민행복교육국,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 행정국 내 청년정책과,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지원과 등을 설치하여 청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는 만큼 청년 정책의 지속성과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사회 내 청년을 중심으로 한 청년정책네트워크 또는 청년정책위원회와 시·도청 간 연계와 협력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에 대해 해당 지역사회 청년에게 많이 홍보하고 정책 개발 및 운영과정에서 청년의 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더불어 청년들이 지역사회 정책 제안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지원도 함께 요구된다.

3. 청년정책 사업 추진동향

1) 유형에 따른 청년정책 현황과 내용

앞서 청년관련 법령과 추진체계를 토대로 하여 현재 우리사회에서 청년 대상의 정책이 구현되기 위한 기반과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을 정책대상으로 삼아 지원하고 있는 정책 사업을 중심으로 청년정책의 현황과 특징 및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위원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사회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의 대부분을 고용(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청년 일자리 중심의 접근은 김기현(2017)¹⁷⁾도 제시하였듯이 청년문제를 고용문제로만 보고 접근하면 결과적으로 고용지표에 대한 개선 뿐 아니라 참여, 권리, 주거, 복지, 학습, 문화 등 청년의 삶의 질적인 측면 전체를 개선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의 생활 전반에 대한 복지 지원을 위해 고용 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도 청년주거와 청년수당과 같이 고용 이전에 현 시점의 청년들의 삶의 질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수당에서도 논란이 있었듯이 어떠한 청년을 대상으로 어떻게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고민이 있다. 청년정책을 초기에 논의할 때는 경제침체로 인해 구직이 어려운, 실업 위기에 빠진 청년이라는 것으로 범주가 한정되었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고용과 실업만의 문제가 아닌 당장의 삶을 유지해 가야하는 미래세대로서의 청년의 삶의 질 문제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었다. 한편, 초창기 청년 정책에 있어서는 세분화된 분류체계 없이 저소득층 또는 청년이라는 프레임으로 정책대상을 설정하고 접근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경험하였다. 이에 대해 박철우(2017)¹⁸⁾는 청년의 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청년 정책 지원의 종류와 방식이 달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년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을 하나의 동일한 집단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1) 청년고용(일자리) 정책 현황 및 내용

청년 일자리 사업은 2016년 예산이 2.3조원에서 2017년 국회에서 2.6조로 확정되어 청년 일자리 정책사업 예산이 증가하였다. 주요 일자리 정책 사업은 다음 <표 IV-12>에서 보여주듯이 기존에 시행되어오던 정책사업과 함께 올해 들어 새롭게 추가된 사업들도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

17) 제1회 청년의날 특별기획 청년정책토론회 문재인정부의 청년정책을 논하다(2017), p.45.

18) 청년고용포럼-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공동 워크숍(2017), "생애주기 기반 청년정책", p.9.

표 IV-12 2017년 주요 청년 일자리 정책

시행부처	청년 일자리 정책 사업명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대학최종학년직업훈련)
	고용촉진지원금(내일채움공제)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취업성공패키지지원(청년내일찾기)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지원
	일학습병행운영지원
	해외취업지원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직업훈련과정)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직업능력개발담당자 양성 및 훈련매체 개발 (직업훈련교원 및 HRD 담당자 양성)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
	세대간상생고용지원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성공패키지
	창업기업자금(융자)

* 출처: 고용노동부(2017.2). 일자리 이슈북 내부자료.

청년고용(일자리) 정책에 있어 최근 많은 논의 중인 직접일자리 분야 사업은 다음 <표IV-13>에서와 같이 나타난다. 지금까지 사업화된 직접일자리 정책은 주로 문화관광체육부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분야 일자리 마련이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 대상 일자리 정책에 있어 간접지원보다 직접지원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공공일자리 정책이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2017년도 시행되고 있는 직접일자리 정책에서도 해외취업과 문화예술분야에 한정되었다. 이처럼 특정 분야 전공자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사업들이 상당수 존재하여 보편적으로 일반 청년들이 직접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한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표 IV-13 청년 일자리 정책 (직접일자리 정책)

시행부처	청년 일자리 정책 사업명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향유권확대
	장애인체육활성화 지원
	문화예술교육활성화
	박물관 진흥지원(등록사립박물관 전문인력지원)
	예술인력육성(재교육, 단원육성)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배치지원
교육부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운영
행자부	자원봉사활성화지원(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사업)
산림청	국제산림협력(해외산림인턴지원)
농진청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ODA) (글로벌농업인재양성)
	이공계대인턴십운영(R&D)
외교부	해외봉사단(ODA)(해외봉사단, 다자협력전문가, ODA청년인턴)
국토부	해외인프라시장개척(글로벌청년리더양성, 해외건설지원, 해외인턴십)
	항공전문인력양성(항공인턴십지원)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년인턴제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운영비지원(출연연맞춤형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청	창업사회화지원(창업인턴제)

* 출처: 고용노동부(2017.2). 일자리이슈북 내부자료.

또한 해외봉사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등의 경우 장기적으로 지속해서 유지될 수 있기 어려운 특성의 일자리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직접일자리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청년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김태완, 최준영(2017)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대부분 고용노동부 중심의 고용(일자리)지원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흐름으로 정책 사업이 지속될 경우, 현재의 청년의 삶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서비스는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질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소득, 주거 등의 관련 청년정책들이 지원되고 있지만 고용정책과 더불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통합적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다.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고용(일자리)만으로 해결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복지서비스 영역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동시에 요구된다.

(2) 청년주거정책 현황 및 내용

청년주거정책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행복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사회적 주택이 포함된다. 두 번째, 주택 구입 및 전월세 자금에 대한 금융지원으로서는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월세대출이 있다. 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IV-14>와 같다. 주로 신혼가구를 중심으로 자금금융지원이 시행되며 임대주택의 경우 지원 자격에 해당하면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주거지원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경우 지원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2017).

표 IV-14 **청년주거정책**

제도	사업명	내 용
주택구입 및 전월세자금 금융 지원	디딤돌 대출	신혼가구가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경우 현행 연 2.3~3.1%에서 0.2%p 우대된 연 2.1~2.9% 수준으로 대출 가능
	버팀목 대출	신혼가구가 버팀목 대출을 받을 경우, 현행 연 2.5~3.1%에서 0.2%p 우대된 연 2.3%~2.9% 수준으로 대출 가능
	월세 대출	2016년 8월부터 취업준비생 및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및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대상을 자녀 장려금 수급자 및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확대 시행
임대 주택	행복 주택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장, 학교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
	사회적 주택	나에서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2016년 9월부터 다가구, 다세대 주택, 원룸 등을 매입한 이후 사회적 주택을 운영하는 기관에 임대할. 운영을 맡은 기관은 하나의 주택에 여러명이 공유할 수 있는 셰어하우스를 제공함
	전세 임대	나에서 대학생, 신혼부부를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하고 자가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 매물을 찾아 나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형태

* 출처: 이태진 외(2016),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p.59. 인용

(3) 청년수당정책 현황 및 내용

최근 청년세대를 ‘삼포세대’라고 지칭 할 만큼 현 시대의 청년들의 삶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취직을 위해서는 취업 요건에 맞는 스펙이 요구되는 만큼 청년들이 구직 활동에 필요한 자금 또한 그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만으로 청년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에서 더 나아가 기본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논의로부터 청년들이 구직을 준비할 수 있는 지원 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한 목적으로서 청년활동 지원수당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청년수당의 경우 도입시기부터 논란이 있었다. 청년의 정의와 범주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다른 세대와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논란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서 청년세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국민을 수혜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고용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에게도 수당 또는 급여의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대한 설계를 제안하기도 하였다(국회입법조사처, 2017: 4).

이러한 가운데 현 정부에서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이라는 이름으로써, 2019년부터 청년수당의 실질적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2018년까지는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진입하는 청년 대상으로만 수당을 지급할 계획에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 또한 청년활동지원 수당을 시행 하고 있는데 현황은 위의 <표 IV-15> 에 제시하였다.

표 IV-15 청년활동지원수당 현황

사업주체	서울시	성남시	경기도	인천시	청년희망재단
사업명	1) 청년수당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배당	1) 청년구직지원금 2) 일하는청년통장	청년사업진출 지원사업	청년면접비용 지원
시행일	1) 2016.8 2) 2017.3 (2015년 최초도입)	2016.1	1) 2017.7 2) 2017.9	2017.4	2016.9
지원목적	1) 청년활동 촉진과 활성화 지원 2) 청년의 경제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키워주기 위한 목적	청년복지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1)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지원 2) 저소득층에 해당 근로청년의 근로 및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 지원	취업장려 및 청년실업 해소	적극적인 구직활동 독려
지원대상	1) 만19~29세 위소득 60%이하, 미취업 청년 2) 18~34세 저소득 근로청년으로서 소득월200만원이하 부모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최근1년간 6개월 이상 근로 또는 재직 증인자	만19~24세 자격요건에 제한 없음	1) 만18~34세 미취업청년가구 중 위소득150%이하인 가구 2)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만18~34세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만18~34세, 취업성공패키지 3 단계 참여자
지원금액	1) 월50만원, 6개월현금 지급 2) 2년 또는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금액의 1/2 또는 동일한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적립	분기별 25만원 상남사랑상품권	1) 월50만원, 6개월 최대 300만원 지급 2) 3년간 월10만원 저축 시 경기도예산과 민간기부금으로 1000만원 적립	월20만원, 3개월	6개월 간 최대 60만원
사용범위	구직활동 및 개인 활동 용도	사용범위 무제한 상품권 가맹점에 사용	1) 직접적인 구직활동비용 2) 자산형성지원	직접적인 구직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구직시 소요되는 경비(교통비, 숙박비, 사면비 등)
지원방식	현금사전지원	상품권 사전지원	1) 카드발급 지원 2) 청년통장 지원	사후실비 정산	사후실비 정산

*출처: 국회입법조사처(2017), 청년활동지원수당의 현황 및 정책과제 재구성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account.jobaband/_main/main.do에서 인용
서울시 희망두배저축통장 홈페이지 <http://www.welfare.seoul.kr/youth/section/introduction.action>에서 인용

2)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시행 청년정책 현황과 문제점

(1) 중앙 부처 청년정책 현황과 특징

표 IV-16 중앙 부처 청년 고용관련 부서 현황

부처·청	국/실	관/단	과/팀/담당	청년관련 업무
고용 노동부	고용 정책실	청년여성 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 청년취업지원과 여성고용정책과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청년일자리 사업 및 청년고용대책 총괄 • 청년고용정책 블라인드채용 민간확산 • 청년고용포럼, 청년취업아카데미 • 한국 잡월드 운영 •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운영 • 세대간 상생 • 청년고용 동향·통계 모니터링 업무 • 청년고용통합전산망 개발 및 운영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운영지원 • 대학청년고용센터, 취업지원관 운영 • 해외취업지원(K-Move) • 청년취업성공패키지 • 일경험(재학생 직무체험, 중소기업탐방) • 대학진로지원사업(대학창조일자리센터)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관리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 시간선택제일자리활성화 • 일가정양립인식개선 및 인프라구축지원 등
중소기업 벤처부	창업벤처 혁신실	창업진흥 정책관	기술창업과	• 청년창업사관학교 •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TIPS) • 팀스타운 조성 및 팀스사업화 • 창업선도대학, 글로벌창업 • 사내벤처 창업 및 분사, 선도벤처기업연계 • 창업도약패키지, 창업리그 •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운영
			지식서비스창업과	• 창업교육, 스마트벤처캠퍼스 •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성공패키지사업 • 스마트 창작터 •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
			창업생태계조성과	• 창조경제혁신센터 • 창업대학원, 실험실공장

* 출처: 각 부처 홈페이지, 김기현, 하형석 외(2016), p.154, 재구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 고용정책과 관련한 시행 부처는 주로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벤처부, 일자리위원회로 볼 수 있다. 각 부처에서는 청년 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존에 시행하던 청년관련

업무와 더불어 2017년 5월 이후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 정책업무까지 함께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벤처부로 승격됨에 따라 기존 청년 창업에 관련한 정책들이 다양해지고 사회적 경제와 연계되어 폭넓은 정책 사업으로 구성되고 있다. 또한 일자리위원회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이행 공약 중 하나로서 최근에 일자리 로드맵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등 청년 고용문제에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다.

표 IV-17 교육부 청년정책 관련 부서 현황(2017년 10월 기준)

부처·청·위원회	국/실	관/단	과/팀/담당	청년관련 업무
교육부	대학정책실	대학지원관	산학협력정책과 취업창업교육 지원과	• 산학협력 관련 법령정비 • 산학협력 중장기발전계획수립 •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 • LINC+,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 bridge, 산업단지캠퍼스 • 산학협력 EXPO • 대학창업교육, 대학창업펀드 • 대학생 취업활동 지원 • 희망사다리 장학금 • 학교기업지원 사업 • 글로벌현장학습, 학교기업지원사업 • 사회맞춤형학과, 계약학과, 사내대학, 대학생현장실습 • 고등교육기관취업통계, 청년고용정책회의
	평생직업 교육국	-	인재직무능력 정책과 진로교육정책과 직업교육정책과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학습모듈개발 • 한국형국가역량체계(KQF) 구축 •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미래인재포럼 • 자격제도 및 정책기본계획 • 국가역량체계 구축 및 글로벌인재포럼, EAP워크숍 • 저출산고령사회, 대한민국인재상 • 진로교육정책수립, 진로체험활성화 • 지역맞춤형/YEEP 프로그램 • 스타트업캠퍼스진로체험센터 • 고졸취업위한 정부부처연계 특성화고 지원 • 직업계고 취업역량강화

* 출처: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main.do?s=moe> 조직도에서 인출.

교육부의 경우, 청소년과 청년의 연령 중복 등으로 고졸 비진학 청소년 대상이나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이 청년정책 범주에 포함된다. 또한 대학정책 측면에 있어서도 취업교육을 위한 준비 기관으로서 정책적으로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다. 최근 들어 대학 내 취업지원센터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적자원역량 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청년정책 측면으로서 교육부의 역할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표 IV-18 여성가족부 청년 관련 부서 현황(2017년 10월 기준)

부처· 청위원회	국/실	관/단	과/팀/담당	청년관련 업무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 정책실	청소년 정책관	청소년활동 진흥과	• 청소년국제교류프로그램(15-24세) • 국제성취포상제(14-24세)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운영(9-24세) • 청소년쉼터 운영지원(9-24세) • 학교밖청소년건강검진사업(9-24세) • 내일이룸학교(구 취업사관학교) 총괄운영지원
		가족 정책관	가족지원과	• 청소년 한부모 가족지원
	여성정책국		여성인력개발과	• 청년여성 경력개발 지원사업 운영 • 청년여성 멘토링 운영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조직도에서 2017. 10. 5 인출.

여성가족부는 주로 청소년기본법에서 제시되는 청소년 연령(9-24세) 기준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중 청년시기와 중복되는 19-24세 연령까지 포함되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청년 관련 업무로 분류된다. 또한 여성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경력개발 사업이나 구직 멘토링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표 IV-19 문화체육관광부 청년 관련 부서 현황(2017년 10월 기준)

부처· 청위원회	국/실	관/단	과/팀/담당	청년관련 업무
문화체육 관광부	제2차관	국민소통실	온라인소통과	• 국민소통청년크리에이터 사업
			뉴미디어소통과	• 청년정책 범정부 온라인 홍보 체계 구축 업무 지원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main.jsp> 조직도에서 2017. 10. 5 인출

문화체육관광부는 직접적으로 청년정책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청년정책에 대해서 온라인 홍보 체계 구축이나 업무 지원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다. 또한 국민소통청년크리에이터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이해 콘텐츠를 청년들이 제작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원 자격에 제한 없이 청년 모두가 응모할 수 있으며, 청년의 시각에서 공공정책을 주제로 삼아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새롭게 시도되는 청년정책으로 청년들이 사회적 현상에 무관심하고 비주류로 벗어나 있는 세대가 아니라 정부 정책과 사회에 친화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정책 홍보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

(2) 지방자치단체 청년 정책 현황과 특징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정책의 경우 청년기본조례 사례에서도 살펴봤듯이 지역사회에서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중점적인 정책 사업 내용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표 IV-20 지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중심) 청년정책

지역	주요업무
서울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 및 지도·감독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청년 프로젝트 투자사업 운영,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운영 및 관리, 청년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 사회혁신청년활동기양성사업,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및 관리·감독, 지역 청년네트워크 확대 및 협력사업, 청년포럼, 컨퍼런스 등 청년관련 행사 운영 및 지원, 지역청년교류 MOU 관리 및 운영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수립 및 추진사항 관리, 청년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 및 해커톤 개최, 청년일자리센터 운영,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조례」 등 관련 법규 개정·관리, 취업날개서비스운영, 아르바이트취업지원프로그램 및 권리지킴이 개발·운영, 대학일자리협력및대학장조일자리센터 운영, 청년해외일자리 민간협력사업 발굴 및 운영, 특성화고 취업지원프로그램 기획·운영, 서울시 청년취업지원멘토단 운영 등
부산	청년취업지원 종합정책개발 및 총관관리, 청년두드림센터 운영지원, 청년 해외취업 인턴사업 지원 및 사업, 부산 K-move 센터 조성·운영, 대학생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 청년일자리위원회 운영, 부산권대학 취업네트워크 활성화사업, 청년취업플러스 아카데미 사업, 청년고용통계 자료작성 및 관리, 아르바이트 근로조건 개선 곳알바 사업, 청년버스 등 청년행사 지원, 청년취업 십시일반 캠페인 지원
대구	청년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청년정책 TF회의 운영, 청년위원회, 청년센터, 청년DB구축, 청년ON운영, 청년주간행사, 국내외청년교류사업, 청년단체 지원 및 정보교류, 합합페스티벌, 팝업레스토랑 등 청년사업
광주	광주형 청년종합정책수립, 청년도시 네트워크 구축, 청년위원회 및 ‘꿈꾸는 테이블’ 운영 청년축제 및 청년아카데미 계획, 청년정책위원회, 포괄적 거버넌스 운영, 청년정책 협업사업 및 조직 운영, 구직청년 교통카드 발급, 청년정책 모니터링, 광주청년센터 감독, 광주청년위원회 운영 청년문화공간 조성세계청년축제, 청년대학 운영
대전	청년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 발굴, 청년공간조성, 청년취업희망카드 보급, 청년정책위원회 및 거버넌스 관리,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청년정책네트워크(대청넷) 운영, 청년커뮤니티 지원 및 관리, 청년행사추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지원, 누리관 운영

* 출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조직도에서 인출

서울시의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청년지원 사업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많은 정책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청년허브라는 공간을 운영함에 따라 청년 관련 비영리 단체와 청년활동가를 지원하는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해 소수의 청년을 대상을 중심으로 한 지원이라는 비판도 존재하지만 해당 활동을 하는 청년을 기반으로 서울시 청년정책 개발과 운영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됨과 동시에, 지역사회 기반으로 청년 주도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지속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청년문제를 일자리 문제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정책과 동시에 청년 복지차원에서 균형있게 접근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의 경우, 주로 청년일자리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취업 네트워크와 취업 아카데미 등 청년들이 구직 준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기 위한 준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의 경우, 청년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대구의 경우 청년문화예술 사업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광주는 청년정책 운영에 있어 민관협업을 지향하며 청년들이 사회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눈높이에 적합한 지원 정책들을 개발하고 있다.

도 기준으로 볼 때 경기도와 전라남도는 청년 일자리 정책과 복지 정책을 구분하여 시행함으로써 양 측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강원도의 경우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 마련 및 청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 청년일자리 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청년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청년정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 고용율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일자리가 주로 계약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등을 통해서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청년 뿐 아니라 최근 제주로 이주한 청년들의 숫자가 늘어난 만큼 타 지역의 청년들이 제주에서 초기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도 마련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상당 부분을 청년위원으로 구성하여 청년들이 직접 기본조례 및 정책을 고안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

표 IV-21 지방자치단체(도 중심) 청년정책

지역	주요업무
경기	경기도청년자원관련업무, 청년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청년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청년자원사업단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일하는청년통장' 사업운영지원추진, 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통장 I·II)
강원	청년일자리 종합대책 수립 추진, 청년일자리 사책발굴 및 사업화, 청장년 정규직 일자리 지원사업, 청년희망 일자리 버스원정대 운영, 청년일자리 위원회 운영, 특성화고 취업지원 사업 및 대학생 일자리 협력사업 추진, 공공기관 지역청년 채용확대 사업,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지원
충북	청년정책계획수립, 청년활동지원, 청년일자리창출, 청년일자리업무, 출산장려시책개발 및 평가, 청년복지
충남	청년일자리정책수립조정, 청년고용통계 및 고용동향 분석, 청년창업 멘토-멘티운영, 특성화고, 대학생 일자리 창출지원 청년정책업무 총괄
전북	청년관련계획수립, 청년기본조례제정, 청년종합실태조사연구용역, 청년정책 포럼단,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청년종합지원센터, 청년축제, 청년단체, 청년고용종합대책수립 및 추진, 고교졸업자 취업지원 종합계획 수립, 청년 취업지원 사업, 대학창조일자리센터운영,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 추진, 청년정책 실태조사 연구용역, 공공기관 대학교 Job 멘토링
전남	청년 일자리육성 종합계획 수립, 청년실업해소 종합대책 수립추진, 청년취업 및 창업·창직 지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운영, 청년일자리 신규시책 발굴 및 사업화, 산학관 협력 대학생 일자리사업 추진, 청년취업아카데미 및 취업컨설팅 지원, 청년일자리정보체계구축, 청년취업성공사례 발굴, 산학협력취업 패키지운영, 푸른돌 청년상인 육성추진, 지역출신졸업생의 지역기업 취업지원, 지역청년 중소기업근속 장려시책 추진 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지원, 청년발전위원회 구성 운영, 청년단체와의 정보교류, 전남형 청년종합정책 발굴 및 추진, 청년인구 U턴 시책 및 청년자립기반, 청년인력양성 및 문화복지사업추진, 청년정책세부 사업 조정 협력관계구축, 청년 및 대학생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대학생연계정책사업, 지방대학육성, 대학생 인턴십제 운영
경북	청년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청년의 참여확대권리보호, 청년참여확대역량개발·생활안정 등 청년지표 수립, 청년활동지원, 청년일자리교육훈련 및 직업역량강화, 청년복지카드, 청년 문화활동공간 구축지원, 청년취업지원 및 취업동아리 지원, 특성화고, 고졸취업 및 대학생취업지원, 청년고용촉진및청년친화기업 육성지원, 청년창업지원
경남	청년고용종합대책추진, 대학 등 청년취업관련 유관기관 협력사업, 도내 특성화고·대학생 기업 맞춤형 트랙협약 추진, 청년고용관련 연구용역, 청년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청년일자리 관련 청년위원회 업무
제주	청년커뮤니티운영, 청년기초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청년센터 설치 추진, 청년정책제안공모, 청년시설운영, 제주청년포럼 운영, 청년 타시도 교류사업, 청년인재양성 및 역량개발, 청년단체활성화 지원 제주형인력양성지원사업, 청년 맞춤형인력양성사업, 청년 우수인재 집중지도사업, 특성화고 취업 네트워크협의회 운영,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정책 지원

* 출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조직도에서 인출.

(3)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대상자로서 ‘청년’ 특성 및 정책 방향 제시

중앙부처 및 위원회 중심의 청년에 대한 정책은 주로 고용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는 주거, 교육, 수당 지원 등과 같이 청년을 대상으로 삶의 안정을 위한 복지 측면을 다룬 공약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균형을 통해 현 사회에서의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 절에서 제시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을 분야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Ⅳ-22>와 같이 분류해볼 수 있다.

표 Ⅳ-22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수행 관련 업무 유형별 분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총괄기획기능	기획재정부	서울, 대전, 전남
사회복지분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서울, 대구, 광주, 경기, 충북, 제주
경제일자리분야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	서울, 부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교육분야	교육부	서울, 부산, 광주, 전북, 경북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본 결과, 청년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자리 정책만을 통해 전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청년의 삶의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한 복지 영역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정책대상으로 청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청년의 범위를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의 사회학적 나이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특히, 첫 취업 시기의 연장, 고학력화, 독립 및 결혼시기의 연장 등 사회에서 형성되는 지위와 역할, 사람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활동상황을 적절한 청년 연령과 범위를 재설정해야 한다. 초기 청년연구에서 구직을 준비하는 청년층에 한정하여 지칭하던 것에서 점차 보편적인 청년 일반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 또한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청년 연령에 대한 범주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국민 대상의 사회적·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 때 정치적 유권자로서 청년의 성격이 많이 변화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존 청년층에 비해 현재 청년들은 정치적인 의견표출과 자신의 신념에 따른 행동적인 변화를 적극적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시행하는 청년 사업에 있어서도 참여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자신의 스펙 쌓기를 통해 취업을 하고 사회에 진입을 하던 것과

다르게 경기침체에 따라 청년세대가 과거에 비해 취업 및 구직이 어려워짐에 따라 경제적인 독립이 늦어지면서 청년 스스로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는 노력 중 하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

최근 정당에서는 선거운동 유세 시 주요 타깃 선정부터 장소까지 대학생, 젊은 직장인 층에게 선호를 얻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20~30대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또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할당제', '청년 구직수당 지원', '창업활성화 방안' 등의 공약들이 각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이유는 청년문제가 단순히 특정 시기의 성장통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차원 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을 중심으로 하는 청년참여기구를 설치하여 청년을 지역단위 청년정책수립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 청년기본조례 에서는 청년을 연령 상한기준을 29세에서 34세 또는 39세까지 범위 설정을 함으로서 지역사회의 특징에 따른 청년참여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책수립과정에서 정책 대상자 집단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집행하는데 있어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될 수 있는 절차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대상자인 청년이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를 스스로 이끌어내고 청년들의 권리를 찾아갈 수 있을 때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청년을 재조명하자면 현 시대의 청년집단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기위한 움직임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사회적인 가치관 변화 측면에서도 청년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과거 기성세대와 비교했을 때 평생직장에 대한 개념이 많이 약화되었다. 동시에 개인의 인생을 재밌게 즐기고자 하는 놀이 가치관의 확산으로 인해 사회생활 초기 어려움에 있어서 참고 견디기 보다는 본인의 인생의 즐거움과 의미를 되찾고자 하는 청년들의 신입사원 퇴사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최근 청년취업난이 어려운 것과 동시에 신입사원 조기 퇴사율도 과거에 비해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2016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한국경영자총협회, 2016), 대졸 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율이 27.7%로 2014년 결과인 25.2%보다 2.5%p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¹⁹⁾. 특히,

19) 한국경제, 2016년 6월 6일자 기사 "입사 1년 내 퇴사 신입사원 4명 중 1명 '300인 미만 기업 퇴사율은..', <http://hei.hankyung.com/hub01/2016060611971> (2017년 10월 15일 인출).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대졸 신입사원 퇴사율이 2012년 기준 30.6%에서 2016년 상반기 기준으로 32.5%를 기록하여 1.9%p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2012년 기준 8.6%에서 2016년 상반기 9.4%로 0.8%p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조기퇴사 비율이 대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년층의 구직과 취업에 대한 논의는 입사만이 해결안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23 대졸 신입사원 1년 내 퇴사율

(단위: %)

년도	기업유형		전체
	300인 이상 기업	300인 미만 기업	
2012	8.6	30.6	23.6
2014	11.3	31.6	25.2
2016	9.4	32.5	27.7

*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2016). 신입사원채용실태조사.

신입사원의 조기퇴사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조직·직무 적응실패(49%), 급여·복리후생 불만(20%), 근무지역 및 환경불만(15.9%), 공무원 취업준비(4.4%), 유학 등 진학문제(4.1%), 기타(6.6%)로 나타난다. 이는 청년층의 취업 일자리 미스매치와도 관련되어 있으며 청년세대의 직장생활에 대한 가치관이 과거 기성세대와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년들에게 일자리 또는 구직 문제만을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해소된다는 시기는 지나갔다. 결국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의 전반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것이다. 경기침체와 저성장시대의 진입과 더불어 자신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표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아가고 평생직장에 대한 개념이 희미해졌다. 또한 이들은 자신 인생의 즐거움과 진정성 찾기 위해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이와 같이 기존 세대와는 변화된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청년세대에게 이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단 하나의 대안만으로는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고용을 중심으로 한 문제 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전체적인 삶의 질적 수준을 위해 생애주기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이들이 경험해 온 청소년기와의 연결점을 고려하고 변화해 가는 가치관을 고려하여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제 V 장

청년 니트(NEET)와 사회적응실태 및 문제점

1. 청년 니트(NEET)의 실태와 문제점
2. 청년 1인가구 실태와 문제점
3. 청년 사회적응실태와 문제점

청년 니트(NEET)와 사회적응실태 및 문제점

1. 청년 니트(NEET)의 실태와 문제점²¹⁾

1) 청년 니트(NEET)에 대한 정의

일도, 교육도, 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을 지칭하는 청년 니트는 우리사회에서 아직까지 뚜렷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개념이다. 정책적으로도 2000년대 중반부터 정책대상으로 검토된 바 있으나 2017년 들어 문재인 정부 100대 정책과제에 처음으로 등장했을 만큼 더디게 정책 대상으로 검토 중인 상황이다.

국제적으로 보면, OECD에서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청년 니트 통계를 제공하고 국가 간의 비교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년 니트를 분석한 보고서들을 발간하고 있다. OECD의 공식보고서 중 하나인 교육통계보고서(Education at a Glance)에서는 2010년 이후 매년 청년 니트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특별히 2017년 보고서에서도 이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OECD, 2017).

청년 니트의 개념 정의와 관련된 논의는 청년 연령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실업자도 청년 니트에 포함되는가?, 가사나 육아를 주로 하는 경우에 청년 니트에서 제외하는가?, 학업이나 취업과는 달리 훈련 참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등에 관한 논의로 요약해 볼 수 있다(김기현, 2017).

먼저 청년 연령 정의는 국제적으로 15세에서 29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처음 이 개념을

20) 이 장의 1절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절은 이윤주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절은 유설희 전문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21) 이 부분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이 절은 초고 중 일부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17년 10월 27일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한 2017년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에서 “한국 청년 니트(NEET)의 정의와 결정요인”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바 있음.

제기한 영국(the social exclusion unit, 1999)에서는 청소년 연령기인 10대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일본(厚生労働省, 2004)은 30대를 포괄하여 니트를 정의하였다. 한국에서는 성인기 이행이 군 입대나 높은 대학진학률 등을 근거로 30대를 포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들(남재량, 2006; 박진희, 김두순, 정한나, 이재성, 2015; 김광석, 2015)이 발표되었다. 그렇지만 대체로 취업 시기를 고려해 29세까지 청년으로 보는 연구 결과들(금재호, 전용일, 조준모, 2007; 채창균, 오호영, 정재호, 남기곤, 김기현, 2008; 이규용, 금재호, 안주엽, 윤자영, 김기현, 이지은, 신석옥, 이혜정, 김기현, 2015; 김종욱, 2017; 김기현, 2017)이 대세를 차지하고 있다.

청년 니트에서 실업자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은 일본의 청년 니트 정의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국내에서도 남재량(2006)이 일본 정의를 받아들여 청년 니트를 정의하면서 실업자를 제외한 바 있다. 그렇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대체로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만 청년 니트에서 제외하고 실업자는 청년 니트에 포함해 구직 니트 혹은 실업 니트 등으로 포괄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가사나 육아를 주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 청년 니트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본의 청년 니트 정의에서 출발하였다. 남재량(2006)은 가사나 육아를 주로 하는 여성 주부들을 청년 니트에 포함할 경우 청년 니트 내부 이질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있다. 최근 연구 중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는 경우는 김종욱(2017)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김기현(2017)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가사나 육아를 주로 하는 경우를 청년 니트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대체로 이 문제는 OECD를 비롯해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니트 판별 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 니트 중 하나의 유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마지막 문제는 직업훈련 참여에 있어서 국가의 공식교육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만 청년 니트에서 제외할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OECD는 중등후 교육(post-secondary education)에 포함된 훈련까지만 청년 니트에서 제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과 훈련이 분리된 국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공식적인 학위를 부여하지 않지만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직업훈련과정을 운영 중이다. 이는 형식과 내용의 문제인데 공식교육에 포함되지 않지만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청년들을 굳이 청년 니트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지에 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OECD 통계를 활용해 국가 간에 청년 니트를 비교할 때에는 이를 청년 니트에 포함하지만 국내 통계를 활용할 경우에는 제외하고자 한다.

2) 한국의 청년 니트(NEET) 실태

OECD에서 정의(15-29세로 취업자, 학생과 공식교육 형태의 훈련참여자만 제외)하는 청년 니트에 따라서 각 국가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5년 당시 한국의 청년 니트 비율은 19.9%로 OECD 평균보다 5.0%p 높았고 경제위기를 심하게 겪고 있었던 남유럽 국가(이탈리아, 그리스)들을 제외하고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비형식학습 형태의 직업훈련 참여가 청년 니트에 포함되면서 한국은 2014년 이후 니트 통계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김기현(2017)이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추정한 니트 비율을 살펴보면, 2016년 현재 한국의 니트 비율은 18.9%로 나타나고 있다. 10년 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지만 OECD 평균 역시 1%p 감소해 평균과의 격차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표 V-1 OECD 주요 국가의 청년 니트(NEET) 현황 비교(15-29세 기준)

(단위: %, 횡수, 시간)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핀란드	이탈리아	그리스	OECD	EU22
2005	19.9	12.4	13.1	14.2	14.5	14.7	9.2	10.9	21.1	19.5	14.9	14.0
2010	19.2	12.0	16.1	15.9	16.6	12.0	10.3	12.6	23.0	18.1	16.0	15.2
2015	(18.6)	9.8	14.4	13.7	17.2	8.6	9.1	14.3	27.4	26.1	14.5	14.7
2016	(18.9)	—	14.1	13.2	17.2	9.6	8.2	13.2	26.0	23.5	13.9	14.0

* 출처: 김기현(2017)의 <표 3(p. 7)에서 5년 주기 결과를 가져옴. 한국의 괄호() 표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집계한 추정치임.

OECD(2017)에서는 청년인구 집단을 학생(공식교육형태의 훈련과정 포함)과 취업자, 그리고 니트로 구분해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조사 결과에서 빠져 있지만 경찰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김기현(2017)의 결과를 통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공식교육형태의 훈련 참여를 포함해 한국의 학생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고 청년 니트 비율은 평균보다 높다. 한국은 고학력화에 따라 대학 진학률이 높지만 직업훈련을 받는 청년들이 제외되고 대학 졸업 후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아 학생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선취업 후진학이 이루어지고 공식교육형태로 직업훈련이 이루어지는 북유럽 국가들과 독일의 학생 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V-2 OECD 기준 주요국 2016년 청년(15-29세) 학생, 취업자, 니트 비중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핀란드	이탈리아	그리스	OECD	EU22
학생	(44.5)	44.8	40.2	47.5	52.5	50.2	53.4	47.6	51.8	47.5	49.0
취업자	(36.7)	41.1	46.6	35.3	37.9	41.6	33.3	26.4	24.6	35.8	37.0
니트	(18.9)	14.1	13.2	17.2	9.6	8.2	13.2	26.0	23.5	13.9	14.0

* 출처: OECD(2017), Educational at a Glance, Table C5, p. 316. 한국의 괄호() 표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활용
해 집계한 추정치임.

OECD(2017)에서는 성별로 청년 니트를 실업 니트와 비경제활동 니트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V-3>에서는 청년 니트 중 핵심연령대인 18세에서 24세로 대상을 좁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 청년 남성은 OECD와 비교해 실업 니트의 비율이 매우 높는데 반해 비경제활동인구 니트의 비율은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 한국 청년 여성도 마찬가지로 실업 니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V-3 OECD 기준 주요국 2016년 청년(18-24세) 성별, 경제활동상태별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핀란드	이탈리아	그리스	OECD	EU22
남자	실업 니트	(19.5)	8.2	5.8	6.2	4.8	4.5	8.7	13.6	7.5	6.5	－
	비경활 니트	(3.6)	5.6	6.9	14.7	4.4	6.6	10.1	15.3	15.5	8.0	－
여자	실업 니트	(19.7)	11.9	11.3	9.0	7.9	5.6	8.4	15.3	8.8	10.9	－
	비경활 니트	(4.1)	3.6	5.1	9.7	3.0	3.3	5.6	11.8	15.2	5.7	－

* 출처: OECD(2017), Educational at a Glance, Figure C5.2 p. 308. 한국의 괄호() 표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활용
해 집계한 추정치임.

표 V-4 2016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청년 니트(NEET) 특성

구분		니트1(OECD 기준)	니트2(통학제외)	니트3(쉬었음만 포함)
전체		18.9	16.6	2.9
성별	남자	18.6	16.0	3.5
	여자	19.3	17.2	2.3
연령	15-19세	6.7	4.7	0.8
	20-24세	22.2	19.4	4.7
	25-34세	26.1	23.9	3.4
교육수준	고졸이하	15.2	12.9	2.8
	전문대졸	24.0	21.5	3.7
	대학교졸	29.8	27.2	3.0
	대학원 이상	12.8	12.5	0.3
지역	도시(동)	18.6	16.1	2.8
	농촌(읍면)	21.4	19.7	3.4
혼인여부	미혼	17.0	14.5	3.0
	미혼 아님	42.9	42.5	1.0

* 출처: 통계청, 201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이어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청년 니트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 니트의 특성을 세 가지 정의를 통해 살펴보자. 우선 OECD 기준을 따른 니트1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고 연령별로 볼 때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특성을 보여준다. 교육수준별로는 대학원 이상을 제외하고 학력이 올라갈수록 니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도시보다는 농촌에 거주할 경우 청년 니트 비중이 높다. 마지막으로 혼인여부를 살펴보면, 미혼보다는 기혼일 때 니트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통학 중인 청년들을 니트에서 제외하고 니트2는 니트 비중만 다를 뿐 인구학적 특성은 동일한 양상을 보여준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만 니트로 볼 경우 특성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성별로 볼 때 여자보다는 남자의 니트 비중이 더 높다. 앞선 니트1과 니트2와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연령별로도 20대 초반의 니트 비중이 높아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전문대가 4년제보다 니트 비중이 더 높다. 지역별로는 동일하나 혼인 여부는 정반대로 미혼일 경우 더 높은 니트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표 V-5 2016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제활동상태별 청년 니트(NEET) 특성

구분		니트1(OECD 기준)		니트2(통학제외)		니트3(쉬었음만 포함)	
		실업 니트	비경활 니트	실업 니트	비경활 니트	실업 니트	비경활 니트
전체		21.6	78.4	24.6	75.4	0	100
성별	남자	24.2	75.8	28.1	71.9	0	100
	여자	19.1	80.9	21.4	78.6	0	100
연령	15-19세	9.1	90.9	13.0	87.0	0	100
	20-24세	18.4	81.6	21.1	78.9	0	100
	25-34세	25.5	74.5	27.9	72.1	0	100
교육수준	고졸이하	15.5	84.5	18.2	81.8	0	100
	전문대졸	25.3	74.7	28.2	71.8	0	100
	대학교졸	31.1	69.8	34.0	66.0	0	100
	대학원 이상	27.4	72.6	28.2	71.8	0	100
지역	도시(동)	22.6	77.4	25.9	74.1	0	100
	농촌(읍면)	16.2	83.8	17.6	82.4	0	100
혼인여부	미혼	24.9	75.1	29.1	70.9	0	100
	미혼 아님	5.5	94.5	5.5	94.5	0	100

* 출처: 통계청, 201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청년 니트는 경제활동상태에 따라서 실업자인 니트(실업 니트)와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는 니트(비경활 니트)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니트 정의를 OECD 기준과 학원과 직업훈련기관 통학도 니트에서 제외한 경우,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만 응답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세 번째 니트 정의는 모두 비경활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니트1과 니트2를 통해 청년 니트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니트 1이든, 니트 2이든 상관없이 청년 니트 중에 실업 니트보다는 비경활 니트의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 이는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청년 실업률은 국제적으로 보면 낮은 수준이고 비경제활동인구는 높은 수준인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비경활 니트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정책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성별로는 여성의 비경활 니트 비중이 더 높고 연령별로는 어릴수록 비경활 니트 비중이 높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저학력일수록 비경활 니트 비중이 높으며 지역별로는 도시보다는 농촌에 비경활 니트가 많다. 미혼인 경우보다 기혼인 경우에 비경활 니트일 가능성이 높았다.

3) 한국의 청년 니트(NEET) 집단초점면접(FGI) 결과

청년 니트를 대상으로 집단초점면접 조사를 실시한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목적은 청년 니트의 실제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청년 니트의 유형을 구분해 보는데 있다. 두 번째는 청년 니트들로부터 정책적인 수요를 파악해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청년 니트에게 현재의 생활상을 물어보고 이어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들에 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표 V-6 청년 니트(NEET) 집단초점면접 대상자

면접자	성별	연령	교육	혼인	비고
A	남성	28세	대재	미혼	대학교 휴학생 중으로 공시생(통계직 공무원),
B	남성	29세	대졸	미혼	대학 근처에 자취 중인 공시생(지방직 공무원)
C	남성	28세	대졸	미혼	사회복지관 그만 둔 공시생(사회복지 공무원)
D	남성	24세	고졸	미혼	고졸자로 군 전역한 직업훈련생(철근 분야)
E	여성	28세	대졸	기혼	채권회수회사 1년 취업 후 퇴사 후 주부로 취업 준비
F	여성	34세	대졸	기혼	학교 체육강사 계약만료 후 결혼하고 진로 고민
G	남성	30세	대졸	미혼	배우 연기생활 포기하고 취업준비 고민 중
H	남성	29세	대졸	미혼	보안업체 사무직 그만두고 집에서 작곡가 준비 중
I	남성	33세	고졸	기혼	10년 간 하던 분양대행업 정리 후 휴식 중
J	남성	29세	대졸	미혼	3년 행정고시 준비 실패 후 취업 준비 중

이번에 집단초점면접에 응한 청년 니트는 총 10명이었다. 10명의 청년 니트를 모집하는데 있어서 청년 니트 유형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대상자의 영역을 구분하였다. 청년 니트는 구직이나 실업자 여부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유럽연합은 가사나 가족 돌봄을 주로 하는 집단이나 사회부적응 집단, 더 좋은 기회를 얻고자 하는 집단, 문화 및 예술이나 오락활동에 전념하는 집단 등으로 더 세분화하고 있다(Eurofound, 2012).

집단초점면접에서는 대체로 4가지 유형을 토대로 모집이 이루어졌다. 모집 시에 고려한 청년 니트 유형은 ①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 집단, ② 어린아이나 가족을 돌보거나 가사활동을 하는 돌봄, 가사 집단, ③ 학업이나 취업에 실패해 의욕이 저하된 자포자기 집단, ④ 음악이나 예술 등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자발적으로 니트를 선택한 집단 등이다. 하지만 이는 임시적인 구분으로 이번에 실시한 집단초점면접을 통해 청년 니트 유형을 구체화해 보았다.

10명의 면접자 중에서 A군과 B군, C군 그리고 D군은 실업자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는 면접자들이다. A군과 B군, C군은 대학 휴학생이거나 대학을 졸업한 청년 니트로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해당되는 공시생들이다.

“자취를 하면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4학년으로 휴학 중입니다. 휴학 중에 자취를 한지는 벌써 1년 반 정도 되었네요. 현재 통계직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1년 이내에 합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청년 니트 A)

“대학을 졸업하고 자취를 하면서 일반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1년 동안 준비해 왔고 한 번 시험에 났다가 떨어졌는데 앞으로 길어야 1년 정도 더 준비할 생각으로 버티고 있습니다.”(청년 니트 B)

“작년 9월까지 사회복지관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9급 사회복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실직 후에 취업성공패키지를 10주가량 받았는데 컴퓨터 자격증을 따는 정도에 불과했고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공무원들을 접하다보니 이게 내 일이다 생각해 도전 중이고 아직 시작단계라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있는 상태입니다.”(청년 니트 C)

D군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친구의 소개로 직업학교에 다니고 있는 직업훈련생이다.

“한 달 전에 군대를 전역하고 친구 소개로 철근작업을 배우는 직업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4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잘 모르겠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일단 시작한 것이고 딱히 대안도 없어 계속 직업학교에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청년 니트 D)

이들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거나 구직활동을 하기 전에 취업을 준비 중인 취업준비생으로 엄밀한 의미의 실업자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물론 면접 이전에 공무원 시험을 치룬 바 있기 때문에 실업자였던 시기가 있었다.

E양과 F양은 돌봄, 가사 집단으로 여성으로 주부로 분류할 수 있는 면접자들이다. 그런데 실제로 둘 다 전형적인 주부유형으로 볼 수 없었다. E양은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을 구체적으로 준비 중이었고 1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두었다는 점에서 경력단절 상태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는 중이었다. F양의 경우도 여러 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는 계약직 체육 강사로 최근까지 일하였고 학교에서 다시 일자리 제의가 들어왔지만 거절하고 새로운 일을 알아보는 중이었다.

“실직하기 전에 하던 일이 채권회수 업무여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결혼 준비 시기와 맞물려 1년 정도 다니다 그만두었습니다. 결혼을 한지 두 달 정도 지났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딸까 생각 중이다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했는데 여기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 중에서 공인중개사 교육은 없어 그냥 패스하고 개인적으로 준비할 생각입니다.”(청년 니트 E)

“중학교에서 체육 강사 생활을 하다가 올해 2월에 계약만으로 일을 접었고 3월에 결혼도 해서 재계약하지 않고 현재는 무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른 중학교로 옮길 수도 있었지만 결혼문제도 있고 해서 접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다시 일할 생각을 하니 막막합니다. 현재는 떡 케이크를 만드는 학원에 두 달 가량 다녔는데 이것으로 창업을 할까 막연하게 생각 중입니다.”(청년 니트 F)

G군과 H군은 배우나 작곡가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오랫동안 노력해 온 경우로 자발적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G군은 배우 생활을 포기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영어학원 등을 다니는 등 완전한 자발적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반대로 H군은 다양한 직업생활을 경험하였으나 본인의 체질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오랜 꿈이었던 작곡가를 위해 외출을 자제한 채 집에서 작곡에 전념하고 있는 경우였다.

“한 달 전까지 배우생활을 하면서 공연도 하고 연기학원도 다녔는데 이게 내 길이 아니라는 생각에 일단 접고 취업이나 하자는 생각을 갖고 이것저것 고민 중입니다. 처음에는 꿈이 컸는데 지방 소극장이나 놀이시설 등에서 간단한 뮤지컬 등을 하거나 영화 단역 출연 등을 했지만 앞날이 어떨지 불안감과 커져 생각을 다시하게 되었습니다.”(청년 니트 G)

“대학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보안업체에 사무직으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학원 그룹에도 짧게 일하다가 이게 뭔가 고민하다 원래 꿈꾸던 작곡이나 하자고 생각하고 혼자 자취하며 집에서 곡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청년 니트 F)

I군과 J군은 취업을 했거나 준비하다 포기하고 휴식 중인 경우로 자포자기 집단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전에 하던 것을 포기했다고 해서 자포자기로 보기 어렵고 휴식 중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경우였다.

“현재 대학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졸업을 늦춘 상태입니다. 3년 동안 행정고시를 준비했는데 계속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자고 다짐하고 1년 전부터 취업을 준비 중인데 그렇다고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분야를 정한 것은 아니고 무작정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을 공부 중입니다.”(청년 니트 F)

“지난달에 10년 동안이나 일해 왔던 분양대행 사업을 그만두었습니다. 무작정 쉬자는 생각에 지금은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했으니 쉴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청년 니트 F)

이들에 대한 집단면접에서 청년 니트의 유형 구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청년 니트는 특정 상태로 유형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동적이라는 점이다. 경제학적으로 구분하는 경제활동상태도 수시로 바뀌며 정형화된 틀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청년 니트의 상태는 하루에도 바뀔 수 있는 것이어서 정태적인 접근이 아니라 동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배우생활을 접은 후 아무 일이든 구직활동을 해볼지 어디 학원에 가볼지 고민하다가 우선 어떤 일이든지 필요한 토익 점수를 높이려고 공부 중입니다.”(청년 니트 G)

특히 돌봄이나 가사를 주로 하는 주부의 경우 정책적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결혼한 여성도 다른 남성들과 다를 바 없이 취업을 희망하고 이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 니트 중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시에 결혼한 신혼부부 여성이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기업이나 회사에서 채용을 가장 기피하는 부류는 신혼이면서 아이가 없는 청년층 여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불안한 상태의 사람들이며 아이가 생기면 육아휴직 등의 문제를 회사가 떠안아야하기 때문에 신혼의 청년여성들은 취업이 매우 어렵습니다.”(청년 니트 E)

오히려 분명한 사실은 모든 경우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의 잣대로 구분해 볼 수 있는 특성은 취업을 준비하는 정도였다. 취업을 준비하는 정도가 높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분명하게 나누어지는데 이는 구직 여부나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통학 여부와는 무관해 보였다. 다시 말해 청년 니트를 구분할 때 취업 준비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대해 정책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해 보였다.

어떤 요인이 취업 준비도의 차이를 가져왔을까? 분명한 사실은 취업 준비기간이 길수록 취업 준비도가 낮았으며 취업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비 부담은 준비기간과 비례해 취업 준비도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으로 볼 때 청년 니트의 취업준비 및 생활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이는 청년구직촉진과 같은 수당 지급을 통해 미취업자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취업 준비기간이나 비용의 문제는 취업준비 과정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취업 준비 이전의 문제도 존재한다. 뚜렷한 목표를 정하고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취업준비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은 정보도 많이 부족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뚜렷한 목표를 세워 놓은 상태도 아니어서 조금 방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청년 니트 D)

이는 청년들이 니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혹은 니트 상태가 청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설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취업스터디를 하거나 가끔 약속이 있어 나갈 때를 빼고 집에서 지냅니다. 평소에 슈퍼를 가는 상황이 아니면 집 밖으로 잘 안 나갑니다. 밥도 집에서 거의 다 해먹습니다.”(청년 니트 F)

생활하는데 있어서 대체로 자취 중으로 혼자 살아가는 경우에 은둔형 외톨이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점에서 1인 가구로 살아가는 청년 니트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추진 중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퇴사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직업 상담사가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시스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의 혜택이나 지원을 받으려면 일체의 소득이 있으면 안 되고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수당을 받으면서 생활해야 하는데 그 수당이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교육훈련을 받지 않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러한 수당마저도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를 받으면서 수입이 아예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데, 이런 상황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합니다.”(청년 니트 E)

“일하는 동안 같이 데리고 있던 직원들에게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해보라고 유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진정한 나의 일자리를 찾고 원하는 직장을 알차게 준비해주는 정책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런 것이 있고 어떠한 직업이나 직장을 우리가 소개해줄 수 있다고 안내해주는 정도의 보여주기 식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청년 니트 I)

“중소기업 2+1취업 정책처럼 기업에 지원금을 주고 그 지원금으로 청년을 취업시키도록 유도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취업준비나 시험준비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수당이나 지원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나 교육훈련수당 같은 경우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단지 수당을 받기 위해서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는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청년 니트 F)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청년들에게 체감될 정도로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친구와 ○○시청에서 하는 청년드림 프로그램을 참석했었는데, 청년들을 상대로 기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매칭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취지나 구성 등의 내용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솔직히 평가하자면 거기에서 소개시켜 주는 직업이나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반응이 좋지는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런 분야는 매칭이나 알선 등의 프로그램으로는 제공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청년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합니다.”(청년 니트 J)

이번 면접에 참여한 청년들은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참여 경험을 통해 보다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2. 청년 1인가구 실태와 문제점²²⁾

1) 청년 빈곤과 1인가구

(1) 청년 빈곤

청년이 빈곤위험집단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과거에 소득빈곤으로 위험이 크게 나타나던 계층이 노인집단이었다면 OECD 국가들의 경제위기 이후 청년 계층이 빈곤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기존보다 높아지고 있다(김문길, 김미곤, 김태완, 최민정, 이세미, 2015; 27-28).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는 쉽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청년 빈곤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 예측된다. 한편, 청년층이 국가의 성장력과 미래세대의 잠재력을 지닌 세대라는 측면에서 볼 때 노인빈곤 보다 사회적 부담은 더욱 크게 체감된다.

일반적으로 청년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부모세대의 빈곤이 대물림 된 것으로서 기존의 아동 빈곤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성격과 유사하다. 이는 ‘흙수저’, ‘금수저’로 일컬어지는 계층 대물림과도 연관된다. 또 다른 한 가지 요인은 청년기로 진입함과 동시에 청년 본인의 능력이 근로빈곤 상태에 빠지는 경우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청년 빈곤은 점차 청년의 자립시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청년은 부모의 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받는 아동 빈곤과 본인의 경제적 영향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근로 빈곤의 성향을 모두 지니고 있다.

그동안 청년 빈곤 문제가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이유 중 하나는 청년의 경우 빈곤수준에 있어서 65세 이상 노령층의 빈곤율과 전 연령 기준 평균 빈곤율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적 낮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OECD 자료에서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노인세대(65세 이상)의 가처분소득은 0.9% 증가한 반면, 청년세대(18~25세)는 다른 세대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김문길, 김미곤 외, 2015; 27). 따라서 빈곤층에 대해서 논의할 때는 주로 노인과

22) 이 부분은 이윤주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아동과 같이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계층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생애주기 평가를 기준으로 하면 청년층의 빈곤율이 노령층의 빈곤율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김수정, 2010; 63).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할 때 청년 빈곤의 정의는 절대적 빈곤의 개념에서 벗어나 현재 국민경제 상황의 질적인 특성과 양적인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이 소속된 지위에 따라서 생활방식이나 환경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동일한 계층의 경제적 결핍의 문제로서 빈곤을 설명하는 것에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입체적인 접근을 통해 청년 빈곤현상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다음 <표 V-7>에서 제시하듯이 가구 내 지위별 빈곤율을 나타낸 것으로 결혼 유무에 따라서 청년의 빈곤율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7 가구, 가족특성별 청년층 빈곤율

(단위: %)

가족지위	빈곤율	가구형태	빈곤율	빈곤층 구성(인구구성)**
미혼가구주	19.6	단독	21.0	4.6(2.1)
		2인 이상	17.9	5.7(3.0)
기혼가구주	7.9	가구주본인	7.9	12.5(14.7)
배우자	7.5	가구주연령(18~34세)	6.9	9.6(13.0)
		가구주연령(35세 이상)	8.2	9.7(11.0)
자녀	9.6	양부모가구	8.1	42.8(49.2)
		한부모가구	19.8	15.1(7.1)

* 출처: 김수정(2010), 청년층의 빈곤과 이행의 곤란, p.63.

* 자료: 통계청(2008), 가계조사(전가구).

* 주: ()안의 숫자는 비빈곤집단을 포함하여 전체 청년층집단의 범주별 분포를 의미함.

미혼의 단독가구일 경우 빈곤율이 21%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결혼을 통해 가구를 형성했을 때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청년층에 있어서 결혼은 빈곤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자 빈곤의 영향을 받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016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비용의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의 비율이 41.4%로 나타났다(김기현, 하형석 외, 2016; 52). 이와 같이 청년 빈곤은 혼인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현상들이 지속되면서 혼인율이 과거에 비해 급속하게 낮아지게 된다. 결국, 청년 빈곤은 결혼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사회는 청년층의 혼인률 감소와 저출산 문제에만 관심을 쏟고 있을 뿐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접근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아동과 노인 대상의 빈곤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책 마련에 대한 높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반면, 청년 빈곤 문제에 대한 관심은 중요한 이슈로서 관심 받지 못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저성장이 장기적으로 지속됨과 동시에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까지 발생함에 따라 청년층의 고용 침체는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는 예측들이 제기되고 있다. 시간대별로 살펴보더라도 청년층이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 고용율은 상대적으로 더 낮고 실업율은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표 V-8>에서 청년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 실업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청년층의 상황이 긍정적이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률은 더 차이가 커지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현재 저성장 시기가 계속된다고 했을 때 청년 빈곤은 가까운 시일 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판단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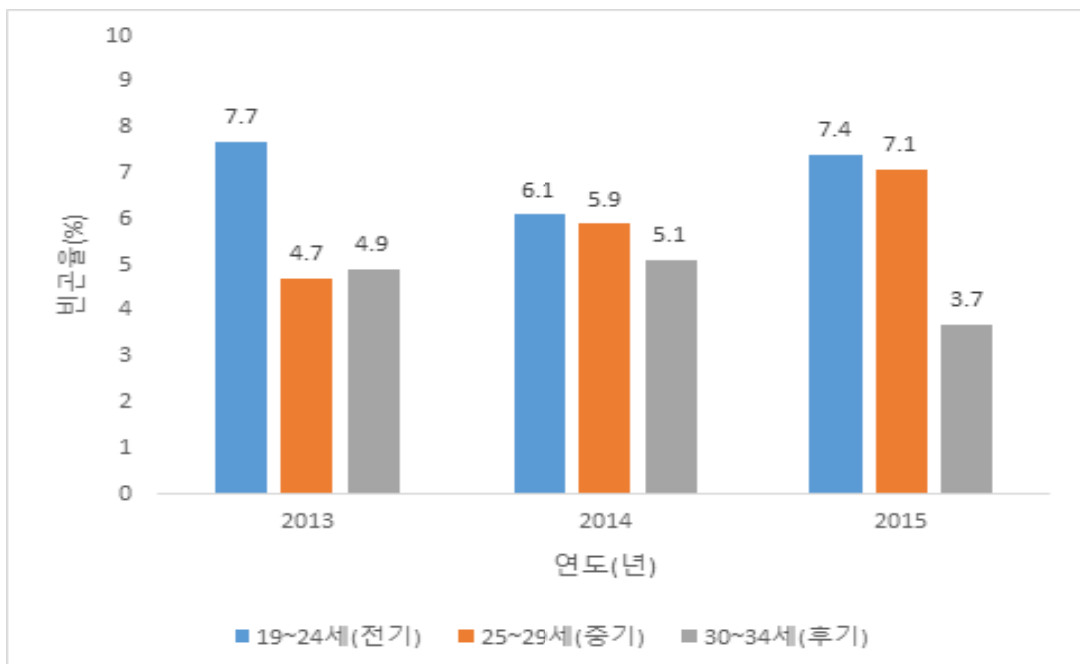
표 V-8 청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변화 추이

(단위: %)

년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전체	청년 (15~29세)	전체	청년 (15~29세)	전체	청년 (15~29세)
2000	61.2	47.2	58.5	43.4	4.4	8.1
2001	61.4	47.7	59.0	44.0	4.0	7.9
2002	62.0	48.4	60.0	45.1	3.3	7.0
2003	61.5	48.3	59.3	44.4	3.6	8.0
2004	62.1	49.2	59.8	45.1	3.7	8.3
2005	62.0	48.8	59.7	44.9	3.7	8.0
2006	61.9	47.1	59.7	43.4	3.5	7.9
2007	61.8	46.0	59.8	42.6	3.2	7.2
2008	61.5	44.8	59.5	41.6	3.2	7.2
2009	60.8	44.0	58.6	40.5	3.6	8.1
2010	61.0	43.8	58.7	40.3	3.7	8.0
2011	61.1	43.8	59.1	40.5	3.4	7.6
2012	61.3	43.7	59.4	40.4	3.2	7.5
2013	61.5	43.2	59.5	39.7	3.1	8.0
2014	62.4	44.8	60.2	40.7	3.5	9.0
2015	62.6	45.7	60.3	41.5	3.6	9.2
2016	62.1	46.2	60.1	42.1	3.2	9.7
2017.09	63.4	46.9	61.3	42.6	3.4	9.2

* 출처: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세부적으로 청년빈곤율을 연령별, 결혼여부 및 가구 형태에 따라서 구분해서 살펴보면 청년 빈곤의 특성을 파악해볼 수 있다. 먼저 연령별 기준으로 볼 때 청년 전기(19-24세)가 중기(25-29세)와 후기(30-34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청년 전기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이 시기 빈곤율에는 부모의 환경요인과 개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며, 시간이 흐르면서 취직 등으로 인해 수입이 발생함에 따라 빈곤율이 감소하는 추세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상황처럼 고용률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청년 초기의 빈곤률은 그 이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청년이 사회로 진입하는 시기에 빈곤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예방 대책이 요구된다.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출처: 이태진, 김태완 외(2016). 청년빈곤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p.129. 재구성

*주: 소득은 균등화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함

【그림 V-1】 청년 빈곤율 변화추이

(2) 청년 1인 가구 개념

대학 진학이나 취직 준비, 취업 등의 요인으로 청년들이 독립하는 시기가 점차 빨라지며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청년층의 결혼관 변화와 비혼·만혼의 증가 등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청년만의 현상 뿐 아니라 기러기 가족, 이혼률, 독거노인의 증가 등으로 인해 전 세대에 걸쳐 1인 가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청년 1인 가구의 특징을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 사회 1인 가구 전반에 대한 변화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1980년도 1인 가구가 38만 2,743명이었던 반면, 2010년 기준으로 414만 2,165명으로 웃돌아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1인 가구는 2000년에 226만 가구(전체가구 대비 15.6%)에서 2015년 506만 가구(26.5%)로 급증하였고, 2035년에는 763만 가구(34.3%)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015: 1).

이와 같은 주거 형태 변화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많은 학자들은 정의를 내리고 있다.

표 V-9 1인 가구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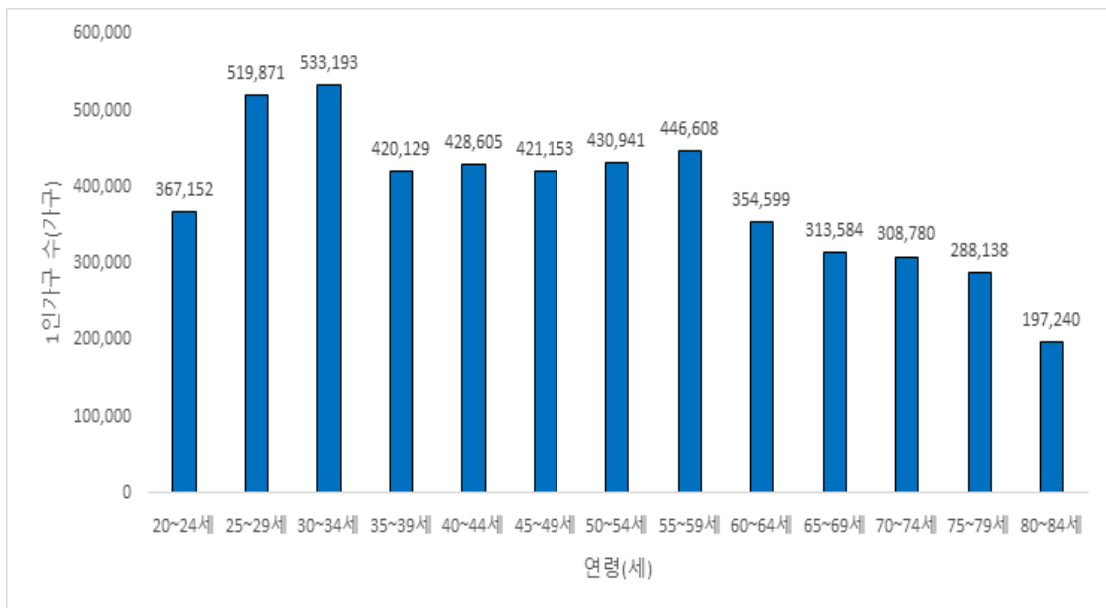
저자	연도	1인가구 지칭용어	1인가구 개념
배화옥	1993	단독가구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김명규	1998	단독가구	노인이 자녀나 친척과 동거하지 않고 독신 또는 부부로 독립된 가구형태로 생활하고 있는 가구
김행신, 이영호	1998	단독가구	노인 한명이 단독으로 거주하는 것
여윤경, 양세정	2001	단독가구	가구원 한명인 가구
박은아	2004	(노인) 단독가구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 자녀 및 친척과 동거하지 않고 1개월 이상 독립된 가구 형태로 생활하고 있는 독신(노인 독신)가구 또는 부부(노부부) 가구
통계청	2005	1인가구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
차경욱	2006	1인가구	성인 한 명이 단독으로 가구를 구성하는 것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2007	(비혼) 1인가구	현재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배우자 없이 생활하고 단독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혼자 생활하는 가구
중앙일보	2008 ,9	1인가구	한명으로 구성된 가구로 배우자가 없는 독신가구보다 넓은 의미이다. 배우자가 존재하더라도 동거하지 않거나 경제생활을 공유하지 않는 가구, 이혼 전 단계로 별거를 선택해 단독으로 가구를 구성한 세대와 기러기 가족, 주말 부부 등 가족 구성원과 별거해 혼자 사는 가구

* 출처: 변미리, 신상영, 조권중(2008), 서울의 1인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연구, p.16. 인용

<표 V-9>에 따르면, 기존에는 단독가구로 지칭되던 용어가 1인 가구라는 표현으로 사용된 것은 2005년부터 등장하였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사회경제적 현상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단독 가구와 1인 가구의 정의도 과거에 비해서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초기에는 노인이 혼자 거주하는 것을 주로 의미하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1인 가구를 주거 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화하고 있다.

첫 번째 유형은 20대 중심의 구직 준비를 하는 청년실업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와 고시촌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이다. 두 번째는 최근 새로운 사회문화적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골드미스·미스터집단으로서, 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단을 제시한다. 세 번째는 기러기가족, 이혼·별거로 인한 싱글 등과 같이 가족 해체를 중심으로 형성된 1인 가구 형태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고령자 집단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실버세대가 존재한다.

2015년 인구주택 총 조사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에 해당하는 연령별 1인 가구 수를 보면 다음과 같이 20-24세, 25-29세, 30-34세까지 그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출처: 통계청(2015),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V-2】연령대 별 1인 가구 수

이와 같이 연령대별로 살펴보다라도 20-34세로 갈수록 1인 가구는 다른 연령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초기에는 노년층을 중심으로 진행된 1인 가구에 대한 논의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됨에 따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문화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 층의 소비 패턴과 문화 트렌드인 ‘혼밥’과 ‘혼술’현상은 1인 가구 구성원의 새로운 사회적 적응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1인 가구 소비의 주 고객층으로 대변되는 ‘나홀로족’은 ‘코쿰(cocoon)족’으로도 불리며, 독립된 주거 생활공간을 지니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부류로 대표되기도 한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인 중심의 생활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마케팅 측면의 논의를 중심으로 최근 매체를 통해 다뤄지는 사례가 많다. 이와 같이 청년의 가치관이나 생활패턴의 변화를 토대로 증가하고 있는 1인 가족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사회적 현상으로 부각될 수 있지만 이를 청년 1인 가구 전반의 모습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단순히 청년층 1인 가구 증가현상을 문화적 트렌드의 변화로서가 아닌 청년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세대에 비해 청년 1인 가구의 경제적인 특성이 양극화 되어있기 때문이다.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청년 1인 가구의 모습은 여유롭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주로 하는 것으로 많이 그려지고 있으나 세대별 주거 특성을 보면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다른 세대에 비해서 보증부 월세나 사글세 형태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V-10 1인 가구 세대별 주거 특성

(단위: %)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1인 가구	다인 가구	전체	1인 가구	다인 가구	전체	1인 가구	다인 가구	전체
자가소유율		11.6	58.0	55.6	29.9	64.0	62.3	44.3	76.0	69.4
점 유 형 태	자가	11.6	58.0	55.6	29.9	64.0	62.3	44.3	76.0	69.4
	전세	26.6	19.0	19.4	16.3	16.2	16.2	12.1	7.3	8.3
	보증부 월세	45.2	16.5	18.0	38.7	13.6	14.8	17.2	8.2	10.0
	월세 (사글세)	3.9	1.1	1.3	3.6	1.4	1.5	3.8	0.6	1.3
	기타	12.7	5.4	5.8	11.5	4.9	5.2	22.7	7.9	11.0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출처: 강은나, 이민홍(2016). 보건복지포럼. 우리나라 세대별 1인 가구 현황과 정책과제, p.53.

청년층의 1인 가구 증가폭은 청년 고용률과 연관지어 관심있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이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층이 증가하면서 이를 준비하기 위한 학원이나 고시원이 집중되어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청년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 현상은 성인기의 안정된 독립으로서 바라만 보기에는 한계가 나타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청년빈곤에 초점을 맞춰 독립가구주로서의 청년의 삶을 조명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직이 점차 어려워지고 실업률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 1인 가구 중에서 부모로부터 독립은 하였지만 일정한 소득을 얻기 어려운 상황을 집중해서 보았다. 특히, 취업이나 구직준비를 위해 지방에서 올라오면서 비자발적인 독립을 하게 되는 청년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청년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았으며, 물질적·심리적 결핍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위험에 빠질 우려도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실 속의 청년 1인가구는 미디어에서 자주 비춰지는 고급화된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따라서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년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 국내 사례를 통해 본 1인 가구 청년 실태 및 문제점

선행연구를 살펴 본 결과, 주로 서울지역 중심의 1인 가구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서울특별시의회, 2014). 본 장에서는 서울 뿐 아니라 타 지역의 청년 1인가구의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청년 정책 마련을 위해 서울에서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3개의 지역과 강원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27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면접 대상자 연령은 20-30대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현재 학생이거나 휴학생, 졸업 유예생,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월 평균 고정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청년을 중심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면담자의 대부분의 경우 정식 취업을 한 상태이기 보다는 학생이거나 시험 준비 중, 또는 취업 준비생의 비율이 높았다.

표 V-11 서울지역 청년 1인 가구 집단초점면접 대상자

면접자	지역	성별	연령	교육	비고
A	서울 동작구	남성	20대 중반	대졸	임용고시 준비하면서 노량진 부근에서 거주
B		남성	20대 중반	대졸	노량진에서 공무원 7,9급 시험 준비하면서 인천에서 1인 가구 거주하고 있으나 대부분 노량진에서 생활
C		남성	20대 중반	졸업 유예	임용고시 준비하면서 노량진 부근 거주
D		남성	20대 후반	대졸	동대문구에서 혼자 거주하며 인터넷 강의로 임용고시 준비 중이며 시험 스터디 모임을 주로 노량진이나 홍대 부근에서 함
E	서울 금천구	여성	30대 초반	대졸	대학졸업 이후 중소기업 2년 째 근무 중 부모님 댁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부모님이 귀향하시면서 1인 가구로 거주 하는 상태
F		여성	20대 초반	대학 재학	대학입학으로 거주지를 변경하여 1인 가구로 거주 중
G		남성	20대 후반	졸업 유예	대학입학을 통해 서울로 오면서 자취를 시작. 현재 취업 준비를 하면서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동 중
H		남성	20대 초반	대학 재학	대학입학을 통해 학교 부근 오피스텔에서 거주 중
I		남성	20대 초반	대학 재학	집은 서울이고 학교가 경기도라서 통학 때문에 학교 부근의 원룸에서 거주 중
J	서울 관악구	남성	20대 중반	대학 재학	부모님 집이 서울이라 통학 가능하지만 독립을 원하고 있어 학교 부근 오피스텔에서 자취
K		남성	20대 중반	대학 재학	부모님 집이 지방이라 통학이 불가능한 상황으로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고시촌 거주
L		남성	20대 중반	대학 휴학	부모님 집이 지방이라 고시촌에서 자취를 하며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고시 준비 중
M		여성	20대 초반	대학 재학	대학입학과 동시에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생활 적응이 어려워 학교 주변 오피스텔로 이사해서 1인 가구 거주 중

표 V-12 서울 이외지역 청년 1인 가구 집단초점면접 대상자

면접자	지역	성별	연령	교육	비고
N	강원	여성	20대	대학 휴학	대학이 지방에 위치하여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음 인턴생활을 위해 서울에 종로 부근에서 1인 가구 거주
O		여성	20대	대학 재학	대학이 지방에 위치하여 자취를 하고 있음. 학교 부근보다 30분 정도 떨어진 지역 내 다세대 주택 원룸에서 거주
P	대구 광역시	남성	20대 후반	졸업 유예	공무원 시험준비로 인해 졸업유예를 하고 2년째 시험을 준비하고 있음. 주로 인터넷강의를 통해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 외부활동을 거의 하지 않음
Q		남성	20대 중반	대학 재학	빌라 형태의 다세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학교 생활을 하면서 취업 준비 중임
R		여성	20대 중반	대학 휴학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현재 휴학중인 상태로 부모님 집은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으나 학교와 가까운 곳을 찾아 자취중임. 1년 전에는 친구와 함께 원룸에서 거주하다가 올해 1인 가구로 생활 중임
S	광주 광역시	남성	30대 초반	대학 졸업	대학을 다니는 동안 행정고시 준비를 위해서 서울로 가서 고시원에서 3년을 거주함. 이후 다시 학교 주변 지역으로 돌아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음
T		남성	30대 초반	대학 졸업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창업 지원을 통해 청년 거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있으며 현재 오피스텔에서 1인 가구로 거주 중
U		남성	20대 중반	고졸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진학 대신 군입대를 하고 올해 초 제대하여 현재 직업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 고시원에서 친구 세 명이 함께 방을 쓰고 있음
V		여성	20대 중반	대학 졸업	대학 졸업 이후 현재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다니고 있음. 대학 입학부터 지금까지 1인 가구로 거주 중
W		여성	20대 초반	대학 재학	전문대 재학생이며 전공 특성 상 취직이 용이하려 현재 자격증 시험 준비 중임.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고시원에서 거주중
X	제주 특별자치도	남성	20대 후반	졸업 유예	취업 준비를 하다가 현재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음. 제주 청년 창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제주 출신이지만 학교 부근 원룸에서 거주 중
Y		남성	30대 초반	졸업 유예	5년 가까이 졸업을 유예하고 있고 현재 제주 청년 협동조합원으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제주 출신이나 집이 제주 시내에서 1시간 이상 걸려 제주 신시까지 부근 다세대 주택 연세로 살고 있음
Z		남성	20대 중반	대학 중퇴	타지역 출신으로 음악 전공을 하고 있으나 학비 문제로 인해 대학을 중퇴하고 제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을 유지하고 있음
AA		여성	30대 중반	대졸	서울에서 5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1년 전 제주로 이주 오면서 다세대 주택과 소형 아파트에서 연세를 내며 1인 가구로 거주 중

표 V-13 FGI 1인 가구 청년 지역 구분

유형	사례조사 대상지역	지역적 특성
대학가 인접공간	서울시 관악구 대학동 일대	대학가에 인접하여 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집값 등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강남 일대 직장인 중심 거주율도 높게 나타남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일대	대학가에 인접하여 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최근 휴학과 졸업유예를 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늘어 취업준비생이나 저임금노동자들의 거주비율이 늘어나고 있음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로 일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동 일대	제주도 내 대학들이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제주시내 부근에 청년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음. 제주 특성 상 월세가 아닌 연세 개념으로 주거비를 지불하고 있음. 지역 내 주거상태와 관계 없이 전반적으로 가격 차이가 크지 않지만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저렴한 편은 아님
고시촌 공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일대	사법고시가 폐지되면서 과거에 비해서는 상권이 줄어든 편이지만 대학동에 비해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지역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일대	고시원, 독서실, 학원 등 밀집 지역
다세대 주거공간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일대	서울시내 중에서 집값이 낮은 지역이라 근처 직장인 중심 밀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대	제주시 구도심과 신도심 중심으로 타 지역에서 제주로 이주 온 청년 주거 밀집 지역이 형성
융합형 A 대학가+고시촌 점이공간	서울 관악구 대학동-신림동 일대	대학을 중심으로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 대학생과 고시 준비생이 혼재 되어 있는 점이지역
융합형 B 대학가+외국인 (조선족)밀집 주거공간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일대	공단과 가까운 지역으로 고려인 밀집 거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부근	□□산업단지와 00대 주거지역 범위가 점차 넓어지면서 생긴 점이지역. 공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집값이 싼 대학가로 점차 범위를 넓히게 됨
융합형 C 상업업무+공장 지대인접공간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일대	구로디지털 가산디지털 단지 부근으로서 기업 특성 상 스타트업 기업이 많이 존재함에 따라 젊은 층의 직장인 수가 증가하고 있음

* 출처: FGI 인터뷰 자료 참고

초점집단인터뷰를 바탕으로 청년 1인 가구의 문제점을 주거문제, 식생활 및 건강문제, 사회관계망의 결핍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공간 유형을 구분하여 청년 1인 가구 특성을 분석하였다. 거주 공간 유형 구분은 대학가 인접공간, 고시촌 공간, 다세대 주거공간 등으로 구분하였고, 면담자 인터뷰를 통해 융합형으로 형성된 주거 지역에 있어서는 대학가와 고시촌의 결합, 대학가와 외국인 밀집지형의 결합, 상업업무와 공장지대 결합 등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초점집단면담은 해당 주제에 대한 질문지를 바탕으로 현재 1인 가구 생활 모습, 주거지역에 대한 만족 및 불편한 점, 1인 가구 생활에서 요구되는 사항, 지역사회 또는 정부 중심의 청년 또는 1인 가구 청년에게 지원 내용 등을 중심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평균 면담 시간은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로 이루어졌으며 한 그룹 당 면담 인원은 4~5명으로 구성되었다. 면담 시작 전에 라포 형성을 위한 친밀함을 형성하기 위해 사전에 온라인 매체나 통화 등을 통해 사전 조사를 진행하였고, 면담 시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2차, 3차에 걸쳐 해당 주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① 주거문제

청년빈곤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주거형태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시기 주거 빈곤을 두 가지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있다(진미윤, 2013; 김태완, 이주미 등, 2015). 주거비 부담으로 월소득 대비 임대료(월세) 부담이 20%이상인 경우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최저주거기준 중 주거 면적과 주거환경 중 반 지하, 옥탑방 등에 거주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청년층의 경우, 보증부 월세 형태로 1인 가구를 유지하는 경향이 높아 월소득 대비 임대료에서 체감되는 부담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주거지역을 선정할 때 가장 우선되는 조건으로서 월세 비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에 살고 있어도 공무원 시험이나 취업을 준비하려면 대부분 휴학을 하거나 졸업유예를 하고 노랑진 같은 고시촌으로 갑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 다른 친구들도 대부분 스펙준비를 하거나 인턴을 할 기회가 서울에 많이 있다보니까 서울로 많이 올라가죠. 하지만 문제는 서울에 거주할 곳도 마땅하지 않고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주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고시원 등을 많이 찾아보곤 합니다.”(청년 1인 가구 S)

“저는 부모님이 서울에 계시지만 학교와도 거리가 멀고 지금 준비하는 시험공부를 하기에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서 한 평도 안 되는 고시원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주말마다 집에 가서 다리를 뻗고 누워서 자는 것이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고시원의 경우 옆방 소리도 다 들리고 공용 화장실과 부엌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월 10만원대로 보증금 없이 살 수 있는 곳을 찾다보니 불편한 것은 감수해야 했습니다.”(청년 1인 가구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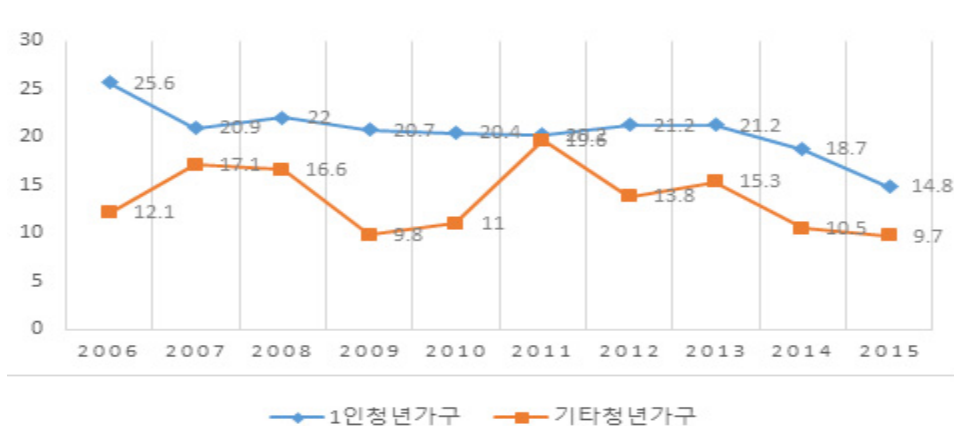
청년층의 경우 취업이 어려워 지다보니 대학입시를 준비할 때처럼 시험 준비를 위해 유명한 학원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다양한 스펙을 쌓기 위해 인턴 등을 경험하기 위해 서울로 모이는 경향성이 크다. 청년들이 다양하게 자신들의 진로를 준비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서울로 모인 청년들은 적은 돈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

“월세를 벌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를 꼭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도 저는 운이 좋아서 제가 수업을 듣는 학원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구할 수 있었어요. 교통비도 안 들고 시간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원 아르바이트의 경우 수강료를 할인해주는 것으로 페이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서울에서 살기 위해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을 계속해서 찾아봐야 합니다.”(청년 1인 가구 B)

“월세나 학원비, 학비 등은 제가 노력한다고 줄일 수 있는 비용이 아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먹는 비용에서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들과하고 약속도 가급적이면 안하려고 하구요. 우선 시험에 붙는 것이 최우선순위이다 보니까 다른 활동들을 하는데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안정되지 못한 상황이라 빨리 취직을 하고 싶은 생각 밖에는 없는데.. 이렇게 아르바이트와 병행하면서 시험 준비를 하다보면 합격하는 시간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청년 1인 가구 D)

취업이나 시험 준비를 위해 서울에서 1인 가구로 살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 많은 경우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는 비용으로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식비나 문화비용 등을 최대한 절약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다음 [그림 V-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청년 1인가구의 경우 주거 빈곤율이 기타 청년가구에 비해 계속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 1인 가구에 대해서 미디어 매체를 통해 비춰지는 풍요롭고 여유로운 생활 모습과는 다른 청년들의 생활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출처: 김태완, 최준영(2017), 청년의 빈곤실태: 청년, 누가 가난한가, p.11. 재구성

【그림 V-3】 청년 주거빈곤율

주거비 걱정은 단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에서 취업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년의 경우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거주 지역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자는 많기 때문에 월세나 주거유지비용이 서울과 비교했을 때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차이를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년 주거지원 정책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시행되는 사례가 많아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불만의 목소리도 제기하였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집값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대부분 청년 주거정책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서울 지역 기준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지방에 사는 청년들은 집값 걱정 없이 사는 줄 알아요. 하지만 지방에 있는 청년들은 서울에 있는 친구들보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도 인턴직을 구하는 것도 어렵다 보니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적어요. 그렇다고 집값이 아주 많이 싼 것도 아니예요. 제가 학교 주변 원룸에 살고 있는데 보증금 500만원에 월마다 35만원을 내고 있어요.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서울이랑 비교할 때 아주 가격이 낮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자라서 조금 안전한 동네를 찾다보니까 월세가 높게 나오는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원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대안이 크게 없었어요. 지방에 있는 청년들을 중심으로도 주거 정책이 다양하게 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1인 가구 V)

“저는 군대에서 전역한지 한 달 가까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입대를 해서 전역하고 오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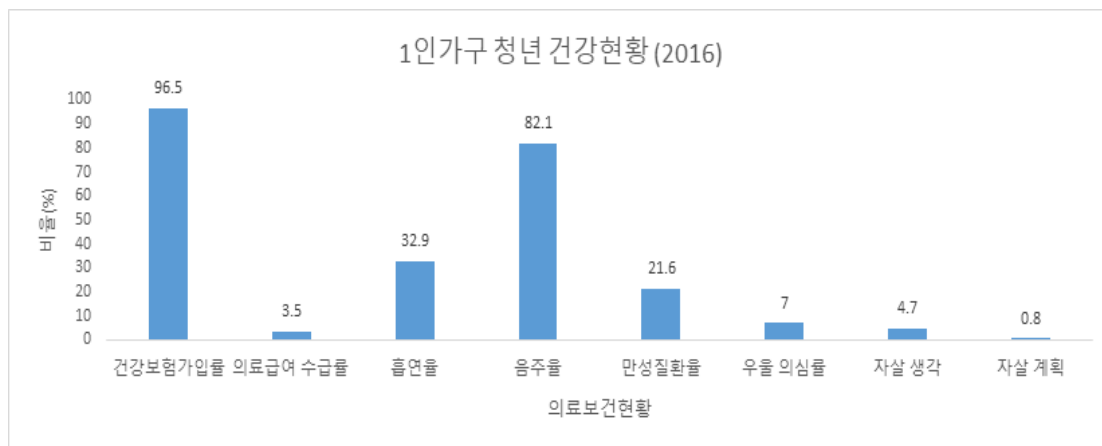
정부차원에서 청년 대상의 주거정책으로 제안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정책 사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혹은 대학생이 정책 대상인 경우가 상당수이다. 하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들도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주거비를 충당하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분을 고려하여 각 지역마다의 특징을 반영한 청년 주거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유형	사례 대상지역	
대학가 인접 공간		
고시촌 인접 공간		
다세대 주거 공간		

【그림 V-4】 집단초점인터뷰 대상자 거주 지역

② 식생활 · 건강 및 안전 문제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비경제활동 비중이 낮은 반면, 취업률, 실업률, 상용직,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다인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건강상태의 경우에 있어서도 흡연율, 음주율, 우울 의심률, 자살생각, 자살계획 등의 정신적인 측면의 문제 또한 다인가구에 거주하는 청년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강은나, 이민홍, 2016: 50-51).



* 출처: 강은나, 이민홍(2016), '우리나라 세대별 1인 가구 현황과 정책과제', p.51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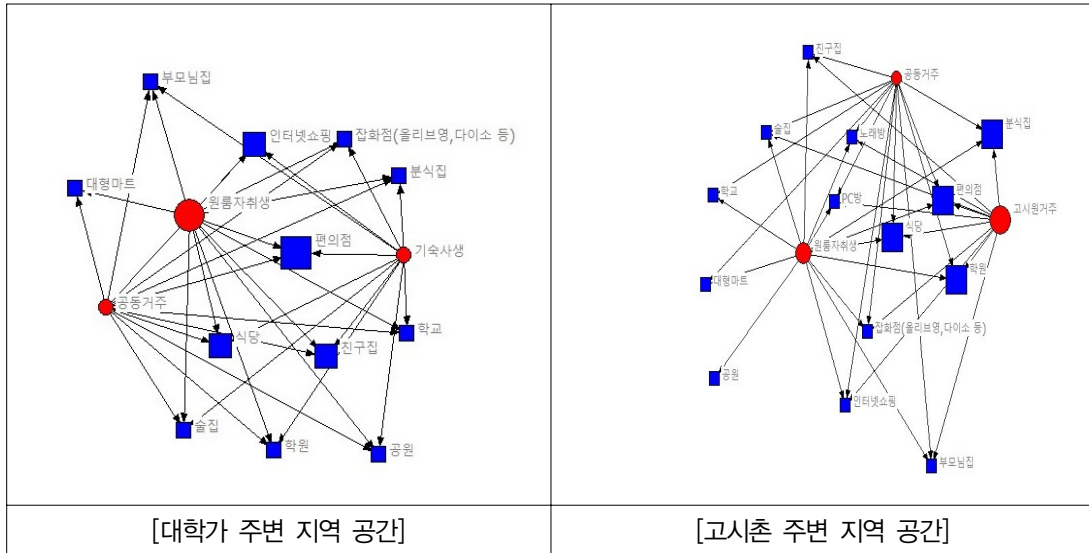
* 원자료: 한국복지패널 9차년도 원자료 재분석.

【그림 V-5】 청년 1인 가구 건강 현황

청년 1인 가구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식생활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1개월 간 방문한 장소를 중심으로 이동 경로를 살펴보았다. 초점집단면담에 참석한 청년 중 동의를 한 청년을 중심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1개월 동안 이동한 장소와 방문 횟수를 토대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결망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그림 V-6>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각 거주 유형별로 각 이동 공간 및 경로에 있어서 특징이 나타났다.

먼저, 대학가와 고시촌 주변 지역 공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경우 집 주변에서 갈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았다. 다양한 유형의 매장들로 구성되어 있고 식당도 청년들이 큰 부담 없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분포하였다. 주로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기 보다는 편의점과 분식 등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주거 지역 중심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대학가나 고시촌 주변의 원룸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면서 필요한 생필품 또한 편의점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 V-6】 주거 공간에 따른 이동 경로

“학교 주변에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집에서는 거의 음식을 하지 않아요. 주방이 있기는 한데 매우 좁아서 음식을 하기도 어렵고 환기가 잘 안 되는 탓에 음식을 해도 며칠 내내 냄새가 빠지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혼자서 저녁을 먹으려고 마트에서 재료를 사오면 비용은 식당에서 사먹는 것이 더 싸게 느껴져요. 그 재료들이 남아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결국은 다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청년 1인 가구 W)

“시험 준비를 하다 보면 식사 시간을 여유롭게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고시학원 주변에서 컵밥을 사먹거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주변에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다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무엇보다 같이 먹고 하면 돈도 혼자 먹을 때보다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외롭기는 해도 혼자서 빨리 먹고 제가 할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청년 1인 가구 C)

“저는 요즘 가능하면 집에서 밥을 해서 먹고 있어요. 자취한지 거의 10년째 되었는데 계속 밥을 사먹고 인스턴트 식품을 먹다보니까 위염이 생겼어요. MSG 맛이 질리기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은 귀찮아도 가급적 음식을 해서 먹어요. 엄청난 음식을 하지는 못하지만 김치찌개나 계란말이 같이 쉽게 할 수 있는 것 위주로 하는데 사실 가장 문제는 재료 구입인 것 같아요. 요즘 1인가구 맞춤형으로 작은 크기로 식재료가 많이 나와 있기는 한데 가격이 원래 큰 사이즈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파를 한 단 사는 것보다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이 600원 정도 더 비싼데 그 돈 생각하면 쉽게 1인용 음식 재료들을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청년 1인 가구 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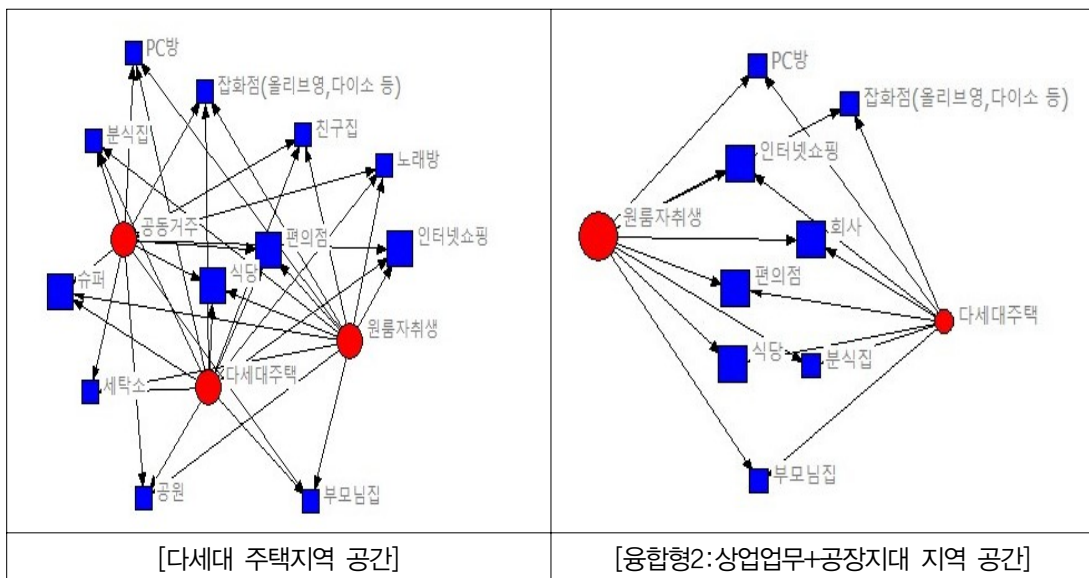
이처럼 해당 공간에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주변 지역의 저렴한 식당에서 주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아르바이트 일정이나 비용 등의 측면에서 식당을 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편의점 도시락 등을 많이 이용하였다. 식당에서 저렴한 가격에 파는 한식이나 편의점 도시락의 경우 1인 가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점차 질적인 측면이 개선되는 면이 있지만 집에서 하는 음식보다 조미료 사용이나 영양 측면에 있어서 걱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또한 직접 음식을 해서 먹는 청년들의 사례의 경우, 1인 가구 특성에 맞춘 재료들과 즉석조리식품들이 많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가격대가 비싸다보니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제시하였다.

한편, 다세대 주택지역과 융합형(상업업무+공장지대 지역) 공간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의 이동 경로는 대학가나 고시촌의 청년들과는 차이를 보였다. 다세대 주택지역의 경우 기존 주거지역 상권이 있는 가운데 1인 가구를 위한 서비스 업체들이 발생하면서 매장 공간 특성이 혼재된 모습을 보였다. 대학졸업을 유예하거나 졸업한 이후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의 경우는 학교근처에서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학교를 중심으로 정보를 얻거나 스터디를 하는 경우가 많아 쉽게 대학가 근처를 떠나지 못하는 양면적인 측면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대안적 측면으로 학교에서 근접한 주택가 주변 다세대 빌라가 밀집한 지역 원룸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있었다.

“학교를 졸업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저보다 10살 가까이 어린 친구들이 입학한 상황이라서 학교 주변에서 살다가 길에서 마주치면 민망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집밖으로 나가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취업 스터디를 하려면 학교에서 모이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 지역을 벗어나서 살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지역에 원룸을 찾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학교 주변보다 월세는 3만 원 정도 비싼데 그래도 후배들을 마주치는 일이 적어서 마음이 편한해요.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는데 왜 제가 죄인이 된 기분으로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청년 1인 가구 P)

“학교 근처에서 살면 생활이 흐트러지는 것 같아서 학교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아파트와 다세대 빌라 단지 부근으로 원룸을 구했습니다. 학교 근처에는 술집도 많고 혼자서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시설이 많긴 한데 이 동네는 조용하기도 하고 세탁소나 동네 슈퍼마켓 같은 시설들을 사용할 수 있어서 생활에 편리한 점도 있어요. 또 제가 사는 빌라에 여러 집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같은 층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가 음식도 가끔 챙겨주시고 안부도 물어보고 해주셔서 학교에서 자취할 때보다 안정되는 측면도 꽤 있어요.” (청년 1인 가구 O)



【그림 V-7】 주거 공간에 따른 이동 경로

한편으로는 다세대 주택 지역의 치안 문제에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기존 주거지역 형태이다 보니까 안전망 등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도 많고 노후화된 시설이 많아서 위험을 느끼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저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조용한 곳이 좋을 것 같아서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유흥가랑 떨어진 곳으로 집을 구했습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불만이 없는데 밤에 집에 오는 길이 사실은 가장 큰 걱정입니다. 밤 9시만 되더라도 골목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기도 하고 길에 가로등이 고장난 것도 많아서 계속 긴장하면서 집에 들어올 때가 많아요. 요즘 여성 1인가구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뉴스가 많이 나오다보니까 어떤 때는 뒤에서 누군가 오면 저도 모르게 움츠리게 되는 습관이 생겼어요. 부모님께서도 안전한 지역으로 이사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아직 제가 백수라 돈을 못 버는데 월세까지 부모님께 부담 많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청년 1인 가구 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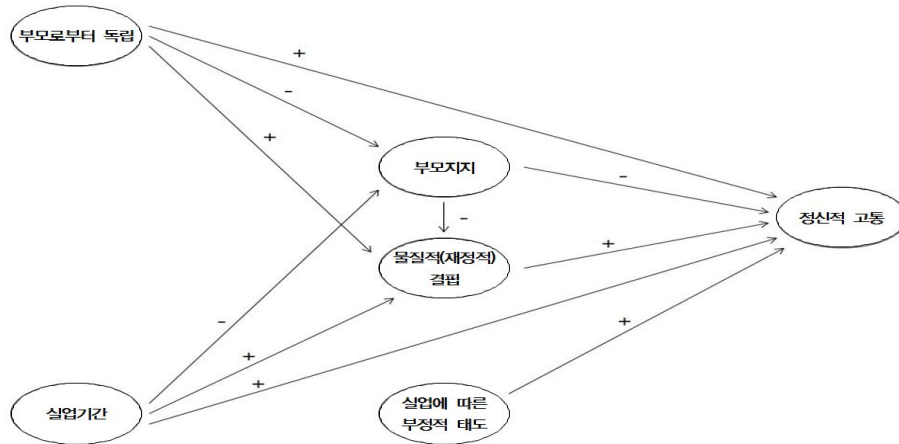
③ 사회적 관계 문제

앞서 주거 공간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이동 장소에 대한 특성과 그에 따른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물리적인 자본의 영향을 크게 받는 요소들이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집까지 가는 길이 밝고 안전한 것을 원하고자 한다면, 집 주변에 깨끗한 환경이 갖춰져 있기를 원하면 그만큼 본인의 주거 비용에 많이 투자 했을 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청년들의 경우, 안전한 측면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에 있어서 물리적 자본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년들은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반복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최근에는 청년 사회 내 네트워크 조성을 통한 사회적 자본을 마련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 때, 사회적 자본이란 개인들 사이의 연계,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reciprocity)과 신뢰의 규범을 의미하며, 사람들 간의 관계 회복을 통한 공동체 내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Putnam, 2000: 22). 청년 문제의 해결 방안 중 하나로서 공동체 내에서의 사회적 자본을 제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청년층의 심리적·정신적 지원을 통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서이다. 경제적 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청년 구직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구직 실패경험이 잦아지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정서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청년층의 사회적 자본의 회복은 청년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한편, <그림 V-8>에서 보듯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거나 오랜 기간 동안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 뿐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측면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실업기간이 부모의 지지와 물질적 재정적

결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실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부정적인 태도가 결합되어 정신적인 고통을 가져온다(Bjarnason & Sigurdardottir, 2003: 975).



* 출처: Bjarnason & Sigurdardottir(2003). "Psychological distress during unemployment and beyond: social support and material deprivation among youth in six northern Europe countries, Social science & Medicine, p. 975. 재구성

【그림 V-8】 청년의 실업이 정신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윤소하의원실에서 의료통계 정보 자료를 토대로 발표했듯이 2012년~2016년 사이 20대 청년들의 건강이 악화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5년간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각각 65%와 22.2%, 알코올 중독도 20.9% 증가한 것으로서 밝혀졌다. 우리 사회 청년은 침체된 경제 상황에서 많은 것을 손실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청년들의 경우 구직과 취업 실패에 따른 좌절로 인해서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자리 지원을 통한 본질적인 문제 해결도 필요하지만 현 시점에서의 청년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지원책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물리적인 자본을 획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정감을 채우기 어렵다면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해줌으로서 청년들이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해 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움직임 중 하나로써 최근 지역사회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년 네트워크 조직을 사례를 들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소셜다이닝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청년 네트워크가 증가하면서 이용 경험이 있는 청년의 숫자가 점차 늘고 있다.

“처음 소셜다이닝을 오게 된 것은 친구가 페이스북에서 홍보 영상을 보고 같이 가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못 가게 되면서 저 혼자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자취하면서 혼자 밥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와보니까 대부분이 1인 가구라서 그런지 처음 보는 사람들과 밥 먹는 것에 대해서 어색해 했어요. 오히려 억지로 친해지려는 노력이 없었던 부분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음식도 같이 배우면서 내가 만들어 먹을 수 있었던 점입니다. 해물찜 같은 요리는 혼자 집에서 할 수 없는데 공유식당에서 사람들과 같이 싱싱한 재료로 음식을 같이 해서 먹으니깐 그 자체로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청년 1인 가구 F)

“입사하면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동네 친구도 없고 부모님도 귀향하시면서 집에 혼자 있게 되니까 퇴근하고 와서 밥 먹는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또 새로 온 동네에서 아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괜히 우울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TV에서 소셜다이닝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우리 동네에도 있나 싶어서 찾아보고 오게 되었죠. 요즘은 다른 약속이 없으면 종종 오는 편이에요. 같이 밥을 먹고 하면서 동질감도 생기고 동네 생활에서의 팁들도 얻어가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어릴 때 친한 친구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이 동네에 저 혼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안들게 되어서 좋았습니다.”(1인 가구 청년 E)

“친구들 만나면 밥 먹고, 술 마시고 하면 사실 돈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친구들 만나게 조금씩 부담이 되었습니다. 또 각자 공시 준비나 취업준비 등을 하다보니까 내가 같이 밥 먹자고 하는 것도 미안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셜다이닝 프로그램에 오게 되고 청년 네트워크에서 진행하는 다른 문화 프로그램 사업들도 참여하면서 소속감? 같은 안정도 느끼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안 가질 수 있어서 좋은 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는 지역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다고 하면 또 어떻게 지내야 할지 걱정이긴 해요. 다음 달에 이사 갈 계획이 있는데 당분간은 계속해서 오려고 합니다.”(청년 1인 가구 I)

지역사회 내 소셜다이닝을 비롯하여 청년네트워크 중심으로 청년 대상 사업 프로그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자체 사업의 일환으로서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있어 서울청년네트워크, 청년허브 등이 플랫폼이 되어 청년 대상의 문화, 생활공간 나눔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각 지역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북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등에서 청년 공간 마련과 함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하나의 사례로서 금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춘빨당’은 금천구에서 민관이 협업하여 지역구 청년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소셜다이닝을 비롯하여 각종 문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출처: 청춘빨당 페이스북 홈페이지에서 2017. 10. 3 인출

【그림 V-9】 청년대상 소셜다이닝 프로그램 사례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지역사회 단위의 활동 시설 마련이 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지역구 내 일정 수의 기관 설치가 이루어져있다. 그에 비해 청년의 경우 지역사회 내에서 편안하게 쉬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과거에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 직장으로의 편입하는 시기가 짧아 청년층이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하지만 점점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공간적인 이동이 유연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은 주로 카페에서 공부를 하거나 학원을 다니는 등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장소로서의 활동 공간이 필요하다.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위한 주체로서의 자립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만큼 벌어진 틈을 메워줄 수 있는 결핍 요인들을 지역사회 단위에서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다행히도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청년기본조례 제정과 더불어 청년 지원사업은 계속해서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청년 대상의 정책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면 청년들이 다음 이행기로 진입하기 이전의 삶의 보다 더 풍족해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 출처: 무중력시대 페이스북 홈페이지에서 2017. 10. 3 인출



* 출처: 청춘상담소-좀 놀아본언니들 페이스북 홈페이지에서 2017. 10. 3 인출

【그림 V-10】청년 공간 사례

【그림 V-11】청년 대상 상담 플랫폼 사례

다양한 지역을 토대로 면담을 진행한 결과,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또한 차이를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청년문제라는 큰 주제로서는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지원 방안이나 방법에 있어서는 지역적인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였다. 특히 청년을 주도로 하는 지역사회 참여 네트워크 활동에 있어서도 지역마다의 행정적인 면과 더불어 활동 패턴에 있어서도 특성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나의 사례로서 제주 지역의 경우, 타 시·도에서 제주로 이동해 오는 청년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터전으로서 제주에 온 청년들의 적응을 위한 기반 프로그램들이 도나 시차원에서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기존 제주에 거주하던 청년들 또한 과거에 비해 취업으로 인해 유출되는 사례가 낮아 제주지역 청년을 위한 사업 프로그램의 숫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로 이주한지 2년 정도 지났어요. 회사 생활을 4년 넘게 하다가 이대로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기 전에 제주를 몇 번씩 방문하면서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요. 하지만 제가 계획한 것이라 실제 제주에 와서 사는 삶은 매우

달랐어요. 당장 집을 구하는 것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 서른 넘어서 새로운 곳에 와서 무언가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모험이었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곳에서도. 그래서 도움을 받기 시작한 곳이 처음에는 저와 비슷하게 서울에서 이주해온 분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주청년네트워크를 알게 되어 이제는 제주에서 계속 살아온 청년들과 함께 제주의 청년문제를 논하기도 하고 이 동네에서의 삶에 점점 애정이 쌓이고 있습니다.” (청년 1인 가구 AA)

“저는 서귀포 출신이라 대학 때 제주시로 와서 계속 자취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같은 제주도 안에 있으면서 무슨 자취를 하냐고 하지만 서귀포시와 제주시는 대중교통으로는 거의 왕복 3시간 넘게 걸리기 때문에 학교나 직장을 다니긴 쉽지 않죠. 그리고 육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두 지역 간의 문화도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제주시에 와서 혼자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시·도로 이동한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초기에 적응을 못하고 며칠마다 서귀포에 있는 집을 가고 했었는데 이제는 청년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저와 같은 취준생 청년들과 함께 제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방법들을 찾고 있어요.”(청년 1인 가구 X)



* 출처: 제주 청년네트워크 페이스북 홈페이지에서 2017. 10. 3 인출

【그림 V-12】 제주 청년 활동 프로그램 사례

3. 청년 사회적응 실태와 문제점²³⁾

1) 은둔형 외톨이의 등장배경 및 정의

최근에 자신이 속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외부세계와의 교류를 차단하면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대해 먼저 경험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실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일본에서는 ‘틀어박히다’라는 의미의 ‘히키코모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1970년대 후반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일본에서는 처음에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학생들이 무단결석을 하면서 낮에는 집 안에만 있다가 밤이 되면 외출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에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장기간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청년 실업률이 늘어나게 되자, 실업과 무기력함으로 인해 은둔 생활을 하는 젊은 성인층으로 사회적인 관심이 확대되었다(여인중, 이영식, 2012). 또한, 이 시기에 히키코모리에 의한 범죄 발생률이 높아지자 일본에서는 이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히키코모리를 위한 상담 시설 등을 마련하고, 2010년부터는 ‘히키코모리 대책 추진사업’을 진행하는 등 이들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박정란, 서홍란, 장수한, 2011).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내각부가 2017년에 발표한 ‘아동·청소년백서(子供·若者白書)’ 결과에 의하면, 15-39세 히키코모리는 54만 1천명으로 추정되고 있다(內閣府, 2017). 특히, 40대 이상 히키코모리가 전 연령대의 30-50%를 차지하면서 23만 2천명에서 54만 1천명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어(內閣府, 2017), 중장년 히키코모리의 사회 복귀를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일본보다 늦은 시기인 2000년대 초반 언론보도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인식이 알려지기 전에는 무기력증으로 표현되거나 학교 공포증(school phobia), 청소년기의 연장, 유예(moratorium) 등의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박정란, 서홍란 외, 2011).

일본의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과 국립정신병원, 정신보건연구소(2003)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는 히키코모리를 6개월 이상 회사나 학교에 가지고 않고 집에서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가족 이외에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는 “히키코모리란 특정의 질병이나 장애가 아니라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이며, 이유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23) 이 부분은 유선희 전문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것도 많고, 많은 히키코모리 청소년들은 강한 불안감과 갈등을 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히키코모리는 부모의 잘못된 자녀양육 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본인 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원조가 필요하다. 히키코모리는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으며 따라서 회복도 가능하고, 히키코모리는 마음의 병이 원인인 경우도 있다(박정란, 서홍란 외, 2011: 234)”라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에 대한 정의에서 정신장애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서 마련한 ‘히키코모리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서는 히키코모리에 대해 “다양한 요인의 결과로 사회적 참여(의무 교육을 포함한 취학, 비노동직을 포함한 취업, 가정 밖에서의 교류 등)를 회피하고,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대체로 가정에 머무르는 것을 계속하는 상태(타인과 어울리지 않는 형태로 외출을 함)를 가리키는 현상 개념(厚生労働省, 2017년 10월 16일 인출)”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히키코모리는 원칙적으로 정신분열증의 양성 또는 음성 증상에 따른 히키코모리 상태와는 분명하게 구분되는 비정신병성 증상이지만, 실제로는 확정 진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신분열증이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지 않은 점에 유의해야한다(厚生労働省, 2017년 10월 16일 인출)”고 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념은 없으나, 2005년 청소년위원회(황순길, 여인중, 남재량, 장미경, 허묘연, 권해수 외, 2005)에서 시행된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 및 경험적 근거를 토대로 하여 은둔형 외톨이를 “최소한의 사회적 접촉 없이 3개월 이상 집안에 머물러 있고, 진학·취업 등의 사회 참여 활동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고 있으며, 친구가 하나밖에 없거나 혹은 한 명도 없고, 자신의 은둔상태에 대한 불안감이나 초조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로서 단, 정신병적 장애 또는 중등도 이상의 정신지체(IQ 50-55)가 있을 경우는 제외함(황순길, 여인중 외, 2005: 14)”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히키코모리나 은둔형 외톨이와 혼용되는 용어로는 니트(NEET)가 있다. 은둔형 외톨이와 니트는 노동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니트의 경우 대부분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은둔형 외톨이는 대인관계가 없다는 차이가 있다(여인중, 이영식, 2012).

2) 은둔형 외톨이의 원인

은둔형 외톨이가 발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김유숙, 박진희, 최지원, 2009; 김종진, 2006; 여인중, 2005; 여인중, 이영식, 2012; 지승희, 양미진, 김태성, 이자영, 홍지연, 2006)에서는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만의 장소에 틀어박히게 되는 원인으로 개인의 타고난 기질이나 생물학적인 요인,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 학령기 때 지속적으로 생기는 또래 및 교사 등과의 문제, 사회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들을 은둔형 외톨이의 각기 개별적인 문제로 단정 짓기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생물학적, 심리적 특성 등)과 환경적인 요인(가족, 학교, 사회문화적인 요인 등)이 복합적이고 누적적으로 작용한 것을 기반으로 하여 파악하려는 관점이 필요하다.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개인적인 요인을 보면, 생물학적 특성, 대인예민성, 불안이나 우울, 분노 및 공격성과 같은 심리적인 특성, 사회적 기술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생물학적 특성은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것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정신분열증, 우울증, 강박장애, 공황장애와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심리적인 불안이나 대인관계에서 오는 공포심 등으로 인해 사회활동을 포기하고 자신만의 공간에만 머물러 있게 되는 경우가 많다(여인중, 2005). 반면에, 명확한 질환이나 장애가 없음에도 은둔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심리적인 특성 중에 자신의 한 일의 과정이나 성과에 대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반응을 지나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대인예민성이 강한 사람의 경우, 다른 사람의 반응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불신과 의미를 갖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받게 될 수 있는 부정적인 평가에 미리 겁을 내면서 사회와 관계 맺기를 점점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여 사소한 문제에도 위축되면서 자신을 둘러싼 많은 스트레스에 스스로 압도당하는 경우도 있다(김유숙, 박진희 외, 2009). 예를 들어, 학교에 가지 않고, 취업을 하지도 않으며,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는 25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Lee, Lee, Choi & Choi, 2013)에서 자기보고식 정서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이들의 정신 상태를 측정한 결과, 이들 집단은 일반 청소년 집단에 비해 대인관계 민감성과 우울감, 적대심, 사회적 불안 및 고통 등은 높았고, 자존감은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환경적 요인은 크게 가족, 학교,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가족 요인을 보면,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수의 감소로 부모의 과잉보호, 과잉통제 등 부적절한 양육태도가 역기능적인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쳐, 미성숙하며, 독립적이지 못한 특성을 가진 아이들로 성장하게 된 것을 지적할 수 있다(지승희, 양미진 외, 2006). 이러한 아이들은 스스로 갈등과 좌절을 극복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친구관계에서 문제를 경험하거나 집단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경쟁적인 학업

분위기에 쉽게 좌절하여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두려움을 갖게 되면서 은둔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들은 자신이 좌절감을 경험하는 상황에 대해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방식을 탓하면서 부모를 원망하는 태도를 보여 가족 간 갈등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이 되기도 한다(여인중, 이영식, 2012). 더불어, 유연하지 못한 자녀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들은 자녀들의 문제가 심각해지면 쉽게 포기하고 자녀의 은둔을 묵인해 버리기도 하여, 자녀들은 주위에 적절한 도움도 요청하지 못한 채 은둔 생활을 지속하게 된다(김유숙, 박진희 외, 2009). 이러한 가족은 더 이상 은둔하고 있는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지체계로 작용하지 못한다.

일상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교폭력, 또래 및 교사와의 갈등, 과도한 학업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경험함에 따른 학교부적응도 은둔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지승희, 양미진 외, 2006). 특히, 은둔형 외톨이 중 86%는 3개월 이상 등교를 거부한 경험이 있는데, 이는 등교거부가 지속될수록 은둔하게 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齋藤環, 2012). 또한, 학교부적응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게 된 청소년들은 실제로 학교를 가지 않게 되면서 일정기간 외출하지 않고 집 안에서만 생활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은둔 기간을 향후 진로와 미래를 위한 성찰의 시간으로 볼 수도 있으나(지승희, 양미진 외, 2006), 이러한 생활 방식이 고착되는 것은 문제의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핵가족화가 되면서 각 개인마다 독립된 방이 제공됨과 동시에, 인터넷 문화의 발달로 타인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하지 않고도 게임이나 SNS를 통해 소통을 할 수 있으며, 만화, 영화 등을 감상하는 여가생활도 집 안에서 언제든지 누릴 수 있게 된 것도 은둔 생활 유지가 가능케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인 도움만 있다면 은둔자가 굳이 외출하지 않고도 혼자 살기에 최적화된 환경이 조성된 것도 은둔형 외톨이가 출현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여인중, 이영식, 2012).

한편, 우리나라의 지속된 경기 침체로 인해 청년들의 취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장기적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실업에 놓인 상황도 은둔 생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침체된 경제와 지속적인 구직 실패는 청년들이 일할 의욕을 잃게 하여 무기력과 상실감에 빠지게 만들고, 노동을 통한 자신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갖지 못해 사회와의 관계를 끊고 자신의 방 안에 은둔하고자 하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김종진, 2006).

3) 은둔형 외톨이의 증상

은둔형 외톨이들이 흔히 보이는 행동은 자신의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는 차단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 때, 방 청소는 물론 자신의 위생 관리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인스턴트 식품 섭취에 운동부족으로 비만이거나 반대로 거의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낮에는 자고 밤에는 인터넷 게임이나 SNS 등을 하며 낮밤이 바뀐 생활을 이어가기도 한다. 부모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입하려고 하면 분노나 욕설, 기물파손 등의 공격적 행동을 보이면서 아예 대화조차 나누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여인중, 이영식, 2012).

은둔 생활이 계속 이어지면 대인공포나 강박 증상, 가정폭력 등 여러 가지 문제행동이나 증상이 동반되기 쉽다. 또한, 은둔 생활이 장기화될수록 스스로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이겨내기 매우 어렵게 되고, 다시 사회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지게 된다(여인중, 2005). 최근에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초반 10대에서 20대 동안 은둔형 외톨이로 지냈던 청(소)년들이 아직까지도 은둔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어, 그들이 2017년 현재 40대 이상의 장년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중앙일보, 2017년 1월 19일자). 일본에서도 80대에 접어들어 고령이 된 부모가 50대 히키코모리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없어지며 생기는 사회문제를 '80·50'으로 일컬으면서 장년 히키코모리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4) 은둔형 외톨이의 실태조사 및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를 약 2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을 뿐, 공식적인 통계 자료로 산출되지 않아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미흡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7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의 부가조사에서 은둔형 외톨이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평소 외출 정도 및 외출을 하지 않게 된 기간과 계기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하여 연구를 해보거나 접촉한 경험이 있는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들에 대한 실태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1)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 현황

2017년에 수행된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청년들의 평소 외출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V-14>와 같다.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7.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8.8%)’,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5.2%)’,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4.2%)’ 순으로 나타나, 전체 조사 대상의 95.6%는 평소에 외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4 평소 외출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전체		2,321	77.4	4.2	5.2	8.8	1.6	2.5	0.1	0.0
성별	남자	1,208	86.9	4.4	3.0	4.1	1.0	0.3	0.2	0.1
	여자	1,113	67.0	4.1	7.6	14.0	2.2	5.0	0.1	0.0
연령	만15~18세	29	85.2	11.4	0.0	3.4	0.0	0.0	0.0	0.0
	만19~29세	1,150	79.6	5.4	5.0	6.7	1.5	1.4	0.2	0.1
	만30~39세	1,142	75.1	3.0	5.5	11.0	1.6	3.7	0.1	0.0
지역	서울	451	80.3	3.8	5.5	7.0	1.3	1.8	0.0	0.2
	인천/경기	550	72.4	5.3	6.5	10.6	2.0	3.0	0.2	0.0
	대전/충청/세종/강원	350	83.4	3.6	2.7	5.3	1.4	3.5	0.0	0.0
	광주/전라/제주	299	77.4	6.4	4.4	7.0	0.5	4.0	0.3	0.0
	부산/울산/경남	358	78.7	2.2	6.6	9.9	1.8	0.4	0.3	0.0
	대구/경북	313	77.6	3.4	2.3	12.1	1.5	3.0	0.0	0.0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50	81.7	9.3	3.3	4.1	0.9	0.5	0.0	0.2
	고졸이하	549	75.7	2.3	5.0	11.2	2.2	2.9	0.6	0.0
	대졸이상	1,222	76.4	3.0	6.1	9.7	1.5	3.2	0.0	0.0
주거 형태	동거	1,036	80.5	6.4	4.4	6.0	1.2	1.2	0.3	0.0
	비동거/독립	1,285	75.0	2.5	5.9	11.1	1.8	3.6	0.0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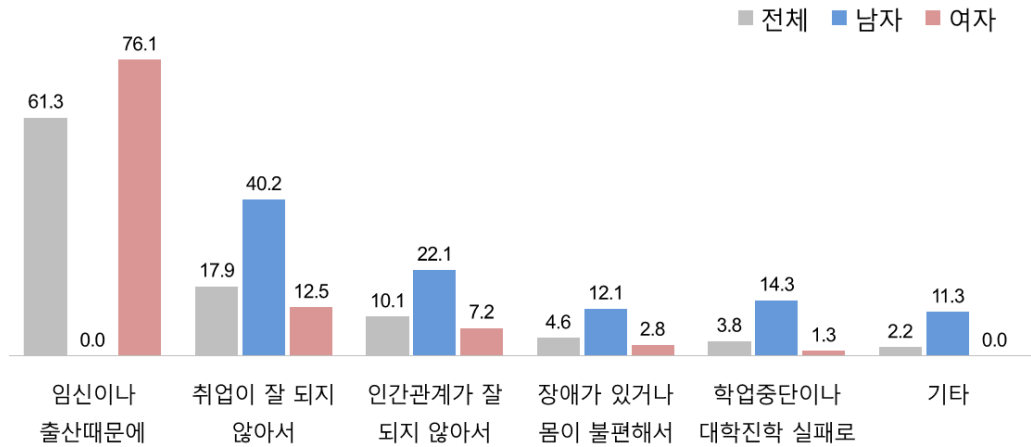
한편, 평소에 대인관계를 갖지 않으면서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5%였으며,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는 비율은 1.6%,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0.1%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은둔 생활을 하는 것으로 예측되는 사람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4.2%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남성은 1.6%, 여성은 7.3%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5.7%p 높았다. 또한, 연령별로 나누어보면 만30-39세는 5.4%, 만19-29세는 3.2% 순으로 나타났으며, 만15-18세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20대에 비해 30대 성인이 은둔 생활을 더 많이 하였다. 다음으로 학력별로 나누어보면, 현재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인 경우, 1.6%였으며,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5.7%, 대졸이상인 경우에는 4.7%로 나타나,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은둔 생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별로 보면,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 2.7%가, 부모와 함께 살지 않거나 원가정으로부터 독립한 경우에는 5.5%가 은둔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응답자 중에 은둔 생활을 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이 외출을 하지 않게 된 계기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 <그림 V-13>과 같다. 이는 대인관계 형성 또는 유지를 위한 외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하거나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하는 경우,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밖으로 나가지 않거나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에 응답한 사람들의 외출을 하지 않게 된 계기를 살펴본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이 6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17.9%)’,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아서(10.1%)’,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4.6%)’, ‘학업중단이나 대학진학 실패로(3.8%)’, ‘기타(2.2%)’ 순으로 나타났다. 임신이나 출산은 여성에게 국한된 사유이므로, 남녀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사유 중에 외출을 하지 않게 된 계기의 가장 높은 비율은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 외출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40.2%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아서’가 22.1%, ‘학업중단이나 대학진학 실패로’ 14.3%,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는 12.1%, ‘기타’라고 응답한 비율이 11.3%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은 외출을 하지 않게 된 계기를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6.1%로 나타나 대부분 임신 및 출산 등의 사유로 외출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남성이 응답한 결과와 유사하게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12.5%)’,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아서(7.2%)’,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2.8%)’, ‘학업중단이나 대학진학 실패로(1.3%)’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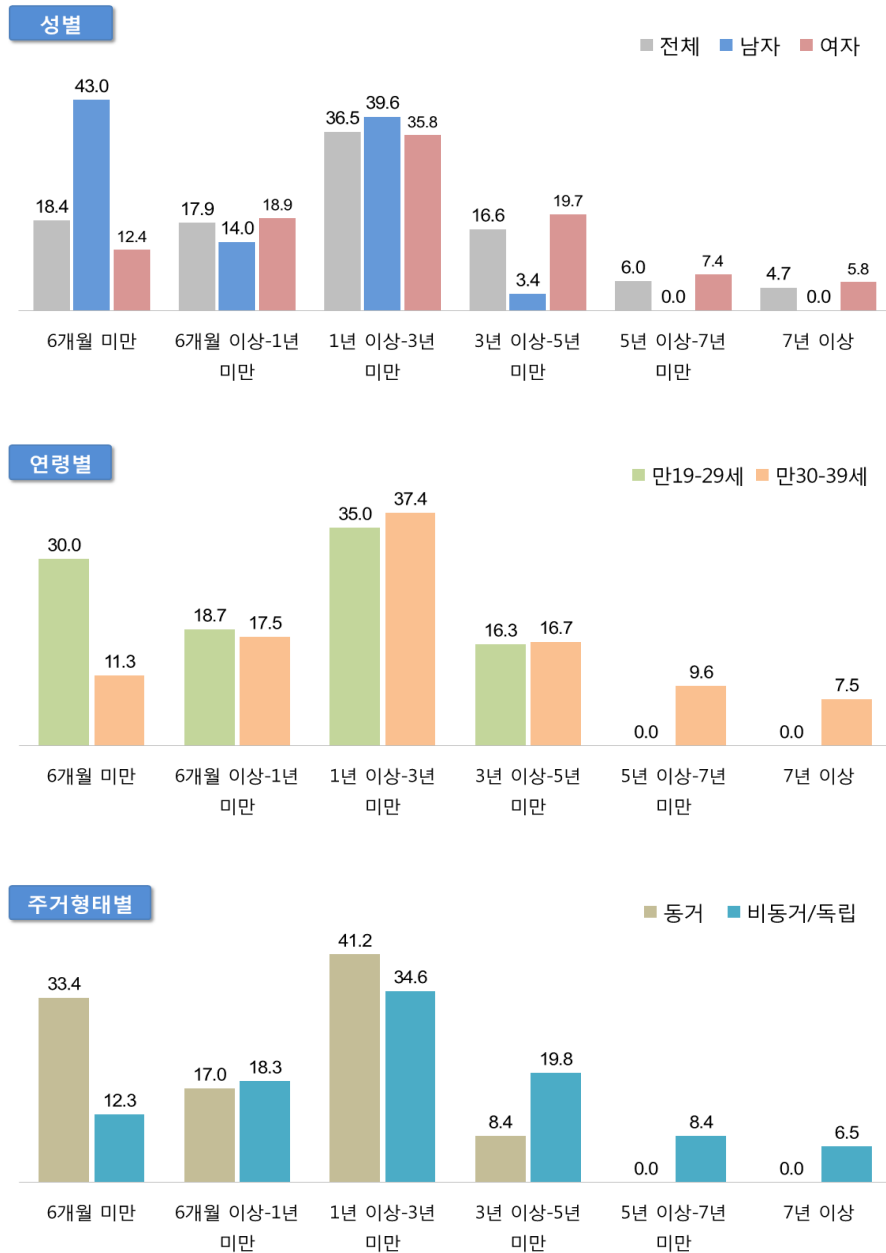
* 주: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하거나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하는 경우,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밖으로 나가지 않거나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만 응답

【그림 V-13】 외출을 하지 않게 된 계기(단위: %)

이는 앞서 조사된 결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은둔 생활을 하는 비율이 5.7%p(남성 1.6%, 여성 7.3%) 높게 나타난 것과도 연관을 지을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임신이나 출산의 이유로 외출을 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자발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는 생활을 하기 보다는 임신과 출산에 의해 집 안에서 건강관리 또는 산후조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적인 이유 때문에 외출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남성보다 여성이 무조건 은둔 생활을 더 많이 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들이 외출을 하지 않는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를 <그림 V-14>에 제시하였다.

평소에 외출을 하지 않게 된 상태의 지속 기간에 대한 응답 비율은 1년에서 3년 미만이 36.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6개월 미만이 18.4%, 6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이 17.9%, 3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은 16.6%, 5년 이상에서 7년 미만이 6.0%였고, 7년 이상 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4.7%로 나타났다. 특히, 외출을 잘 하지 않게 된 기간이 5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10.7%로 나타나, 은둔 생활을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적지 않았다.



【그림 V-14】 외출을 하지 않는 상태의 지속 기간 정도(단위: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6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3.0%로 가장 높았으며,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9.6%, 6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은 14.0%, 3년

이상 5년 미만인 34%였다. 외출을 잘 하지 않은 기간이 5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남성은 없었다. 여성의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5.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3년 이상에서 5년 미만(19.7%), 6개월 이상 1년 미만(18.9%), 6개월 미만(12.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5년 이상에서 7년 미만은 7.4%, 7년 이상은 5.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외출을 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기간이 좀 더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연령별로 나누어보면, 만19-29세의 경우,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5.0%로 가장 높았고, 6개월 미만(30.0%), 6개월 이상 1년 미만(18.7%), 3년 이상 5년 미만(16.3%) 순으로 나타났으며, 5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없었다. 만30-39세의 경우에도 1년 이상 3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4%로 가장 높았으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17.5%, 3년 이상 5년 미만은 16.7%, 6개월 미만은 11.3%였다. 또한 5년 이상에서 7년 미만은 9.6%, 7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5%로 나타나, 만19-29세 성인보다 만30-39세 성인이 은둔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이 더욱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만30-39세의 경우, 청소년기 또는 20대에 은둔 생활을 시작하여 30대에도 이러한 생활을 지속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주거형태별로 나누어보면,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에는 외출을 하지 않게 된 상태가 지속된 기간이 5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없었으나, 부모와 함께 살지 않거나 아예 원 가정으로부터 독립한 경우, 5년 이상으로 응답한 사람이 8.4%, 7년 이상은 6.5%로 나타나 부모와 함께 살지 않을 때에 은둔 생활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은둔형 외톨이’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심층면접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의 실태와 문제

은둔형 외톨이의 실태 및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와 더불어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은둔형 외톨이와 직접 만나서 소통을 해 본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실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청소년이나 청년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할 경우, 우선 해당 대상을 모집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라포를 형성해야 하며, 오직 한 개인의 사례만을 들을 수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연구결과로서 일반화하기 어려워, 다양한 은둔형 외톨이와 접촉해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은 2017년 7월 26일에서 8월 16일까지 약 3주간 은둔형 외톨이를 대상으로 한 상담기관이나 지원 및 사업, 사례관리 등을 하는 6개 기관의 총 9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세부적인 면접 대상에 대한 정보는 <표 V-15>와 같다.

표 V-15 ‘은둔형 외톨이’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면접 대상자 정보

연번	구분	면접자(기관 및 직위)	비고
1	학계	A(○○정신과의원 원장)	은둔형 외톨이 관련 연구 수행 및 책 저술,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 대상 프로그램 운영
2	현장 (민간단체)	B(○○기관 대표) C(○○기관 담당 매니저)	등교거부 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복귀 및 자립 지원 프로그램 실시
3	현장 (민간단체)	D(○○재단 팀장)	은둔형 외톨이 사회복귀 지원 사업 진행
4	현장 (상담기관)	E(○○심리상담센터 소장)	등교거부 및 학교밖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상담
5	현장 (상담기관)	F(○○심리상담센터 소장)	은둔형 외톨이 부모 모임 주최, 사회불안 및 은둔형 외톨이 상담
6	현장 (지자체)	G(○○구청 ○○과 주무관) H(○○구청 ○○과 통합사례관리사) I(○○구청 ○○과 통합사례관리사)	지역 내 빈곤가구 등 통합사례 관리

① 은둔형 외톨이의 실태

•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 및 원인

전문가들은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에 대해 개인 내적으로는 내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크며, 타인을 비판하기 보다는 자기비판과 자책을 많이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받는 부정적인 피드백에 매우 취약하다고 하였다. 개인 외적인 특성을 보면, 먼저 부모 요인에서는 자녀를 과잉보호하거나 억압적인 양육을 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학교 요인에서는 학교 친구 또는 선배로부터 학교폭력을 경험했거나 학업 성취위주의 학교생활이 강조됨에 따라, 또래 및 교사 등과 대인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대인관계 능력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사회적 요인에 따르면,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고용시장이 어려워지고 취업 경쟁이 강화되면서

취업 의지를 상실하고 무기력하며, 우리사회에 희망이 없다는 의식들이 퍼지게 되면서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은둔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문가들이 만나 본 은둔형 외톨이들이 은둔 생활을 하게 되는 기간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고 보았으며, 10대 청소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30-50대의 중장년도 은둔 생활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어떤 사람들이 은둔형 외톨이가 되느냐, 선량하고 착한 아이들, 부모한테 미안하고, 또 자기 자책을 많이 하는, 남을 비판하기 보다는 자기비판을 많이 하고 과하게 자기 책임감이 많다고 생각하는 아이들.. 인정 욕구가 많은 아이들, 남들보다 잘 하고 싶은 욕구가 많은 아이들.. 이들은 잘 하고 싶은 마음이 많고, 성취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문제지, 일을 안 하고 싶어한다거나 어울리고 싶지 않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과 어울려하고 싶어하고, 되게 외로워하고 잘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은데, 점점 은둔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런 바람들이 자꾸 무참하게 꺾이게 되고, 폭력을 당하고, 계속 안 좋은 상황 속에 있으니까 분노가 점점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고, 폭발하는 거예요.” (전문가 F)

“제일 큰 게 부정적 피드백에 대해서 되게 취약한 거거든요. 제일 문제는 부정적 평가에 되게 취약한 거고, 그냥 부정적 평가, 비난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점점 학교에서 애들한테 밀리고, 부정적 평가를 피하니까 결국엔 갈 데가 집밖에 없는 거예요.” (전문가 E)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왕따, 학교폭력..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여성의 경우에는 어떤 성적인 트라우마까지 거기에 추가가 되고, 물론 남성들도 드물게 있습니다만, 주된 게 가정폭력, 학교폭력, 억압적인 부모가 있고, 또 양육 중에서 방임이 아니라 과잉보호.. 과잉보호해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이제 자신감을 잃고 그런 경우 꽤 많아요.” (전문가 F)

“히키코모리라는 게 부모의 애정이 있는 과정에 생기는 것이거든요. 많은 타입이 있는데요, 어쩌면은 빈곤과 히키코모리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패턴도 있고요, 정신질환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거의 대부분은 가족 내의 갈등 때문에 생기죠. 가족이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키운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문가 B)

“놀 시간이 있고, 그걸 통해서 대인관계 경험을 하고 그 안에서 갈등도 있고.. 그런 인간관계 연습도 하는데, 일단은 그런 것 자체가 기회의 부족.. 좋은 인간관계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부족이 요즘 세대에 대한.. 그런 것 같고요.” (전문가 F)

“저는 (은둔형 외톨이 분들이) 삶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정말 의지가..” (전문가 I)

“이렇게 물가는 올랐는데 임금은 별어서 생활하기 더 힘들어졌고(예전보다..) 그런 주변 경제상황? 악화된 경제상황이라든지 노동 상황이 해도 소용없겠다는 걸 많이 갖게 되죠. 무기력한.. 희망없음.. 그런 게 핵심이에요.” (전문가 F)

“제가 20년 전에만 하더라도 청소년 아이들이 꽤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거의 30-40대.. 일반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청소년 쪽은 그렇게 많이 보질 못해요. 주로 30-40대들이 많이 와요.” (전문가 A)

“그런 사람들(은둔형 외톨이)이 사회생활을 어떤 이유든 피하고 거부하는.. 무서워서 피하거나 싫어서 거부하거나 양상은 다양한데, 그 기간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죠. 이제 막 시작되는 사람도 있고,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해서 중고등학교 자퇴하고 시작되는 친구들도 있고, 아주 오래돼서 직장에 다니다 적응 못해서 이제 은둔생활을 한 지 10년 넘은 그런.. 제가 만난 사람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분들은 40대나 50대..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전문가 F)

- 은둔 생활을 지속하게 하는 요인과 은둔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는 요인

은둔형 외톨이들의 문제가 강화되거나 은둔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이유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이라고 보았다. 특히, 부모가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에게 계속해서 밖에 나갈 것을 강요하거나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부모가 일방적으로 조언과 충고 등을 반복할 때 문제가 더욱 악화된다고 보았다. 또한, 은둔 생활에 대한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하지 않고, 그들 개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회적인 인식과 이러한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나아질 것이라고 여기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도 은둔 생활을 지속하게 한다고 하였다.

반면에 은둔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는 요인으로서는 부모와의 관계를 해소하는 것과 더불어, 부모나 가족 외에 은둔하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해줄 제3자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러한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사회로부터 받은 상처가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이 있을 때, 은둔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일단 문제가 강화되거나 유지되거나 영속되는 이유는 부모와의 상호작용.. 첫 번째, 부모가 밖에 계속 나가라.. 이해해주지 않고, 부모가 강요, 조언, 충고.. 그런 부모의 양육적인 태도. 부모의 일방적인 양육태도나 의사소통의 문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전문가 F)

“이 친구(은둔형 외톨이 자녀)가 당신(아버지)이 보기에선 학교도 잘 다니고 고등학교까지 졸업 했으니까 이제, 어디 나가서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TV 앞에만 있으니까 거의 언어폭력 수준의 대화를 하셨더라고요. ‘나가 죽어라’ 뭐 이런 말을 굉장히 심하게 아이한테 오히려.. 뭐 그 전에도 어떤 이유가 있을 진 모르지만 이런 심리적인 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전문가 H)

“부적응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청소년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아닐 수 있잖아요. 학교 시스템, 사회가 잘못 되어가지고 피해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부적응이 아니라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죠.” (전문가 A)

“제 생각에는 조금.. 이게 너무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진짜 은둔되어 있어요. ‘이런 케이스가 있다’ 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조사 나갈 때도 어떻게 ‘당신 집에 은둔형 외톨이가 있습니까?’ 이런 말을 꺼내기가 되게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인식 자체가 이런 사람들을 약간 좀 그런 취급을 하는 거잖아요.” (전문가 I)

“일본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먼저 연락을 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치부잖아요. 타부.. 이게 뭔가 좀 약간 치부 같은 거죠, 내 아이가 그런.. 인정하기 싫은 거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문제 해결을 하고 싶은 것 같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안 그런 분도 있지만 그걸 그냥 드러내지 않고.. 근데 해결은 하고 싶은데, 접근방식이 조금 너무.. 더디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전문가 D)

“부모가 바뀌면, 그렇다고 해서 은둔형 외톨이가 바로 나오지는 않는데.. 부모가 바뀌니깐 그래도 산책은 같이 다녀요. 그래도 부모와 덜 싸우니깐 조금이라도 뭔가 더 해보려는 생각을 해요.” (전문가 F)

“자기(은둔형 외톨이 경험에 있는 언니)도 그렇게 어떤 계기가 있어서 집에 있게 됐지만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 계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의지가 안 생겨서 못 나오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를 밖으로 꺼내줄 한 사람, 의지할 한 사람이 있으면 나온다고. 자기도 그랬고, 근데 동생은 그런 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족들이 그 역할이 되기는 좀 힘든가 봐요.” (전문가 G)

“히키코모리에서 탈출하는 사람이랑 그걸 못하는 사람의 조금.. 키포인트..? 기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부모와의 관계만 있는 사람이랑 그 부모와 따로, 또 다른 사람하고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있는 사람하고 큰 차이가 나고요. 자기가 힘들 때,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다는 것. 부모 말고도, 따로, 계속 부모에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상처를 받더라도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환경. 그런 친구가 있고, 그런 자기를 받아들이주는 환경이 있다 라는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 엄청난 재산이고, 그것이 있어야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요.” (전문가 B)

② 은둔형 외톨이 및 그들의 가족이 경험하는 문제

전문가들은 은둔형 외톨이들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식과 정보, 지식 등이 부족하고, 이들에 대한 문제의식도 낮으며, 관련 연구 등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전문적인 치료나 상담 등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은둔형 외톨이들이 자신의 문제를 함께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이 없고,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지원 기관이나 정책 등도 부재한 상황이라 은둔 생활이 장기화되면서 더욱 고립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은둔 생활이 장기화되면서 타인과 소통하거나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지게 되므로 건강한 사회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다시 사회로 복귀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악화되어 부모와 자녀 간에 폭언과 폭력이 반복되는 등 부모-자녀 간 갈등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부모들은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가 성인으로서 스스로를 책임지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며, 더불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성인 자녀를 계속해서 부양해야 함에 따른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지금 이미 10년 동안 히키코모리를 했던 친구들이 지금 찾아와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무데도 갈 데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친척에게도 이런 상담을 하지 못했다.. 한 번도. 계속 숨기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을까요. 친척에게도 상담도 못했고, 아무한테도 얘기도 못 했고.. 여기 와서 처음으로 얘기를 털어놓았다.. 눈물 보이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문가 B)

“인간관계의 경험이 좋아지려면 여러 사람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좋은 경험을 해야 하는데, 그 경험을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전문가 F)

“우리 기관에는 20년, 30년 지난.. 은둔생활을 하면서 보냈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20년 동안 히키코모리 생활을 했으면 거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전혀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것도 힘들고요, 대화를 어떻게 하는 지도 까먹은 듯.. 그 정도로 심해지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사회로 스스로 나올 수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조기 발견해서 우리가 발굴을 하고, 치료를 시작하고. 그리고 조기에 어느 정도에 사회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전문가 B)

“보호자의 인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라고 생각을 별로 안 하고, 돈을 못 벌어서 답답하다.. 이렇게.. 우리는 사회로, 그러니까 밖으로만 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목표는.. 돈을 못 벌어서 답답하다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시고.. 본인(은둔형 외톨이 자녀의 아버지)이 돌아가셨을 때에 애가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죠.” (전문가 G)

“일단 부모님은요, 아이들과 떨어져서 산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기들이 없으면 먹고 살 수도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자기들이 먼저..

‘아이들보다 먼저 죽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렇게 해서 ‘막막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특히 30대를 넘은 히키코모리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의 절실한 고민일 거예요.” (전문가 B)

③ 은둔형 외톨이 관련 기관이 경험하는 문제 및 한계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부족하여 그들에게 적절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를 직접 발굴하기 어렵고, 그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담 기관이나 지원 단체 등에 직접 찾아오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부모님이 좀.. 아이(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보낸, 그런데 아이가 신청한 경우는 거의 없고요. 거의 다 이렇게 다 컨택해서 ‘너 해볼래’ 이렇게 독려해서 모집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너무 많은 자원, 저희가 지원을 해줘도 너무 많은 재원이 들어가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 D)

“민간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은둔형 외톨이 전문기관이 아니면.. 정말 한 사람한테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라서 어렵더라고요.” (전문가 G)

“방법을 모르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은둔형 외톨이라는 케이스에 대해서 한 두 번 교육을 받는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저는 모든 동이나 구나 각 담당자들이 다 다르겠지만, 한 사람을 밖으로 끌어내고 싶다는 욕심이 들더라고요. 저 친구를 어떻게든 밖으로 끌어내고 싶다는? 근데 다 그런 마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방법을 모르고 그러니까 다른 일들이랑 다른 대상자들이 막 쏟아져 오니까 집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전문가 G)

“정말로 우리가 공공사례 관리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그들은) 나오고 싶은 욕구가 없잖아요. 하고 싶은 게 없고, 나오고 싶지 않은.. 그 뭔가 해결하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경제적으로 좀 아니면 뭐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어쨌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해결 의지가 없는.. 해결 필요를 못 느끼는.. (상태에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전문가 H)

④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지원 방안

전문가들은 은둔형 외톨이가 그 누구도 접촉하지 않는 단계에서는 부모가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가진 부모에 대한 부모교육이나 부모모임 등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들을 위한 직업훈련이나 일자리 연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은둔형 외톨이들의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더불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향후 소요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문제인식을 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은둔형 외톨이를 사전에 발굴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와 연계를 통해 장기결석을 하고 있거나 학교를 그만 둔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 중에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하였다.

“좀 더 초보적인 단계, 집에서 못 나오는 단계는 부모교육이 제일 중요하고요. 부모가 바뀌면, 그렇다고 해서 은둔형 외톨이가 바로 나오지는 않는데.. 부모가 바뀌니깐 그래도 산책은 같이 다녀요. 그래도 부모와 덜 싸우니깐 조금이라도 뭔가 더 해보려는 생각을 해요. 부모들이 좀 일찍 교육을 받고, 부모들이 빨리 변할 수 있다면.. 막 30세 넘고 40세 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기에 좀 빨리 문제가 개선될 수 있으니깐, 부모교육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구요.” (전문가 F)

“일단은 부모님들께 필요한 거는 부모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행동변화가 되게 중요한. 부모님이 아이를 다루는 방식을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것이 부모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건 부모밖에 없고, 그리고 부모가 바뀌면 애들이 바뀐다는 건 확실하다는 거죠.” (전문가 E)

“이들의 기능은 천차만별이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 그런 것들이 대안교육의 한 파트와 같이 맞물려야 하는데, 그게 어떤 은둔형 외톨이 학교가 있고, 지원센터가 있고, 종합 문화체육예술센터가 있고, 이들을 상담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같이 가는 통합적인 모델이 필요하구요.” (전문가 F)

“사실은 이들을 위한 직업훈련이 정말 필요해요. 이들을 위한.. 그게 대화법 훈련이든, 아니면 어떤 이들 직장에서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도 되게 필요한 것 같구요, 그건 정말 은둔형 외톨이에서 좀 나아졌을 때.. 좀 나아진.. 직장을 다닐 수 있을 법한 단계에서 필요한 것 같고.. 사실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직업학교가 따로 필요한 거죠. 또한, 이들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없어요. 어쨌든 좋은 경험을 하면 사회생활을 더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들의 상태에 맞게? 근데 가면 상사가 폭언을 하고, 부모한테 상처 받았던 것과 다르지 않게 차별을 하든지 아니면 무신경한 말이라도 강요, 이 직장문화.. 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려면 단계적인, 이들에게 맞는 직장이 필요해요.” (전문가 F)

“전문가 양성이 필요합니다. 좀 특별한 경우니까 일단은 (다른 증상의 사람들과) 구별을 할 수 있어야겠죠. 사실은 제가 1999년 거의 2000년대니깐 거의 17년 됐지만, 17년 동안 은둔형 외톨이들을 봐왔지만, 지금도 봐서는 잘 몰라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냥 뭐 책 보고 이게 안 돼요.” (전문가 A)

“이런 클라이언트한테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애정이 많이 정말 필요하다.. 라고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상담실에 앉아있는 상담사가 아니라 정말 활동가.. 전문 활동가가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문가 H)

“일단은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가 있는가.. 하는 게(실태조사 실시) 사실은 제일 급선무인 것 같아요. (은둔형 외톨이가) 어느 정도 파악이 안 되면 이게 저는 정말 그 다른 거 어떤 걸 해도 그냥 모래위에 짓는 집이라고 해야 하나? 뭐 다른 걸 해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전문가 A)

“실태조사도 계속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될 거고, 사회의 문제제기의.. 이거를 사회적 이슈로 크게 만들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고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무나. 그건 아무나 갑자기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많고, 사실 숨겨져 있는 것이고.. 사실은 주변에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조카가.. 우리 친구 아들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아주 흔한 문제이고, 그리고 ‘놔두면 스스로 나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는 공감대를,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정말 시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B)

“또 하나가 사회적 비용의 문제거든요. (일본의 경우) 25세부터 65세까지 계속 히키코모리 생활을 하게 되면, 한 사람당 1억 5천만 엔의 정부 비용이 들어가요. 그것은 그 사람이 25세부터 일을 했을 경우, 세금을 내잖아요. 그렇게 세금을 낸 경우랑, 일을 하지 않고 계속 히키코모리 생활을 하고 있으면 기초생활자금 수급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받는 경우랑 정부가 줘야 되는 경우에 그 갭을 계산해보면.. 그걸 social cost gap 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경우에 사회보장이나 세금을 계산해보면 1인당 1억 5천만 엔 정도 들어요.” (전문가 C)

“사실 이제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곳은 학교예요. 학교. 결석 장기화하고, 담임이 해가지고 봤을 때, 제일 빨리 알 수 있는 게 학교죠. 그리고 그냥 일반 사회적으로 사실 알기로는 쉽지가 않아요.” (전문가 A)

“사실은 학교와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본에서는 저희가 고등학교 같은데 가가지고 뭐 직업설계 세미나를 한다거나 그리고 학교마다 그런 선생님들하고 연결해서 그거에 대해서.. ‘학업을 그만두게 되는 사람들하고도 계속 연락을 해주세요’ 하고. 그리고 못 나가게 됐다면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센터와 잘 연결을 해서 계속적으로 조언이나 관심이 갈 수 있게끔 해줘요” (전문가 B)

5) 시사점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는 개인의 사회부적응을 넘어서서, 가정 붕괴, 노동력 및 생산성 저하, 범죄 등 다양한 사회적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 더불어, 은둔 생활을 오래할수록 사회 적응과 복귀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고, 그에 따른 문제가 더욱 심화된 채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출을 하지 않게 된 기간이 5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10.7%로 나타나 은둔 생활이 장기화된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사전에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것에 대한 예방 대책뿐만 아니라 은둔 생활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요구된다.

(1)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속적인 점검 체계 마련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예방하고 이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먼저,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규모로 존재하는 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실태조사의 표본 크기는 2,700명이므로, 만19-39세 중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비율을 추정해볼 수 있을 뿐, 우리나라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전반적인 수치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외톨이가 현재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은둔 기간은 얼마나 되는 지, 그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 지 등에 대해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지원 정책이나 제도 등도 마련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장기결석을 하고 있는 학생이나 학교를 그만 둔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이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것도 필요하다.

(2)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및 기관 구축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과 이들을 위한 지원 기관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개념과 정의에 있어 학계 및 현장에서도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더하여,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연구나 전문적인 지식이 축적되지 않아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도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연수나 교육 등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과 유형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치료 및 상담과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이 때, 은둔형 외톨이 또는 그들의 가족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예: 기관 내 방문상담, 가정 방문상담 등)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의 정서 및 사회성 증진, 직업 훈련, 일자리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도 요구된다. 실태조사 결과 중 은둔 생활을 하게 되는 계기에 대한 응답 결과에 의하면,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사유를 제외하고 취업 문제가 17.9%, 인간관계 문제는 10.1%, 장애 또는 신체가 불편에 따른 사유가 4.6%, 학업중단이나 대학진학 실패로 인한 비율이 3.8%였다. 이는 은둔형 외톨이에게 취업이나 직업 훈련, 자존감 향상, 대인관계적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이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지원 기관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개인 내적인 문제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또래 등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사회적인 관계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지지 자원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예를 들어, 은둔형 외톨이 본인이나 그들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자조모임을 구성하도록 지원하거나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등 가족 치유적인 접근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 훈련과 일자리 연계 등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이 있는 존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립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은둔형 외톨이의 전문가 양성이나 지원 기관과 관련하여 일본의 후생노동성에서는 ‘히키코모리 대책 추진 사업’을 진행하여 히키코모리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厚生労働省, 2017년 10월 16일 인출). 구체적으로, 일본에서는 모든 현(縣)에 히키코모리 지역 지원센터 설치(현재 68개소)하고, 해당 기관에 사회복지사, 정신보건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을 센터 내에 배치하여 히키코모리 지원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히키코모리 대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해당 지역의 히키코모리 지원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히키코모리의 장기 고령화를 고려하여, 히키코모리 상태에 있는 본인 및 가족을 위한 상담과 지속적인 방문을 지원하기 위해 히키코모리 서포터를 양성하고 각 가정에 파견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히키코모리의 문제를 경험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확한 실정을 파악한 후, 우리나라의 특성과 현실에 맞게 그들에게 접근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3)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캠페인, 홍보 실시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 또는 홍보도 필요하다. 우리사회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자로 인식하여 개인의 탓으로 돌리거나 예비 범죄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생활을 잘 하고 있더라도 누구나 은둔형 외톨이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캠페인이나 홍보 등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언론 보도 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확산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도 있다.

제 VI 장



정 책 제 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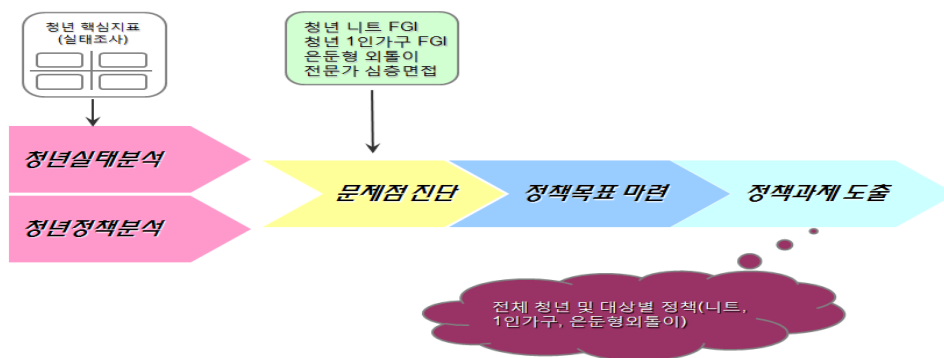
1. 청년 정책과제 도출 절차
2. 청년 정책의 과제

제 VI 장 정책 제언²⁴⁾

1. 청년 정책과제 도출 절차

1) 청년 정책과제 도출 절차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청년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제일 먼저 현재 청년들의 일과 삶에 대한 실태와 청년 정책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청년실태분석은 기존의 통계 및 행정자료들과 이들 자료들로부터 수집할 수 없는 청년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 파악을 위한 정책 영역은 ① 인구와 가족, ② 교육과 훈련, ③ 경제와 고용, ④ 주거, ⑤ 건강, ⑥ 문화와 가치관, ⑦ 관계와 참여 등 7가지였다. 7가지 영역별로 청년들의 실태를 살펴보면서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진단해 보았다. 문제점 진단에서 실제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집단초점면접(FGI)을 실시하였으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VI-1】 청년 정책과제 도출 절차

24) 이 장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윤주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설희 전문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집필하였음.

청년실태분석과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청년정책에 대한 분석은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인 법률에서 시작해 정책 추진체계와 정책 사업들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청년정책에 대한 문제점 진단은 청년기의 특성과 실태를 반영해 적절하게 청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는지를 살펴보았으며 필요에 따라 해외 사례들을 참고하여 적절한 정책 추진 방향이 무엇인지를 진단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통해 청년 정책의 목표와 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특히 정책목표는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청년들에게 질문한 정책영역별 정책 수요를 분석해 이러한 정책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청년정책을 어떻게 개선하고 보완해야 하는지를 제시해 보았다. 청년정책의 목표와 과제에 대한 도출 결과는 다음 절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청년 정책목표에 대한 도출 결과

(1) 우리나라 청년정책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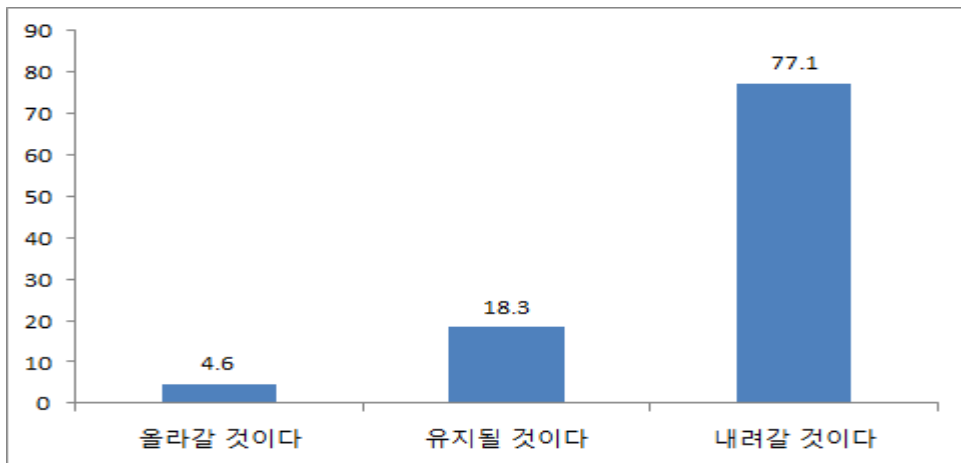
청년정책의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 우선 청년 핵심지표를 통해 청년들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청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청년 핵심지표는 7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인구와 가족을 살펴보면, 저출산의 영향으로 15세에서 29세 청년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20대로만 국한해 볼 때 2014년 이후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청년 고용 측면에서 20대 인구 증가는 청년들의 취업난을 더 악화시킬 개연성이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인구가 많은 2차 베이비붐의 자녀세대(एको세대)인데다 산아제한이 풀려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2020년 이후 저출산 파고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쳐 청년층 전체의 인구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청년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청년 인구 감소에도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청년들의 역량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청년 인구 구성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외국인이나 단기체류,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15세에서 29세 체류 외국인 수는 2012년 47만 명에서 2016년 60만 명으로 늘어났다. 등록 외국인과 결혼 이민자 외국인 수도 비슷한 추세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다문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미 선진국들은 이민자들과의 갈등으로 사회통합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장기적으로 세대 간에, 남성과 여성 간에, 지역 간에 갈등뿐만 아니라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갈등이 사회문제로 부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통합 정책들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구 구성에 있어서 유입인구와는 반대로 유출인구의 문제도 중요하다. 이번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서는 해외 이주 의사를 물어 보았는데, 해외이주 의사가 있는 청년들이 크게 증가하였다. 해외이주를 고려하는 이유로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는 답변이 34.3%로 많았다. 이 결과는 ‘헬(hell) 조선’이라는 비판과 관련해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떠나는 문제(exodus)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의 에라스무스+(Erasmus+) 프로젝트와 같이 해외 취업이 아니라 경험이나 학습, 또는 자원봉사들을 위해 다른 나라와 교류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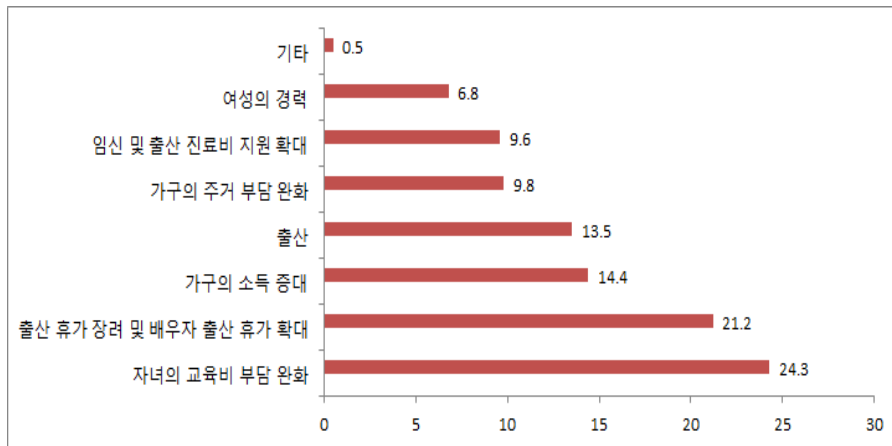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청년들의 혼인건수가 줄어들고 초혼연령이 점차 늦어지고 출생아 수도 줄어드는 있는 추세를 확인하였다. 청년들이 전망한 2025년 출산율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77.1%로,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18.3%)과 올라갈 것이라는 의견(4.6%)보다 훨씬 많았다. 청년들의 이러한 비관적인 전망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해준다.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17년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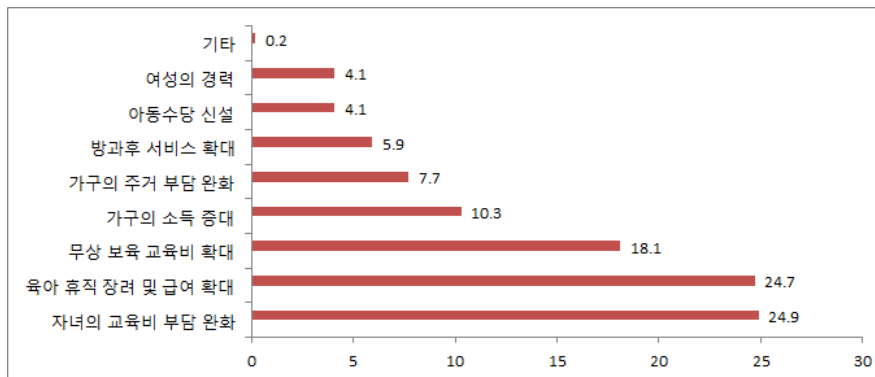
[그림 VI-2] 청년들이 전망한 2025년 출산율(2017년)

청년들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1순위(24.2%)로 지목하였다. 두 번째로는 출산 휴가의 장려와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를 지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 문제 해소가 교육문제나 직장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직장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제대로 실현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17년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그림 VI-3】 청년들이 생각하는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정책(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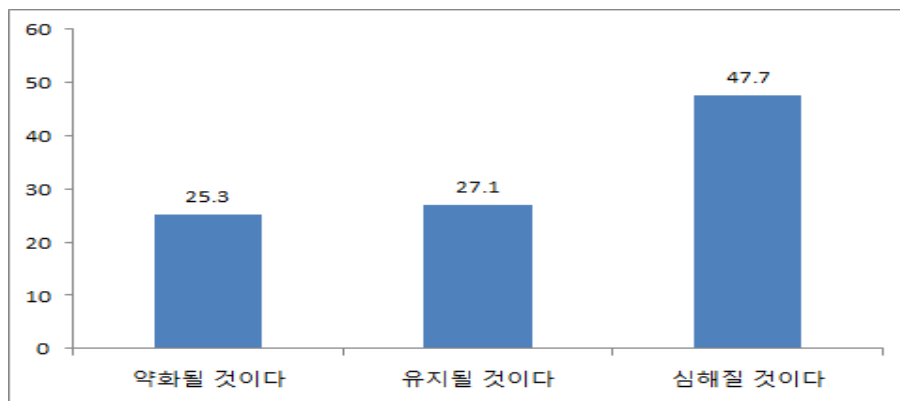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17년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그림 VI-4】 청년들이 생각하는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육아 정책(2017년)

출산이후 육아 문제와 관련하여 청년들은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육아 정책으로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첫 번째로 뽑았고 육아 휴직 장려 및 급육 확대를 두 번째로 뽑았다. 이

역시 교육과 직장 문제와 저출산 문제가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현재 문제인 정부에서 중요한 복지 정책으로 추진 중인 아동수당 신설은 41%로 응답률이 높지 않았다. 아직까지 아동수당에 관한 논의가 공론화되지 못한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두 번째로 교육과 훈련 지표들을 살펴보면, 대학진학률은 낮아지고 대학생들의 졸업유예 현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학생들의 학업 중단률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고학력화가 약화되고 있으며 졸업유예가 확산되면서 이후 취업이나 결혼, 출산 등도 늦어지는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불필요한 졸업 유예를 막고 정상적으로 졸업해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17년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그림 VI-5】 청년들이 전망한 2025년 입시경쟁(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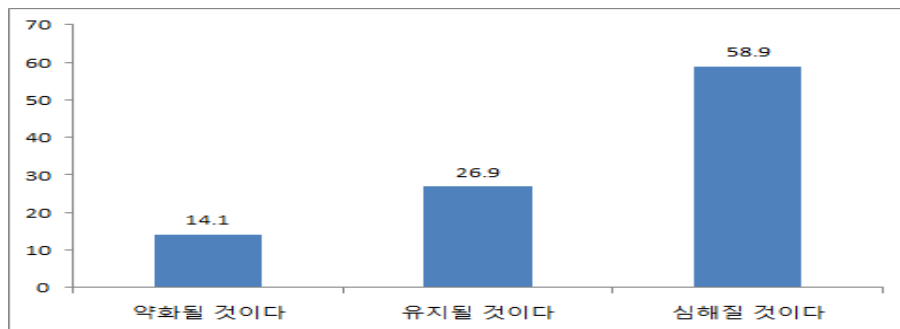
이러한 고학력화 약화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전망한 2025년 입시경쟁은 현재보다 더 심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입시경쟁이 현재 보다 더 심해질 것이라는 의견은 47.7%로 절반에 육박하였고 유지(27.1%)나 약화(25.3%) 의견은 적었다. 이는 대학 진학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경쟁은 강화될 것이라는 지적으로 우리나라 입시경쟁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평생학습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청년들의 평생학습은 대학원을 포함하여 형식교육 참여에서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비형식교육은 늘어나고 있지만 참여율이 증가할 뿐 내용적인 측면에서 더 중요한 참여시간은 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평생학습을 통해 청년들의 역량과 자질을 더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청년들의 직업훈련 참여율은 2007년 15.4%에서 2017년 18.4%로 증가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7년 들어서 직업훈련 참여율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취업성공패키지를 비롯하여 정부의 청년고용대책이 확대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직업훈련은 공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로 청년들의 고용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고시생이나 공시행 비율도 1년 사이에 2%p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최근 공무원과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정부정책과 관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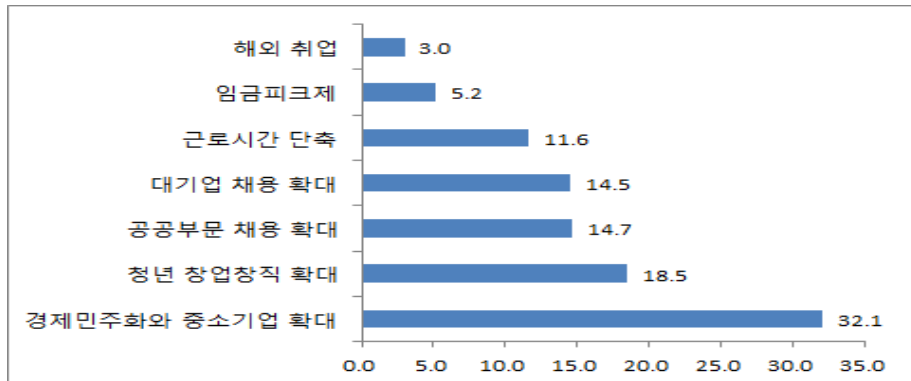
다음으로 경제와 고용 지표들을 살펴보면, 우선 경제활동 참여율이나 고용률은 큰 변화 없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10%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일도, 학업도, 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 니트(NEET) 역시 2016년 현재 18.9%로 매우 높아 우려를 낳고 있다.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2025년 청년들의 취업경쟁을 전망해본 결과, 청년들은 취업경쟁이 악화되지 않고 더 심해질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현재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가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17년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그림 VI-6】 청년들이 전망한 2025년 취업경쟁(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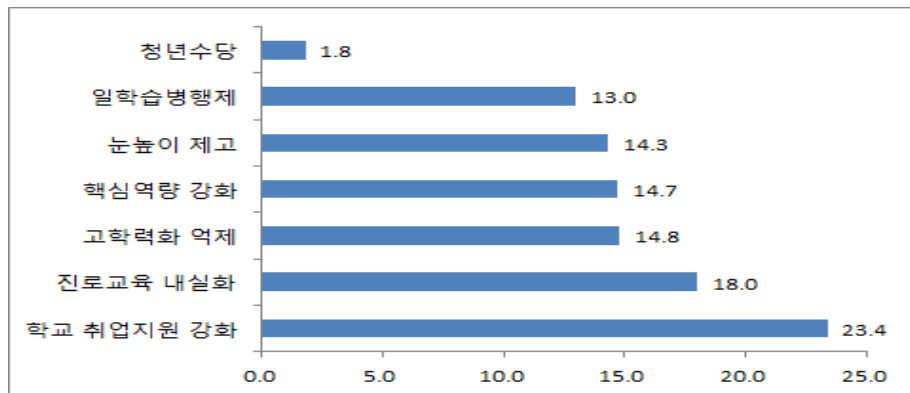
청년들에게 고용정책 수요를 물어본 결과, 노동공급(개인, 교육)보다는 노동수요 측면(일자리, 경제)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노동수요 측면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은 82.2%였고 노동공급 측면에서 풀어야 한다는 의견은 17.8%였다. 노동수요 측면에서 청년고용대책으로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와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32.1%)였으며 두 번째는 청년 창업과 창직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18.5%)였다. 문제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부문 채용 확대는 14.7%로 세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었다.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17년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그림 VI-7】 청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노동수요측면 고용대책(2017년)

노동공급 측면에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고용대책은 학교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23.4%)였으며 두 번째로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고 진로지도를 활성화하는 방안(18.0%)이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문재인정부에서 2020년부터 청년구직촉진수당 등 청년수당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8%로 매우 낮았다.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17년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그림 VI-8】 청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노동공급측면 고용대책(2017년)

청년 가구주의 부채 현황을 보면, 20대 30대 모두 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동시에 청년 가구주의 소득 역시 전년보다 낮아지는 기현상을 보여주었다. 물가상승을 고려한다면 조금이라도 전년보다 소득이 증가해야 하지만 오히려 소득이 전년보다 낮아져 청년 경제여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청년들의 소득 여건을 고려할 때 출발점에서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유럽연합에서 활용하는 핵심지표 중 물질적 박탈률(severe material deprivation rate)을 살펴본 결과, 15세에서 29세 청년들 중 15.1%가 심한 물질적인 박탈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평균(11.7%)보다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 청년들의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청년들의 주거 현황을 살펴보면, 보증금이 없는 월세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주거비는 10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청년 주거 빈곤이 청년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년들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면, 신체건강은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 정신건강 상태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좋은 정신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청년들의 문화 및 여가생활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주관적 행복감이나 삶의 만족도도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국제적으로 볼 때 한국 청년들의 행복감이나 삶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청년들의 문화 및 여가생활을 활성화하고 청년들이 삶에 대해 만족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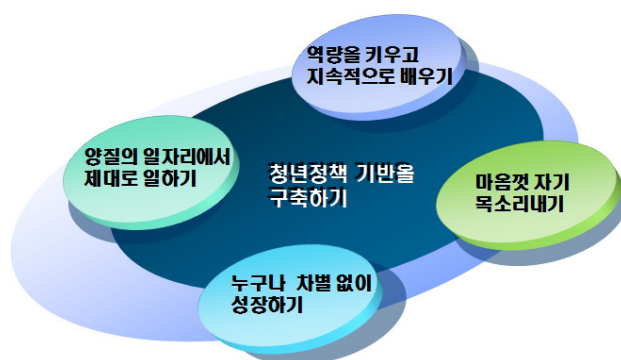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참여 지표를 살펴보면, 청년들의 투표율은 크게 증가하였고 단체 활동 역시 늘어나고 있지만, 청년(39세 이하) 국회의원 비율은 1%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어서 청년정책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청년정책 법률을 살펴보면, 기한을 정한 한시법인 청년고용법이 유일한 상황이며 국회에서는 7개의 청년기본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청년고용법의 경우도 2017년 들어서도 총 8개의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하루 빨리 청년정책 법률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우선 청년정책 사업들이 다양한 중앙부처에서 독자적으로 추진 중인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기본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14개 시도에서 청년기본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에 있어 중앙과 지방정부간에 입법체계가 불일치한 상태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청년기본법 제정과 관련 관련하여 중앙부처별로, 지자체별로, 정책 사업별로 제각각인 청년 연령 범주를 사회적, 정치적 합의를 통해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어떤 사업인지에 따라서, 어느 곳에서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지원 대상이 달라진다면 이에 따른 혼선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정책추진체계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청년고용정책 차원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년기본법안에서 청년정책을 담당할 전담행정조직으로 기획재정부나 국무총리(국무조정실) 등이 제안되고 있으며 총괄조정기구로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어떤 형태로 청년정책추진체계가 갖추어지든지 간에 현행처럼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을 하루빨리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림 VI-9】 청년정책 추진목표(안)

청년들이 현재보다 나은 삶과 일을 갖기 위해서 7가지의 청년 핵심지표에 대한 분석과 청년정책 현황 분석을 토대로 4가지의 정책 목표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기반 구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4가지 청년정책 목표는 ① 양질의 일자리에서 제대로 일하기, ② 역량을 키우고 지속적으로 배우기, ③ 마음껏 자기 목소리내기, ④ 누구나 차별 없이 성장하기이다. 첫 번째 청년정책 목표는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개인들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청년정책의 목표는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충분하게 학습을 받아야 하며, 형식교육을 넘어서 비형식교육에서도 학습기회를 얻어 평생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목표는 다른 대상 중심정책과 마찬가지로 정책 대상인 청년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여 청년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목표는 경제적 소득이나 가족배경, 신체적 장애, 성별이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청년들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이러한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청년 관련 법률이나 정책추진체계를 갖추어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대상별 청년정책의 목표

① 청년 니트(NEET)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청년정책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청년 니트에 대한 정책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청년 니트들의 실태를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청년 니트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여 통계자료로는 포착할 수 없는 청년 실태를 파악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에 대한 법적 정의나 정책적인 정의가 제각각이듯 청년 니트에 있어서 누가 청년 니트인지에 관한 공식적인 정의와 규모 추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반면 OECD에서는 청년 니트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에서는 청년 니트를 중요한 정책 대상으로 정하고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와 같은 대표적인 정책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청년 니트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와 함께 본격적으로 정책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청년 니트는 외국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저학력 니트가 많은 외국과는 달리 대졸 이상의 고학력 니트가 많으며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 니트보다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황 니트가 많다. 이는 직업훈련을 통해서 취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청년 니트를 지원하고 있는 외국과는 달리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를 대상으로 니트 상태를 벗어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청년 니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존재한다. 비경황 니트가 많다는 것은 비교적 적극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니트가 많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취업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는 청년 니트에 관한 정책목표로 두 가지를 선정하였다. 첫 번째 정책목표는 ① '충실하게 니트 시기를 보내기'와 ② '니트 기간을 줄이기'로 정하였다. 첫 번째 목표는 청년기에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시기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간을 충실하게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청년 니트 기간을 최소화해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② 청년 1인 가구

우리사회의 1인 가구의 숫자가 1980년도에는 약 38 가구에서 2015년도에는 506만 가구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최근 다른 세대에 비해서 20-34세 청년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마케팅 분야에서는 소비행태 트렌드의 일부로 부각시키고 있지만, 실상 청년 1인 가구의 45.2%가 보증부 월세에 살고 있으며 사글세에서 거주하는 가구도 3.9%이다. 이는 다른 세대 1인 가구보다 훨씬 주거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들이 1인 가구를 선택한 이유는 자발적인 독립이기 보다는 진학이나 취업 및 공무원 시험준비, 취직 등의 이유로 인해서 주거지를 이동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비롯한 경우가 많아 경제적인 준비 없이 1인 가구로서의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한편, 저성장과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 거주비는 1인 가구 청년들에게는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청년 빈곤 비율도 계속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청년 전기에 속하는 19-24세 청년의 경우 다른 청년연령대에 비해 빈곤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부모의 영향으로 인해 빈곤이 된 환경적인 요인과 경제적으로 자립을 한 상황에서 빈곤을 경험하게 되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후천적 요인을 동시에 받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결국, 청년 빈곤 문제가 노인 세대의 빈곤과 차별점을 보이는 청년의 미래를 설계와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진로를 위한 준비 활동에서 필요한 비용에 있어 경제적 요인은 결과적으로 큰 차이를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청년 빈곤이 장년층, 노년층까지 유지하게 되는 위험에 노출된다. 또한 현재 시점으로서만 살펴보더라도 빈곤상황에 놓인 청년의 경우,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못한 상황에서 주거비에 많은 지출을 함에 따라 식생활을 비롯한 여가 문화생활을 포함한 일반적인 생활 안정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 결핍이 발생한다. 더불어 취업과 시험 등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적인 불안까지 증폭되고 있어 신체적·정신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청년 정책의 경우, 대부분 일자리 고용 영역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어 왔다. 물론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청년들이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주거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이는 짧은 시일 내에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현 상황의 청년 1인 가구 현황에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수립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2017년 10월 기준, 청년 대상의 법률 중에는 청년고용법 만이 시행중에 있고, 청년기본법은

총 7개의 법안이 발의 중에 있어 청년 생활 전반적인 부분을 담고 있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청년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청년정책기본계획 등을 통해서 청년 생활의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는 청년기본조례가 시행되는 지역이 많이 있다. 중앙정부에 비해 지자체에서는 청년 수당, 청년 주거 등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 정책지원을 시도하고 있으며, 청년정책 의견수렴과정에 있어서도 지역사회 청년의 목소리를 담기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동시에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마다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과 청년 생활 실태가 정확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아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방향설정 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와 면담 자료를 토대로 정책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 목표는 크게 ①‘공간 공유하기’와 ②‘생활 나누기’로 선정하였다.

과거 청년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이후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 본인이 소속된 사회에서 제공하는 공간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졸업유예 비율이 늘어나고, 졸업생이 첫 직장을 갖기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어 현재 청년들의 경우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유행어로 제시될 만큼 청년들이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카페 등을 전전하며 자칫세로 지불하는 커피 가격에 부담을 가지게 된다. 지역사회에서 청년들이 자유롭게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가 장기적인 차원으로 볼 때, 청년 활동 공간의 확산을 위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다면 사회적 경제 논리를 적용한 공유 주택 복합단지 건립의 추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년 주거비용을 경감함으로서 청년 1인 가구가 주거비에 대한 부담 없이 공유 주거 공간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또한 두 번째 정책방향인 ‘생활 나누기’는 청년 1인 가구가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삶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최근에 1인 가구용 식재료 등이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지만 이는 다른 상품보다 가격이 비싸 청년들에게는 사치로 느껴질 뿐이다. 자연스럽게 청년들은 편의점 컵라면과 포장마차의 컵밥에 의존하여 식생활에 있어서도 영양 불균형을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나 대학 졸업 이후, 취직 시기가 늦어지면서 본인이 소속된 기관이 없어 소속감이 결핍되어 불안과 혼란을 경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1인 가구 청년들에게서 더 크게 발생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청년을 둘러싼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하지만 1인 가구 특성 상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술을 마시는 생활이 반복되고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사회 관계망의 결핍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단기적으로는 현재 지역사회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 확대 지원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공유 부엌 프로젝트와 청년 활동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결핍되지 않고 건강한 1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활동들이 축적되어 전국 단위의 청년 협동조합 설치를 마련해볼 수 있다. 청년 세대의 연대성을 토대로 협력하고 생활 관계망을 형성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함으로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③ 청년 은둔형 외톨이

우리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책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의 부가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을 알아보았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들에 대해 연구를 하거나 상담,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 등을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과 그들이 경험하는 문제, 필요로 하는 지원 등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먼저, 본 연구에서 수행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만15-39세 중에 대인관계를 형성이나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외출을 하지 않으며, 보통 집에 있으면서 취미생활 또는 편의점에 가기 위한 외출을 하거나 자신의 방 또는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비율이 4.2%로 나타났다. 성별로 나누어보면,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남성은 1.6%, 여성은 7.3%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5.7%p 더 높았다.

이는 외출을 하지 않게 된 계기에 대한 응답 결과와 연결지어 해석할 수 있는데,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이 61.3%로 가장 높게 나타나 여성의 경우, 임신이나 출산에 따른 건강관리나 산후조리를 위해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는 상황적인 이유 때문에 외출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여성이 은둔 생활을 더 많이 한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17.9%)’,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아서(10.1%)’,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4.6%)’, ‘학업중단이나 대학진학 실패로(3.8%)’, ‘기타(2.2%)’ 순으로 나타나 구직 문제나 대인관계 문제, 장애, 학업 문제

등과 관련된 측면에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이 외출을 하지 않게 된 상태가 지속된 기간의 응답 결과를 보면, 1년에서 3년 미만이 36.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6개월 미만(18.4%), 6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17.9%), 3년 이상에서 5년 미만(16.6%), 5년 이상에서 7년 미만(6.0%), 7년 이상(4.7%) 순이었다. 특히, 외출을 하지 않게 된 기간이 5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10.7%로 나타나, 은둔 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은둔형 외톨이의 은둔 생활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초기에 적절하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은 은둔형 외톨이들이 개인적으로 내향적이거나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은 편이며, 타인의 부정적인 피드백에 매우 취약하며, 대인관계 능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특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개인 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터넷 발달 등을 통해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케 하는 기술의 발달, 경쟁과 성취만을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악화된 고용시장에 따른 취업 실패의 반복으로 의욕감 상실과 무기력감 확대 등의 사회·문화적인 구조에 따른 측면도 함께 다루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우리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은둔형 외톨이들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식과 정보, 지식 등이 부족하고 이들에 대한 문제의식도 낮기 때문에 관련 연구 등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지원 체계도 미흡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은둔형 외톨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함께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을 찾기 어려우며,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지원 기관이나 정책 등도 부재한 상황이라 초기 은둔형 외톨이들을 위한 개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시, 은둔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더욱 고립된 생활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은둔 생활의 장기화에 따른 문제(고립된 생활이 지속됨에 따라 사회 복귀 실패, 성인 자녀 부양에 따른 부모의 스트레스와 부담감 등)가 야기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이 사회에서 고립됨에 따른 부작용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 가정 내 갈등이 증폭되고, 노동생산성 저하와 더불어 심각한 범죄가 발생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은둔 생활을 오랫동안 지속함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가 고령화되는 문제는 개인의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추후에 그들을 부양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부담과 갈등도 야기된다. 그러므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초기 개입을 통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책목표를 ① 은둔형 외톨이에게

다가서기, ② 은둔형 외톨이 세상 밖으로 이끌어내기로 수립하였다. 첫 번째 목표에서는 우리나라의 은둔형 외톨이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처한 현실을 파악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은둔형 외톨이에게 접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목표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들이 사회로 다시 복귀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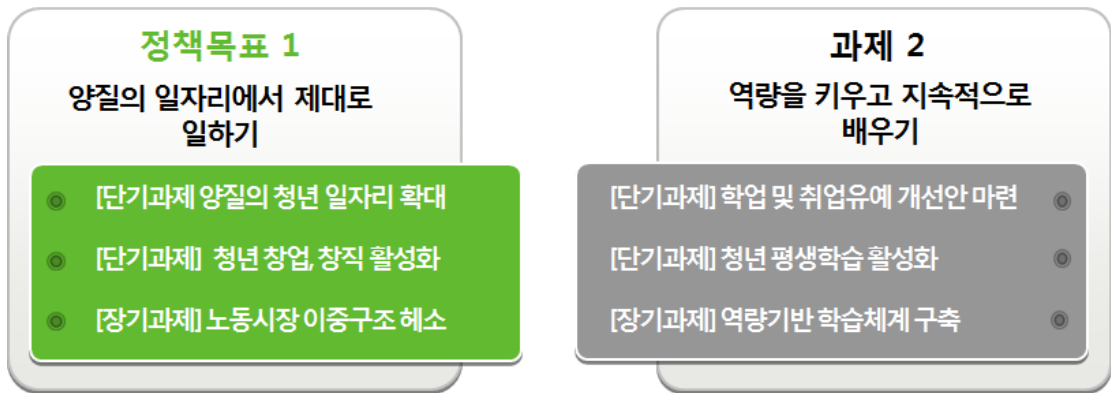
전체 청년과 대상별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는 <표 VI-1>에 제시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절에서 제시하였다.

표 VI-1 대상별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안)

정책대상	정책목표	정책과제
전체 청년을 위한 정책 과제	정책목표 1. 양질의 일자리에서 제대로 일하기	[단기과제] 양질의 청년일자리 확대 [단기과제] 청년 창업, 창직 활성화 [장기과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정책목표 2. 역량을 키우고 지속적으로 배우기	[단기과제] 청년 졸업유예 개선방안 마련 [단기과제] 청년 평생학습 활성화 [장기과제] 역량기반 학습체계 구축
	정책목표 3. 마음껏 목소리 내기	[단기과제] 정부위원회 청년 참여 확대 [단기과제] 청년 정책참여기구 내실화 [장기과제] 구조화된 대화 구축
	정책목표 4. 누구나 차별 없이 성장하기	[단기과제] 청년 미취업자 실업부조 도입 [장기과제] 청년 사회주택 보급 [장기과제] 청년 자산형성계좌제 도입
	청년정책 기반 구축하기	청년 법률 제개정, 정책추진체계 마련
청년 니트(NEET)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목표 1. 충실하게 니트 시기를 보내기	[단기과제] 니트 지원 프로그램 마련 [장기과제] 니트 찾아가는 서비스 추진
	정책목표 2. 니트 기간을 줄이기	[단기과제] 한국형 청년보장제 실시 [장기과제] 교육 및 훈련 연계체계 구축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목표 1. 공간 공유하기	[단기과제] 청년활동공간 지원서비스 확대 [장기과제] 청년 공유 주거 복합단지 추진
	정책목표 2. 생활 나누기	[단기과제] 공유 부엌 프로젝트 확대 추진 [장기과제] 전국 단위 청년 협동조합 구성
청년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목표 1. 은둔형 외톨이에게 다가서기	[단기과제] 은둔형 외톨이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및 협업·연계 강화 [장기과제] 민·관 협동을 통한 은둔형 외톨이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정책목표 2. 은둔형 외톨이 세상 밖으로 이끌어내기	[단기과제] 은둔형 외톨이 자기 강화 지원 [장기과제] 은둔형 외톨이 자립 지원 강화

2. 청년 정책의 과제

1) 전체 청년을 위한 정책과제



【그림 VI-10】고용과 학습에 관한 정책목표에 따른 정책과제(안)

(1) 정책목표1. 양질의 일자리에서 제대로 일하기

① [단기과제]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대

청년들이 마음껏 일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더불어서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를 늘릴 필요가 있다.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연구 및 개발(R&D) 투자를 집중하고 중소기업에서 자율주행차, 드론, 웨어러블, 3D프린팅, 지능형 로봇 등 미래형 신산업을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노사정위원회가 재구성되어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단기과제] 청년 창업, 창직 활성화

청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년 창업, 창직과 관련하여 신설법인 중 대표자의 연령이 청년층인 경우와 고용주(대표)가 청년층인 비율은 모두 점차 낮아지고 있어 젊은 기업가가 오히려 줄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청년 창업지원이 일자리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생계형 창업이나 1인 창업 등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 이스라엘, 북유럽처럼 혁신형 창업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생태계 구축 측면에서 대학과 기업,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벤처부 간에 업무 연계를 긴밀하게 구축하고, 대기업으로부터 젊은 기업들의 기술 보증과 기술인력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창업 자금 확보와 패자부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클라우드 펀딩을 비롯하여 벤처 금융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패자부활 문제와 관련하여 금융 지원 시 연대보증을 공공영역부터 민간영역으로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장기과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청년들은 취업을 해도 비정규직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취업경쟁이 심화되는 원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임금격차와 복지지원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정책목표2. 역량을 키우고 지속적으로 배우기

① [단기과제] 학업 및 취업유예 개선안 마련

우리나라 청년들은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재수나 삼수를 하면서 진학을 유예하고 있으며 대학에 들어간 대학생들의 경우 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혹은 어려운 취업여건 속에서 졸업유예를 유예하고 있다. 고시생과 공시생 문제뿐만 아니라 평균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에 이르는 기간이 1년 가까이 될 정도로 취업도 유예하고 있다. 이러한 유예현상을 개인적 선택으로 방치하기에는 너무나 규모가 크고 사회적 문제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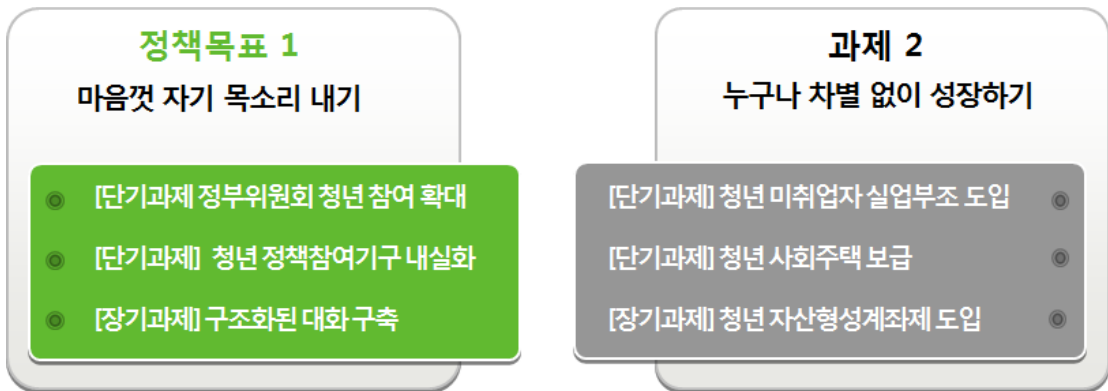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에서 진학지도를 넘어서 진로교육과 진로지도가 강화되어야 하며 대학교에서 수료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② [단기과제] 청년 평생학습 활성화

평생직장이 없어지고 새로운 혁신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시대에 평생학습은 개인의 경쟁력을 키우는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대학원 진학을 포함한 형식교육뿐만 아니라 비형식교육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현행 일-학습병행제와 같이 선취업, 후진학을 통해 청년기부터 평생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③ [장기과제] 역량기반 학습체계 구축

청년들의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위해서 초, 중등교육을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사회에서 꼭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역량 중심 교육으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등교육 역시 대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역량 중심 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VI-11】 참여와 복지에 관한 정책목표에 따른 정책과제(안)

(3) 정책목표3. 마음껏 자기 목소리 내기

① [단기과제] 정부위원회 청년 참여 확대

단기적으로 청년 정책과 관련된 정부위원회에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김기현, 김형주 외, 2015). 중앙정부에 청년정책 총괄조정기구가 없는 상황이며 지자체에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청년정책위원회와 같은 총괄조정기구를 두고 있지만 20, 30대 청년들이 위원 중 절반을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청년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관련성이 높은 정부위원회에서 청년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의 30명 위원 중 20, 30대 위원은 1명에 불과한 상황이며 최저임금위원회도 27명 중 20, 30대 위원이 1명에 그치고 있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정부위원회에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여성들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있듯이 청년들의 정책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② [단기과제] 청년 정책참여기구 내실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정책에 참여하는 기구들이 구성 중에 있다. 중앙부처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정책을 추진할 때 모니터링단을 운영 중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년 정책참여기구가 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지방정부로 정책참여기구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실질적으로 정부정책과 지자체 정책을 수립할 때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③ [장기과제] 구조화된 대화 구축

유럽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조화된 대화는 청소년 및 청년층과 정책담당자들이 다양한 정책 현안을 대상으로 논의하여 유럽연합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22개 언어로 제공되는 유럽청소년포털(https://europa.eu/youth/EU_en)을 통해 운영 중이다. 토론주제는 유럽연합의 청소년 장관이 유럽연합 회원국 대표회의와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유럽청소년포럼이 제안(예 들 들어 청년 정책 사업 대상을 24세에서 30세로 확대)하며 각 회원국들의 청소년 참여기구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과 참여기구에 소속되지 않은 젊은이라도 포털 가입을 통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15세에서 30세 젊은이 10만 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포털에서 논의한 결과는 유럽연합에서 공식적으로 정책 사업을 채택할 때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4) 정책목표4. 누구나 차별 없이 성장하기

① [단기과제] 청년 미취업자 실업부조 도입

청년 고용서비스 사업 예산의 70%(1,474억원)를 차지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는 당초 문재인 정부 공약인 청년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대상을 청년 니트(NEET)에서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진입자로 바뀌면서 향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 정책에서 공급자 중심 간접지원이 대부분이고 수요자 중심 직접지원이 거의 없고 제한적인 프로그램 참여 시에만 지급되는 현실에서 직접지원방식인 청년 구직촉진수당이 2019년으로 유예된 것은 아쉬운 상황이다.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 간접지원 사업 중 하나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수요자 중심의 직접지원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청년 미취업자부터 실업부조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장기과제] 청년 사회주택 보급

장기적으로 주거권을 하나의 생존권으로 간주하여 청년들을 위한 사회주택(social housing)을 건립해 보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김기현, 김형주 외, 2015). 네덜란드의 사회주택은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택은 정부가 토지를 매입하고 이를 민간 사업자에 장기간에 걸쳐 싼 비용으로 빌려주고 민간 사업자는 주택을 지어 청년이나 취약계층에게 적은 임대료를 받고 주거를 보급하는 방식이다. 단기적으로 행복주택이나 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주택 등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공공주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 기숙사 확충 역시 필요하다.

③ [장기과제] 청년 자산형성계좌제 도입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아닌 청년 취업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기업 내에서 지원을 받는 청년 직원과 이미 취업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직원 간의 갈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업을 통해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식의 자산형성계좌제를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아동발달계좌(CDA, 디딤씨앗통장), 희망키움통장 혹은 내일키움통장이나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 등이 이러한 형태의 정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소수의 취약계층이나 특정 지역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청년 모두가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사회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청년정책 기반을 구축하기

청년정책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출발점은 청년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이다. 우선 청년기본법안은 연령 중복 문제를 고려해 기존의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청년기본법」으로 개정해 생애전반기를 아울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VI-2 청년기본법안 대상 연령 규정(안)

	기존 법안	개정/제정 법안
1안 개정안	「청소년기본법」 제3조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청소년·청년기본법」 제3조 "청소년·청년"이란 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안 제정안	—	「청년기본법」 "청년"이란 18세에서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출처: 김기현, 하형석 외(2016)의 〈표 V-6〉를 수정함. p. 210

표 VI-3 청년 정부조직(안)

구분	청년 정부조직(안)
단기과제 행정위원회안	
장기과제 행정부처안	

* 출처: 이윤주, 김기현 외(2017)의 [그림 IV-3](p. 85)과 [그림 IV-5](p. 91)를 인용, 일부 내용을 수정함.

이러한 개정이 어렵다면 청년기본법안을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연령 중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이나 「청소년기본법」 개정 작업도 뒤따라야 한다. 청년 연령 범위는 성인기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18세에서 34세로 정하고 필요에 따라 정책사업별 연령에 유연성을 주기위해 단서조항을 다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정책 추진체계는 행정위원회로 구성하거나 행정부처를 신설 혹은 기능조정을 통해 구성할 수 있다. 행정위원회는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안처럼 대통령직속으로 둘 수 있으나 정부정책에 따라 위원회가 폐지되는 등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정책사업을 심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국무총리 소속에 청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있다. 행정부처에서 청년정책 사무를 맡는 방안도 있다.

여성가족부가 대상 중심 정책을 총괄하는 행정부처로 개편된다면 청년정책에 관한 사무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은 대상 중심 총괄 부처에 청년정책국을 두어 각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년정책 사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장기적으로 행정부처에서 청년정책 사업을 수행할 때 업무 추진력이 크기 때문에 행정위원회를 행정부처로 재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청년 니트(NEET)를 위한 정책과제²⁵⁾



【그림 VI-12】 청년 니트 정책목표에 따른 정책과제(안)

25) 이 부분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1) 정책목표 1. 충실하게 니트 시기를 보내기

① [단기과제] 니트 지원 프로그램 추진

청년 니트는 자존감이 낮고 생활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청년 니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청년니트와 관련하여 중등후 교육기관인 전수학교에서 청년 니트에게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평생학습시설인 공민관에서 청년 니트뿐만 아니라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동시에 집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 청년 니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러닝(e-learning) 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직업훈련기관과 평생학습기관, 그리고 이러닝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들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청년 니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해 볼 수 있다.

② [장기과제] 니트 찾아가는 서비스 추진

청년 니트들은 특성상 밖으로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용센터나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등으로 찾아오도록 만들기가 쉽지 않다. 일본은 청년 니트를 지원하는 서포트 스테이션(地域若者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추진 중이며 직접 청년 니트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한국에서도 청년 니트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찾아가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청소년분야에서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들이 찾아와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방식에서 학교와 아파트 단지과 같이 청소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청소년지도사들이 직접 방문해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청년 니트를 찾아가는 서비스를 장기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2) 정책목표 2. 니트기간을 줄이기

① [단기과제] 한국형 청년보장제 실시

유럽연합에서 회원국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청년보장제를 우리나라에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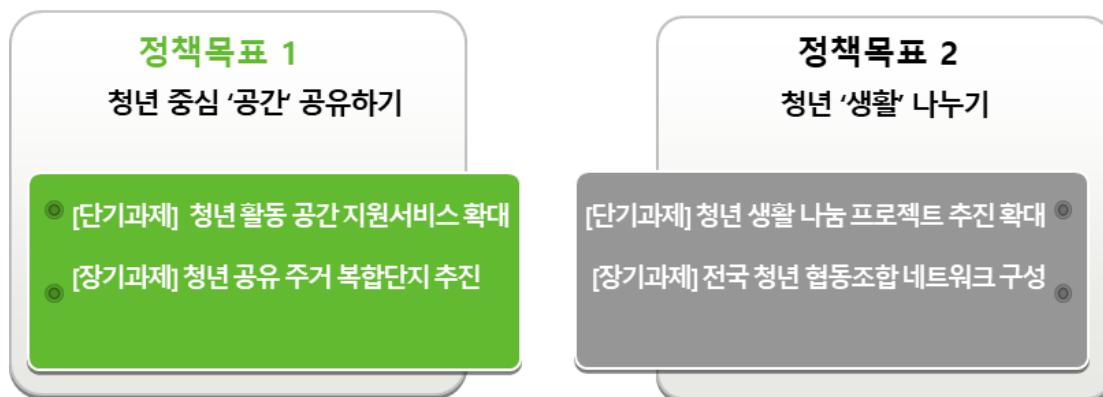
간의 연계,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현재 17개 시도에서는 청년기본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기본조례를 마련하였고 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청년정책총괄조정기구와 청년참여기구를 만들었으며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청년활동수당이나 청년 통장과 같은 시도 차원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미 앞서나간 지방정부와 이제 청년정책을 준비 중인 중앙정부 간의 협력과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의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를 우리사회의 특수성에 맞게 적용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은 청년보장제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재정적으로 회원국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기준은 청년실업률이나 청년니트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높은 곳으로 청년 고용문제가 크게 없는 독일은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지 않지만 이 문제가 심각한 스페인은 2014년 9억 유로의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 각 회원국은 청년보장제 추진계획을 유럽연합에 제출하는데 비교적 회원국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유럽연합에서 제시한 6가지 가이드라인(① 모든 이해당사자 간 강력한 파트너십 구축, ② 니트 상태에서 개입하는 시점을 4개월 이내로 신속하게 대응, ③ 노동시장 정책 추진을 실업자, 니트, 창업 지원 등을 통합해 운영, ④ 유럽연합 예산의 적극적 활용(회원국의 재정투자 외에 유럽사회기금 ESF, 청년고용 이니셔티브 YEI 등 EU 재정 연계), ⑤ 제도에 대한 평가와 지속적 개선, ⑥ 신속한 이행)을 준수해야 한다. 재정적 지원이후 성과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청년 고용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지를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유럽연합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정부가 회원국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청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장기과제] 교육 및 훈련 연계체계 구축

학습(learning)이라는 맥락에서 동일한 영역인 교육(education)과 훈련(training)이 중앙부처는 물론 각 지역사회에서도 교육기관과 훈련기관간에 연계와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장기적으로 정책추진체계(교육은 교육부, 훈련은 고용노동부)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에 다양한 학습기관을 연계하고 협력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정책과제²⁶⁾



【그림 VI-13】 청년 1인가구에 관한 정책목표에 따른 정책과제(안)

(1) 정책목표 1. 청년 중심 '공간' 공유하기

① [단기과제] 청년 활동 공간 지원서비스 확대

본 절에서 청년 1인 가구 대상의 정책제안하는 과정에서 단기와 장기과제로의 구분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년 정책 및 프로그램 사업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다. 각 시·도 차원에서 시행하는 청년정책 가운데 청년 활동 공간 마련의 경우 시행하고 있거나 기본 계획 내 포함되어 있어 구상 계획 중인 사례가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FGI 등을 토대로 청년의 요구를 반영하여 현재 시행되고 발의 된 청년 기본조례 및 기본법안을 참고로 하여 실현가능한 청년 1인 가구 정책 마련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청년 활동공간에 대해서 살펴보면 과거에는 대학 캠퍼스 및 직장을 중심으로 주된 청년 활동공간이 마련되었던 것에 비해 졸업 유예의 비율도 증가하고, 졸업을 한 이후 취직까지의 시간적인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다수의 청년들은 자신들이 편안하게 쉬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 내 청년 공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면담 결과에 따르면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의 경우 취업준비를 위한 스터디, 공모전을

26) 이 부분은 이윤주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준비하기 위한 회의, 인터넷 강의 시청, 취미활동 공유 등 일상에서 타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였다. 그래서 주로 카페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 또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이 되고 장소를 편안하게 활용하는데 제약이 많은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청년기본조례에 따르면 ‘청년의 참여확대’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청년활동 지원방안을 위한 활동비 지급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의 청년공간은 지역 단위로 소수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각 시·도 단위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무중력지대 G밸리’, ‘서울혁신파크’, ‘청춘-빨당’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 공간 또한 특정 구에 한정되어 있어 다수의 청년들이 접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청년활동참여 공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참여확대 방안을 구체화 한다면 중앙 뿐 아니라 지역사회 단위로 청년활동 공간이 확대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청년기본법안이 제정되면 청년 활동지원과 문화 활성화 및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측면에서도 청년 공간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에서도 청년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논의가 진행 중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청년공간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 하여 활성화 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활동 공간 전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유흥건물 등을 주민참여예산제 방식을 통해서 공간 마련하는 사례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설치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다.

② [장기과제] 청년 공유 주거 복합단지 추진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청년을 위한 공간 마련에 있어서 주거문제에 대한 공유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연구 조사를 통해 자발적인 독립이 아닌 진학이나 취업 준비 등을 위해 시작된 1인 가구 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용 이었다. 주거비가 충분하지 않다보니 노후화 된 주택이나 안전하지 못한 동네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주거 지역의 치안을 위한 지불액도 상당수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청년 주거 빈곤 1인 가구의 경우,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으로부터의 자신의 권리 보장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공급 사업이 상당 수 존재하지만 면담 결과, 해당 사업들의 경우 청년 대상만을 삼기보다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 자격을 설정하기 때문에 부모가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청년 본인이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까다로운 경우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주거비를 마련해야 하는 청년들의 숫자는 다수인 것에 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정부에서는 청년 대상의 주택정책들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정책 대상자인 청년은 소외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학가 근처나 청년 활동 지원 공간과 인접한 지역 중심으로 청년 대상 공유주거 복합단지 건립을 추진해 볼 수 있다. 현재 발의된 청년기본법안 에에서도 제시되어 있듯이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연계하여 청년 활동 공간 뿐 아니라 청년 공유 주거타운을 계획해 볼 수 있다.

현재 서울시 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학생 중심의 희망 하우스의 모델에서 착안하여 대상을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산하고 주택 공간 또한 주거와 활동을 함께 결합한 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청년 주거 빈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으로서도 적극적으로 청년 주거 안정 및 삶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청년 친화적인 활동 및 주거 복합단지에서 청년 창업이나 문화 예술 활동 등 청년 중심의 생산 활동 공간 마련까지 더해진다면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해본다.

(2) 정책목표 2. 청년 ‘생활’ 나누기

① [단기과제] 청년 생활 나눔 프로젝트 추진 확대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생활 측면에 있어서 개인만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영역이 충분히 존재한다. 한편, 면담 결과, 1인 가구 청년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다보니 식생활 준비에서부터 생활용품 구매, 여가문화 생활 등 생활 전반적인 영역에 있어서 사회적인 관계망에 대한 결핍이 상당수 나타났다. 최근 혼밥과 혼술이 사회적 트렌드로 등장하고 있지만 1인용 식재료의 경우 가격이 상당히 비싸 나 혼자 건강한 식재료를 바탕으로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

또한 취업이나 공무원시험 준비 등으로 개인 단위로 공부를 할 때도 있지만 문화 여가생활을

즐김으로서 기분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있는데 이 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주변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현재 지역사회 단위로 건강한 식생활을 모토로 삼아 소셜다이닝 공유부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상당 수 있다. 또한 단순히 함께 식사를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요리를 함께 하고 식사를 하면서 사회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영화를 보는 등 문화예술 활동과 결합한 프로그램 유형도 실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단계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활동지원이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일시적인 이벤트성으로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1인 가구 청년 대상의 소셜다이닝 프로젝트를 확대하여 생활 전반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범위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청년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년단체 지원이나 청년문화 활성화 등을 통해 구현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가능하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 있어서 지역사회 단위 청년 단체가 주축이 되어 활동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 청년 일자리 마련에도 도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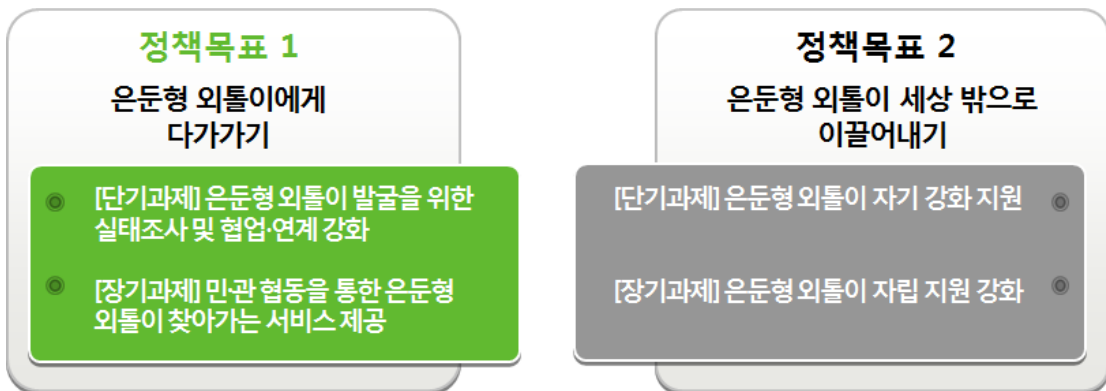
② [장기과제] 전국 청년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성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기조에 따르면 정부차원에서 사회적 경제 정책지원을 약속하였다. 현재 청년유니언과 같이 청년 세대 중심의 노동조합과 더불어 지역사회 내 청년 네트워크 중심으로 발생한 제주청년협동조합의 사례와 같이 청년 중심의 협동조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청년 협동조합의 경우, 지역사회 내 소수 청년을 중심으로만 공유되고 있을 뿐 다수의 청년들에게는 익숙하지 못한 개념일 것이다.

한편, 청년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인 가구 단위로 식재료를 포함한 생활 물품을 구매하는 것에 있어서는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지역단위로서 먼저 청년 대상 협동조합을 청년기본조례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단순히 물품을 나누는 것을 넘어 같은 시대에 공간을 공유하는 청년간의 생각과 행동을 나누는 협동조합 설치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청년 협동조합을 통해 청년 예술가를 후원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 청년의 생각 나눔 활동으로서 확장될 수 있는 평생교육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 또한 생각해볼 수 있다. 청년의 사회·정치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요즘, 청년간의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으로 청년 협동조합 구성 및 운영 지원 사업은 지역사회 내 청년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 단위의 협동조합 구조가 지역단위에서 활성화 되면 청년 네트워크 중심으로 전국단위의 협동조합을 건립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경제 구축 뿐 아니라 공공일자리 마련의 일환으로서도 긍정적인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청년 협동조합을 이끌어갈 주체로서 청년을 선정하고 사회적 경제에 관련한 기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토대로 지역사회 단위의 청년 협동조합이 연결망을 통해 전국단위의 협동조합 구성을 위한 지원을 통해 청년이 지역사회 뿐 아니라 우리 사회 내에서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주체로서의 장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존의 시행되고 있는 협동조합 시스템과의 연계 활동을 통해 청년만의 네트워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의 상생 방안으로서 공동체 구성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4)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정책과제²⁷⁾



【그림 VI-14】 청년 은둔형 외톨이에 관한 정책목표에 따른 정책과제(안)

(1) 정책목표 1. 은둔형 외톨이에게 다가서기

① [단기과제] 은둔형 외톨이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및 협업·연계 강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를 약 2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을 뿐, 공식적인 통계 자료로 산출되지 않아 정확한 현황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은둔형 외톨이

27) 이 절은 유설희 전문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정책적인 지원 대상으로 고려조차 되지 않도록 하여 사회적으로 방치되게 한다. 그러므로 각 지자체별로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가구방문조사를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규모로 존재하는 지, 은둔 기간은 얼마나 되는 지, 그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 지 등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향후에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지원 정책이나 제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를 그만 둔 학생들에 대한 정보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되고 있는데, 학교와 학교 밖 지원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학교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적하는 것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학계 및 연구기관에서 우리나라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이나 유형, 그들에게 요구되는 지원이나 은둔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장기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지원 정책의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장기과제] 민·관 협동을 통한 은둔형 외톨이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은둔형 외톨이는 집 안에서만 고립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므로, 그들이 어떠한 상태인지, 어떤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지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앞서 진행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발굴에 따라 조사된 현황, 그리고 관련 연구 통해 축적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은둔형 외톨이에게 직접 방문하여 그들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 지 등에 대한 진단과 그들에게 필요로 하는 지원을 연계하거나 가능하다면 직접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은둔형 외톨이는 단기간의 방문만으로 은둔 생활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찾아갈 수 있는 민간 청소년 및 청년 단체, 자원봉사활동 단체 등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 협력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한편,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사회복지나 의료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심리 및 사회학 등 다양한 측면에 따른 접근이 융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통합적인 관점과 정보를 갖추면서 은둔형 외톨이에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 정책목표 2. 은둔형 외톨이 세상 밖으로 이끌어내기

① [단기과제] 은둔형 외톨이 자기 강화 지원

은둔형 외톨이는 타인에 의해 욕구가 거절된 경험이 많으며,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고, 부정적인 피드백에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을 많이 하며, 무기력한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둔형 외톨이에게 심리·정서적 접근을 통해 개인 내적인 힘을 강화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긍정적인 존재로 바라보고 인정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은둔형 외톨이들의 자조모임을 지원하거나 역할극, 개인 상담 및 가족 상담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이나 또래 등과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경험을 연습해봄으로써 긍정적인 자기상을 만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② [장기과제] 은둔형 외톨이 자립 지원 강화

은둔형 외톨이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로서 가치가 있으며 책임있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립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은둔 생활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모가 은둔하고 있는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감과 더불어 부모-자녀 간 갈등도 확대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들게 된다. 그러므로 은둔형 외톨이가 내적인 힘을 회복한 것에 기반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과 요구, 역량에 따른 대안교육이나 직업훈련이 제공되어야 되어야 한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의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갖고 있는 역량과 기능에 매우 큰 차이가 있으므로, 그들이 가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연계하는 등의 지원이 단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감사원 (2016). **청년고용 대책 성과분석**. 서울: 감사원.
- 강은나, 이민홍 (2016). 우리나라 세대별 1인가구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34(4), 47-56.
- 경기도 (2017).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account.jobabab.net/main/main.do>에서 2017년 10월 1일 인출.
- 고용노동부 (2017).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 - 37호.
- 고용노동부 (2017). **일자리 이슈북**. 내부자료.
- 고용노동부 (각 년도). **고용노동통계**. 세종: 고용노동부.
- 교육부 (2017). **교육부 조직도 및 업무편람**. <http://www.moe.go.kr/main.do?s=moe> 에서 2017년 10월 20일 인출.
- 교육부 (각 년도). **교육기본통계**. 세종: 교육부.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2016 교육통계분석 자료집**.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2016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 **지방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 <http://www.law.go.kr> 에서 2017년 10월 5일 인출.
- 국립국어원 (201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검색기**.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에서 2017년 4월 13일 인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각 년도). **한국의료패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서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국회예산정책처 (2010).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과제** (일자리 정책연구(종합)).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17). **20대 국회 청년기본법안 입법 발의안**.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에서 2017년 10월 8일 인출.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17).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개정 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서 2017년 9월 2일 인출.
- 국회입법조사처 (2009). **역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예산, 정책, 실적의 조사·분석**.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 (2017). **청년활동지원수당의 현황 및 정책과제**.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금재호, 전용일, 조준모 (2007). **한국형 니트개념을 통한 청년실업의 경제학적 고찰**. 서울: 노동부.
- 김광석 (2015). 청년 니트족(NEET) 특징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15(3), 1-10.
- 김기현 (2005). 교육과 직무의 불일치: 한일 대학졸업자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5(3), 51-77.
- 김기현 (2015). **2015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연구보고 15-R49). 서울: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김기현 (2017). 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을 논하다 토론문. **제1회 청년의 날 특별기획 청년정책 토론회 자료집**, 43-46.
- 김기현 (2017). 한국 청년 니트(NEET)의 정의와 결정요인. **1-19차년도 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 김기현, 김형주, 박성재, 민주홍, 김종성 (2015). **2025 청년 전망 및 향후 정책 추진과제 연구**. 서울: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김기현, 하형석, 신인철 (2016).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연구보고 16-R08).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한지형 (2017).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정책 방향과 과제: 2017년 청년정책포럼(연구보고 17-R38)**. 서울: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김문길, 김미곤, 김태완, 최민정, 이세미 (2015). **청년근로빈곤층(Youth Working-Poor) 사례연구** (정책보고서 2015-47). 서울: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김수정 (2010). 청년층의 빈곤과 이행의 곤란.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6(3), 49-72.
- 김영미 (2017). 노동시장 피해자 경쟁과 여성혐오. **새얼문화재단 황해문화**, 97, 36-51.
- 김유숙, 박진희, 최지원 (2009). **은둔형 외톨이(세상으로 나오기가 두려운 아이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서울: 학지사.
- 김종욱 (2017). 최근 청년층 니트(NEET)의 특징과 변화. **월간노동리뷰**, 2017(4), 91-110.
- 김종진 (2006). **달팽이 껍질 속으로 숨은 외톨이**. 서울: 해피아워.
- 김태완, 최준영 (2017). 청년의 빈곤 실태: 청년, 누가 가난한가. **보건복지포럼**, 244(2), 7-19.
- 남재량 (2006). 청년실업의 동태적 특성과 정책 시사점. **노동리뷰**, 2006(4), 22-33.

- 노동부 (2001). **실업대책백서 1998~2000**. 서울: 노동부.
- 대학알리미 (각 년도). **대학알리미DB: 특성화정보**.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17년 10월 6일 인출.
-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2016). **2016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시행 사업**. 내부자료. 서울: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2017). **청년정책추진체계 발전방안연구** (연구보고 17-R36). 서울: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 무중력지대 G밸리 (2017). **무중력지대 G밸리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youthzone1/>에서 2017년 10월 3일 인출.
- 문화체육관광부 (각 년도). **국민여가활동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각 년도). **국민독서실태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17). **조직도 및 업무편람**. <http://www.mcst.go.kr/main.jsp> 에서 2017년 10월 20일 인출.
- 박정란, 서홍란, 장수한 (2011). **청소년복지론**. 경기: 양서원.
- 박진희, 김두순, 정한나, 이재성 (2015). **2015 통계로 본 노동동향** (기본연구; 2015-33). 음성: 한국고용정보원.
- 박철우 (2017). **생이주기기반 청년정책**. 청년고용포럼-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공동 워크숍 자료집. p. 9.
- 방하남, 어수봉, 유규창, 이상민, 하갑래 (2012). **기업의 정년실태와 퇴직 관리에 관한 연구**(정책연구 2012-05).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배상률, 황여정, 김소라 (2013).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연구보고 2013-R45). 서울: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변미리, 신상영, 조권중 (2008). **서울의 1인 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연구**(시정연 2008-PR-49).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보건복지부 (각 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서울의 1인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 연구** (2008-PR-49).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서울시 희망두배저축통장 (2017). <http://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에서 2017년 10월 10일 인출.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2017). **2017 청정넷 돌아보기 2-청년의회: 주거분과**. <https://seoulyg.net/news/page.php?no=195>에서 2017년 9월 22일 인출.
- 서울특별시의회 (2014). **서울특별시 1인가구 대책 정책연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2014-[1]).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 서인석 (2015). 한국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탐색적 지형화 연구. **지방정부연구**, 19(2), 113-139.
-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2014). **한국종합사회조사**. 서울: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 성재민 (2017). 청년의 구직활동, 이직, 생활시간. **월간 노동리뷰**, 2017(10), 3-4.
- 여성가족부 (2017). **조직도 및 업무편람**. <http://www.mogef.go.kr/>에서 2017년 10월 20일 인출.
- 여인중 (2005). **은둔형 외톨이**. 서울: 지혜문학.
- 여인중, 이영식 (2012). **청소년정신의학, Part3-23 은둔형 외톨이**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편저). 서울: 시그마프레스.
- 이규용, 금재호, 안주엽, 윤자영, 김기현, 이지은, 신선옥, 이해정, 김기홍 (2015). **제17차(2014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희 (2016). 청년 사회안전망 논의의 쟁점과 과제. **월간노동리뷰**, 2016(1), 47-50.
- 이윤주, 김기현, 하형석 (2017). **청년정책 추진 체계 발전방안 연구** (연구보고 17-R39). 서울: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이태진, 김태완, 정의철, 최은영, 임덕영, 윤여선, 최준영 외 (2016).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연구보고 2016-42).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일자리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 청년정책 추진체계**. <https://jobs.go.kr/>에서 2017년 10월 5일 인출.
- 정부부처합동 (2015).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 정부부처합동 (2016).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
- 제주청년네트워크 (2017). <https://www.facebook.com/youthnetworkjeju/> 에서 2017년 10월 3일 인출.
- 조진우, 이윤주 (2017). 지방자치단체 청년참여기구 실태 및 체계 연구. **NYPI Bluenote 이슈&정책, 통권 제81호**.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중소기업청 (2016). **신설법인동향**. 대전: 중소기업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년도).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년도).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일보 (2017.1.19.). **40대 아재가 된 ‘은둔형 외톨이’ ...손 놓고 방치한 사회**. 중앙일보 웹 사이트 <http://news.joins.com/article/21143382>에서 2017년 2월 6일 인출.
- 지승희, 양미진, 김태성, 이자영, 홍지연 (2006). **은둔형부적응청소년 상담 가이드북**.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채창균, 오호영, 정재호, 남기곤, 김기현 (2008). **유취청년 연구** (연구보고서; 2008-5).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청춘뽕딩 (2017). **청춘뽕딩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youthblg/> 에서 2017년 10월 3일 인출.
- 청춘상담소 좀 놀아본 언니들 (2017). **청춘상담소 좀 놀아본 언니들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dagnaguigui/>에서 2017년 10월 3일 인출.
- 최병근 (2017). **청년활동지원수당의 현황 및 정책과제**.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통계청 (각 년도). **KOSIS 국가통계포털: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http://kosis.kr/>에서 2017년 10월 12일 인출.
- 통계청 (각 년도). **KOSIS 국가통계포털: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년도. <http://kosis.kr/>에서 2017년 10월 12일 인출.
- 통계청 (각 년도). **KOSIS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http://kosis.kr/>에서 2017년 10월 11일 인출.
- 통계청 (각 년도). **KOSIS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각 년도. <http://kosis.kr/>에서 2017년 10월 11일 인출.
- 통계청 (각 년도). **KOSIS 국가통계포털: 기업생멸통계**. 각 년도. <http://kosis.kr/>에서 2017년 10월 12일 인출.
- 통계청 (각 년도). **KOSIS 국가통계포털: 사망원인통계**. 각 년도. <http://kosis.kr/>에서 2017년 10월 12일 인출.
- 통계청 (각 년도). **KOSIS 국가통계포털: 사회조사**. 각 년도. <http://kosis.kr/>에서 2017년 10월 12일 인출.
- 통계청 (각 년도).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http://kosis.kr/>에서 2017년 10월 12일 인출.

- 통계청 (각 년도).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주택총조사. <http://kosis.kr/>에서 2017년 10월 12일 인출.
- 통계청 (각 년도). KOSIS 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추계. <http://kosis.kr/>에서 2017년 10월 12일 인출.
- 통계청 (각 년도). KOSIS 국가통계포털: 체류외국인통계. <http://kosis.kr/>에서 2017년 10월 12일 인출.
-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2016). 2016 가계금융·복지조사.
- 특임장관실 (2012). 2030 청년백서. 서울: 특임장관실.
- 하나금융그룹 (2016). 국내 청년층 금융 현황 및 발전 방향.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주간 하나금융포커스, 6(43). 4-7.
- 한국경영자총협회 (2016). 신입사원 채용실태조사. 서울: 한국경영자총협회.
- 한국경제 (2016.6.6.). 입사 1년 내 퇴사 신입사원 4명 중 1명 ‘300인 미만 기업 퇴사율..’, 한국경제 웹 사이트 <http://hei.hankyung.com/hub01/2016060611971>에서 2017년 10월 15일 인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 한국의료패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청년연구센터 홈페이지. 웹 사이트 <http://nypi.re.kr/touth/>에서 2017년 3월 16일 인출.
- 한국행정연구원 (각 년도). 사회통합실태조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헌법재판소 (2014).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3헌마533, 공보 제215호). 서울: 헌법재판소.
- 황순길, 여인중, 남재량, 장미경, 허묘연, 권해수 외 (2005).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부적응 청소년 지원방안(청소년 2005-25).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Bjarnason, T., & Sigurdardottir, T. (2003). Psychological distress during unemployment and beyond: social support and material deprivation among youth in six northern Europe countries. *Social science & Medicine*, 56. 973-985.
- Chisholm, L. & Hurrelmann, K. (1995). Adolescence in modern Europe. Pluralized transition patterns and their implications for personal and social risks. *Journal of Adolescence*, 29(2). 129-158.
- Comité interministériel de la jeunesse (2015). 47 mesures pour une politique de jeunesse nouvelle génération.

- Eurofound (2012). *NEETs-Young people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Characteristics, costs and policy responses in Europe*.
- European Commission (2011).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accompanying the document proposal for a council recommendation on establishing a youth guarantee*.
- European Union (2016). *EU YOUTH REPORT 2015*.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Eurostat (2016). *Material deprivation statistics*. Retrieved July 13, 2016, from http://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Material_deprivation_statistics_-_early_results.
- Jones, G. & Wallace, C. (1992). *Youth, family, and citizenship*. UK: Open University Press.
- Lee, Y. S., Lee, J. Y., Choi, T. Y., & Choi, J. T. (2013). Home visitation program for detecting, evaluating and treating socially withdrawn youth in Korea.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67(4), 193-202.
-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11). Retrieved August 4, <http://nces.ed.gov/>.
- Neugarten, B. L., & Nancy Datan (1996).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the Life Cycle*. edited by Dail A. Neugarten, CH: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OECD (2017). *2017 Educational at a Glance*.
- OECD (2017). *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NEET)* (indicator). Retrieved September 24, 2017, from <http://data.oecd.org/>.
- Robert D. Putnam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Y: Simon and Schuster.
- Social Exclusion Unit (1999). *The social exclusion unit*.
- 内閣府 (2016). 子ども・若者ビジョン. Retrieved October 21, 2017, from <http://www8.cao.go.jp/youth/suisin/pdf/vision.pdf>.
- 内閣府 (2017). 子供・若者白書. Retrieved October 15, 2017, from http://www8.cao.go.jp/youth/whitepaper/h29honpen/pdf_index.html.
- 厚生労働省(2004). 平成16年版 労働経済白書.
- 厚生労働省 (2017). ひきこもりの評価・支援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Retrieved October 16, 2017, from http://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hukushi_kaigo/seikatsu_hikikomori/index.html

.....

부록

부 록

1. 2017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조사항목

부록-1 2017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조사항목

조사내용 (*는 2017년 신규문항)		문항번호		비고
		만15-18세용	만19-39세용	
1. 인구와 가족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	문1	문1	2016년 신규문항
	원가정으로부터 독립 필요성 및 적정 독립 시기	문2	문2	2016년 신규문항
	결혼 필요성 및 적정 결혼 시기	문3	문3	2016년 신규문항
	자녀 필요성 및 적정 자녀 계획 시기	문4	문4	2016년 신규문항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정책	-	문5	2015년 신규문항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육아 대책	-	문6	2015년 신규문항
	결혼 준비 경험 여부	-	문7	2016년 신규문항
	결혼 준비 시 망설임 경험	-	문7-1	2016년 신규문항
	결혼을 망설임 이유*	-	문7-2	연구진 개발
	맞벌이 유무	-	문8	2016년 신규문항
	현재 자녀 존재 유무	-	문9	2013년 개발문항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	-	문10	2016년 신규문항
	2025년 출산율 전망	-	문11	2016년 신규문항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	문5	문12	2016년 신규문항
	해외이주를 고려한 이유	문5-1	문12-1	2016년 신규문항
2. 교육과 훈련	2025년 입시경쟁 전망	문6	문13	2015년 신규문항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	문7(1)~(3)	문14(1)~(3)	2013년 개발문항
	졸업 요건 이수 후 유예 경험	-	문15	2016년 신규문항
	졸업 유예 위해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	문16	2016년 신규문항
	대학 미진학 사유		문17	2013년 개발문항
	향후 대학 진학 의향	문8	문18	2013년 개발문항
	취업 준비 여부	문9	문19	2016년 신규문항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 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	문10	문20	2013년 개발문항 2015년 문항수정
	향후 직업 훈련 계획 여부	-	문21	2015년 신규문항

	조사내용 (*는 2017년 신규문항)	문항번호		비고
		만15-18세용	만19-39세용	
3. 경제와 고용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문11	문22	2013년 개발문항
	2019년 적정 최저 임금	문12	문23	2016년 신규문항
	2025년 우리나라 청년 취업경쟁 전망	문13	문24	2015년 신규문항
	미취업 청년 대상 급여(수당, 배당) 지급에 대한 생각	문14	문25	2016년 신규문항
	집 관련 비용과 자동차 구매 중 선택 항목	문15	문26	2016년 신규문항
	한달 본인 생활비(용돈) 정도*	문16	문27	연구진 개발
	한달 본인 생활비(용돈) 중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	문16-1	문27-1	연구진 개발
	값아야 할 채무 여부	-	문28	2013년 개발문항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	문17	문29	European Commission(2015). EU YOUTH REPORT 2015
	중소기업 취업 의향	문18	문30	2013년 개발문항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	문18-1	문30-1	2013년 개발문항
	창업 고려 또는 경험 여부	-	문31	2013년 개발문항 2017년 문항수정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더 중요한 정책 분야	-	문32	2015년 신규문항
	노동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	문32-1	2015년 신규문항
	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	문32-2	2015년 신규문항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	문33	2016년 신규문항
	지난 4주 내 구직 경험 여부	-	문34	2016년 신규문항 2017년 문항수정
	지난 주 정규교육기관(학교) 재학 여부	-	문35	2016년 신규문항
	지난 주 입시학원, 취업 관련 학원 재학 경험	-	문36	2016년 신규문항
	니트 관련 지난주에 주로 한 일*	-	문37	연구진 개발
	니트 관련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상태 기간*	-	문38	한국노동연구원(2016). 한국노동패널조사 (19차년도)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직업 분류	-	문39	2013년 개발문항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한 월 평균 소득	-	문40	2013년 개발문항
	직장에서 조건에 맞는 대우 정도	-	문41	2013년 개발문항
	이직 의향	-	문42	2013년 개발문항
	이직 희망 사유	-	문42-1	2013년 개발문항

조사내용 (*는 2017년 신규문항)		문항번호		비고
		만15-18세용	만19-39세용	
4. 주거	본인 명의의 집 마련 예상 시기	문19	문43	2013년 개발문항
	집에 대한 생각	문20(1)~(3)	문44(1)~(3)	2013년 개발문항
	공동주거 경험 여부	문21	문45	2015년 신규문항
	공동주거 거주 의향	문22	문46	2015년 신규문항
	부모 동거 여부	문23	문47	2013년 개발문항
	향후 부모 동거 계획	문24	-	2016년 신규문항
	미혼 혼자 거주 여부	-	문48	2015년 신규문항
	현재 주거 형태	-	문48-1	2015년 신규문항
5. 건강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	문25	문49	2016년 신규문항
	주관적인 정신적 건강수준*	문26(1)~(5)	문50(1)~(5)	WHO(1998). WHO (Five) Well-Being Index
	규칙적인 운동 여부	문27	문51	2016년 신규문항
	규칙적인 운동 빈도	문27-1	문51-1	2016년 신규문항
	인생에서 외모의 중요도	문28	문52	2016년 신규문항
	성형수술 경험	문29	문53	2016년 신규문항
	성형수술 목적	문29-1	문53-1	2016년 신규문항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이유	문29-2	문53-2	2016년 신규문항
6. 문화와 가치관	가치 항목별 선호도	문30(1)~(4)	문54(1)~(4)	2016년 신규문항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문31	문55	2013년 개발문항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춘 정도	문32	문56	2013년 개발문항
7. 관계와 참여	어려운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친구 수	문33	문57	2016년 신규문항
	기성세대 및 노인에 대한 생각	문34(1)~(7)	문58(1)~(7)	2016년 신규문항
	의견 표명 행동	문35(1)~(4)	문59(1)~(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역량 측정 조사
	정치적 효능감*	문36(1)~(3)	문60(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역량 측정 조사, 연구진 개발
8. 사회적응	평소 외출 정도*	-	문61	일본 내각부(2010). 청년의 의식에 관한 조사
	외출을 하지 않는 상태의 지속 기간 정도*	-	문61-1	일본 내각부(2010). 청년의 의식에 관한 조사
	외출을 하지 않게 된 계기*	-	문61-2	일본 내각부(2010). 청년의 의식에 관한 조사
	지난 주 혼자 밥을 먹은 경험 여부(점 심기준)*	-	문62	연구진 개발
	지난 주 혼자 술을 마신 경험 여부(저 녁 기준)*	-	문63	연구진 개발

2. 2017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조사표_중·고등학생용



승인(협의)번호
제402004호

중·고등학생용

2017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관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년들의 일과 삶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청년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2017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개인정보도 철저히 보호됩니다. 또한, 통계법 제34조(통계종사자의 의무)에 따라 응답 내용은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기관에 제공되는 일은 절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귀하께서 받으신 설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각각의 조사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활실태나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문항에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설문지는 만 15세~18세(1998년 7월 1일~2002년 6월 30일 출생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령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중·고등학생이 아닌 경우(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 검정고시 준비, 재수생, 대학(교)에 입학하신 분, 현재 취업 중이신 분 등)에는 청년층 설문지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사항은 조사원이 기입합니다.

면접원 ID		면접원 이름		S.V 검증	
조사구 일련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주소(구/동)	시/도 구/시/군 동/읍/면				
응답자 연락처	() - () - () 생년월일 년 월 일				
주택 유형	1. 단독 주택 2. 아파트 3. 연립/다세대주택 4. 기타(적을 것 :)				

구 분	남 성	여 성	합 계
총 가구원 수			
만 15세 이상 18세 이하 가구원 수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가구원 수			
가구당 조사표 부수	해당 가구원 수 총 ()부 중 ()부 진행		

미진행 가구원 사유	
------------	--

조사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조사문의
김기현: 044-415-2234
이윤주: 044-415-2146
유설희: 044-415-2152

조사 수행기관

Hankook Research



조사문의
김수진: 02-3014-0982
이동희: 02-3014-0995

동 의 서

1. 조사동의

-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 동의 ☐ 비동의

2. 개인정보보호 관련 안내 및 동의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한국리서치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주)한국리서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및 제 22조와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사응답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응답내용 활용 및 처리에 대해 설명 드리고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은 아래의 통계법 제 33조 및 제 34조에 의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기재해 주신 개인 정보(연락처)는 조사기간에 따라 최대 1년 간 내부적으로 보관된 후 전문기관에 의해 즉각 일괄 폐기됩니다. 또한 선생님의 개인 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일체 다른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설문참여 사실과 내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만 기재해 주신 연락처로 연락드릴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리서치는 설문조사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깁니다.

본인은 위의 조사 목적과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 동의 ☐ 비동의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귀하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귀하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만일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면접원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시하는 방법1

대부분은 주된 응답 한 가지만 고르는 문항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응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표로 구성된 질문은 ①에서 ⑤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다'면 ②에, '보통이다'면 ③에, '그렇다'면 ④에, '매우 그렇다'면 ⑤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표시하는 방법2

숫자를 기입해야 할 때는 박스 안에 한 자리씩 기입해 주세요.

<보기2>

문A.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명)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3>과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수정액 등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3>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기4>

문B. 귀하는 해외이주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 B-1로 이동 ② 없다 → 문 C로 이동

☞ 나는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적이 있어서 '①'에 표시한 후, 문 B-1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 설명문 반드시 참고

질문 아래 설명문(응답 기준, 용어 설명 등)이 있는 경우, 설명문을 읽고 응답해 주세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질문해 주세요.

<보기5>

문C.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작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① 예 → 문 C-1로 이동 ② 없다 → 문 D로 이동

I. 먼저 「인구와 가족」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 귀하는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 동 : 만

 세 ~ 만

 세
- 초 소년 : 만

 세 ~ 만

 세
- 청 년 : 만

 세 ~ 만

 세

문2) 귀하는 몇 세부터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 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② 독립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③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3) 귀하는 몇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② 결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③ 결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4) 귀하는 몇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② 자녀를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③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5) 귀하는 해외이주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교육」영역(문6)으로 이동

문5-1) 해외이주를 고려하셨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자기계발을 위해서 ②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③ 행복한 삶을 위해서 ④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서
⑤ 취업이 어려워져서 ⑥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어서
⑦ 빈부격차가 커져서 ⑧ 집값이 너무 비싸서
⑨ 안보가 불안해서 ⑩ 기타(적을 것 : _____)

II. 다음은 「교육」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6) 귀하는 우리나라 입시경쟁이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경쟁이 약화될 것이다
- ② 경쟁이 유지될 것이다
- ③ 경쟁이 심해 질 것이다

문7) 귀하는 다음 우리 사회의 교육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한국 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8) 귀하는 추후 대학에 진학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9) 귀하는 지난주에 주로 취업준비를 하셨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10) 귀하는 현재까지 공무원 또는 공단(공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III. 다음은 「경제」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1) 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은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분위기 좋은 회사 | ② 급여가 높은 회사 |
| ③ 유명한 회사 | ④ 안정적인 회사 |
| ⑤ 퇴근이 빠른 회사 | ⑥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 |
| ⑦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 | ⑧ 기타(적을 것 : _____) |

문12) 귀하는 2019년도 최저 임금으로 얼마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 2016년 6,030원, 2017년은 6,470원, 2018년은 7,530원입니다.

시간급 원

문13) 귀하는 우리나라 청년 취업경쟁이 현재와 비교하여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경쟁이 약화될 것이다 ② 경쟁이 유지될 것이다 ③ 경쟁이 심해 질 것이다

문14) 취업을 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이나 배당,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문15) 만약 집과 관련된 비용(집 임대/매매 등)을 쓰는 것과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 중에서 같은 금액으로 한 가지를 지불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① 집 ② 자동차 ③ 잘 모르겠다

문16) 한 달 용돈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가족을 제외한 본인 생활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용돈 포함 내용: 식비, 교통비, 통신비, 문화생활비(오락, 문화생활, 도서구입 등), 학원수강비, 시험응시료, 취업을 위한 도서 등 자료 구입비, 주거비 등

약 만원

문16-1) 용돈 중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약 %

문17) 귀하는 지난 1년간(2016년 7월~2017년 6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현재 부모님 및 친척 등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주거비용 및 냉/난방비 지출에 대해 본인은 모를 경우만 1), 2)에 '⑨ 잘 모름'에 체크)

구 분	예	아니오	잘 모름
(1)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①	②	⑨
(2)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①	②	⑨
(3)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①	②	
(4)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①	②	
(5)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①	②	
(6)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7)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8)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9)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문18) 귀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 '주거'영역(문19)으로 이동

② 아니오

문18-1)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대기업보다 낮은 성취감 | ② 관련된 여러 업무 경험이 부재 |
| ③ 고용 불안정 | ④ 사회적으로 낮은 인지도 |
| ⑤ 낮은 급여 수준 | ⑥ 대기업으로의 이직이 불가능 |
| ⑦ 개인의 발전가능성이 없음 | ⑧ 대기업보다 낮은 복지 수준 |
| ⑨ 기타(적을 것 : _____) | |

IV. 다음은 「주거」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9) 귀하는 본인 명의의 집을 언제쯤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 | | |
|--------------------|-------------------|
| ① 이미 소유하고 있다 | ② 향후 1년 이내 |
| ③ 향후 1년 이상 3년 미만 | ④ 향후 3년 이상 5년 미만 |
| ⑤ 향후 5년 이상 7년 미만 | ⑥ 향후 7년 이상 10년 미만 |
| ⑦ 향후 10년 이상 20년 미만 | ⑧ 향후 20년 이후 |
| ⑨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 | |

문20) 다음은 평소 집에 대해 귀하가 갖고 계신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은 꼭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21) 귀하는 공동주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동주거란 다수가 한 집에 살면서 방은 따로 쓰고 거실과 욕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 형태를 의미함
(고시원 및 하숙 거주 경험은 포함하지 않음)

- | | |
|-----|-------|
| ① 예 | ② 아니오 |
|-----|-------|

문22) 귀하는 공동주거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 | | |
|-----|-------|
| ① 예 | ② 아니오 |
|-----|-------|

문23) 귀하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 ① [동거] 현재 같이 살고 있다
- ② [비동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학업, 직장 등의 이유로 떨어져 지내는 경우)
- ③ [독립]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독립한 상태이다(결혼, 장성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
- ➔ ②, ③ 응답자는 「건강」 영역 문25로 이동

문24) (문23에서 '① [동거] 현재 같이 살고 있다' 인 경우에만 응답해 주십시오) 귀하는 부모님과 언제까지 함께 살 생각입니까?

- | | |
|-----------------------------|-----------------|
| ① 대학교 진학 전(고등학교 졸업 이전)까지 동거 | ② 취업 전까지 동거 |
| ③ 결혼 전까지 동거 | ④ 결혼 후에도 동거 |
| ⑤ 출산 후에도 동거 | ⑥ 내 집 마련 전까지 동거 |
| ⑦ 기타(적을 것 : _____) | |

V. 다음은 「건강」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25) 귀하는 현재 본인의 체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마른 편이다
- ② 약간 마른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비만이다
- ⑤ 매우 비만이다

문26) 귀하는 지난 2주 간 일상생활을 보내면서 다음 각 문항들에 대해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27)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 ① 예 ② 아니오 → 문28로 이동

문27-1)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 ① 일주일에 1번 ② 일주일에 2번
③ 일주일에 3번 ④ 일주일에 4번
⑤ 일주일에 5번 ⑥ 일주일에 6번
⑦ 매일

문28) 귀하는 우리 인생에서 외모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어느 정도 중요하다
- ⑤ 매우 중요하다

문29) 귀하는 성형 수술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목적과 미용(보톡스 등) 목적을 모두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 「가치관」 영역(문30)으로 이동

문29-1) 귀하가 하신 성형수술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 「가치관」 영역(문30)으로 이동

② 미용(쌍꺼풀, 보톡스, 지방제거 등) ➡ 문29-2로 이동

문29-2)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②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③ 취직에 도움이 되므로

④ 결혼이나 연애에 도움이 되므로

⑤ 기타(적을 것 : _____)

VI. 다음은 「가치관」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30) 다음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양 쪽의 표현을 보고, 귀하가 더 선호하는 정도를 숫자 중 하나로 평가해 주십시오.

항 목	← 선호 정도 →							항 목
(1) 일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여가 중시
(2) 현실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상 중시
(3) 결과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과정 중시
(4) 개인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집단 중시

문31)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재산·경제력 | ② 화목한 가정 |
| ③ 자아성취 | ④ 건강 |
| ⑤ 감사·긍정적 태도 | ⑥ 종교생활 |
| ⑦ 직업·직장 | ⑧ 연인(이성관계 등) |
| ⑨ 친구·대인관계 | ⑩ 꿈·목표의식 |
| ⑪ 기타(적을 것 : _____) | |

문32)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Ⅶ. 다음은 「관계와 참여」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33)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본인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령, 성별 등에 상관없이 가족 및 친지, 지인, 선생님 등 모든 대상이 포함됩니다)

① 없다

② 있다 (명)

문34) 다음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세대는 40대, 50대 / 노인은 70세 이상을 의미합니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성 세대 (40,50대)	(1)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노인 (70세 이상)	(4)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	①	②	③	④	⑤
	(5)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7)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①	②	③	④	⑤

문35) 시민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의견 항목에 대해 귀하가 앞으로 참여할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문 항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①	②	③	④	⑤
(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배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	①	②	③	④	⑤
(3) (온·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5) 항의 전화하기	①	②	③	④	⑤

문36)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VIII. 다음은 귀하의 기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배경문항 1) [성별]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배경문항 2) [가족배경] 부모님의 경제적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최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최상
------	---	---	---	---	---	---	---	---	---	---	------

배경문항 3) [교육] 귀하와 귀하의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 이 아닙니다)

구분	중학교 재학				고등학교 재학			
(1) 본인	①				②			

구분	학교 안 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2)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2017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조사표_청년용



승인(합의)번호
제402004호

청년용

2017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년들의 일과 삶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청년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2017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개인정보도 철저히 보호됩니다. 또한, 통계법 제34조(통계종사자의 의무)에 따라 응답 내용은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기관에 제공되는 일은 절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귀하께서 받으신 설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각각의 조사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활실태나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문항에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설문지는 만 19세~39세(1977년 7월 1일~1998년 6월 30일)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 15~18세인 가운데 중·고등학생이 아닌 경우(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 검정고시 준비, 재수생, 대학(교)에 입학하신 분, 현재 취업 중이신 분 등)에는 본 설문지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사항은 조사원이 기입합니다.

면접원 ID	면접원 이름	S.V 검증
조사구 일련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주소(구/동)	시/도 구/시/군 동/읍/면	
응답자 연락처	() - () - ()	생년월일 년 월 일
주택 유형	1. 단독 주택 2. 아파트 3. 연립/다세대주택 4. 기타(적을 것 :)	

구 분	남 성	여 성	합 계
총 가구원 수			
만 15세 이상 18세 이하 가구원 수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가구원 수			
가구당 조사표 부수	해당 가구원 수 총 ()부 중 ()부 진행		

※ 조사원: 동일 가구인 경우라도 모든 설문지 표지에 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미진행 가구원 사유	
------------	--

조사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조사문의
 김기현: 044-415-2234
 이윤주: 044-415-2146
 유설희: 044-415-2152

조사 수행기관


Hankook Research

조사문의
 김수진: 02-3014-0982
 이동휘: 02-3014-0995

동 의 서

1. 조사동의

-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 동의 ☐ 비동의

2. 개인정보보호 관련 안내 및 동의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한국리서치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주)한국리서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및 제 22조와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사응답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응답내용 활용 및 처리에 대해 설명 드리고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은 아래의 통계법 제 33조 및 제 34조에 의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기재해 주신 개인 정보(연락처)는 조사기간에 따라 최대 1년 간 내부적으로 보관된 후 전문기관에 의해 즉각 일괄 폐기됩니다. 또한 선생님의 개인 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일체 다른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설문참여 사실과 내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만 기재해 주신 연락처로 연락드릴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리서치는 설문조사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깁니다.

본인은 위의 조사 목적과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 동의 ☐ 비동의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귀하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귀하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만일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면접원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시하는 방법1

대부분은 주된 응답 한 가지만 고르는 문항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응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표로 구성된 질문은 ①에서 ⑤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다'면 ②에, '보통이다'면 ③에, '그렇다'면 ④에, '매우 그렇다'면 ⑤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표시하는 방법2

숫자를 기입해야 할 때는 박스 안에 한 자리씩 기입해 주세요.

<보기2>

문A.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명)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3>과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워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수정액 등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3>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기4>

문B. 귀하는 해외이주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 B-1로 이동** ② 없다 → **문 C로 이동**

☞ 나는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적이 있어서 '①'에 표시한 후, **문 B-1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 설명문 반드시 참고

질문 아래 설명문(응답 기준, 용어 설명 등)이 있는 경우, 설명문을 읽고 응답해 주세요.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보기5>

문C.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작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① 예 → **문 C-1로 이동** ② 없다 → **문 D로 이동**

Ⅰ. 먼저 「인구와 가족」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 귀하는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 동 : 만 세 ~ 만 세
- 청소년 : 만 세 ~ 만 세
- 청 년 : 만 세 ~ 만 세

문2) 귀하는 몇 세부터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 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② 독립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③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3) 귀하는 몇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② 결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③ 결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4) 귀하는 몇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② 자녀를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③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5) 귀하는 다음의 출산 대책 중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출산장려금 확대
- ② 출산 휴가 장려 및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 ③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 ④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
- ⑤ 가구의 소득 증대
- ⑥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 ⑦ 여성의 경력단절 부담 완화
- ⑧ 기타(적을 것 : _____)

문6) 귀하는 다음의 육아 대책 중 정부가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무상보육교육비 확대
- ② 육아 휴직 장려 및 급여 확대
- ③ 방과후 서비스 확대
- ④ 아동수당 신설
- ⑤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
- ⑥ 가구의 소득 증대
- ⑦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 ⑧ 여성의 경력단절 부담 완화
- ⑨ 기타(적을 것 : _____)

문7) 귀하는 결혼을 준비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문 8로 이동

문7-1)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혼을 망설인 적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문 8로 이동

문7-2) 결혼을 망설인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결혼비용 때문에(주택마련, 혼수비용)
- ② 출산 혹은 양육에 대한 고민 때문에
- ③ 불안정한 직장 때문에
- ④ 자유로운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
- ⑤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 ⑥ 기타()

문8) 귀하의 가정은 맞벌이를 하고 계십니까?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있는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맞벌이)

② 아니오(외벌이)

문9)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있다면 자녀가 몇 명입니까? 명) ② 아니오

문10) 귀하는 자녀를 가지실 의향이 있습니까?

 이미 자녀가 있으신 경우, 향후에 추가로 자녀를 가지실 의향 여부를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

② 아니오

문11) 귀하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현재와 비교하여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다
- ② 출산율이 유지될 것이다
- ③ 출산율이 내려갈 것이다

문12) 귀하는 해외이주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교육 및 훈련」영역(문13)으로 이동

문12-1) 해외이주를 고려하셨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자기계발을 위해서 | ②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
| ③ 행복한 삶을 위해서 | ④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서 |
| ⑤ 취업이 어려워서 | ⑥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어서 |
| ⑦ 빈부격차가 커서 | ⑧ 집값이 너무 비싸서 |
| ⑨ 안보가 불안해서 | ⑩ 기타(적을 것 : _____) |

II. 다음은 「교육 및 훈련」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3) 귀하는 우리나라 입시경쟁이 현재와 비교하여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경쟁이 약화될 것이다
- ② 경쟁이 유지될 것이다
- ③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문14) 귀하는 다음 우리 사회의 교육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한국 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문15, 문16)은 대학을 다닌 경험이 있거나 다니시는 분들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15) 대학 시절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고도 졸업을 늦춘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③ 학교에 졸업 유예 제도가 없었음

문16) 대학 시절 졸업을 늦추기 위해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지 않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응답 후 문19로 이동**

※ 다음(문17, 문18)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분(고졸 이하 및 재수생 등 비진학자)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17) 귀하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고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해서
- ②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 ③ 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 ④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 ⑤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 ⑥ 고등학교 시절, 졸업 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 ⑦ 기타(적을 것 : _____)

문18) 귀하는 추후 대학에 진학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19) 귀하는 지난주에 주로 취업준비를 하셨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20) 귀하는 현재까지 공무원 또는 공단(공사), 교원 임용 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이 있습니까?

 시험 준비는 학교 재학 시절을 포함하여 현재까지의 시험 준비를 의미하며, 공단(공사) 내부의 진급 시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① 있다
- ② 없다

문21) 귀하는 향후 직업 훈련을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③ 이미 받고 있다

III. 다음은 「경제」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22) 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은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분위기 좋은 회사 | ② 급여가 높은 회사 |
| ③ 유명한 회사 | ④ 안정적인 회사 |
| ⑤ 퇴근이 빠른 회사 | ⑥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 |
| ⑦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 | ⑧ 기타(적을 것 : _____) |

문23) 귀하는 2019년도 최저 임금으로 얼마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 2016년 6,030원, 2017년은 6,470원, 2018년은 7,530원입니다.

시간급

 원

문24) 귀하는 우리나라 청년 취업경쟁이 현재와 비교하여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경쟁이 약화될 것이다 ② 경쟁이 유지될 것이다 ③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문25) 취업을 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이나 배당,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문26) 만약 집과 관련된 비용(집 임대/매매 등)을 쓰는 것과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 중에서 같은 금액으로 한 가지를 지불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① 집 ② 자동차 ③ 잘 모르겠다

문27) 한 달 생활비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가족을 제외한 본인 생활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생활비 포함 내용: 식비, 교통비, 통신비, 문화생활비(오락, 문화생활, 도서구입 등), 학원수강비, 시험응시료, 취업을 위한 도서 등 자료 구입비, 주거비 등

약

 만원

문27-1) 생활비 중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약

 %

문28) 귀하는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부업체, 또는 개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학자금 대출 포함)가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문29) 귀하는 지난 1년간(2016년 7월~2017년 6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현재 부모님 및 친척 등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주거비용 및 냉/난방비 지출에 대해 본인은 모를 경우만 1), 2)에 '⑨모름'에 체크)

구 분	예	아니오	잘 모름
(1)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①	②	⑨
(2)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①	②	⑨
(3)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①	②	
(4)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①	②	
(5)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①	②	
(6)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7)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8)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9)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문30) 귀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 31로 이동 ② 아니오

문30-1)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대기업보다 낮은 성취감 ② 관련된 여러 업무 경험의 부재
③ 고용 불안정 ④ 사회적으로 낮은 인지도
⑤ 낮은 급여 수준 ⑥ 대기업으로의 이직이 불가능
⑦ 개인의 발전가능성이 없음 ⑧ 대기업보다 낮은 복지 수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문31) 창업을 해 보거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창업을 생각해보았고 실제로 창업을 했다
- ② 창업을 생각해보았으나 실제로 창업을 해 본 적은 없다
- ③ 창업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문32) 귀하는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노동공급 측면의 정책(개인, 교육)과 노동수요 측면의 정책(일자리, 경제)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노동 공급(개인, 교육) ② 노동 수요(일자리, 경제)

 문32의 응답 결과와 상관없이 문32-1과 문32-2를 모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32-1) 노동공급(개인, 교육)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진로교육 내실화와 진로지도 활성화
- ② 독일이나 스위스식의 일과 학습 병행제도 활성화
- ③ 고학력화로 인한 대졸자 과다 배출 억제
- ④ 청년들의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학교의 취업지원 강화
- ⑤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높은 선호도(청년 눈높이) 제고
- ⑥ 청년들의 능력 향상과 핵심역량 수준 제고
- ⑦ 미취업 청소년 및 청년 대상 수당, 배당, 급여 지급
- ⑧ 기타(적을 것 : _____)

문32-2) 노동수요(일자리, 경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대기업 청년 일자리 확대
- ② 공공부문 채용 확대
- ③ 청년 창업/창직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 ④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팬층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 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확대
- ⑥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 ⑦ 해외취업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 ⑧ 기타(적을 것 : _____)

문33) 귀하는 지난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셨습니다?

* 돈을 받지 않고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 한 경우도 '일을 하였음'입니다.

- ① 일을 하였음 ➡ 문 39로 이동
- ② 휴가 및 일시 휴직 ➡ 문 39로 이동
- ③ 일을 하지 않았음

문34) 귀하는 지난 4주 내에 직장을 구해 보았습니까?

- ① 직장을 구해보았고,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 ② 직장을 구해보았지만,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
- ③ 직장을 구해보지 않았다

문35) 귀하는 지난 주에 정규교육기관(학교)을 다니셨습니까?

 방학 중인 경우에는 재학 중이므로 '① 예' 로 응답,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고 휴학이나 중퇴인 경우에는 '② 아니오' 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예 ➡ 문 43으로 이동
- ② 아니오

문36) 귀하는 지난 주에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관에 통학을 하셨습니까?

 취업준비를 했지만 고시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등에 다니지 않은 경우에는 '② 아니오' 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 → 문 43으로 이동

② 아니오

문37) 귀하는 지난 주에 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 ① 여행이나 문화예술 및 취미 활동을 했다
- ② 육아나 돌봄, 가사 활동으로 시간을 보냈다
- ③ 질병이나 지병 때문에 휴식을 취하였다
- ④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 ⑤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 그냥 쉬었다
- ⑥ 직장을 구하거나 학교, 훈련기관을 찾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져 그냥 쉬었다
- ⑦ 기타(적을 것 : _____)

문38) 귀하가 학교나 직업훈련기관에 통학하지도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하는 항목 한 가지만 선택 후, 응답해 주십시오)

선택(V)	비교육 및 미취업 기간
1) 1개월 미만 ()	()일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5일)
2) 1개월 이상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3개월)
3) 1년 이상 ()	()년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년 6개월)

→ 응답 후 「주거」영역 문43으로 이동

※ 다음(문39~문42-1)은 취업자 및 지난 1주간 1시간 이상 일한 경우 또는 휴가, 일시 휴직 상태인 경우(문33 '① 일을 하였음', '② 휴가 및 일시 휴직'인 경우) 응답해 주십시오.

문39) (취업자만 응답하십시오) 귀하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은 다음 중 어느 직업에 해당합니까?

 세부 직업에 대한 분류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관리자
-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③ 사무 종사자
- ④ 서비스 종사자
- ⑤ 판매 종사자
-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⑨ 단순노무 종사자
- ⑩ 직업군인
- ⑪ 기타(자세히 적을 것 : _____)

문40)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얻는 세후 기준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약 만원

문41) 직장에서 본인의 조건에 맞는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
- ② 받고 있지 못하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받고 있는 편이다
- ⑤ 충분히 받고 있다

문42) 현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주거」 영역(문43)으로 이동

문42-1) 이직을 희망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
- ② 개인발전/승진
- ③ 더 나은 근무환경(직장상사, 동료, 식대, 출퇴근 시간/거리 등)
- ④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 ⑤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
- ⑥ 기술 또는 기능 수준이 맞지 않아서
- ⑦ 개인 사업을 위해서
- ⑧ 건강상의 이유로
- ⑨ 집안사정 때문에(육아, 가사부담 등 포함)
- ⑩ 기타(적을 것 : _____)

IV. 다음은 「주거」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43) 귀하는 본인 명의의 집을 언제쯤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 ① 이미 소유하고 있다 ② 향후 1년 이내
- ③ 향후 1년 이상 3년 미만 ④ 향후 3년 이상 5년 미만
- ⑤ 향후 5년 이상 7년 미만 ⑥ 향후 7년 이상 10년 미만
- ⑦ 향후 10년 이상 20년 미만 ⑧ 향후 20년 이후
- ⑨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

문44) 다음은 평소 집에 대해 귀하께서 갖고 계신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은 꼭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45) 귀하는 공동주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공동주거란 다수가 한 집에 살면서 방은 따로 쓰고 거실과 욕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 형태를 의미함
(고시원 및 하숙 거주 유형은 포함하지 않음)

- ① 예 ② 아니오

문46) 귀하는 공동주거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47) 귀하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 ① [동거] 현재 같이 살고 있다 - 「건강」 영역(문49)으로 이동
- ② [비동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학업, 군복무, 직장 등의 이유로 떨어져 지내는 경우)
- ③ [독립]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독립한 상태이다(결혼, 장성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

문48) 귀하는 현재 미혼으로 혼자 거주하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건강」 영역(문49)으로 이동

문48-1) 귀하의 현재 주거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다세대/빌라 : 공동주택의 일종, 개별 방마다 소유주가 다른 경우
- ② 원룸(다가구) : 단독주택의 일종, 전체 집이 1인 개인 명의로 된 집으로 방 하나가 침실, 거실, 부엌을 겸하도록 설계된 집
- ③ 오피스텔 : 세탁기, TV, 냉장고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관리인이 있는 경우
- ④ 하숙
- ⑤ 기숙사
- ⑥ 고시원
- ⑦ 아파트
- ⑧ 기타 : 일반주택의 방 하나만 임대, 지역운영회사 등

V. 다음은 「건강」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49) 귀하는 현재 본인의 체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마른 편이다
- ② 약간 마른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비만이다
- ⑤ 매우 비만이다

문50) 귀하는 지난 2주 간 일상생활을 보내면서 다음 각 문항들에 대해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51)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 ① 예
- ② 아니오 → 문52로 이동

문51-1)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 ① 일주일에 1번
- ② 일주일에 2번
- ③ 일주일에 3번
- ④ 일주일에 4번
- ⑤ 일주일에 5번
- ⑥ 일주일에 6번
- ⑦ 매일

문52) 귀하는 우리 인생에서 외모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어느 정도 중요하다
- ⑤ 매우 중요하다

문53) 귀하는 성형 수술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목적과 미용(보톡스 등) 목적을 모두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 「가치관」 영역(문54)으로 이동

문53-1) 귀하가 하신 성형수술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 「가치관」 영역(문54)으로 이동
 ② 미용(쌍꺼풀, 보톡스, 지방제거 등) → 문53-2로 이동

문53-2)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②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③ 취직에 도움이 되므로 ④ 결혼이나 연애에 도움이 되므로
 ⑤ 기타(적을 것 : _____)

VI. 다음은 「가치관」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54) 다음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양 쪽의 표현을 보고, 귀하가 더 선호하는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 목	← 선호 정도 →							항 목
(1) 일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여가 중시
(2) 현실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상 중시
(3) 결과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과정 중시
(4) 개인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집단 중시

문55)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재산·경제력 | ② 화목한 가정 |
| ③ 자아성취 | ④ 건강 |
| ⑤ 감사·긍정적 태도 | ⑥ 종교생활 |
| ⑦ 직업·직장 | ⑧ 연인(이성관계 등) |
| ⑨ 친구·대인관계 | ⑩ 꿈·목표의식 |
| ⑪ 기타(적을 것 : _____) | |

문56)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VII. 다음은 「관계와 참여」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57)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본인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령, 성별 등에 상관없이 가족 및 친지, 지인, 선생님 등 모든 대상이 포함됩니다)

① 없다

② 있다 (명)

문58) 다음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세대는 40대, 50대 / 노인은 70세 이상을 의미합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성 세대 (40,50대)	(1)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노인 (70세 이상)	(4)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	①	②	③	④	⑤
	(5)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7)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①	②	③	④	⑤

문59) 시민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항목에 대해 귀하가 앞으로 참여할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문 항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①	②	③	④	⑤
(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배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	①	②	③	④	⑤
(3) (온·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5) 항의 전화하기	①	②	③	④	⑤

문60)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VIII. 다음은 「사회적 관계」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61) 귀하는 평소 얼마나 외출하십니까?

- ①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 ➡ 문62로 이동
- ②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 ➡ 문62로 이동
- ③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 문62로 이동
- ④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 문62로 이동
- 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 ⑥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 ⑦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 ⑧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문61-1) 현재의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③ 1년 이상 ~ 3년 미만 ④ 3년 이상 ~ 5년 미만
- ⑤ 5년 이상 ~ 7년 미만 ⑥ 7년 이상

문61-2) 현재의 상태가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① 학업중단이나 대학진학 실패로 ②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
- ③ 인간관계가 잘되지 않아서 ④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 ⑤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⑥ 기타()

문62) 귀하는 지난주에 점심기준으로 혼자 밥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일주일에 _____ 회) (최소 1회 ~ 최대 7회)

문63) 귀하는 지난주에 저녁기준으로 혼자 술을 마신 경우가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일주일에 _____ 회) (최소 1회 ~ 최대 7회)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경문항 1) [성별]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배경문항 2) [혼인] 귀하는 결혼하십니까?

- ① 배우자 있음
② 사별·이혼
③ 결혼하지 않음

배경문항 3) [가족배경] 귀하의 부모님 소득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최하 → 최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배경문항 4) [교육] 귀하와 귀하의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 이 아닙니다)

구분	학교 안 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본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응답자(본인 기준)는 아래의 문항에도 응답해 주십시오.

학교소재지 (17개 시도 기준)	학교명	전공계열 (* 아래 표 참조)	입학년월	졸업여부	졸업년월 (졸업한 경우 응답)
			____년 ____월	① 졸업 ② 졸업안함(재학, 중퇴, 휴학 등)	____년 ____월

*** 전 공 계 열**

- ① 인문계열 ② 사회계열(경상계열 제외) ③ 경상계열 ④ 자연계열 ⑤ 공학계열
⑥ 의/약학계열 ⑦ 교육계열 ⑧ 예체능계열 ⑨ 사관학교, 경찰대 ⑩ 기타

배경문항 5) [취업] 현재 취업 중이신 분들만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 취업자: 지난 한 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거나, 가족사업체 및 농장에서 무급으로 18시간 이상 근무, 휴가, 휴직 등의 사유로 직장은 있었지만 일을 하지 않은 경우가 취업자에 포함됩니다.

구분	내용	
(1) 종사상 지위	① 임금 근로자	② 비임금 근로자
(2) 고용형태	① 정규직(상용근로자) ②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용역 등)	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③ 무급가족종사자
(3) 근로시간 유형	① 전일제 ② 시간제	
(4) 직장유형	①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② 외국인회사 ③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기업 ④ (재단, 사단)법인단체 ⑤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⑥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⑦ 기타 ()	
(5) 종사자 수 (사업체 기준)	① 1-4인 ② 5-9인 ③ 10-29인 ④ 30-99인 ⑤ 100-299인 ⑥ 300-499인 ⑦ 500인 이상	
(6) 근속년수 (현 직장을 기준으로 응답)	년 개월	

 **사업체**란 기업체보다 작은 단위의 개념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부여하여 조사대상자가 직접 일하고 있는 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우리은행 삼성동 지점에 근무하는 경우, 기업체인 우리은행 전 사원 수15,000명 기준이 아닌 삼성동 지점의 인원 수 20명을 기준으로 응답해야 함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칭, 직업분류표

구분	직업분류 예시	구분	직업분류 예시	구분	직업분류 예시	구분	직업분류 예시	구분	직업분류 예시	구분	직업분류 예시
1 권역지		2225	네트워킹시스템 개발자	2452	방사선사	2714	관세사	2961	경기감독 및 코치	4129	기타검표 및 보안 관련 종사원
공공 및 기업 관리(11)		2226	원거리 보안 전문가	2453	치과기공사	2715	경쟁 및 진단 전문가	2962	직업 운동선수	4130	이비인후과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42)
1110 의뢰사항-고객응답 및 공공대내망원		2227	웹 및 멀티미디어 기획자	2454	치과위생사	2727	투자 및 신용 분석가	2963	경기심판 및 경기기록원	4211	간행인
1120 기업관리원		2228	웹 개발자	2455	외식조사기사	2723	보험 및 금융 상품 개발자	2964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강사	4219	기타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 종사원
보험 및 경영지원 관리직(12)		2229	영상 시스템 운영자	2456	의사 및 직업 치료사	2726	금융 및 투자 전문가	2965	가이드와즈 및 레크레이션 관련 전문가	4221	이벤트 기획자
1201 경영지원 관리직		2240	통신 및 방송방송 장비 기사	2459	일상 서비스 및 기타 치료사	2725	신용사(은행)	2969	언어인 및 스포츠 레크레이션	4222	마사지사
1202 경영지원 관리직			공직 전문가 및 기술직(23)	2461	응급구조사	2729	기타감독 및 보험 관련 전문가	2989	미술사 및 기타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4223	피부미용 및 헤어관리사
1209 기타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2311	건축 및 건축공학 기술자	2462	위생사	2731	상품기획 전문가	3	사무 종사자	4224	메이크업아티스트 및 문신사
전문서비스 관리직(13)		2312	토목공학 기술자	2463	약사	2732	여행상품 개발자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31)	4225	예향교육 미술사
1311 연구 관리사		2313	조경 관리사	2464	의무기록사	2733	광고 및 홍보 전문가	3111	조세행정 사무원	4226	기타 미술 관련 서비스 종사원
1312 교육 관리사		2314	노사 및 고용관계 전문가	2465	간호조무사	2734	조사 전문가	3112	관계행정 사무원	4231	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래너
1313 보험-금융-소매 및 고객 관리사		2315	보험 및 재무정보 전문가	2466	언어사	2735	평가전문가	3113	영향행정 사무원	4232	문화 종사원
1320 보험 및 금융 관리사		2316	산업기계 시스템	2471	시뮬레이션사	2741	진료평가 전문가	3114	국가기관 및 공공행정 사무원	4233	숙박서비스 종사원
1331 보건복지 관리 관리사		2321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472	보육 교사	2742	해외 여행원	3121	기초 및 마법사 사무원	4239	기타서비스-예술 및 의료보조 서비스 종사원
1332 사회복지 관리 관리사		2322	화학공학 기술원	2473	직업상담사 및 취업 알선원	2743	기술 영업원	3122	인사 및 교육·훈련 사무원		운동 및 여가 서비스직(43)
1340 문화-예술 디자인 및 영상 관련 관리사		2331	금속-재료공학 연구원 및 기술자	2474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 지도사	2744	상품중개인 및 경매사	3123	지재관리 사무원	4311	항공기 객실승무원
1350 정보통신 관리 관리사		2332	금속-재료공학 기술원	2475	시민 단체 활동가	2745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3124	생산 및 품질 관리 사무원	4312	선박 및 열차 객실승무원
1390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사		2341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479	가정사(배우자) 관련 종사원	2749	기타 기술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	3125	무역 사무원	4313	이벤트 및 관광통역 안내원
건설 관리 및 생산 관련 관리(14)		2342	화학공학 기술원	2481	생물지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28)	3126	운송 사무원	4322	숙박서비스 종사원
1411 건설 및 운영 관리 관리사		2343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489	기타 종교 관련 종사자	2611	작가 및 언론 전문가	3127	문화 사무원	4323	언어서비스 종사원
1412 전기-가스 및 수도 관련 관리사		2342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교육전문가 및 관련직(25)	2612	번역가	3128	회계 사무원	4329	기타 여가 및 스포츠 관련 종사원
1413 제철 생산 관리 관리사		2353	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511	대형 교수	2613	통역가	3132	광고 사무원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44)
1490 기타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사		2354	전기-전자 및 기계공학 기술원	2512	대학 시간강사	2614	가사 및 보살핌원	3141	비서	4411	빈칸 주방장 및 조리사
배달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15)		2361	산업안전 위험 관리원	2521	중·고등학교 교사	2621	출판물 전문가	3142	전시 산업 기획원 및 사무 보조원	4412	종교 주방장 및 조리사
1511 영업 및 판매 관리 관리사		2362	보건행정 및 환경 안전원	2522	초등학교 교사	2621	판매원 및 판매보조원		금융 및 보험 사무직(32)	4413	영양 주방장 및 조리사
1512 은행 관리 관리사		2363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523	초등학교 교사	2622	사무 및 행정 관리사	3201	금융서비스 종사원	4414	음식 주방장 및 조리사
1521 숙박-여행-도매 및 스포츠 관련 관리사		2371	항공기 조종사	2530	유아학 교사	2623	보험 및 금융 전문가	3202	보험 상품 기획 및 판매원	4419	기타 주방장 및 조리사
1522 음식서비스 관리 관리사		2372	산장-제분 및 도지사	2541	물리 및 의학 강사	2632	배우 및 모델	3203	금융 관련 사무원	4421	바텐더
1530 호텔-관광 및 기타 서비스 관리사		2373	제분사	2542	컴퓨터 강사	2633	아르스트 및 리포터	3204	신문 수취원	4422	화객사
1590 기타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사		2381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543	기술 및 기능계 강사	2634	촬영기사		법률 및 감사 사무직(33)	4429	기타 음식서비스 종사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382	생물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544	예능 강사	2635	음악 및 녹음 기사	3301	법률 관련 사무원	5	판매 종사자
화학 전문가 및 관련직(21)		2383	가스-에너지 기술자 및 연구원	2545	학급지 및 방문 교사	2636	영상-녹화 및 편집 기사	3302	감사 사무원		행정직(21)
2111 생명과학 연구원		238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546	기타 생명과학 기술자 및 연구원	2637	장비기사 및 장비기사		상업-예술-문화 및 기타 사무직(38)	5101	지식 산업원
2112 지리과학 연구원		2385	화학-생물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561	장비관리-연구 및 교육 관련 전문가	2639	기타연구-문화 및 영상 관련 종사자	3310	통계 관련 사무원	5102	제품 및 광고 영업원
2121 인문학 연구원		2386	화학-생물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562	대학 고교교수	2641	화가 및 조각가	3321	여행 사무원	5103	보험설계사 및 간접투자증권 판매원
2122 사회과학 연구원		2389	기타화학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2569	보조 교사 및 기타 교사	2642	사진가 및 사진사	3322	언어-각종 및 전화 교환원	5211	호텔 판매원
2131 생명과학 시험원			보건·식품공학 및 종교 관련직(24)		법률 및 행정 전문직(26)	2643	안경사 및 안경학자	3399	고객 상담 및 모바일 소원	5212	제품 및 복권 판매원
2321 농업연구 관리 시험원		2411	전문 서비스	2611	인사 및 인사	2644	국악 및 전통예술인	3699	기타 사무원	5213	배달원 및 요양보호사
2331 지리과학 시험원		2412	일반 서비스	2612	변호사	2645	지형사-측량사 및 연구자		4 서비스 종사자	5219	병원 판매원
컴퓨터 전문가 및 기술직(22)		2413	서비스	2613	변호사 및 집행관	2646	가사 및 생애가	4	서비스 종사자	5301	일용 판매원
221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및 연구원		2414	외국 서비스	2614	변호사	2647	무용가 및 안무가	4111	통역사	5302	종사서비스-호텔
2212 통신망 기술자 및 연구원		2415	서비스	2620	장비 및 공보 행정 전문가	2651	체력 디자이너	4112	소문원	5303	일용 판매원
2221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사		2420	역사 및 언어사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27)	2652	해선 디자이너	4113	소식전환 및 보도원	5304	일용 판매원
2222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2430	간호사	2711	인사 및 노사 관련 전문가	2653	삼차원 디자이너	4121	경호원	5305	인턴 판매원
2223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2440	경영사	2712	회계사	2654	사각 디자이너	4122	항공 경찰	5306	노년 및 아동 판매원
2224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2451	임상시험사	2713	세무사	2655	웹 및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4123	무인 경비원	5306	혼동 도매 및 판매원

- 1 -

별칭, 직업분류표

구분	직업분류 예시	구분	직업분류 예시	구분	직업분류 예시	구분	직업분류 예시
6 농업·농림업 종사자		7420 조경원		8404 광학 및 색채학 기술자		9222 택배원	
농업·농림업 종사자(9)		농업 및 기타 관련 기능직(74)		8439 기타 비제조업 종사자		9223 축산·농림업 종사자	
6111 국산작물 재배원		7510 농·농림업 종사자		8510 금융·보험업 종사자		9229 기타 농업·농림업 종사자	
6112 채소 및 특산물 재배원		7521 농업·농림업 종사자		8620 농·농림업 관련 서비스		9300 채소·농림업 종사자	
6113 과수작물 재배원		7522 농업·농림업 종사자		8630 농·농림업 관련 서비스		9411 농·농림업 종사자	
6121 화훼작물 재배원		7523 농업·농림업 종사자		8641 농·농림업 관련 서비스		9412 농·농림업 종사자	
6122 조경원		7524 농업·농림업 종사자		8642 농·농림업 관련 서비스		9413 농·농림업 종사자	
6131 농림업 종사자		7531 농업·농림업 종사자		8643 농·농림업 관련 서비스		9421 농·농림업 종사자	
6132 가축 사육 종사자		7532 농업·농림업 종사자		8644 농·농림업 관련 서비스		9422 농·농림업 종사자	
6139 기타 사육 관련 종사원		7533 농업·농림업 종사자		8645 농·농림업 관련 서비스		9423 농·농림업 종사자	
법률·행정직(20)		7534 농업·농림업 종사자		8646 농·농림업 관련 서비스		9424 농·농림업 종사자	
6201 조경·농림업 및 기타 관련 종사원		7535 농업·농림업 종사자		8647 농·농림업 관련 서비스		9425 농·농림업 종사자	
6209 일반행정 및 기타 관련 종사원		7536 농업·농림업 종사자		8648 농·농림업 관련 서비스		9426 농·농림업 종사자	
어업·수산직(20)		7537 농업·농림업 종사자		8649 농·농림업 관련 서비스		9427 농·농림업 종사자	
6301 양어업		7538 농업·농림업 종사자		8650 농·농림업 관련 서비스		9428 농·농림업 종사자	
6302 어부 및 배		7539 농업·농림업 종사자		8651 농·농림업 관련 서비스		9429 농·농림업 종사자	
7 기능직 및 관련 기능직(7)		7540 농업·농림업 종사자		8652 농·농림업 관련 서비스		9430 농·농림업 종사자	
7101 제조업 및 제조원		7541 농업·농림업 종사자		8653 농·농림업 관련 서비스		9431 농·농림업 종사자	
7102 제조업		7542 농업·농림업 종사자		8654 농·농림업 관련 서비스		9432 농·농림업 종사자	
7103 철도·도로 및 도축원		7543 농업·농림업 종사자		8655 농·농림업 관련 서비스		9433 농·농림업 종사자	
7104 건설 및 건설원		7544 농업·농림업 종사자		8656 농·농림업 관련 서비스		9434 농·농림업 종사자	
7105 기타 및 일반서비스 종사원		7545 농업·농림업 종사자		8657 농·농림업 관련 서비스		9435 농·농림업 종사자	
7109 기타 서비스 관련 종사원		7546 농업·농림업 종사자		8658 농·농림업 관련 서비스		9436 농·농림업 종사자	
서비스-유통 및 기타 관련 기능직(72)		7547 농업·농림업 종사자		8659 농·농림업 관련 서비스		9437 농·농림업 종사자	
7201 유통·유통 및 기타 관련 기능직(72)		7548 농업·농림업 종사자		8660 농·농림업 관련 서비스		9438 농·농림업 종사자	
7202 내선직		7549 농업·농림업 종사자		8661 농·농림업 관련 서비스		9439 농·농림업 종사자	
7203 철도·도로 및 도축원		7550 농업·농림업 종사자		8662 농·농림업 관련 서비스		9440 농·농림업 종사자	
7204 철도·도로 및 도축원		7551 농업·농림업 종사자		8663 농·농림업 관련 서비스		9441 농·농림업 종사자	
7205 철도·도로 및 도축원		7552 농업·농림업 종사자		8664 농·농림업 관련 서비스		9442 농·농림업 종사자	
7206 철도·도로 및 도축원		7553 농업·농림업 종사자		8665 농·농림업 관련 서비스		9443 농·농림업 종사자	
7207 철도·도로 및 도축원		7554 농업·농림업 종사자		8666 농·농림업 관련 서비스		9444 농·농림업 종사자	
7208 철도·도로 및 도축원		7555 농업·농림업 종사자		8667 농·농림업 관련 서비스		9445 농·농림업 종사자	
7209 기타 서비스 관련 종사원		7556 농업·농림업 종사자		8668 농·농림업 관련 서비스		9446 농·농림업 종사자	
7210 철도·도로 및 도축원		7557 농업·농림업 종사자		8669 농·농림업 관련 서비스		9447 농·농림업 종사자	
7211 철도·도로 및 도축원		7558 농업·농림업 종사자		8670 농·농림업 관련 서비스		9448 농·농림업 종사자	
7212 철도·도로 및 도축원		7559 농업·농림업 종사자		8671 농·농림업 관련 서비스		9449 농·농림업 종사자	
7213 철도·도로 및 도축원		7560 농업·농림업 종사자		8672 농·농림업 관련 서비스		9450 농·농림업 종사자	
7214 철도·도로 및 도축원		7561 농업·농림업 종사자		8673 농·농림업 관련 서비스		9451 농·농림업 종사자	
7215 철도·도로 및 도축원		7562 농업·농림업 종사자		8674 농·농림업 관련 서비스		9452 농·농림업 종사자	
7216 철도·도로 및 도축원		7563 농업·농림업 종사자		8675 농·농림업 관련 서비스		9453 농·농림업 종사자	
7217 철도·도로 및 도축원		7564 농업·농림업 종사자		8676 농·농림업 관련 서비스		9454 농·농림업 종사자	
7218 철도·도로 및 도축원		7565 농업·농림업 종사자		8677 농·농림업 관련 서비스		9455 농·농림업 종사자	
7219 기타 서비스 관련 종사원		7566 농업·농림업 종사자		8678 농·농림업 관련 서비스		9456 농·농림업 종사자	
7220 철도·도로 및 도축원		7567 농업·농림업 종사자		8679 농·농림업 관련 서비스		9457 농·농림업 종사자	
7221 철도·도로 및 도축원		7568 농업·농림업 종사자		8680 농·농림업 관련 서비스		9458 농·농림업 종사자	
7222 철도·도로 및 도축원		7569 농업·농림업 종사자		8681 농·농림업 관련 서비스		9459 농·농림업 종사자	
7223 철도·도로 및 도축원		7570 농업·농림업 종사자		8682 농·농림업 관련 서비스		9460 농·농림업 종사자	
7224 철도·도로 및 도축원		7571 농업·농림업 종사자		8683 농·농림업 관련 서비스		9461 농·농림업 종사자	
7225 철도·도로 및 도축원		7572 농업·농림업 종사자		8684 농·농림업 관련 서비스		9462 농·농림업 종사자	
7226 철도·도로 및 도축원		7573 농업·농림업 종사자		8685 농·농림업 관련 서비스		9463 농·농림업 종사자	
7227 철도·도로 및 도축원		7574 농업·농림업 종사자		8686 농·농림업 관련 서비스		9464 농·농림업 종사자	
7228 철도·도로 및 도축원		7575 농업·농림업 종사자		8687 농·농림업 관련 서비스		9465 농·농림업 종사자	
7229 기타 서비스 관련 종사원		7576 농업·농림업 종사자		8688 농·농림업 관련 서비스		9466 농·농림업 종사자	
7230 철도·도로 및 도축원		7577 농업·농림업 종사자		8689 농·농림업 관련 서비스		9467 농·농림업 종사자	
7231 철도·도로 및 도축원		7578 농업·농림업 종사자		8690 농·농림업 관련 서비스		9468 농·농림업 종사자	
7232 철도·도로 및 도축원		7579 농업·농림업 종사자		8691 농·농림업 관련 서비스		9469 농·농림업 종사자	
7233 철도·도로 및 도축원		7580 농업·농림업 종사자		8692 농·농림업 관련 서비스		9470 농·농림업 종사자	

4. 2017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FGI 질문지

(1) 1인가구 FGI 질문지

I. 기초질문

I. 기초질문	1. 1인가구로 살아온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거주 형태는 어떠한가요?
	3. 혼자 살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4. 최근 혼자 거주하면서 생긴 에피소드가 있나요?

II. 1인가구 생활 실태 (식생활)

II. 1인가구 생활실태 (식생활)	1. 혼자 식사를 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나요?
	1-1. 혼자 식사 할 때 주로 밥을 해서 드시나요? 아니면 어떠한 형태로 식사를 하나요?
	1-2. 혼자 식사를 할 때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1-3. 혼자 식사를 할 때 병행하는 활동이 있나요? 있다면 어떠한 활동을 함께 하나요?
	2.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는 얼마나 되나요?
	2-1. 혼자 술을 마실 때는 주로 어떠한 이유 때문인가요?
	2-2. 혼자 술을 마실 때 주량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3. 혼자 식사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3-1. 어려움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3-2.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Ⅲ. 1인가구 생활실태(주거)

Ⅲ. 1인가구 생활실태 (주거)	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세와 관리 비용을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1-1. 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가요?
	1-2. 본인의 생활에서 주거관련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정도는?
	1-3. 집을 구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2. 주거 지역이나 집을 옮기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나요?
	2-1. 왜 이사를 하고자 했나요?
	3. 혼자 거주하면서 안전상의 문제를 느낀 적이 있나요?
	3-1.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 방안이 있나요?
	3-2. 문제가 생겼을 때 주변에 연락을 할 사람이 있나요?
	3-3. 가장 먼저 연락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4.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4-1. 혼자 집에 있을 때 주로 무엇을 하나요?
	5. 혼자 살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예) 아플 때 어떻게 하나요?

Ⅳ. 1인가구 생활실태(심리적 측면)

Ⅳ. 1인가구 생활실태 (심리적 측면)	1. 혼자 거주하면서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나요?
	1-1. 외로움을 느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1-2. 살고 있는 집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나요?
	1-3. 최근 한 달 내 집 주변(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과 모인 경험이 있나요?
	1-3-1. 모인 경험이 있다면 어떠한 활동을 했나요?
	2. 본인의 옆집에 사는 사람과 인사를 나눈 적이 있나요?
	2-1. 옆집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3. 부모님, 형제 자매 혹은 다른 가족들과 일주일 간 얼마나 연락을 하면서 지내나요?
	3-1. 최근 한달 내 부모님 댁을 다녀온 경험이 있나요?
	4. 친구들과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만남을 하나요?
	4-1. 친구들을 만나면 주로 무엇을 하나요?

V. 1인가구 생활실태 (추후 계획 및 마무리)

V. 1인가구 생활실태 (추후 계획 및 마무리)	1. 내년에도 현재 살고 계신 집에서 거주할 계획이신가요?
	1-1. (Yes or NO) 그 이유는?
	2. 1인가구에 대해 최근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이미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2-1. 청년 1인가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3.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정책 사업으로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I. 니트 실태

I. 니트 실태	1. 현재 일도, 학업도, 훈련도 받지 않고 계신가요? 이전에 일도, 학업도, 훈련도 받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2. 일도, 학업도, 훈련도 받지 않은 기간은 어느 정도 되셨나요?
	3. 일도, 학업도, 훈련도 받지 않고 지내시거나 지내셨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4. 현재 취업이나 학업을 준비 중인가요?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취업이나 학업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았다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5.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계신가요? 독립해서 살고 계신가요? 주거 비용이 든다면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6. 현재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요? 혹시 저축을 하거나 모아둔 자금을 갖고 계신지요?
	7. 현재 생활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II. 니트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

II. 니트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	1. 현재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취업성공패키지를 지원해 보거나 청년 활동수당 등을 받아보았거나 고용센터나 대학청년일자리센터 등에 방문해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원을 받아보았다면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셨습니까? 지원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2. 일도, 학업도, 훈련도 받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통해 청년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청년 고용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 미취업자에게 구직활동과 관련하여 일정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는 청년고용촉진수당 등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제공을 위해 중소기업에서 2명의 청년을 취업시킬 경우 추가로 1명을 더 취업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당장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불리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은둔형외톨이 전문가 심층면접 질문지

I. 은둔형외톨이 실태

I. 은둔형 외톨이 실태	1. 만나보신 은둔형 외톨이의 연령대와 은둔생활을 하면서 보내는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입니까? 또한, 그들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2. 그들은 은둔생활을 할 때 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 그들이 은둔생활을 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며, 그들이 주로 호소하 는 문제(어려움)는 무엇입니까? 또한, 가족들은 어떤 문제를 경험 하게 됩니까? * 개인적 요인(성격특성)/환경적 요인(가정환경 및 대인관계 문제 등) 또는 특정 사건 경험 여부(학교폭력, 따돌림, 학대, 부모님의 이혼 또는 사망, 등
	4.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경로는 무엇이며, 그들이 은둔생활을 벗어 나지 못하고 지속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은둔형 외톨이의 위험요인) 또한, 은둔생활에서 벗어난 사람은 어떻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나요?(은둔형 외톨이의 보호요인)

II. 은둔형외톨이 지원방안

II.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1. 은둔형 외톨이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2. 은둔형 외톨이와 그들의 가족(부모, 형제자매 등)은 어떠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지원)
	3.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 및 지자체, 민간 등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요? 또한, 앞으로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정책이나 지원 방안 등에서 개선되어야 하거나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요?

Ⅲ. 기관에 은둔형 외톨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나 프로그램, 연구 등에 대한 문의

Ⅲ. 은둔형 외톨이 대상 사업 및 프로그램 내용	1. 귀 기관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 연구내용 등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2. 귀 기관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대상으로 사업(또는 프로그램, 연구, 상담 등)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3. 귀 기관에서 진행한 사업이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은둔형 외톨이나 그들의 가족의 반응은 어떠한지요? 또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주호소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지요?
	4. 귀 기관에서 은둔형 외톨이 관련한 업무담당자로서, 은둔형 외톨이들과 관련된 업무를 할 때 어려운 점이나 문제, 한계점 등은 무엇인지요? 또한,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나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xact realities of youth unemployment, not just the youth unemployment problem, but the lives of young people, based on this, it aims to create a comprehensive youth policy direction and task.

The purpose of preparing for basic data analysis for the analysis of youth situation, a survey of 2,700 people aged 15 to 39 was conducted on the survey of youth and economy in 2016.

Starting this year, it was surveyed by the national statistics (Approval No. 402004) of Statistic Korea. The study conducted a survey of key indicators in seven areas; ① Population and Family, ② Education and training, ③ Economy and employment, ④ Dwelling, ⑤ Health, ⑥ Culture and values, ⑦ Relationship and Additional Survey of Participation, and a survey was conducted simultaneously with the youth NEET and the social adaptation. The survey results were published b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s website (<http://www.nypi.re.kr/youth/>) and monthly newsletter 'Youth Focus' has been published online every month.

To propose the direction and challenge of youth policy, we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youth policies and problems that are currently under way while identifying the youth situa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the policies of the entire youth, in addition, we examined the policies and diagnose problems about of youth NEET, Young Single-Person Household, Reclusive Loner. The group prepared measures to support youths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collective interviews (FGI). The youth policy assignment was divided into mid - and long-term assignments, and policy direction and task direction were presented in relation to youth policy promotion foundation, such as law enforcement system,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and delivery system.

Keywords: Youth, Youth Unemployment, Youth Core Indicators, Young Social Economic Survey, Youth Age Regulations, Youth Policy Directions, Youth Policy Tasks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7-R01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 황여정
- 17-R02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김지연 · 정소연
- 17-R02-1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지연 · 정소연
- 17-R03 아동 · 청소년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기업-아동 · 청소년 NPO-정부의 파트너십 구축 / 임지연 · 김한별
- 17-R04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김정숙 · 강영배
- 17-R05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 황세영 · 최정원
- 17-R06 청소년 사이버일탈 유형별 대책 연구 / 배상률 · 박남수 · 백강희
- 17-R07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 김혁진
- 17-R08 아동 · 청소년 · 가족 보호 통합게이트웨이 구축 · 운영 모형 개발 연구 / 서정아
- 17-R09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김기현 · 이윤주 · 유설희
- 17-R09-1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기초분석 보고서 - / 김기현 · 이윤주 · 유설희
- 17-R10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Ⅳ / 임희진 · 문호영 · 조남익
- 17-R10-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Ⅳ - 기초분석 보고서 / 임희진 · 문호영
- 17-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Ⅴ / 오해섭 · 최인재 · 염유식 · 김세광
- 17-R1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총괄보고서 - / 양계민 · 강경균
- 17-R12-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다문화 · 청소년의 발달 추이 분석 - / 연보라
- 17-R12-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정책제언 - / 양계민
- 17-R13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Ⅲ / 김경준 · 정은주
- 17-R14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Ⅱ / 윤철경 · 성운숙 · 최홍일 · 유성렬 · 김강호
- 17-R15 아동 · 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 · 청소년인권실태 2017 : 총괄보고서 / 김영지 · 김희진 · 이민희 · 김진호
- 17-R15-1 아동 · 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 · 청소년인권실태 2017 : 심화분석보고서 -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관련 정보접근성과 인권의식 / 김진석
- 17-R15-2 아동 · 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 · 청소년인권실태 2017 통계 / 김영지 · 김희진
- 17-R16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Ⅷ : 사업보고서 / 하형석 · 최용환 · 정은진 · 정윤미 · 한지형
- 17-R16-1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Ⅷ : 연구성과분석보고서 / 최용환 · 박상현 · 한지형
- 17-R16-2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Ⅷ : 데이터분석보고서 - 청소년 수면시간의 긍정적 효과 - / 정은진 · 하형석 · 고강혁 · 정윤미
- 17-R16-3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Ⅷ : 한국청소년패널조사 2018 기초연구 / 하형석 · 정은진 · 최승주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7-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7-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7-R17-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분석 - / 김태준·홍영란·김홍민 (자체번호 17-R17-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5 IEA ICCS 2016 조사틀(Assessment framework) / Schulz, W·Airley, J·Losito, B·Agrusti, G (자체번호 17-R17-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40-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Ⅱ / 김현철·백혜정·이지연 (자체번호 17-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40-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Ⅱ -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운영사례집 / 김현철·백혜정 (자체번호 17-R18-1)

연구개발적립금

- 17-R19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연구(2018년 4월 발간) / 황진구·유민상
- 17-R20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2018년 4월 발간) / 이유진·김영한·윤옥경

수 시 과 제

- 17-R21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실태 연구 / 이창호
- 17-R22 지방자치단체 청년참여기구 실태 및 체계 연구 / 조진우·이윤주
- 17-R23 인터넷사회의 부모와 자녀관계에 관한 한·중·일 비교 : 한국사례분석 / 이창호·김기현
- 17-R24 현장적용 제고를 위한 자유학기제 학교-청소년시설의 협업지침 분석 / 임지연
- 17-R25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특성 연구 / 이윤주
- 17-R26 청소년 분야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방안 연구 / 황세영·김기현
- 17-R27 청소년동반자 활성화 방안 연구 / 장근영·진은설
- 17-R28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 실태조사 연구 / 황진구

수 탁 과 제

- 17-R29 2017년 4개국(한일중미) 청소년 의식조사 / 김기현
- 17-R30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운영계획 수립연구 / 장근영 · 황진구
- 17-R31 2016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7-R32 2016년도 청소년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관련 평가 / 배상률 · 김동일 · 유홍식
- 17-R33 화랑마을 운영관리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영한 · 서정아 · 임지연 · 좌동훈 · 한상철 · 신상구 · 박시현
- 17-R34 다문화 교육 종합 발전방안 / 양계민
- 17-R35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5-1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세미나 자료집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5-2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국내외 사례요약집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5-3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정책리포트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6 지식협력단지 초 · 중학생 기업가정신 교육 모듈 교재 개발 / 강경균
- 17-R36-1 (초등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학생용 워크북) / 강경균
- 17-R36-2 (초등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교사용 매뉴얼) / 강경균
- 17-R36-3 (중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학생용 워크북) / 강경균
- 17-R36-4 (중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교사용 매뉴얼) / 강경균
- 17-R37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 예방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초 · 중 · 고등학생과 학교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 성윤숙 · 김경준 · 최정원
- 17-R37-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매뉴얼 / 정제영 · 김성기 · 선미숙
- 17-R37-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매뉴얼 개발 연구 / 정제영 · 김성기 · 선미숙
- 17-R37-3 국내외 청소년 사이버 범죄 실태와 예방 대책 연구 / 안동근 · 박병식 · 김영욱
- 17-R38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 정책 방향과 과제 : 2017년 청년정책포럼 / 김기현 · 한지형
- 17-R39 청년정책 추진체계 발전방안 연구 / 이윤주 · 김기현 · 하형식
- 17-R40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백혜정 · 임희진 · 김현철 · 유성렬
- 17-R41 2017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 · 최인재 · 정은주 · 김영지
- 17-R42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모형 개발 연구 / 김지연 · 백혜정
- 17-R43 제5 · 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 연구 / 김영지 · 이윤주 · 유설희
- 17-R44 시립청소년시설 적정 위탁운영비 배분을 위한 모형개발 연구 / 최용환 · 이재완 · 박정배
- 17-R45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2017 / 김희진 · 정윤미
- 17-R46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사회 · 문화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배상률 · 이경상 · 이창호
- 17-R47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성과측정 체계연구 / 황세영 · 강경균
- 17-R48 청소년용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성은모 · 이성혜
- 17-R49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김지연 · 유민상 · 이상정
- 17-R49-1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 / 김지연 · 유민상 · 이상정
- 17-R49-2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지연 · 유민상 · 이상정

- 17-R50 2017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 이윤주 · 하형석 · 한지형
- 17-R51 국립강진청소년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 김영한 · 이유진 · 정은진 · 강동영
- 17-R52 2017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연구사업 / 서정아 · 연보라
- 17-R53 청소년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시범사업 운영/ 장근영
- 17-R54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개편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 17-R55 2017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7-R55-1 학업중단 숙려제 특화 프로그램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7-R56 2017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컨설팅 결과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7-S01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의 의미 및 과제 (2/9)
- 17-S02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 교육 심화 워크숍 (2/13~14)
- 17-S03 제7차 청년정책포럼 (2/23)
- 17-S04 제8차 청년정책포럼 (4/20)
- 17-S05 유엔아동권리협약 5·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3/7)
- 17-S06 2016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31)
- 17-S07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1권역 (4/4)
- 17-S08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2권역 (4/7)
- 17-S09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3권역 (4/11)
- 17-S10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4권역 (4/12)
- 17-S11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관리자 연수 : 제1권역 (4/14)
- 17-S12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관리자 연수 : 제2권역 (4/18)
- 17-S13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 교육 2차 심화 워크숍 (3/31)
- 17-S14 2017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4/21)
- 17-S15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4/13)
- 17-S16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기초 연수(1권역) (4/20)
- 17-S17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기초 연수(2권역) (4/28)
- 17-S18 2017년 제1회 대안학교장 협의회 (5/12)
- 17-S19 2017 NYPI & ARACD INTERNATIONAL CONFERENCE – Career Education and VET(Vocational Education & Trainig) for Youth in Asia : 청소년 진로교육 국제학술회의 아시아 청소년 진로교육과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5/17)
- 17-S20 2017 NYPI & ARACD INTERNATIONAL CONFERENCE – Career Education and VET(Vocational Education & Trainig) for Youth in Asia : Special Roundtable for Comparing career educ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5/18)
- 17-S21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1권역 (5/22)
- 17-S22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2권역 (5/24)
- 17-S23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3권역 (5/29)
- 17-S24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4권역 (5/30)
- 17-S25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청소년정책 (5/31)

- 17-S26 세계시민교육 사례 공유를 통한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방안 논의 (5/26)
- 17-S27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Ⅴ 콜로키움 (6/22)
- 17-S28 SDGs 청소년 역량 환경교육 (6/26)
- 17-S29 2017 13th citizED International Conference Global citizenship and youth work: educational meanings, possibilities and practices (6.29~7.1)
- 17-S30 다문화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 방안(통합과 선별) (9.22)
- 17-S31 청소년활동 중심 행복마을 운영 모형 및 지원방안 (7.28)
- 17-S32 2017년 한·러 차세대 전문가 세미나 - 한국과 러시아의 성인기 이행 : 청년 자립 '결혼 출산 현황 및 정책' (7.27)
- 17-S33 2017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모니터링 위원 워크숍 (8.18)
- 17-S34 청소년정치참여확대 및 활성화 방안 (8.28)
- 17-S35 2017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담당자 연수 (8.29)
- 17-S36 2017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중·고교) 담당교원 협의회」 (9.1)
- 17-S37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9.14)
- 17-S38 다문화청소년패널 학술대회 (9.15)
- 17-S39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토론회 세미나 (9.9, 9.16)
- 17-S40 4차 산업혁명 및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역량증진의 방향 (9.13)
- 17-S41 국제심포지엄 2017 [무업청소년(NEET) : 국제적 동향과 대응] (9.25)
- 17-S42 한-중 국제세미나 (10/31)
- 17-S43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사이버범죄) 예방과 대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 (11.3)
- 17-S4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성과발표 및 우수사례발표 워크숍 (11.17)
- 17-S45 청소년의 노동권 관련 법제 현황과 주요 입법 과제 (11.28)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1호(통권 제8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2호(통권 제85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3호(통권 제8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4호(통권 제87호)

기 타 발 간 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7호 : 청소년정책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8호 :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9호 :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Ⅱ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0호 :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1호 : 지방자치단체 청년참여기구 실태 및 체계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2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2013-2016)' 의 성과와 향후 연구방향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3호 :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정치참여 활성화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4호 : 중도입국 청소년의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5호 : 탈북청소년 지원 체계화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6호 :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7호 : 청소년 분야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8호 : 청소년 동반자 활동 효율화 방안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9호 :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운영 특성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0호 : 인터넷사회의 부모와 자녀관계에 관한 한·중·일 비교: 한국사례 분석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1호 :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실태와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2호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Ⅰ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3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연구성과분석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4호 : 자유학기제 등 학교-청소년시설의 협업지침 활용방안

NYPI Bluenote 통계 33호 : 청소년 차별 실태 연구
NYPI Bluenote 통계 34호 :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NYPI Bluenote 통계 35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NYPI Bluenote 통계 36호 : 청소년 수면과 비만의 종단적 변화
NYPI Bluenote 통계 37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자료로 살펴본 청소년 관련 국정과제
NYPI Bluenote 통계 38호 : 청소년의 학습습관 통제능력, 성적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KCYPs 초 4패널-

연구보고 17-R09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

인 쇄 2017년 12월 22일

발 행 2017년 12월 29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참기획 전화 (042-861-6380)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159-2 94330

979-11-5654-143-1 (세트)

연구보고 17-R09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9 4330
9 791156 541592
ISBN 979-11-5654-159-2
ISBN 979-11-5654-143-1 (세트)